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 업 설 명 자 료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018. 1.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무역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2018. 1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1. 국가기술표준원 ····· 1

<일반회계>

(1) 국제표준활동지원 ····· 5
(2)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 15
(3)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 26
(4)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 37
(5) 안전제도기반조성 ····· 54
(6)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 68
(7)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 78
(8)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 ····· 87
(9)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 98
(10) 국가표준활성화 ····· 119
(11) 신기술제품인증 ····· 138
(12)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 152
(13)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 174
(14) IT기반 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 ····· 183
(15)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 201
(16) 안전인증역량강화 ····· 223
(17)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 237
(18) 표준안전기반구축 ····· 256
(19)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 270
(20) 기술표준정책 ····· 276

2. 무역위원회 ····· 283

<일반회계>

(1) 무역구제지원사업 ····· 286

3.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295

<일반회계>

(1) 동해자유무역지역조성 ····· 298
(2) 마산자유무역지역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구축 ····· 305
(3) 자유무역지역관리 ····· 314
(4) 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 330

<지특회계>

(5)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 338
(6)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 347
(7)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 ····· 355
(8) 기타 기반시설지원 ····· 362
(9) 주요 기반시설지원 ····· 370

국가기술표준원

세출예산 총괄표(국가기술표준원)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결산	2017예산		2018예산		증 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
총 계	**83,103**	**86,295**	**86,902**	**84,850**	**85,150**	**△1,752**	**△2.0**
<일반회계>	**83,103**	**86,295**	**86,902**	**84,850**	**85,150**	**△1,752**	**△2.0**
국제표준활동지원 (3731-302)	2,279	2,105	2,105	4,458	4,458	2,353	111.8
개도국표준체계 보급지원 (3731-303)	1,115	1,200	1,200	1,275	1,275	75	6.3
국가인증제도혁신 기반구축 (3731-307)	1,195	1,200	1,200	1,100	1,100	△100	△8.3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3732-303)	3,743	4,025	4,632	4,025	4,025	△607	△13.1
안전제도기반조성 (3732-304)	1,946	1,899	1,899	3,684	3,684	1,785	94.0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3732-306)	616	878	878	900	900	22	2.5
어린이제품안전 관리생태계조성 (3732-307)	0	950	950	990	990	40	4.2
한국인인체치수 조사보급 (3733-304)	1,042	1,010	1,010	889	889	△121	△12.0
법정계량선진화 기반구축 (3733-308)	1,405	1,332	1,332	1,229	1,229	△103	△7.7
국가표준활성화 (3733-309)	4,283	3,919	3,919	3,758	4,058	139	3.5
신기술제품인증 (3734-301)	2,137	2,223	2,223	2,066	2,066	△157	△7.1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3736-301)	4,052	4,380	4,380	4,100	4,100	△280	△6.4

구분	2016결산	2017예산		2018예산		증 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
기술규제개혁 선진화체계구축 (3736-302)	1,086	1,172	1,172	1,063	1,063	△109	△9.3
IT기반기술표준 정보화체계구축 (3740-301)	736	590	590	627	627	37	6.3
국제적합성평가 기반구축 (3741-306)	2,252	2,311	2,311	2,309	2,309	△2	△0.1
안전인증역량강화 (3745-301)	0	0	0	6,425	6,425	6,425	순증
국가표준기술개발 및보급 (3745-302)	30,096	29,962	29,962	28,824	28,824	△1,138	△3.8
표준안전기반구축 (3745-303)	22,089	24,166	24,166	14,029	14,029	△10,137	△41.9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 (7134-301)	1,384	1,444	1,444	1,576	1,576	132	9.1
기술표준정책 (7134-302)	1,647	1,529	1,529	1,523	1,523	△6	△0.4

사 업 명
(1) 국제표준활동지원 (37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110	114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진흥 고도화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2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국제표준활동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국제표준과	정기원	김종대	-
		043-870-5350	043-870-5354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A
국제표준활동지원	2,279	2,105	2,105	4,458	4,458	2,353	111.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6					2017('17.12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298	2,298	2,279	-	19	2,105	2,105	2,105	984	-	-	4,458
· 국제표준화회의개최	836	836	824	-	12	555	555	555	299	-	-	368
· 국제표준화회의참가	512	512	512	-	-	700	700	700	232	-	-	400
· 국제표준화선도 정책연구	200	200	193	-	7	100	100	100	78	-	-	100
· 국제 의장·간사 활동	750	750	750	-	-	750	750	750	375	-	-	750
· 2018 IEC 부산총회	-	-	-	-	-	-	-	-	-	-	-	2,840
○ 비목별 분류(합계)	2,298	2,298	2,279	-	19	2,105	2,105	2,105	2,100	-	5	4,458
· 상용임금(110-03)	14	14	10	-	4	10	10	10	10	-	-	10
· 일반수용비(210-01)	210	210	209	-	1	101	101	101	101	-	-	82
· 임차료(210-07)	523	523	516	-	7	360	360	360	360	-	-	210
· 국외업무여비(220-02)	512	512	512	-	-	700	700	700	698	-	2	400
· 사업추진비(240-01)	69	69	69	-	-	64	64	64	61	-	3	56
· 일반연구비(260-01)	200	200	193	-	7	100	100	100	100	-	-	100
· 민간경상보조(320-01)	750	750	750	-	-	750	750	750	750	--	-	3,590
· 자산취득비(430-01)	20	20	20	-	-	20	20	20	20	-	-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ISO/IEC 등 국제표준화 회의에 의장·간사 및 국내전문가(학계·산업계 등) 참가지원을 통해 표준 선진국과의 표준협력을 증진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IEC) 임원진출 확대 및 주요 국제표준화 총회의 국내유치 등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

-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교역에서 비관세 기술무역장벽(TBT)을 제거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원천 표준인프라 확충

-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국제표준화기구 참여 확대로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과학기술과 아이디어·상상력을 융합한 새로운 산업 창출 및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 협력추진)
-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 WTO/TBT 협정

· WTO TBT 2.6조, 5.5조 WTO 회원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 WTO TBT 11.1조, 11.6조 WTO 회원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② 추진경위

- WTO 출범 이후,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하여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려는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활동 강화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
- 국가차원의 국제표준화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주요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02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
- '10.5.29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의 공통표준화 등 표준협력을 추진키로 선언하는 등 표준협력사업 중요성의 지속적 증대

- 그간의 노력으로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실적이 '02년에 24건에서 '16년 686건(누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국제표준 도입국에서 국제표준화 주도국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
- 前 정부에서는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 산업 경쟁력 증가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 (국정과제 8-3-1) 우리 기술의 국가·국제표준화 연계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02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표준협회	100	산업표준화법 제 31조 등

3) ’18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개최 지원 : 368백만원**

- ISO 7회×약 24.5백만원(평균 1회 개최 임차ㆍ통역ㆍ인쇄비용) = 176백만원
- IEC 3회×약 24.5백만원(평균 1회 개최 임차ㆍ통역ㆍ인쇄비용) = 77백만원
- 주요국 표준 기관(ASTM, ASME, DIN) 자료구입 : 39백만원
- 국제표준화활동 통·번역 등 업무지원 보조 : 10백만원
- 국제기구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및 장비구입 : 10백만원
-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개최시 업무협력비 : 56백만원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및 주요 국가(기구) 표준협력강화 지원 : 400백만원**

- ISO 77명×약 3.5백만원(3년 평균 1회 출장비용) = 271백만원
- IEC 9명×약 3.5백만원(3년 평균 1회 출장비용) = 31백만원
- 정부대표 28명×약 3.5백만원(평균 1회 출장비용) = 98백만원

○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 : 100백만원**

-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 : 3건 × 약 33.3백만원 = 100백만원

○ **국제 의장·간사 활동 지원(민간보조) : 750백만원**

- 국제의장·간사·컨비너 출장지원 : 160명×약 4.2백만원×100%=672백만원
- 전문간사 인건비 : 2.5백만원×2명×12월×100% = 60백만원
- 의장간사협의회 및 워크숍 운영 : 9백만원×2회×100% = 18백만원

○ **2018년「IEC 부산총회」개최(민간보조) : 2,840백만원(단기특이소요)**

- 행사장 임차 등 운영비(2,237), 시설비(64), 홍보비(196), 인건비(343)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건수 (건)	목표	190	144	125	160	160	국제회의 참석 예산 증감분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목표설정	당해 국제표준화회 참석건수	국표원 내부 통계자료 및 국제표준화기구 홈페이지 자료
	실적	195	150	139	-	-			
	달성도	102.6	104	111.2	-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건수 (건)	목표	23	24	27	20	23	국제회의개최 예산 증감분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목표설정	당해 국제표준화회 개최건수	국표원 내부 통계자료 및 국제표준화기구 홈페이지 자료
	실적	25	25	27	-	-			
	달성도	109	104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4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52개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6.5%(549개), IEC 70.6%(132개) ▪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10,518건
2015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65개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3.0%개(554), IEC 68.9%(131개) ▪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8,991건
2016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70개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2.9%(551개), IEC 66.5%(135개) ▪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9,491건
2017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32개(´17.6월) ▪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4,769건(´17.6월)

③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18년 「IEC 부산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IEC 상임이사국* 진출 계기마련을 통해,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에 유리한 위치 확보 및 국제표준화 선진국들과 우호관계 형성

* IEC 상임이사국('16.12 기준) : 중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6개국

- 전기전자 생산강국(세계 4위) 위상에 맞게 국내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통해 전기전자분야 4차 산업혁명 주도 및 수출 경쟁력 제고
- 전략적인 국제표준활동을 통해서 ISO·IEC 의장, 간사, 컨비너 등 국제수임 확대

* '16년 12월 기준 : 국제의장(15명), 간사(24명), 컨비너(137명)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가기술표준원 직접수행】
① 국가기술표준원내 표준담당과를 통해 국제표준화활동 수요조사(전년 11월)
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 수립 및 지원내역 각과 통보(12월)
③ 연중 사업시행 및 사업수행결과 분석 및 평가 (1월-12월)

【보조금 수행】
① 보조금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계획 수립(1월)
② 사업계획 심의확정(1월)
③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연중)
④ 사업집행결과 정산 및 분석·평가 (12월-익년 1월)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6	'17	'18	'19	'20	'21
'16~'20	2,279	2,105	2,298	2,298	2,298	
'17~'21		2,105	2,218	2,298	2,298	2,29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재정사업자율평가 : '16년 평가중('14-'15년 미평가)

○ 보조사업운용평가 : '15년 평가(정상추진)

- 판정결과 : 보조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급속한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 협력의 증대로 인해 본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정상 추진함

* 보조사업은 '17년 기준, 전체 2,105백만원 中 750백만원을 내역사업(국제 의장·간사 활동 지원)으로 운용·집행 중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2018년「IEC 부산총회」개최 및 세계 7대 표준강국 실현
  · 이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의장, 간사, 컨비너 진출 확대, 우리기술표준의 신규제안 및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매년 늘어나고 있는 국제표준화 활동 수요를 감안, 점진적으로 예산증액 절실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최근, 세계 각국은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국가나 기업이 세계시장을 지배한다는 인식하에,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 중

  · 우리나라도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표준전문가의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등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 필요

    * WTO/TBT 협정 이후, 표준이 비관세장벽의 핵심요소로 등장, 각국은 표준을 자국시장 보호 수단으로 활용

- 우리나라의 세계 7대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의장·간사 진출 확대는 필수적인 요소로, 재정투입 이후 국제의장·간사 등의 임원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

  · 사업 시작 이후, 평균 20%가 넘는 임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원예산은 몇 년간 제자리에 머물러,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 ☞ 예산 확대 절실

    *** 임원 수임 증가현황 : ('07년) 63명 → ('08년) 81명 → ('09년) 95명 → ('10년) 107명 → ('11년) 112명 → ('12년) 122명 → ('13년) 140명 → ('14년) 165명 → ('15년) 167명 → ('16년) 179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제약으로 국제표준 활동 신청의 약 47% 수준만 지원하는 실정**

- 국제표준화기구 ISO와 IEC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통한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등록 확대 필요

  · 최근 중국이 IEC 상임이사국에 진출에 성공, 한·중·일 중 우리나라만 상임이사국 진출을 하지 못 해, 우리기술이 국제표준 경쟁에서 뒤쳐질 전망

    * 2018년 세계 7위의 국제표준 강국 달성을 통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의장, 간사, 컨비너 등의 임원 수 확대와 IEC의 회장·부회장 등의 주요 요직 진출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4	2,148	2,148	-	-	-	-	2,148	2,137	99.5	99.5	-	11
2015	2,642	2,642	-	-	-	-	2,642	2,637.5	99.8	99.8	-	4.5
2016	2,298	2,298	-	-	-	-	2,298	2,279	99.2	99.2	-	19
2017	2,105	2,105	-	-	-	-	2,105	984	46.7	46.7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4	2,148	2,148	2,137	750	-	750	750	-	-	100
2015	2,642	2,642	2,637.5	650	-	650	650	-	-	100
2016	2,298	2,298	2,279	750	-	750	750	-	-	100
2017. 6월기준	2,105	2,105	984	750	-	750	375	-	-	50

2) 주요 결산사항 :

2014	○ 불용액 11백만원(집행잔액)
2015	○ 불용액 4.5백만원(집행잔액)
2016	○ 불용액 19백만원(집행잔액)
2017	

라. 기타 추가자료 : 우리나라 국제표준화 현 주소(기준 : '16년)

□ (국가 순위) ISO 8위, IEC 1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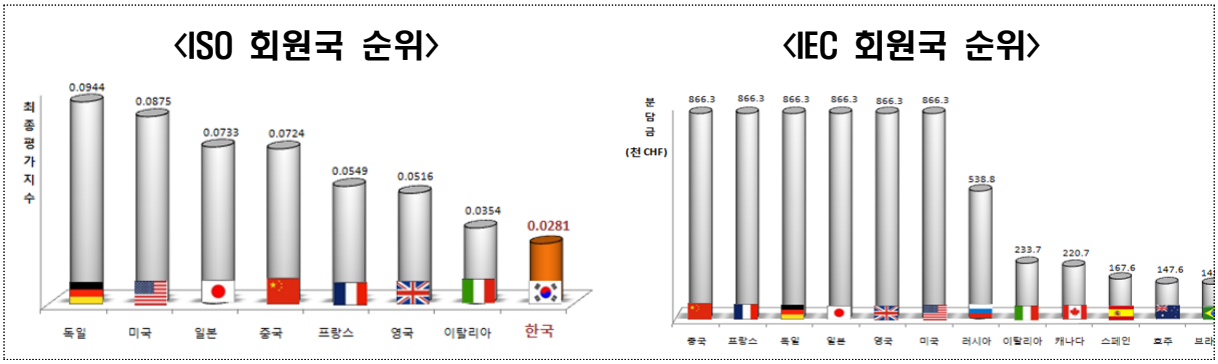

* <평가기준> (ISO) 분담금(60%)+간사수임(20%)+정회원률(20%)= 최종평가지수
(IEC) 인구, 국민총소득(GNI), 전력소비량로 산출 = 분담금

□ (간사국 수임) ISO 10위, IEC 9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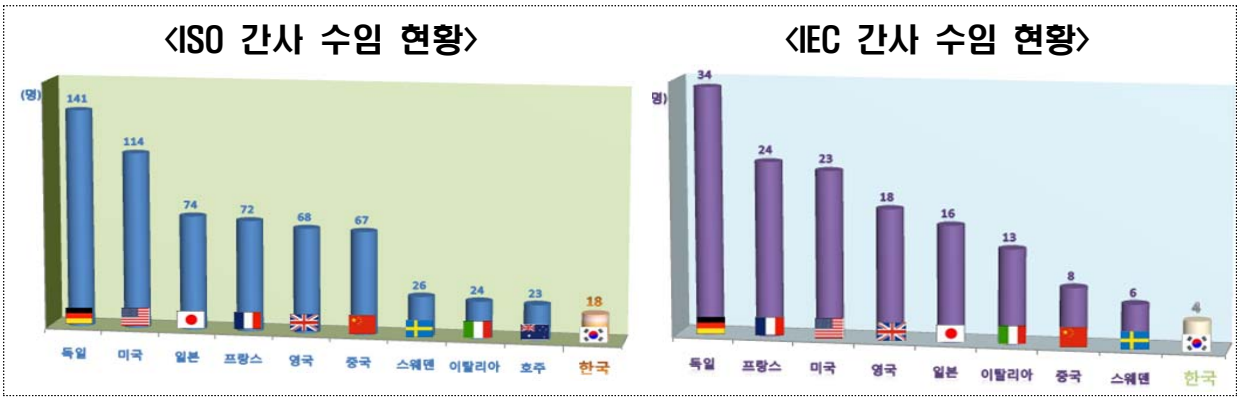

* 국제 간사국 수임은 현안 논의를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지위로 실질적 국제표준화 활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리

□ (IEC 표준 제안/전문가 참여) 제안국가 2위, 전문가 참여수 7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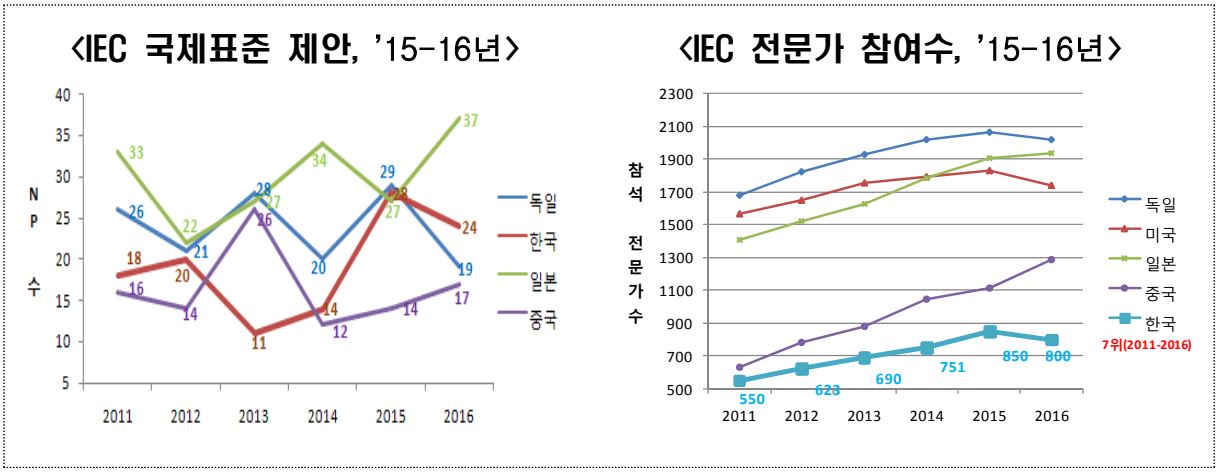

사 업 명
(2)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37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110	114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3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협력과	박재형	오기수 연구관	류지영 연구사
		043-870-5560	043-870-5564	043-870-556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A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1,115	1,200	1,200	1,275	1,275	75	6.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6					2017('17.12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115	1,115	1,115 [1,115]	-	-	1,200	1,200	1,200	1,200 [1,200]	-	-	1,275
・기술표준초청과정운영	100	100	100 [96]	-	-	175	175	175	175 [175]	-	-	295
・표준체계전수협력	585	585	585 [570]	-	-	625	625	625	625 [625]	-	-	500
・시험소진출타당성조사	360	360	360 [390]	-	-	240	240	240	240 [240]	-	-	300
・표준체계보급지원기반강화	70	70	70 [59]	-	-	160	160	160	160 [160]	-	-	180
○ 비목별 분류(합계)	1,115	1,115	1,115 [1,115]	-	-	1,200	1,200	1,200	1,200 [1,200]	-	-	1,275
・민간경상보조(320-01)	1,115	1,115	1,115 [1,115]	-	-	1,200	1,200	1,200	1,200 [1,200]	-	-	1,27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o 최근 EU, 미국 등 선진국보다는 우리의 수출전략지역인 아세안, CIS,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기술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

* 신규 기술규제 10건 중 8건을 개도국에서 신설

* 인도네시아(안전인증마크 의무), 베트남(에너지라벨 부착 의무) 등 개도국의 기술규제 다양화 및 강화추세

- 동 지역의 표준체계 부재로 인해 시장 진입·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무역촉진 필요

o 수출전략지역의 표준 및 기술규제 체계를 우리와 동질화시키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수출시장 확대와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우리 표준체계 전수를 통해 사전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수출활성화
  * 표준동질화 ⇨ 경제·사회·문화 동질화 ⇨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 협력촉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9조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사업시작) '10.12.21일 발표한 ODA 선진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2011～2015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이행과 관련된 공익사업으로, '11년 기획재정부에 의해 심의・승인되었고, 기재부 요구에 따라 **'12년부터** 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의 내역사업에서 분리되어 ODA사업으로 독자 추진

  * OECD 개발원조위원회 신규 공여국이자,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 수임국으로써, 개도국에 한국의 선진화된 표준체계를 보급하는 공적원조사업

- 동 사업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 협력촉진)에 따른 법률 이행사업이며, 국정과제(34-6: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국가표준・인증 혁신) 등록사업임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표준협회(보조사업자)
-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 표준인증 관련 정부기관, 우리 수출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표준협회	100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3) '18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기술표준 초청과정 운영 : 295백만원

- 개도국 고위급 공무원을 초청, 한국의 표준체계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친한 네트워크 확보
  - ▪ 고위공무원 초청교육 : 200백만원(=8개국×5명×5백만원)
  - ▪ 지역 표준협력 포럼 : 65백만원(≒5개국×5명×2.5백만원)
    - * 4개국x5명x2.5백만(2017) → **5**개국x5명x2.5백만(2018)
  - ▪ 2018 IEC 부산총회 참가 개도국 대상 표준체계 세미나(15개국×2명×1백만원)=30백만원(신규)
    - ※ [18년 ODA시행계획 확정 7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파라과이, 페루, 키르기스스탄 [신규협력 수요국중 일부] 방글라데시(수출연계), 인도네시아(시험인증시장 확보), 케냐/에티오피아/우간다('16.5 순방 후속), [IEC부산총회] 참가 개도국 표준담당 공무원 교육 및 협력네트워크 확보

○ 표준체계 전수협력 : 500백만원

- 한국형 기술표준인프라 전수를 위한 양자협력시 국가표준역량진단, 세부협력과제 도출, 법령·표준 제·개정(안) 협력 등을 위한 비용
  - ▪ 표준체계 전수 양자협력 비용 : 500백만원=4개국×125백만원
    - * 5개국x125백만원(2017) → 4개국x125백만원(2018)
    - ※ ['18년 ODA시행계획 확정 7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파라과이, 페루, 키르기스스탄

○ 시험소진출 타당성 조사 : 300백만원

- 개도국 시험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시험검사인증 시장 진출 타당성 조사 비용
  - ▪ 개도국 시험시장 진출 타당성 조사 비용 : 300백만원= 2개국×150백만원
    - * 2개국x120백만원(2017) → 2개국x150백만원(2018)
    - ※ 시험인증시장 진출 가능성이 큰 콜롬비아(안데스공동시장 목표), 벨라루스(유럽 및 EEU시장 목표) 시험소 진출/협력을 위한 시험검사인증 시장 조사
    - ※ 타당성조사 산업분야의 확대(섬유/'17→섬유+전기/'18)를 위한 단가 조정

○ 표준체계 보급지원기반강화 : 180백만원

- 사업추진을 위한 콘텐츠개발, 전문가 양성 등 비용
  - ▪ 수원국 만족도 조사(60백만원=2개국×30백만원), 역량진단 전문가 교육·양성 포럼(30백만원), 한국형 표준체계 교육 콘텐츠 개선·개발(20백만원), 협력사례집 및 5년간('12~'16) 성과보고서(40백만원), 국가표준체계성숙도 지표 개발(30백만원)
    - * 160백만원(2017) →180백만원(2018)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상대국 제도 도입(개선) 준비・완료 (단위: 건)	목표	5	5	6	6	6	집중 협력대상 국가 수 및 협력단계를 감안하여 산출	표준화제도 구축・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 및 마스터플랜 수립・제도 도입 건수	해당국 기관자료 및 국내 통계자료
	실적	5	5	6	6	-			
	달성도	100	100	100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4	▸(베트남) 베트남 계량측정표준기반구축 프로젝트 (3월~12월) - 금속·기계·건설분야 KS-베트남 표준 비교 연구('13.7월~12월) ▸(몽골) 건설분야 시험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3월~12월) - 건물 에너지효율 평가 관련 초청연수 (4월, 서울, 4명 참석) - 한-몽골 건설표준 비교연구 및 마스터플랜 수립 (3월~12월) ▸(에콰도르) 한-에콰도르 국가표준역량진단 공동연구 실시 (4월) ▸(아프리카) ARSO(아프리카지역표준화기구) 총회에서, 회원국 대상(35개국 50여명) 한-ARSO 표준조화 공동프로젝트 성과 발표(6월, 르완다) - 아프리카 지역표준 160여종 개정 추진 방안 논의(6월, 아프리카)
2015	▸(캄보디아) 한-캄 표준·인증 협력 채널 구축 및 협력 과제 도출 (3월~12월) - 캄보디아 산업부 고위공무원 초청교육(3월) 및 국가표준역량진단 컨설팅 실시(4월) ▸(라오스) 한-라 표준·인증 협력 채널 구축 및 협력 과제 도출 (3월~12월) - 라오스 과기부 실무급 공무원 초청교육(2월) - 라오스 과기부 고위공무원 초청교육 및 국가표준역량진단 컨설팅 실시(10월) ▸(몽골) 건설분야 시험인증서비스 시장 진출 타당성 조사 (7월~12월) ▸(페루) 페루 국가 법정계량제도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12월) ▸(파라과이) 파라과이 상공부 실무급 공무원 초청교육(9월) ▸(키르기스스탄) 한-키 표준·인증 협력 채널 구축 및 협력과제 도출(8월~12월) - 키르기스스탄 에너지산업부 고위공무원 초청(10월) 및 국가표준역량진단 컨설팅 실시(11월)
2016	▸(미얀마) 섬유분야 시험인증서비스 시장 진출 추진 - 미얀마 과기부(국가표준총괄) 고위공무원 초청(4월) 및 국가표준역량진단 컨설팅 실시(6월) - 미얀마 공업부(시험검사인증 실행 부처) 고위공무원 초청(8월) - 미얀마 공업부와 한국의류시험연구원間 공동시험소 건설 착공식(11월)

	▸(방글라데시) 산업부 및 BSTI(방글라데시 표준원) 고위 공무원 초청(11월) 및 국가표준역량진단 컨설팅 실시(11월)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아프리카 3개국 순방후속으로 국가표준원 원장 등 고위공무원 초청교육(9월) ▸(파라과이) 파라과이 국립기술표준계량원(INTN)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간 공동시험소 현판식(12월) ▸(키르기스스탄) 국가표준, 적합성, 시험인증 총괄부처인 경제부와 국표원간 정부간 MoU체결 예정(9월) ▸(지역포럼)동남아지역 대상 지역협력포럼 시범개최(12월)
2017	▸(키르기스스탄) 국가표준, 적합성, 시험인증 총괄부처인 경제부와 국표원간 정부간 MoU체결(1월) 및 섬유제품 안전관리제도 구축 지원(3월~12월) ▸(미얀마) 섬유분야 시험인증서비스 시장 진출 추진 및 섬유제품 안전관리제도 구축 지원 - 미얀마 섬유제품 품질검사·표시 기술기준 마련 지원(3월~12월) ▸(파라과이) 파라과이 전기설비 안전관리 법령 선진화 지원(4월~12월) ▸(베트남) 정량표시상품제도 품목확대 및 주유기 관리제도 전수(5월~12월) ▸(라오스) 정량표시상품제도 및 제품안전제도 구축 지원(5월~12월) ▸(방글라데시) 법정계량 및 전기용품안전 분야 시험소 선진화 로드맵 마련 지원(4월~12월)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 페루) 국가표준역량진단 실시 ▸(지역포럼) 동남아지역 5개국 23명 참여 '표준협력 포럼' 개최 (11월)

③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아국 표준체계의 확산을 통한 사전 기술규제 대응 및 수출시장 확대 기대

- 중동, 남미, 아시아 등 표준 및 기술규제 공무원대상 초청교육과정 운영 : 매년 20여명

  *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표준·시험인증·계량 체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우리나라의 인증마크를 별도 시험인증 절차 없이 개도국이 수용하도록 추진

▸ 우리 시험인증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

- 한-미얀마 공동시험소 설립을 통해, 섬유 시험·검사 시장에 진출(미얀마 시장규모 : 약 570만불)

  * 캄보디아,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등 공동시험소 확대 추진

- KOICA, EDCF등 타ODA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험소 구축 등을 지원하면서 우리 시험기관의 개도국 진출을 촉진

  * 볼리비아 계량시험소 구축 사업('15~'17, 400만불), 우즈벡 표준청 현대화 사업('15~'17, 700만불)이 KOICA사업으로 채택된바 있음

▸ ISO/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아국의 거버너쉽 강화

- 협력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국제표준 제안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국제의장, 간사, 컨비너 진출확대 등을 통해, 2015년 세계 7대 표준강국으로 도약을 추진중

- 우리나라는 동 사업의 국제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국제표준화기구의 정책 방향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ISO 이사국, ISO/TMB* 이사국, IEC 이사국, IEC/SMB* 이사국에 진출함

  * ISO/TMB(Technical Management Board), IEC/SMB(Standard Management Board) :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기술위원회 신설, 폐지, 통합 및 기술위원회 의장국·간사국 수임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

  * 국제표준화기구의 이사국은 회원국의 선거로 선출되므로, 사전에 회원국가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가 필수적임

- 특히 '18~'20 IEC 이사회 멤버로 한국이 선출되기 위해 IEC회원국의 적극적 지지 필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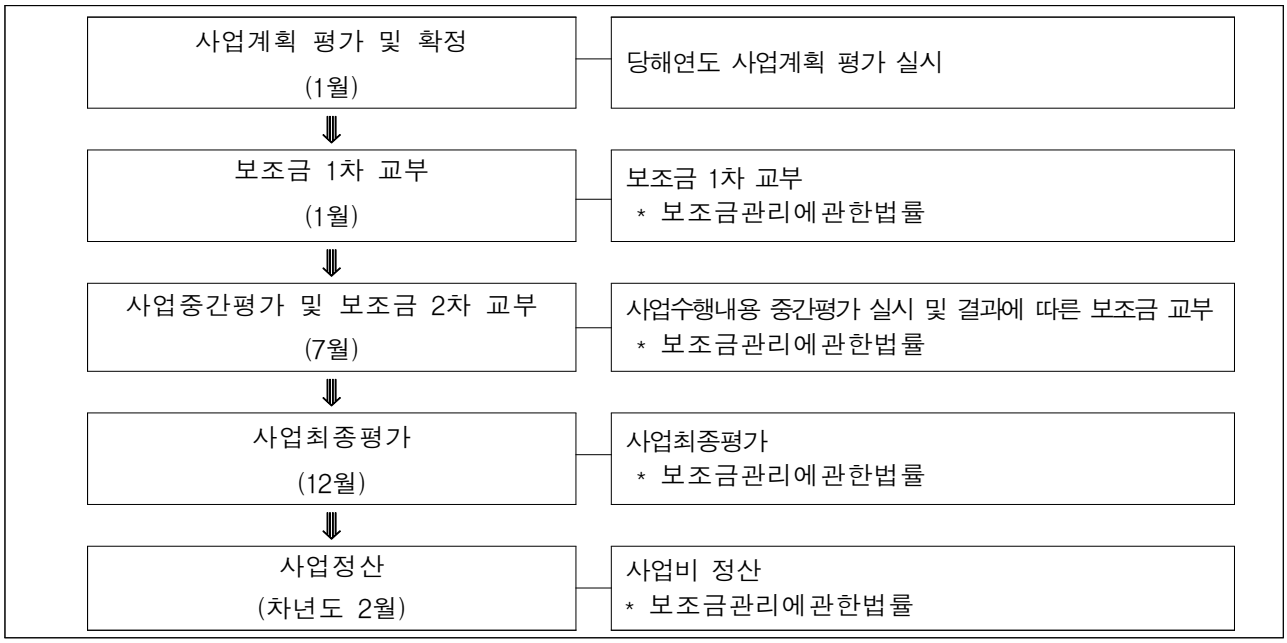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6	'17	'18	'19	'20	'21
'16~'20	1,115	1,200	1,312	1,042	1,042	
'17~'21		1,200	1,200	1,200	1,200	1,2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지역별 표준화기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표준·인증체계를 전수하는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

* 협력 개도국이 속한 지역기구로 표준체계 협력을 확산(ARSO, ASEAN, Mercosur 등)

- (1단계) 초청교육을 통해 우리의 표준·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 (2단계) 전문가방문을 통해 국가표준화능력 제고를 위한 기본적 컨설팅 제공
- (3단계) 공동연구,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통한 제도도입 지원 및 시험인프라 구축지원

▸ 동 사업에서는 초청교육, 공동연구를 통한 제도컨설팅 등 표준·인증체계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 시험인증산업 진출을 위한 시험소 설립 등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KOICA 또는 EDCF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제고
- 특히 ODA 중점협력국 및 전략적 신흥시장국을 대상으로 긴밀한 협력 사업 발굴을 확대

▸ 한국형 제도 전수를 통해 개도국에 만들어지는 시험검사시장에 국내 시험기관의 진출하기 위해 제도전수를 통해 형성된 개도국과의 공감대 및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시험소, 시험검사 대행, 성적서 상호인정 등을 추진

* 개도국에 진출한 아국 기업이 수출시 외국에 의존하던 시험검사업무를 현지에서 실시하여 비용·시간을 절감, 가격경쟁력 확보 가능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4	**2014**	900	900	-	-	-	-	900	900	100	100	
2015	**2015**	890	890	-	-	-	-	890	890	100	100	
2016	**2016**	1,115	1,115	-	-	-	-	1,115	1,115	100	100	
2017	**2017**	1,200	1,200	-	-	-	-	1,200	1200	100	10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4	900	900	900	900	-	900	900	-	-	100
2015	890	890	890	890	-	890	890	-	-	100
2016	1,115	1,115	1,115	1,115	-	1,115	1,115	-	-	100
2017. 12월기준	1,200	1,200	840	840	-	1,200	1,20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참고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3)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3731-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일반회계	110	114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7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	○	-	-	-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인증산업진흥과	한상미	이정근(연구관)	-
		043-870-5500	010-4233-9744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A
국가인증제도혁신 기반구축	1,195	1,200	1,200	1,100	1,100	△100	△8.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6					2017('17.12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197	1,197	1,195	-	2	1,200	1,200	1,200	1,074	-	-	1,100
· 국가인증제도포럼 운영	8	8	7	-	1	8	8	8	-	-	-	11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117	117	116	-	1	92	92	82	54	-	-	69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32	32	32	-	-	20	20	30	10	-	-	20
· 1381 콜센터 운영·개선	1,040	1,040	1,040	-	-	1,080	1,080	1,080	1,010	-	-	1,000
○ 비목별 분류(합계)	1,197	1,197	1,195	-	2	1,200	1,200	1,200	1,074	-	-	1,100
· 일반수용비(210-01)	291	291	290	-	1	266	266	256	166	-	-	169
· 임차료(210-07)	5	5	5	-	-	5	5	5	-	-	-	5
· 국내여비(220-01)	5	5	5	-	-	5	5	5	5	-	-	5
· 국외업무여비(220-02)	3	3	2	-	1	3	3	3	3	-	-	3
· 사업추진비(240-01)	21	21	21	-	-	21	21	21	20	-	-	18
· 일반연구비(260-01)	32	32	32	-	-	20	20	30	10	-	-	20
· 민간경상보조(320-01)	840	840	840	-	-	880	880	880	880 [767]	-	-	8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내기업이 제품 시장출시하거나 또는 수출 시 필요한 제품별, 국가별 인증 정보를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1381 인증·표준 콜센터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개선 필요

○ 국가차원의 체계화된 인증제도 구축과 효율화를 통해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 국가통합인증마크체제의 확산 발전을 위해 부처별로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는 제품 인증마크를 통합하고 KC마크를 국가 대표인증마크의 소비자 인지도를 향상 필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품인증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에 대한 인증·검정·등록·인정·심사·검사·신고·형식승인 등(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의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제품에 대한 인증 등을 반드시 받도록 하거나 인증등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제품인증제도가 국제기준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2(표준인증심사제의 도입) ① 제품에 대한 인증 등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제를 도입하여 인증 등을 하여야 한다.
  ② 표준인증심사제의 구체적인 심사유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① 인증등을 받은 제품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조약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거나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6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인증등의 표시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둘 이상의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라 정한 세부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을 통합하여 공동으로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하나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4.10. 국정감사 : 인증제도 난립에 따른 통합 필요성 제기
- '05.5.~'06.5 :「인증제도 혁신 T/F팀」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 12차에 걸친 전문가회의 및 공청회 개최 (산업자원부)
  * 국내 인증업체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실시 (500여 기업)

< 「국가표준·인증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주요내용 >

① 부처별 인증업무를 종합·조정할 총괄관리 체계 구축
② 국가통합인증마크 및 모듈방식 인증제도 검토
③ 인증기관의 시설·인력 강화 및 인증정보 네트워크 구축
④ 국제적 인정기구 육성 및 인증기준의 국제부합화, 규격간 통일화

- '09.4.1 :「국가표준기본법」 개정공포(KC마크 도입 등 규정)
- '09.7.1 : 산업부 소관 9개 의무인증제도에 KC마크 도입
- '10.6.30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고시
  * 복수의무인증제품에 대한 시험성적 상호인정 및 일괄신청제 도입
- '11.1.1 : 산업부 등 5개부처 13개 법정의무인증제도에 KC마크 전면시행
- '13.8.7 : "수출기업 해외인증 획득 지원 활성화 계획" 장관님 보고시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 구축을 지시
  * 1380 FTA 콜센터과 같은 138Y 계열의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 구축을 지시
- '13.10.28 :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 추진 계획" 장관님 보고 시 4자리 특수번호 및 운영기관을 확정

<추진방안 확정결과>

• 운영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특수번호 : 1381

  * 산업부 무역실, 중기청, 무역협회, KOTRA, 중진공, 시험연구원 등 협업 확인
- '14.1.27 : "인증표준정보제공콜센터" 운영기본계획을 수립

• 사용번호 : 1381　　• 서비스시간 : 8:00～19:00, 주5일
• 관리주체 : 국가기술표준원(“인증·표준 정보제공 콜센터”설치)
• 운영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조　　직 : 12명 [국표원 1명(총괄), KTR(운영실무,상담) 11명]
• 제공정보 :
  - 인증 : 350여개의 해외인증(110여개국) 및 300여개 국내인증
  - 표준 : 43천여종 국가표준 & 국제표준(ISO, IEC, ITU 등)

- ‘14.3.19 : KATS - KTR “1381” 인증표준정보제공콜센터 운영협약 체결
- ‘14.3.20 : VIP지시 ’정부 콜센터 홍보 강화’ 지시
- ‘14.3.26 : “1381” 인증표준콜센터 개통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7~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기관	지원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66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인증표준정보제공콜센터 운영업무 협약서(‘16.4.7)

3) ’18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인증산업 발전 포럼 운영 : 8백만원(2017년) → **11**백만원(2018년)
- 회의실 대여 등 임차료 : 5백만원 x 1회 = 5백만원(2017년) → 5백만원×1회 = 5백만원(2018년)
- 인쇄・포럼 관련 경비 등 운영비 : 3백만원×1회 = 3백만원(2017년) → 6백만원 ×1회 = 6백만원(2018년)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69백만원
- KC마크 활성화 등 국가인증제도 운영 : 3개매체×21백만원=63백만원(2017년) → 2개매체×21.5백만원=43백만원(2018년)
- 국내·외 인증제도 실태조사(여비) : 8백만원(2017년) → 8백만원(2018년)
- 인증제도 혁신 관련 회의 개최(범 부처 실무자협의회 등) : 21백만원(2017년) → 18백만원(2018년)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20백만원x1개과제=20백만원(2017년) → 20백만원x1개과제=20백만원(2018년)

○ ☏1381 콜센터 운영·개선 : 1,080백만원(2017년) → 1,000백만원(2018년)
- 콜센터 인건비 보조 : 40백만원×17명=680백만원(2017년) → 40백만원×17명=680백만원(2018년)
- 콜센터 대면상담 전문가 수당: 0.25백만원×60건×3회=45백만원(2018년)
- 콜센터 홈페이지 구축·운영 : 45백만원×1회=45백만원(2018년)
- 콜센터 유지보수 : 7.5백만원×12개월=90백만원(2017년) → 7.5백만원×12개월=90백만원(2018년)
- 콜센터 상담원 재교육 : 2.5백만원×8회=20백만원(2017년) → 2.5백만원×8회=20백만원(2018년)
- 1381 콜센터 이용 유도 및 활성화 : 10개매체×20백만원=200백만원(2017년) → 6개매체×20백만원=120백만원(2018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KC마크 소비자 인지도 (단위: %)	목표	50	63	63	63	79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연간 목표를 25% 상향 수준	마크인지도인원(명)×100/조사대상인원(명)	외부전문기관의 조사
	실적	64.4	71	76.8	77.4	-			
	달성도	129	113	122	123	-			
1381콜센터 콜상담건 (단위 : 건)	목표	-	-	-	58,625	62,896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연간 목표를 5% 상향 수준	콜센터 인입콜 중 상담건수의 합(건)	1381콜센터 통계
	실적	58,404	80,314	77,455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4	① '국가인증제도 포럼' 개최를 통한 범 부처 인증제도 개선 협의체 가동 - 국토부 등 15개 부처 94명 참석/'14.11.5 ② 인증표준 정보제공 콜센터 설립 추진 - 인증표준콜센터 운영기본계획 수립 및 특수번호 획득(1381)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1381인증표준정보제공콜센터" 운영협약 체결, '14.3.19
2015	①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 신문·지하철·KTX 등 대내외 홍보 추진하여 인지도 71% 수준 ② '국가인증제도 포럼' 개최를 통한 인증산업발전 관련 정책 토론과 국가통합인증마크 확대를 위한 15개 인증제도 KC마크 통합추진 - 법정 인증·시험 담당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명 참석 ③ '국내외 다양한 인증제도 운용에 따라 인증·표준 정보에 대한 국내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증표준 정보제공 콜센터(1381) 구축 및 운영
2016	①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연중 진행) - 신문·대형마트 등 대내·외 홍보 추진 ② 1381 인증표준콜센터의 운영 및 개선 추진 - 1381 인증표준콜센터의 對기업 인지도 개선과 이용확대를 위한 홍보(연중) ※라디오, 케이블TV 등 기업대상의 홍보 추진 - 증가하고 있는 인증표준 상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인력 증원: 13명 ⇒ 15명 - 개인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보안시스템 구축 추진
2017	① 1381 인증표준 콜센터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 브로셔 제작, 신문, 케이블TV, SRT열차 내 영상광고 등 ② 전문상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원 보강(전문상담 인원 9인 ⇒ 11인)

③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1381 콜센터 운영 및 개선을 통한 기업의 인증 취득 편의 및 부담 경감

-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지도 지속 향상에 따른 소비자 편의 증대 및 국가 대표 인증마크로 정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1381인증표준콜센터 운영체계 >

○ 인증·표준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하는 종합 민원지원 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off-line 형태의 "인증·표준 정보제공 콜센터"

- 사용번호 : 1381
- 주　　체 : 국가기술표준원
- 운영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시험인증전문기관)
- 제공정보
  - 인증 : 해외 117개국 351개 인증제도 및 국내 인증
  - 표준 : 43천여종 국내표준 & 국제표준(ISO, IEC, ITU 등)

○ (운영조직) 국가기술표준원이 콜센터 관리, 지원 및 외부 협력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소속 직원(17명)이 운영 실무 및 상담업무 수행

○ (인력운영) 총 17명 중 전문상담원 11명(국내 8명, 해외 3명)과 자료조사원 2명, 일반상담원 2명, 모니터링요원 1명 및 총괄 1명으로 운영 중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6	'17	'18	'19	'20	'21
'16~'20	1,197	1,200	1,052	932	932	
'17~'21		1,200	1,200	1,200	1,200	1,2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3) 자체평가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KC마크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대표 브랜드화 추진(계속) - KS마크 동등 수준의 대국민 인지도 향상 추진(KS마크 : 90.2%, KC마크 : 68%, '16년기준) ○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수출 및 국내기업의 제품 시장출시 관련한 인증표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1381 콜센터의 기업 인지도 개선과 콜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 - 1381콜센터는 해외 및 국내 인증·표준 분야의 문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인증 관련되어 복잡한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에게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대면 상담 - 온라인 상담 신청 및 자료조사 후 콜백 등 서비스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2013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확인·점검 결과(기재부) ·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 65점(보통)

12) 부처 건의사항

○ ☏1381 콜센터는 국내기업이 제품 출하시 필요한 제품별, 국가별 인증 정보를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는 기업지원 인프라 시설로 향후 이용 확대가 기대되므로, 보다 더 내실있는 상담을 위한 대면상담 및 온라인 상담용 홈페이지 구축에 지속적인 투자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4	443	-	-	±1	-	-	443	442	-	99.8	-	1
2015	1,282	-	-	-	-	-	1,282	1,281	-	99.9	-	1
2016	1,197	-	-	-	-	-	1,197	1,195	-	99.8	-	2
2017	1,200	-	-	±1	-	-	1,200	1,074	-	89.5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4	-	-	-	-	-	-	-	-	-	-
2015	850	850	850	850	-	850	850	-	-	100
2016	840	840	840	840	-	840	840	-	-	100
2017.12월기준	880	880	880	880	-	880	767	-	-	87.2

2) 주요 결산사항

2014	- 전용 : KC마크 및 1381 콜센터 집중 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홍보비) 중 부족분 1백만원을 국내여비에서 전용 - 불용 : 연구개발비 중 집행잔액 1백만원을 불용
2015	- 불용 : '15년 불용 1백만원
2016	- 불용 : 일반수용비 1백만원, 국외업무여비 1백만원 불용
2017	- 전용 : 예산 성과지표인 KC마크 인지도 조사 수행을 위해 일반연구비 부족분 10백만원을 일반수용비(홍보비)에서 전용 - 불용예상액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4)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37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110	114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3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시장관리과	박재훈	정연태	남효재
		043-870-5420	043-870-5427	043-870-5424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A
제품시장감시 역량강화	3,743	4,025	4,632	4,025	4,025	△607	△13.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6					2017('17.12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749	3,749	3,743 (3,743)	0	6	4,025	4,632	4,632	4,627 (4,627)	0	5	4,025
·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2,769	2,627	2,627 (2,627)	0	0	2,769	3,376	3,376	3,376 (3,376)	0	0	2,769
· 불법·불량제품단속 및리콜제품이행점검	600	600	600 (600)	0	0	756	756	756	756 (756)	0	0	756
·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	380	522	516 (516)	0	6	380	380	380	375 (375)	0	5	380
·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및 확산	-	-	-	-	-	120	120	120	120 (120)	0	0	120
○ 비목별 분류(합계)	3,749	3,749	3,743 (3,743)	0	6	4,025	4,632	4,632	4,627 (4,627)	0	5	4,025
· 시험연구비(210-13)	2,739	2,597	2,597 (2,597)	0	0	2,739	3,346	3,346	3,346 (3,346)	0	0	2,743
· 일반용역비(210-14)	380	522	516 (516)	0	6	-	-	-	-	0	0	380
· 관리용역비(210-15)	-	-	-	-	-	380	380	380	375 (375)	0	5	-
· 사업추진비(240-01)	30	30	30 (30)	0	0	30	30	30	30 (30)	0	0	26
· 민간경상보조(320-01)	600	600	600 (600)	0	0	876	876	876	876 (876)	0	0	87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시중에 유통중인 어린이제품·생활용품·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불법·불량제품 단속, 제품안전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해한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 안전성조사 등을 통하여 적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 판매중지, 인증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방지시스템 확립

-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이행점검을 통해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제품안전감시단을 구성·운영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제품안전기본법」
- 제9조(안전성조사 등)
-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 제19조(제품안전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 제21조(한국제품안전협회의 설립)

○「생활용품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제5조(안전인증 등)
- 제6조(안전인증의 면제)
- 제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 제10조(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등등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제6조(안전성조사)
- 제9조(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 제10조(어린이제품 수거등의 명령)

· 제17조(안전인증 등)
·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 제25조(공급자적합성 확인 등)

② 추진경위

- ’03. 5월 대통령「어린이 안전원년」선포, 어린이 안전사고 경감 지시
- ’04. 4월 감사원은 공산품안전관리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지적
- ’04. 6월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
- ’05.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05.12.23. 공포)
- ’06. 1월 공산품안전망구축사업(세부사업) 시작
- ’06.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
- ‘06.12월 공산품안전관리종합 5개년계획 수립
- ‘08. 5월 대통령 대국민담화 “식품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도 모든 조치강구”
- ‘08. 9월 대통령 “성인용보다 어린이용을 빨리 조치하여 유통을 중단해야함”
- ‘09. 1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09.1.1)
- ‘09.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 ‘10.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확산 본 사업 추진
- ‘11.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11.2.5)
- ‘11. 3월 제1차 제품안전종합 3개년계획 수립
- ‘14. 1월 제2차 제품안전종합 3개년계획 수립
- ‘16. 5월 제1차 어린이안전종합 기본계획 수립
- ‘16. 6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 ‘17. 2월 생활용품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지속지원)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협회, 대한상공회의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제품안전협회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설립)
대한상공회의소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등 (안전성조사 등)

3) '18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 2,769백만원

○ 시중에 유통중인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부적합제품에 대해 리콜명령 등의 행정조치

- 산출내역
  - 시료구입비 : 590백만원(5,898건×10만원)
  - 시험수수료 : 2,064백만원(5,898건×35만원)
  - 일반수용비 : 67백만원
  - 국내여비 : 22백만원
  - 사업추진비 : 26백만원

②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 756백만원

○ 국민신문고, 사이버 불법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조사(KC미인증, KC도용 등) 및 리콜제품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

- 산출내역
  - 인건비 : 630백만원(21명×30백만원×100%)
  - 출장비 : 126백만원(180회×14명×5만원×100%)

③ 제품안전모니터링 감시단 구성·운영 등 : 380백만원

○ 소비자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안전감시원(안전모니터링 요원)을 선정하여 불법·불량제품 및 리콜제품의 시중유통여부 감시·차단

- 산출내역
  - ▪ 제품안전감시원 관리 : 80백만원(4개 분야*×20백만원)
  - *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 안전품질표시 제품
  - ▪ 사이버쇼핑몰 감시* : 40백만원(1개 분야×40백만원)
  - * 사이버감시원이 옥션, 11번가, G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의 제품을 모니터링
  - ▪ 제품안전감시원 수당 : 260백만원(186명×28일×5만원)

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 120백만원

○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한 제품(리콜제품)으로 확인되는 즉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전국 유통매장에 제품바코드, 모델명 등을 통보하여 판매차단

- 산출내역
  -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 80백만원(80백만원×100%)
  - * (ⅰ)개발SW유지보수 48백만원
    -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개발('09) : 185백만원(구축비)×15%(유지보수율) = 27백만원
    - · 중소유통범용SW 개발('10) : 40백만원(구축비)×15%(유지보수율) = 6백만원
    - ·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 개발('14) : 100백만원(구축비)×15%(유지보수율) = 15백만원
  - * (ⅱ) 상용SW유지보수 19백만원
    - · Cubrid Database 연 유지보수 = 7백만원
    - · JS-Consol ebMS 연계서버 80백만원(도입비)×15%(유지보수율) = 12백만원
  - * (ⅲ) HW유지보수 13백만원
    - · 코리안넷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WAS 서버 SunFire T200 2식 60백만원(도입비) × 15%(유지보수율) = 9백만원
    - · Database 및 연계용 서버 HP DL580 G7 : 30백만원(도입비)×15%(유지보수율) = 4.5백만원
  - ▪ 중소유통매장용 프로그램 배포사이트 개발 : 10백만원(10백만원×100%)
  - ▪ 시스템확산 용역관리, 간담회 등 사업운영비 : 10백만원(10백만원×100%)
  - ▪ 중소유통매장용SW설치지원 콜센터운영 : 20백만원(1인×12개월)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률(%)(하향지표)	목표	17	17	16	15	15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조치(개선조치 포함) 건수를 고려하여 1%높게 설정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률 = 부적합건수 / 안전성조사 건수 × 100	안전성조사 결과보고서(내부자료)
	실적	16.4	15.4	14.1	-	-			
	달성도	103.7	110.4	113.5	-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운용점포수(개)	목표	-	55,000	75,000	80,000	85,000	판매차단시스템설치 점포수 증가치를 전년보다 5,000개 상향조정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 점포	내부자료 (운용매장으로부터 확인)
	실적	-	66,252	77,836	-	-			
	달성도	-	120.5	103.8	-	-			
위해상품 차단율(%)	목표	80	82.5	85	93.0	93.0	4시간내 위해상품 차단율을 고려하여 8%향상	∑(운용매장별 4시간 이내 위해상품 차단개수÷위해상품 통보개수×100%)] ÷ 운용매장 수	내부자료 (운용매장으로부터 확인)
	실적	85.6	90.3	93	-	-			
	달성도	107	109.5	109.4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4	① 시중 유통 중인 공산품·전기용품 안전성조사 - 공산품 및 전기용품 4,533개의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 실시하여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제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 안전성조사 제품 : '12년(3,246개) → '13년(4,542 개) → '14년(4,533개) -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 위해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하여 위해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 * 리콜조치 제품 : '12년(182개) → '13년(208개) → '14년(463개) ②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단속 - 한국제품안전협회 '불법불량제품신고센터'를 운영하여 4,512개 업체를 조사하였고, 그 중 985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지자체 행정조치 요청 등을 실시 * 서울/부산/대전 등 12개 지자체 및 사법기관과 합동조사 실시(124개 업체), 국표원/협회에 접수된 민원 조사(829개 업체), 제품사고조사 등을 통한 기획단속(32개 업체)

	③ 제품안전 모니터링 - 공산품, 안전·품질표시제품, 전기용품 등 4개 분야에 180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활동하여 12,422 업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5,601건 자율시정권고 조치 - G마켓, 11번가 등 40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19,536건을 모니터링하고, 6,952건에 대해 판매중지 또는 내용수정 조치
2015	① 시중 유통 중인 공산품·전기용품 안전성조사 - 공산품 및 전기용품 4,864개의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 실시하여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제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 안전성조사 제품 : '13년(4,542 개) → '14년(4,533개) → '15년(4,864개) -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 위해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하여 위해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 * 리콜조치 제품 : '13년(208개) → '14년(463개) → '15년(420개) ②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단속 - 한국제품안전협회 '불법불량제품신고센터'를 운영하여 4,308개 업체를 조사하였고, 그 중 1,140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지자체에 행정조치 요청 등을 실시 * 형사고발(566), 지자체 통보(302), 판매금지요청(218), 인증기관통보 등(54) ③ 제품안전 모니터링 - 공산품, 안전·품질표시제품, 전기용품 등 3개 분야에 90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활동하여 6,937 업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83,970건 모니터링 실시 - G마켓, 11번가 등 45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19,652건을 모니터링하고, 2,863건에 대해 판매중지 또는 내용수정 조치
2016	① 시중 유통 중인 공산품·전기용품 안전성조사 - 공산품 및 전기용품 4,915개의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 실시하여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제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 안전성조사 제품 : '14년(4,533개) → '15년(4,864개) → '16년(4,915개) -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 위해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하여 위해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 * 리콜조치 제품 : '14년(463개) → '15년(420개) → '16년(355개) ②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단속 - 한국제품안전협회 '불법불량제품신고센터'를 운영하여 4,212개 업체를 조사하였고, 그 중 1,286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지자체에 행정조치 요청 등을 실시 * 형사고발(541), 지자체 통보(384), 판매금지요청(312), 인증기관통보 등(49) ③ 제품안전 모니터링 -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등 3개 분야에 105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활동하여 4,149 업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76,832건 모니터링 실시 - G마켓, 11번가 등 45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20,018건을 모니터링하고, 2,772건에 대해 판매중지 또는 내용수정 조치

2017	① 시중 유통 중인 공산품·전기용품 안전성조사 - 공산품 및 전기용품 4,950개의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 실시하여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제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 안전성조사 제품 : → '15년(4,864개) → '16년(4,915개) → '17년(4,950개) -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 위해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하여 위해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 * 리콜조치 제품 : '15년(420개) → '16년(355개) → '17년(181개) ②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단속 - 한국제품안전협회 '불법불량제품신고센터'를 운영하여 3,705개 업체를 조사하였고, 그 중 1,406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지자체에 행정조치 요청 등을 실시 * 형사고발(424), 지자체 통보(430), 판매금지요청(552) ③ 제품안전 모니터링 -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등 3개 분야에 187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활동하여 2,916 업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81,437건 모니터링 실시 - G마켓, 11번가 등 45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23,770건을 모니터링하고, 7,684건에 대해 판매중지 또는 내용수정 조치

③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o 위해제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

- 부적합률이 높은 제품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안전성조사 실시*

* 중점관리 대상품목은 15년부터 10개품목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며 분기별로 집중 반복조사

- 안전취약 계층인 13세 이하, 어린에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지속 시행

o 제품안전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불법·불량제품 유통감시 체계' 구축

- 소비자단체, 온라인쇼핑몰 업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리콜제품 유통 차단

o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위해상품 확인 즉시 제품바코드, 인증번호 등을 등록하여 시중유통 차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제품 안전성조사**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등)

계 획 수 립	◦ 안전성조사계획 수립
안 전 성 조 사	◦ 시료구입 : 유통중인 시판품 무작위 선정 ◦ 시험·분석 :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 위반 여부 조사 ◦ 청문기회 제공 (기업간담회 개최 및 이의제기 기간 부여) ◦ 제품안전자문위원회 개최
행 정 처 분	◦ 리콜명령, 리콜권고 등 행정조치 - 리콜명령은 신속 공표
리콜이행점검	◦ 리콜이행여부 점검(리콜실시 2개월 후)
후속 행정조치	◦ 리콜명령 불이행 : 고발조치 ◦ 리콜권고 불이행 : 리콜명령 및 공표

○ **불법·불량제품 단속**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 등)

계획수립 및 민원접수	◦ 계획단속 : 지자체와의 민관합동단속, 언론 등 사회 이슈화 제품 단속 ◦ 민원조사 :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원접수
조사계획 통지	◦ 조사대상 업체에 조사계획을 통지 - 필요시, 통지없이 해당업체 방문 조사
업체 방문조사	◦ 불법·불량제품 여부 확인 - 확인서 및 증빙서류 확보
조사업체 조치	◦ 불법제품 고발 및 행정조치

○ **불법·불량제품 단속**
(제품안전기본법 제19조 등)

구 분	운영주체	기능 및 역할
주 관	국가기술표준원	· 시장감시 정책·지침 마련 · 분야별 모니터링 운영주체 선정 등
운 영	소비자단체 (분야별 모니터링단체)	· 운영위원회 운영(제품안전감시원 포함) · 제품안전감시원 교육·관리 등
시장감시	모니터링요원	· 시중 유통제품의 위해정보 수집·보고 ·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판매중지, 시정권고 등

* 제품안전관리가 취약한 문방구, 소매점 등을 중심으로 KC 마크 미부착, 표시사항 위반 제품 등을 집중 단속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6	'17	'18	'19	'20	'21
'16~'20	3,749	4,025	3,414	3,038	3,038	
'17~'21		4,025	4,025	4,025	4,025	4,02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예산사업의 효율을 위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사업(본부 유통물류과)을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사업(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의 내역사업으로 통합운영 필요('16.10,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리콜이행점검반 신설(신규 4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출장비 지원을 위해 목간전용(시험연구비→민간경상보조)이 아닌 자체 세목간 조정(시험연구비→일반용역비)은 비목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음('16.7, 국회 예정처)

○ 리콜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리콜제품 회수대책 촉구(16년 국정감사)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부실한 리콜이행점검으로 인한 리콜제품 시중유통사례 지적('15.9.20, KBS9시 뉴스)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사업을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통합 결정('16.12, 국회 본회의) 및 현재('17.1) 내역사업으로 운영 중

○ 협회의 리콜이행점검반 출범에 따른 예산지원을 위해 당초 기재부와 목간전용에 대해 협의('16.2)하였으나, 기재부는 리콜이행점검반의 한시적인 TF특성을 들어 '16년에는 세목간 조정을 하여 운영후 필요성이 있을 경우 '17년도 예산작업시 민간경상보조로 신청할 것을 권고

- '16년 운영결과, 효율적 리콜이행점검으로 소비자, 사업자의 피해가 감소함에 따라 '17년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반영함(156백만원)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시중유통제품에 대한 사후 안전성조사 및 리콜이행점검 등 시장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소비자에게는 위해한 제품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

  * (해외동향) 美, 日, EU 등은 안전기준(기술기준) 등 사전규제는 최소화하고, 시장감시 기능을 활용하는 사후규제 확대 추세

- 리콜조치에 대한 철저한 리콜이행점검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리콜 제품을 사업자가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유도

- 불법·불량제품 단속을 통해 형사고발, 판매중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로 불법·불량 제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하여 소비자를 보호

- 소비자단체의 제품안전감시단을 통해 제품안전관리가 취약한 문방구나 소매점 등을 중심으로 KC마크 미부착, KC허위표시, 표시사항 위반 제품을 단속하여 불법제품 및 리콜제품의 시중유통을 방지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고도화 작업을 통해 위해상품으로 판정시 제품의 바코드, 인증번호 등을 통해 시중유통제품 차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5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우수

평가시기	회계/기금	단위사업명 (세부사업)	평가점수	**평가등급**	비고
2015년도	일반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82.0	**우수**	

○ '16년 보조금사업평가 결과 : 정상추진

- 제품시장의 감시를 통해 불법 및 불량제품의 유통을 상시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유통에 있어서 국가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기능으로 향후에도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평가시기	회계/기금	보조사업명	**평가결과**	비고
2016년도	보조금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정상추진	

12) 부처 건의사항

-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사업은 불법·불량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임
  · 제품 안전사고*는 국민의 체감도가 매우 높고 파급효과가 큰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본 사업은 필수적임
  * 최근 휴대용선풍기 발화사고, 기저귀 유해물질 다이옥신 검출여부, 유아용매트 피부 발진 등
- 또한, 국민이 상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생활용품·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중의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근절하고 제품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임
  ·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이행점검, 소비자단체와 협업을 통해 시장감시활동 강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확산 등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4	3,495	3,495	-	-	-	-	3,495	3,495	100	100	-	-
2015	3,495	3,495	-	-	-	-	3,495	3,494	99.9	99.9	-	1
2016	3,749	3,749	-	±142	-	-	3,749	3,743	99.8	99.8	-	6
2017	4,025	4,632	-	-		607	4,632	4,627	99.9	99.9	-	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4	600	600	600	600	-	600	600	-	-	100
2015	600	600	600	600	-	600	600	-	-	100
2016	600	600	600	600	-	600	600	-	-	100
2017. 12월기준	876	876	876	876	-	876	876	-	-	100

2) 주요 결산사항

2014	- 불용 및 전용 없음
2015	- 집행잔액 1백만원 불용(일반수용비)
2016	- 세목간 조정(210-13→210-14) : 리콜이행점검 강화 방안('16.1)에 따라 한국제품안전협회에 리콜이행점검반 신설(신규 4명 충원)을 위해 목간전용(210-13→320-01)이 아닌 자체 세목간 조정함(목간전용에 대해 기재부와 사전협의 하였으나 기재부는 자체전용 권고) - 집행잔액 6백만원 불용(위탁사업비)
2017	- 제품안전성조사 확대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607백만원 편성('17.7) : 사회적 안전이슈 대응을 위한 수시조사 확대(휴대용선풍기 발화사고에 따른 이차전지제품, 전동킥보드), 안전취약제품 관리강화를 위한 기획조사 실시(가전제품, 냉·난방기구, 레저용품, 완구 등)

라. 기타 추가자료

1.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NEISS*, 웹포털 등으로부터 각종 상해・사고 정보를 취합하여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통해 고위험군 분류 및 리콜조치

* 상해정보수집시스템(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 : 100여개 종합병원으로부터 CPSC 웹을 통해 매년 약 36만건 보고

-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비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세관에서의 불법·불량제품 단속을 통해 수입제품 단속

○ **(EU) Rapex*를** 운영하여,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평가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제품별 상세한 안전기준을 통해 사전 규제의 강도가 높고 광범위한 사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리콜 조치

- 회원국들은 '리스크평가기법'을 활용해 통보된 위해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 등 시장감시활동 이행

* 위해정보시스템(Rapid Alert System for non-food dangerous products)을 활용하여 수집·분석된 정보의 약 90%가 리콜조치됨

<EU 위해정보 수집 및 활용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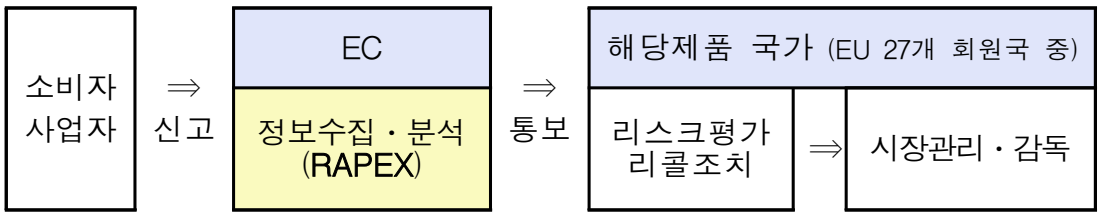

○ **(일본)** NITE(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에서 제품사고조사 후 **R-map**(Risk-map) 분석을 통해 위험성을 경제산업성에 통보하여 리콜조치 등 시장감시 활동 수행

○ **(호주) Clearinghouse***를 통해 제품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등 사고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업무절차를 개발하고 관련 자료 DB를 구축하여 리콜조치

* 사고정보시스템(Clearinghouse)의 업무처리 절차 : 사고정보수집→데이터 입력→초기평가→상세평가→제품안전위원회 행정조치 결정

2.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현황

□ 개 요

검사기관*이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위해상품 정보(바코드 등)를 입력하면 해당정보가 유통업체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전송되어 유통매장에서 해당 상품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

* 국표원(공산품, 전기용품), 식약처(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 환경부(먹는 샘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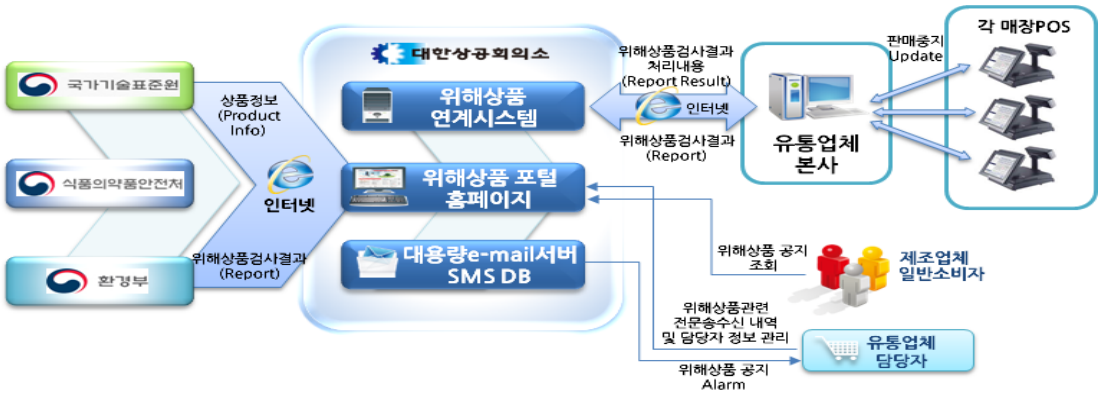

□ 그간 현황

○ 위해상품 판매차단(통보) 개수

(단위: 개)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9	계
국표원	-	-	103	134	190	359	388	387	222	1,783
식약처	54	420	372	504	458	395	347	2,418	513	5,481
환경부	-	-	-	-	-	-	83	53	316	452
기타	-	-	-	-	-	-	-	-	8	8
합계	54	420	475	638	648	754	818	2,858	1,059	7,724

* 기타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본부의 반려동물 탈취제 등록요청

○ 시스템 운용 점포수

(단위: 개)

업태	온라인 통신 판매업	대형 마트	백화점	수퍼 마켓 (ssm)	체인화 편의점	식자재 유통사	기타 소매업	기타 음식점	개인 소매업 (중소유통)	계
매장수	16	1,033	38	3,590	26,815	25,746	12,597	7,603	9,107	86,545

사 업 명
(5) 안전제도기반조성 (373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110	114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4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안전제도기반조성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책과	임헌진	-	이동진(연구사)
		043-870-5410	-	043-870-541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A
안전제도기반조성	1,946	1,899	1,899	3,684	3,684	1,785	93.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6					2017('17.12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977	1,977	1,946	-	31	1,899	1,899	1,899	1,871	-	-	3,684
· 안전기준정비 및 정책개발	700	700	685	-	15	720	720	720	720	-	-	750
· 제품안전 보급 확산 및 국제협력	1,177	1,177	1,169	-	8	1,079	1,079	1,079	1,059	-	-	1,044
· 제품안전 정책·정보 안내시스템 운영	100	100	92	-	8	100	100	100	92	-	-	150
·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	-	-	-	-	-	-	-	-	-	-	-	1,740
○ 비목별 분류(합계)	1,977	1,977	1,946	-	31	1,899	1,899	1,899	1,871	-	-	3,684
· 일반수용비(210-01)	320	355	352	-	3	376	376	376	365	-	-	377
· 임차료(210-07)	20	20	16	-	4	50	50	50	43	-	-	46
· 재료비(210-11)	50	15	15	-	0	30	30	30	30	-	-	30
· 일반용역비(210-14)	100	100	92	-	8	-	-	-	-	-	-	-
· 관리용역비(210-15)	-	-	-	-	-	100	100	100	92	-	-	150
· 국내여비(220-01)	23	23	23	-	0	22	22	22	22	-	-	24
· 국외업무여비(220-02)	40	40	39	-	1	38	38	38	36	-	-	37
· 사업추진비(240-01)	24	24	24	-	0	23	23	23	23	-	-	20
· 일반연구비(260-01)	700	700	685	-	15	720	720	720	720	-	-	750
· 민간경상보조(320-01)	700	700	700	-	0	540	540	540	540	-	-	510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	-	-	-	-	-	-	-	-	-	-	1,7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제품 안전기준 정비 및 대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통한 안전사회기반조성

- 현재의 시장상황 변화(제품의 다양화, 융·복합화)에 맞는 신속한 안전기준 제정 및 정책의 개발을 통한 제품안전 기반 구축
- 제도적인 안전기반 구축을 넘어 제품안전 사고의 선제적인 예방·관리를 위한 대국민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정착 추진
- 안전관리 취약분야 소상공인·영세업자의 제품안전 시험검사 부담 완화를 위한 시험검사장비 등 인프라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정부는 3년마다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위해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외국 정부에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사업자에게 권고하거나 명령한 경우
4.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와 그 근로자 및 소비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조·유통 또는 사용과정에서 제품안전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그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9조(제품안전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감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국제협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제품안전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2. 제품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교류
3.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활동 참가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1조(한국제품안전협회의 설립) ③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개발 및 교육
2.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과 보급
3.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4. 기업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련된 협력사업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④산업통상부장관은 협회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③ 시·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자
28.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9.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30.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31.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4. 6월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
- ’05.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05.12.23. 공포)
- ’06.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06.12.23.)
- ’07.12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07.12.21)
- ‘10. 1월 전기용품 “제조자시험결과인정제도” 시행
- ‘10. 2월 “제품안전기본법” 제정(2.4)
- ‘11.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2.5)
- ‘11. 3월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3.21)
- ‘14. 2월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2.27)
- ‘14. 6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6.3)
- ‘15. 6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6.4)
- ‘16. 1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정(1.27)
- ‘16. 3월 “제1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공고(3.3)
- ‘17. 3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3.21)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제품안전협회	100	제품안전기본법제21조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설립)
지자체 보조	10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3) '18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안전기준 정비 및 정책개발 : 750백만원**

○ 제품안전 기준 제·개정 : 20종×20백만원(2017년도) → **20종×20백만원(2018년도)**

○ 제품안전 정책개발 조사·분석 : 8종×40백만원(2017년도) → **9종×40백만원(2018년도)**

□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 1,044백만원**

○ 제품안전 교육·홍보 등 : 510백만원(민간보조)

- 제품안전 중요성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 제작 / 지상파·지하철 등 홍보 : 270백만원
  · 1식×300백만원(2017년도) → **1식×270백만원(2018년도)**
- 리콜기업, 제조·유통업체, 일반 소비자·사업자 등 맞춤형 제품안전 교육 : 100백만원
  * 교육내용 : 리콜제도 매뉴얼, 품목별 안전기준, 불법·불량제품 식별요령 및 신고방법 등
  · 1식×100백만원(2017년도) → **1식×100백만원(2018년도)**
- 소비자, 기업, 지자체 등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포럼 및 협의체 운영 등 : 100백만원
  · 1식×120백만원(2017년도) → **1식×100백만원(2018년도)**
- 제품안전분야 연구개발, 안전사고 감소 및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단체) 포상 : 40백만원
  * 제품안전의 날 포상규모(총46점) : 훈장1, 포장1, 대표1, 국표3, 장표24, 원표16점
  · 1식×80백만원(2017년도) → **1식×40백만원(2018년도)**

○ 제품안전 관련 문화 확산 및 국제기구 협력 등 : 534백만원

- 제품안전 관련 문화 확산을 위한 자료 제작 및 회의 개최 등 : 434백만원
- 제품안전국제기구(ICPSC, ICPHSO 등) 참석 등 협력 : 100백만원

* 2017년도 : 539백만원(일반수용비 376, 재료비 30, 국·내외여비 60, 임차료 50, 사업추진비 23)
→ **2018년도 : 534백만원**(일반수용비 377, 재료비 30, 국·내외비 61, 임차료 46, 사업추진비 20)

□ **제품안전 관련 대국민「정책·정보 안내 시스템」운영 : 150백만원**

○ 제품안전정보제공 및 안전기준전산화 유지보수 : 150백만원

- 1식×100백만원(2017년도) → **1식×150백만원(2018년도)**
  * 제품사고, 리콜, 인증 정보 등 제품안전 관련 정보수집 및 안전기준 개정 이력 관리 등

□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 : 1,740백만원**(지자체보조)

○ 안전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 : 1,740백만원

- 1,740백만원×100%지자체 보조(2018년도)
  * 소상공인·영세업자의 시험비용 부담해소를 위해 공동 시험장비 지원 등
  : 섬유(의류) 및 장신구 안전 시험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구축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제품안전정보 이용자수(명)	목표	1,500	1,700	20,000	22,000	22,000	최근 3년간 평균 접속자수와 외부환경 변화 반영	제품안전포털 일평균방문자수 =년 방문자수/365	제품안전포털 통계확인 (ksafetykorea.kr)
	실적	2,388	15,788	20,374	-	-			
	달성도	159%	929%	102%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4	①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 제품안전관련 교육 실시 :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 총21회, 1,212명 - "2014 제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11월) - 지상파, 지하철 등을 활용한 제품안전포털(Safetykorea.kr) 홍보 실시(연중) - ICPSC(국제소비자제품안전 담당공무원회의) 및 ICPHSO(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 심포지엄 참석 (2월, 6월) - ISO/COPOLCO(소비자정책위원회) 총회 및 워크숍 참석(5월) - 국제전기기기 인증관리위원회 국제협력(6월) 등 ② 제품안전 기준 및 정책 개발 -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18개 과제 수행 - 공산품·전기용품 530개 안전기준 개발 및 정비 * 공산품 안전기준 13건 및 전기용품 안전기준 517건 (KS 안전기준 일치에 따른 안전기준 재개정) 제·개정 완료 ③ 제품안전「정책·정보 안내 시스템」운영 - 제품안전포털의 접속자수 증가*에 따른 웹서버 증설 및 서버관리 강화 * 1일 접속자 수 : '12년) 550명 → '13년) 1,472명 → '14년) 2,388명 ④ 생활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 어린이제품의 선진안전관리 기준조사 및 안전기준 마련 40건 등
2015	①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 제품안전관련 교육 실시 : 제조·유통업체, 소비단체 등 총19회, 1,556명 - "2015 제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11월) - 지상파, SNS 등을 활용한 제품안전포털(Safetykorea.kr) 홍보 실시(연중) - ICPSC(국제소비자제품안전 담당공무원회의) 및 ICPHSO(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 심포지엄 참석 (2월, 6월) - ISO/COPOLCO(소비자정책위원회) 총회 및 워크숍 참석(5월) - 국제전기기기 인증관리위원회 국제협력(6월) 등

	② 제품안전 기준 및 정책 개발 - “난방용 전기용품 안전기준 정비” 등 18개 과제 수행 - 공산품・전기용품・어린이제품 102건 안전기준 개발 및 정비 * 공산품 안전기준 50건, 전기용품 안전기준 15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37건 제・개정 완료 ③ 제품안전「정책·정보 안내 시스템」운영 - 제품안전포털 집중홍보에 따른 접속자수 대폭 증가 * 1일 접속자 수 : '13년) 1,472명 → '14년) 2,388명 → '15년) 15,788명 ④ 생활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 어린이제품 품목별(40개) 위해성평가 실시 및 위해도 산출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2016	①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 제품안전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보급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선도학교 교육 : 220명 실시 - 제조・유통업체, 소비자 등 제품안전교육 : 1,377명 실시 - 소비자단체 학부모대상 강사양성 교육 : 42명 - 어린이 교육교재 및 영상제작・활용 : 각 5편 ○ “2016 제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11월) - 제품안전 유공자 및 단체 포상 및 제품안전 홍보(약 400명 참석) ○ 제품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지상파TV 및 온라인 채널 홍보 - 지상파TV광고, 지하철광고, 블로그 기자단 운영 등 정책 홍보 - 제품안전정보포털(safetykorea) 운영관리(연중) ○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 - ‘제품안전정책 포럼 홈페이지’ 오픈 (‘16.3월) 및 분과회의 개최 -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위원회 개편(11.4) - 제품안전혁신포럼 총회 개최(12.16) ○ 국제협력활동 강화 - ICPHSO(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 심포지엄 참석 (2월, 11월) - ISO/COPOLCO(소비자정책위원회) 총회 및 워크숍 참석(11월) - CPSC(미국소비자안전위원회) 벤치마킹(12월) - 국제전기기기 인증관리위원회 국제협력(2월, 5월, 9월, 11월) 등 ② 제품안전 기준 및 정책 개발 - “배터리를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방안 연구” 등 21개 과제 수행 - 공산품・전기용품・어린이제품 54건 안전기준 및 법령 정비 ③ 제품안전「정책·정보 안내 시스템」운영 - 제품안전포털 집중홍보에 따른 접속자수 대폭 증가 * 1일 접속자 수 : '14년) 2,388명 → '15년) 15,788명 → '16년) 20,374명

2017	①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 제품안전 교육 실시 - 제조·유통업체, 소비자 등 제품안전교육 : 338명 실시 ○ “2016 제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 - 제품안전 유공자 및 단체 포상 운영요령 공고(3월) ○ 제품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 제품안전 지상좌담회 개최(4월) - 제품안전정보포털(safetykorea) 운영관리(연중) ○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 - ‘제품안전혁신포럼’ 제도·기술분과 회의 개최(수시) -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위 및 워표숍(6.27) ○ 국제협력활동 강화 - ICPHSO(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 심포지엄 참석 (2월) - OECD 워크숍 참석(4월) ② 제품안전 기준 및 정책 개발 - “배터리를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방안 연구” 등 21개 과제 수행 - 공산품·전기용품·어린이제품 54건 안전기준 및 법령 정비 ③ 제품안전「정책·정보 안내 시스템」운영 - 제품안전포털 집중홍보에 따른 접속자수 대폭 증가 * 1일 접속자 수 : '15년) 15,788명 → '16년) 20,374명 → '17.6월) 26,692명

③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품안전관리제도의 교육 및 국제협력 확대

- 제품안전관리제도의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기업의 제품안전관리 제도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제품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

○ 안전기준 정비 및 제품안전정책 개발

-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제품 출시에 대비한 안전기준 제·개정 및 제품안전관리 정책 개발을 통해 제품사고로부터 소비자의 안전 확보

○ 소상공인의 제품안전인증 부담 완화

- 의류·장신구 소상공인의 제품안전 시험검사 지원을 통해 제품의 유해물질 관리 및 소비자 안전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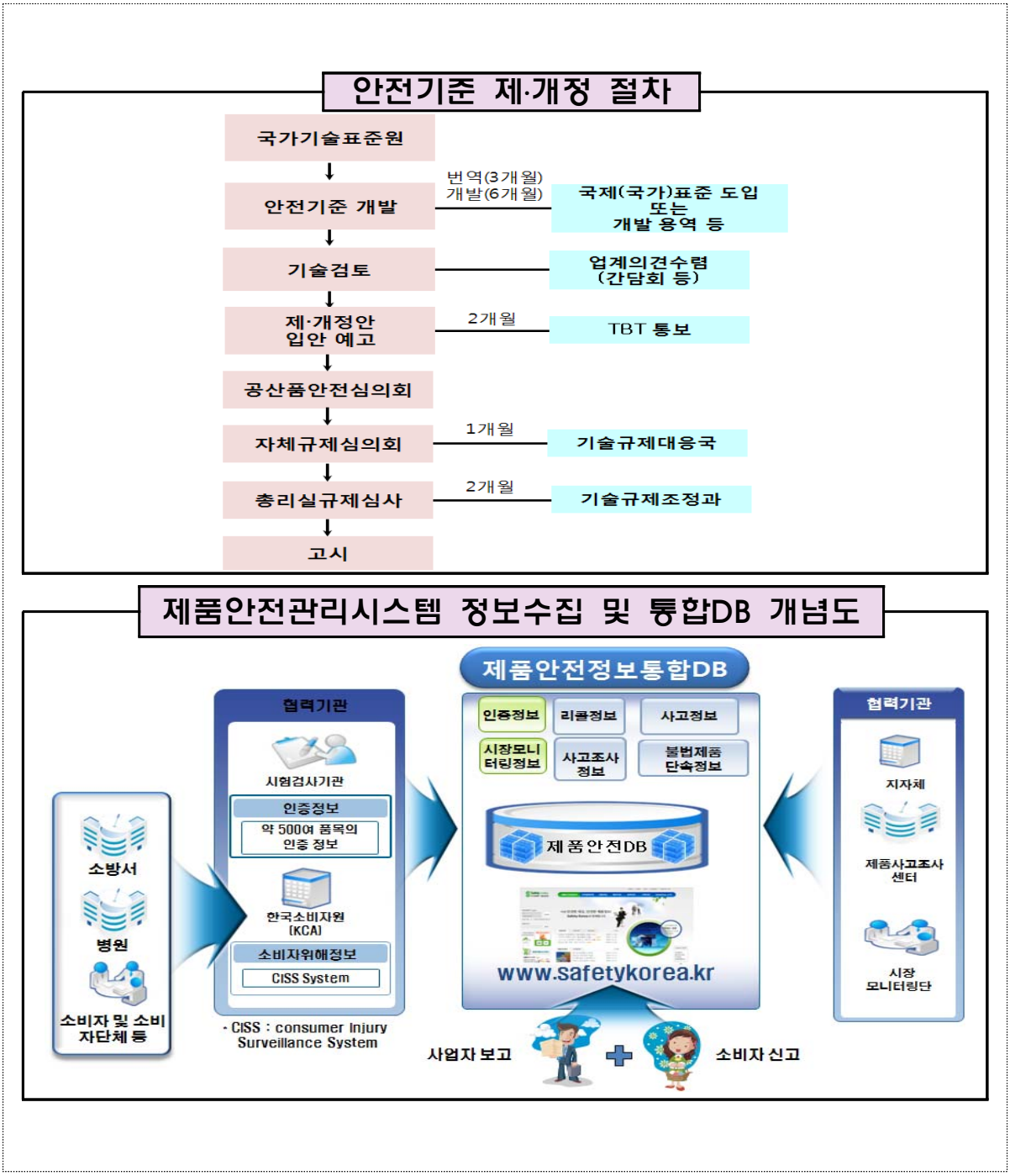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6	'17	'18	'19	'20	'21
'16~'20	1,946	1,804	1,804	1,804	1,804	
'17~'21		1,899	1,746	1,899	1,899	1,89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15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산업위 지적사항)

- 민간경상보조로 수행하는 "생활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평가방법전파" 내역사업의 성격이 연구개발비와 유사하여 예산과목, 지원 및 추진방식 변경 필요

- 이에, '16년 예산 요청시 "생활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평가방법전파"사업의 예산과목 및 수행방식을 변경

  * (예산과목 변경) 민간경상보조(320-01) → 연구개발비(260-00)
    (수행방식 변경) 1개기관 지정 → 공개입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목표) 국민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제품시장 변화에 대응한 선진형 안전관리제도 구축

○ (추진방향) 제품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내·외 환경에 맞는 안전기준과 정책개발을 통하여 제품안전관리제도에 반영하고, 홍보,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한 대국민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정착 추진

- 또한, 전안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 안전확보와 동시에 소상공인(의류, 장신구 제조업자, 핸드메이드업자 등)의 제품안전인증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 마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우수

평가시기	회계/기금	단위사업명 (세부사업)	**평가등급**	비고
2015년도	일반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안전제도기반조성,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우수**	
2016년도	일반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안전제도기반조성,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제품사고조사및수입제품안전관리,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보통**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 감축

평가시기	회계/기금	보조사업명	**평가결과**	비고
2016년도	보조금	제품안전교육 및 홍보 등	**감축**	'17년 예산에 반영 완료

※ '17년도 예산편성시 보조금을 감축하여 반영 완료('16년 : 700백만원 → '17년 : 540백만원)

12) 부처 건의사항

○ 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한 리콜 등 강력한 안전관리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용품의 위해성분 검출, 전기제품으로 인한 화재·감전사고 등 **제품으로 인한 안전위해 사례가 년 평균 약 28,000여건 발생하고 있음**

* 위해사례 접수건수 : '13년) 26,079건 → '14년) 30,375건 → '15년) 27,16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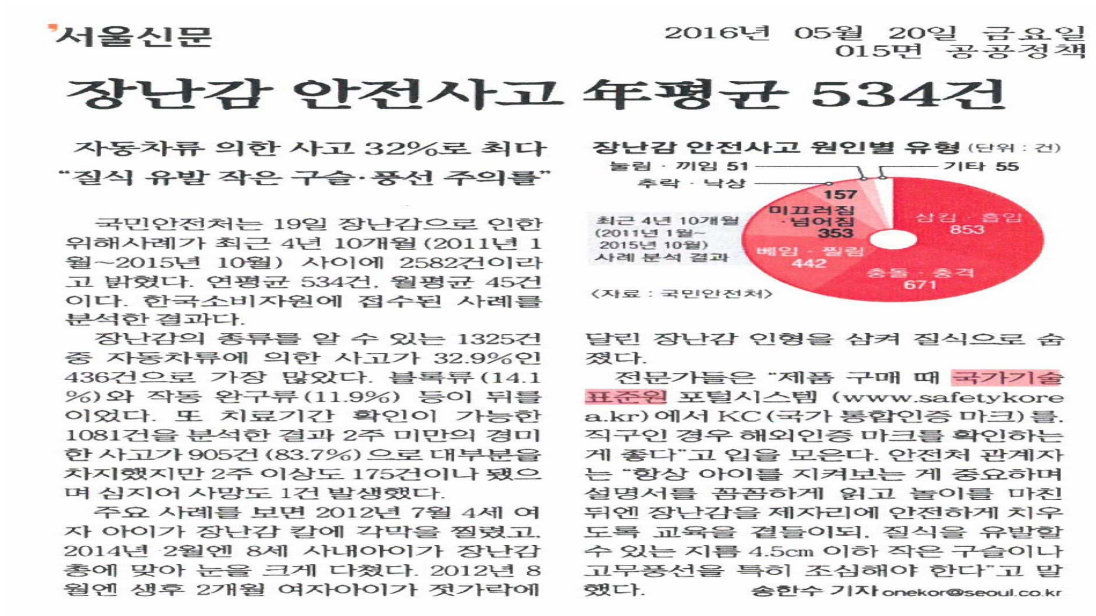

서울신문 2016년 05월 20일 금요일 015면 공공정책

장난감 안전사고 年평균 534건

자동차류 의한 사고 32%로 최다
"질식 유발 작은 구슬·풍선 주의를"

국민안전처는 19일 장난감으로 인한 위해사례가 최근 4년 10개월(2011년 1월~2015년 10월) 사이에 2582건이라고 밝혔다. 연평균 534건, 월평균 45건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장난감의 종류를 알 수 있는 1325건 중 자동차류에 의한 사고가 32.9%인 4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블록류(14.1%)와 작동 완구류(11.9%)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치료기간 확인이 가능한 1081건을 분석한 결과 2주 미만의 경미한 사고가 905건(83.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2주 이상도 175건이나 됐으며 심지어 사망도 1건 발생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2012년 7월 4세 여자 아이가 장난감 칼에 각막을 찔렸고, 2014년 2월엔 8세 사내아이가 장난감 총에 맞아 눈을 크게 다쳤다. 2012년 8월엔 생후 2개월 여자아이가 젓가락에 달린 장난감 인형을 삼켜 질식으로 숨졌다.

장난감 안전사고 원인별 유형 (단위 : 건)

〈자료 : 국민안전처〉

전문가들은 "제품 구매 때 국가기술표준원 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서 KC(국가 통합인증 마크)를 직구인 경우 해외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입을 모은다. 안전처 관계자는 "항상 아이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며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고 놀이를 마친 뒤엔 장난감을 제자리에 안전하게 치우도록 교육을 결들이되,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지름 4.5cm 이하 작은 구슬이나 고무풍선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 제품안전사고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및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인 “제품안전정보포털시스템(제품안전정보센터)”을 구축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제품안전정보센터란?** (www.safetykorea.kr)

* 제품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해제품, 사고사례, 안전 유의사항 등 국민생활에 유익한 안전정보제공

○ 제품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내·외 환경에 맞는 안전기준과 정책개발을 통하여 제품안전관리제도에 반영하고, 홍보,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한 대국민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정착 추진이 필요함

* **(안전기준 및 정책개발)** 제품시장 변화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안전기준 운영을 위하여 주요국 안전기준 제·개정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융·복합화, 다양화되는 제품의 특성 파악을 통한 신속한 안전기준 제·개정이 필요
* **(제품안전의식 보급·확산)** 소비자·기업의 선제적인 제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품안전 의식을 보급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 교육 및 포상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4	2,414	2,414	-	±12	-	-	2,414	2,384	98.8	98.8	-	30
2015	2,493	2,493	-	-	-	-	2,493	2,449	98.2	98.2	-	44
2016	1,977	1,977	-	±35	-	-	1,977	1,946	98.4	98.4	-	31
2017	1,899	1,899	-	-	-	-	1,899	1,050	55.3	55.3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4	2,414	2,414	2,384	1,100		1,100	1,100	-	0	45.6
2015	2,493	2,493	2,449	1,200	-	1,200	1,200	-	0	48.1
2016	1,977	1,977	1,946	700	-	700	700	-	0	35.4
2017. 6월기준	1,899	1,899	1,050	540	-	540	540	-	0	28.4

2) 주요 결산사항

2014	30백만원 불용 * 예산 부족에 따른 자금 미배정(일반운영비 19백만원) 및 집행잔액(연구개발비 8백만원 등) 12백만원 전용 * 예산 효율적 집행을 위해 운영비 內 임차료(12백만원)를 일반수용비로 조정
2015	44백만원 불용 * 집행잔액(일반연구비 17백만원, 자산취득비 14백만원, 운영비 13백만원)
2016	31백만원 불용 * 집행잔액(일반연구비 15백만원, 운영비 등 16백만원) 35백만원 전용 * 예산 효율적 집행을 위해 운영비 內 재료비(35백만원)를 일반수용비로 조정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6)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3732 - 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110	114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6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보과	오유천	박원규	
		043-870-5430	043-870-543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A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616	878	878	900	900	22	2.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6					2017('17.12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627	627	616 [616]	-	11	878	878	878	867 [867]	-	11	900
·사고조사제도이행	200	182	171 [171]	-	11	180	180	213	213 [213]	-	-	220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185	170	170 [170]	-	0	275	275	249	238 [238]	-	11	254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242	275	275 [275]	-	0	423	423	416	416 [416]	-	-	426
○ 비목별 분류(합계)	627	627	616 [616]	-	11	878	878	878	867 [867]	-	11	900
·일반수용비(210-01)	45	36	36 [36]	-	0	35	35	32	32 [32]	-	-	35
·시험연구비(210-13)	80	104	104 [104]	-	0	60	60	93	93 [93]	-	-	60
·관리용역비(210-15)	377	362	362 [362]	-	0	658	658	628	617 [617]	-	11	641
·사업추진비(240-01)	5	5	5 [5]	-	0	5	5	5	5 [5]	-	-	4
·일반연구비(260-01)	120	120	109 [109]	-	11	120	120	120	120 [120]	-	-	1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각종 제품안전 정보수집을 기반으로 사고조사제도를 이행(사고조사 후 결함제품 리콜)하고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관리제도 이행

- 생활제품(공산품, 전기용품, 어린이제품 등)으로 인한 제품사고에 대해, 사고조사를 통한 리콜 등 사고조사제도 이행

  *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한 사고조사를 통해 결함제품은 제10조, 11조에 따른 제품 수거 등의 행정조치

- 각종 제품안전정보*를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분석하여 소비자, 기업 등에 제공하는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수행

  * 인증정보, 소비자위해정보, 안전성조사결과정보 등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

- 정부 3.0차원의 관세청과 협업으로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적발하여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제품안전관리제도 이행

  *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관세청과의 수입제품관리 협업과제 상정·확정 (‘14.8.21)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제15조”에 근거한 사고조사 이행
-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한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한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이행

② 추진경위

- ‘14.2.26 “제2차 제품안전종합계획” 발표
- ‘14. 3.5 “제품안전정보센터” 개소
- ‘14.8.21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관세청과의 수입제품관리 협업과제 상정·확정
- ‘14.9.15 “수입제품 안전관리” 시범사업 실시 (인천본부세관 협업사무소 설치)
- ‘15.3.25 “수입제품 안전관리” 본사업 실시 (4개 세관 확대 : 인천본부, 인천공항, 부산, 평택)
- ‘15.5.18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제9조의3 신설: 수입제품 안전성조사 근거마련)
- ‘15.9.23 “행자부-관세청-국표원-환경부-식약처간 정부3.0 협업검사체계” 협약식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18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 (220백만원)**

- 사고접수 제품 결함여부 조사 등 : 60백만원

1) 시험비 : 30백만원=60건*40만원(시험수수료) + 60건*10만원(재료비)
2) 출장비 : 20백만원=100건*2명*10만원
3) 조사자 등 수당 : 10백만원 = 66건*1명*15만원

* 조사범위 : 어린이제품, 공산품 및 전기제품을 포함하여 타부처에서 관리하지 않는 모든 생활 가정용제품

- 사고다발제품 등에 대한 원인분석·평가 이행(정기조사) : 160백만원

1) 사고다발 제품, 안전취약 제품 등에 대한 평가·분석 : 40백만원 * 4개 제품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 (254백만원)**

- 정보수집 및 사고상담 콜센터(☎1600-1384) 운영·홍보비: 89백만원

1) 콜센터운영 : 50백만원 = 4백2십만*12월
2) 제품안전정보 수집·홍보 : 39백만원
   ▪ 사고조사건의 홍보 등 : 35백만원 = 5백만원*7건
   ▪ 제품안전정보 수집·홍보 등을 위한 업무협의 : 4백만원 = 25만원*16회

- 리콜정보, 위해정보, 제품안전제도 등 제품안전정보 보급 : 85백만원

* 각종 분석정보를 소비자단체, 지자체, 연구소, 기업 등에게 정기적으로 보급(약 1,700부 배포)하여 소비자 제품안전강화와 기업의 안전품질경쟁력 제고를 유도

1) 계간SafetyKorea발간·보급 : 85백만=21백만*4회

-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전파 : 80백만원

* 해외 리콜정보 등을 모니터링하여 해당 제품 국내 유통업체에게 정보 제공을 통해 자발적 리콜 등의 조치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주의·환기하는 서비스

1) 제품안전 경보서비스 : 80백만원 = 80백만×1건

○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 (426백만원)**

- 인증대상 제품 인증 여부 실물확인 및 안전성조사(제품시험) 수행

1) 시험·평가비 : 128백만원=256건*40만원(시험수수료) + 256건*10만원(운송비)
2) 인건비 : 238백만원=18만원*22일*12개월*5명
3) 통관단계 협업조사시스템 운영 : 60백만원=60백만원*1건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안전취약 제품 심층조사 결과 조치 건수 (단위: 건)	목표	신규	4	5	6	6	화재 등 사고다발 제품, 어린이 제품 등 안전취약제품의 위해사례가 계속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치 설정	사고다발 제품 등 안전취약제품의 심층 조사·분석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기준 보완요청 등 조치건수	결과보고서 및 내부자료
	실적	-	4	5	6	-			
	달성도	-	100	100	100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성조사 건수 (단위: 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3,000	국민생활 개선, 신제품 출시, 국가간 교역확대 등으로 소비자 사용제품 중 수입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치 설정	관세청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서 실시한 수입제품의 선별조사 건수	결과보고서 및 내부자료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4	-
2015	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 - 제품사고조사69건 접수, 28건 개선조치 - 2015년 정기 제품사고조사 연구과제 수행 (8개 품목) 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 - 주간제품안전동향(연중), 계간 Safetykorea (연4회) 보급, 제품사고조사 사례집(1회) 발간 - 지하철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제품안전포털(Safetykorea.kr) 홍보(연중)

	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 - "수입제품 안전관리" 본 사업 실시 ('15.3.25)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15.5.18) - '15년 실적 : 총 2,418건을 선별·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1,046건 적발(적발률 43.3%)
2016	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 - 제품사고조사 96건 접수, 30건 개선조치 - 2016 정기 제품사고조사 연구과제 수행 (5개 품목) 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 - 주간제품안전동향(연중), 계간 Safetykorea (연4회) 보급, 제품사고조사 사례집(1회) 발간 - 지하철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제품안전포털(Safetykorea.kr) 홍보(연중) 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 - '16년 실적 : 총 2,859건을 선별·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899건 적발(적발률 31.4%)
2017	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 - 제품사고조사 73건 접수, 29건 개선조치('17.12월) - 2017 정기 제품사고조사 연구과제 수행 중 (2개 품목) 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 - 주간제품안전동향(연중), 계간 Safetykorea (가을호 발간) 보급 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 - '17년 실적 : 총 4,018건을 선별·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1,213건 적발(30.2%)

③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고 다발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기업 및 소비자에 제공함으로써 동일사고 재발을 방지

- 각종 사고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안전기준 및 표준 등에 반영토록 추진하여 제품안전제도의 효율성 제고 기대

-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적발하여 국내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강화 및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제품사고조사)** 국가기술표준원이 사고정보 수집·관리·보급 및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업무를 이행하고, 제품사고조사센터(11개 지정) 및 시험인증기관은 제품결함여부 평가(제품시험) 업무 이행

<사고조사 및 리콜조치 이행체계도>

소비자 신고 및 사고정보수집	○ 소비자 제품사고 신고 접수 ○ 유사 사고사례 정보수집·분석
⬇	
현장조사	○ 사고조사센터(외부전문가) 선정 ○ 사고내용 확인, 사고제품 수거 등
⬇	
제품 결함조사(제품시험)	○ 동일모델 제품 구매(필요시) ○ 안전기준 등에 따른 제품시험 실시
⬇	
사고조사결과 종합	○ 현장조사 및 결함조사 결과 분석 ○ 종합 보고서 작성
⬇	
결과조치 (리콜 등)	○ 사고조사 결과 통보(신고인) ○ 결함제품 리콜조치(명령, 권고 등)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각종 제품안전정보*를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분석하여 소비자, 기업 등에 보급

* 인증정보, 소비자위해정보, 안전성조사결과정보 등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업무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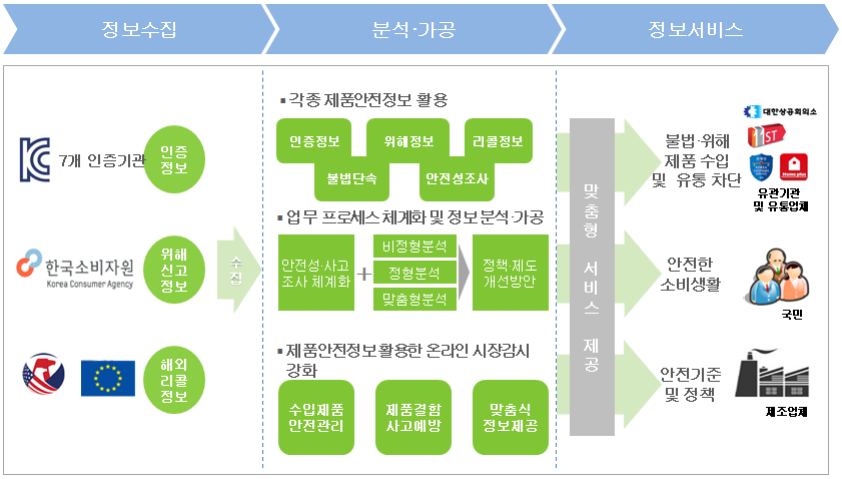

○ **(수입제품안전관리)** 불법·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를 관세청 "수입제품선별검사시스템(C/S)"에 입력하여 검사대상 수입사업자를 선별하고,

- 선별된 제품 중 불법·불량 제품은 관세청에서 반송·폐기 조치 또는, 국표원에서 리콜조치

<협업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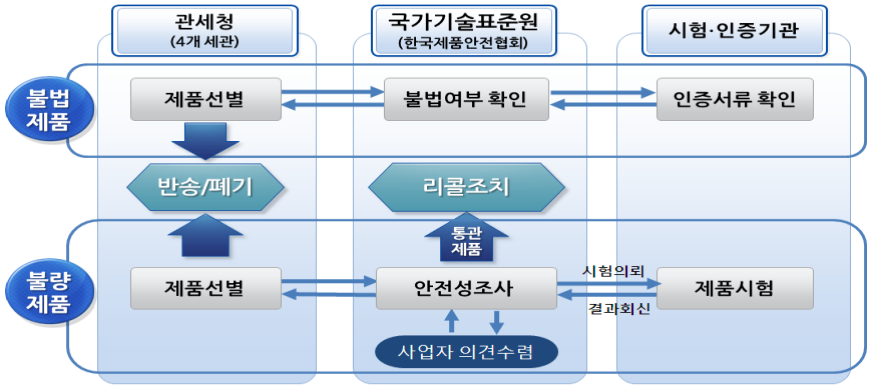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6	'17	'18	'19	'20	'21
'16~'20	627	973	973	973	973	
'17~'21		878	834	834	834	83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15년 예산 검토보고서 (산업위 지적사항)

"위해제품에 대한 신속조치제도"(「제품안전정책」 내역사업) 및 "사고조사제도 이행사업"(「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내역사업) 간 중복

- 제품에 대한 결함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조치·이행에 유사점이 있으므로 사업추진, 관리 등의 효율성을 위해 두 내역사업을 통합·조정할 필요

- **(조정방안)**「제품안전전정책」내역사업인 "위해제품에 대한 신속조치제도 운영" 예산('15년, 174백만원)을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내역사업 "사고조사제도 이행" 예산('15년, 200백만원)으로 포함하여 통합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목표)** 제품안전 정보수집을 기반으로 사고조사제도를 이행(사고조사 후 결함제품 리콜)하고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 반입을 차단하는 제품 안전관리제도 이행

- **(제품사고 조사제도이행)** 제품사고 및 위해제품 조사를 통해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 등 행정조치

- **(소비자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한 제품 위해 정보·인증정보 수집· 분석 및 보급 체계 구축, 통합 제품안전정보망 운영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관세청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서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차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4	-	-	-	-	-	-	-	-	-	-	-	-
2015	535	535	0	±59	0	0	535	525	98.1	98.1	0	10
2016	627	627	0	±24	0	0	627	616	98.3	98.3	0	11
2017	878	878	0	±33	0	0	878	867	98.7	98.7	0	1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2014	-
2015	- 세목조정사유(±59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위탁사업비(210-15) 부족으로 인해 일반수용비(210-01)에서 세목간 조정 (일반수용비: 59백만원 → 시험연구비: 32백만원, 위탁사업비: 27백만원) - 불용액 발생 사유(정기사고조사 일반연구비 10백만원) : 연구용역 계약체결시 면세기관의 부가세 제외분 및 집행잔액
2016	- 세목조정사유(±24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부족으로 인해 위탁사업비(210-15), 일반수용비(210-01)에서 세목간 조정 (일반수용비: 9백만원, 위탁사업비: 15백만원 → 시험연구비: 24백만원,) - 불용액 발생 사유(정기사고조사 일반연구비 11백만원) : 연구용역 계약체결시 면세기관의 부가세 제외분
2017	- 세목조정사유(±33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부족으로 인해 일반수용비(210-01), 관리용역비(210-15)에서 세목간 조정 (일반수용비: 3.5백만원, 관리용역비: 30백만원 → 시험연구비: 33.5백만원 - 불용액 발생 사유(관리용역비 11백만원) : 조달공고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이로 인한 잔액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7)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3732-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110	114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7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제품안전과	안성호	김홍준(연구관)	-
		043-870-5450	043-870-5574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A
어린이제품안전관리 생태계조성	-	950	950	990	990	40	4.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950	950	950	514 [204]			950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 강화	-	-	-	-	-	450	450	450	310 [106]	-	-	450
- 어린이제품 유해 안전성 검증·분석	-	-	-	-	-	400	400	400	280 [102]	-	-	440
- 제조기업 원스톱 지원센터	-	-	-	-	-	50	50	50	30 [4]	-	-	50
·어린이제품안전교육 기반조성	-	-	-	-	-	230	230	230	14 [14]	-	-	230
- 교재개발	-	-	-	-	-	160	160	160	-	-	-	160
-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	-	-	-	-	70	70	70	14 [14]	-	-	70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	-	270	270	270	190 [84]	-	-	270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연구학교	-	-	-	-	-	100	100	100	73 [19]	-	-	100
-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	-	-	-	-	70	70	70	44 [5]	-	-	70
- 어린이제품 안전 체험관						100	100	100	73 [60]	-	-	1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950	950	950	514 [204]	-	-	950
·일반수용비(210-01)	-	-	-	-	-	50	50	50	2 [2]	-	-	50
·임차료(210-07)	-	-	-	-	-	30	30	30	6 [6]	-	-	30
·일반연구비(260-01)	-	-	-	-	-	140	140	140	-	-	-	140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710	710	710	500 [190]	-	-	750
·자산취득비(430-01)	-	-	-	-	-	20	20	20	6 [6]	-	-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을 유지ㆍ증진

  • 근본적으로 어린이제품의 유해성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한 근본적으로 안전한 어린이 제품의 시장 유통 촉진

  •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재 등 교육기반 조성,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범국민적 안전의식 고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3.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예방 및 대책
4.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기준 및 실시에 관한 사항
5.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에 대한 규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제27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제품의 조사·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분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제31조(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제25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 제22조, 제25조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 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협회
- 사업 수혜자 : 어린이 및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제품안전협회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한국제품안전협회의 설립)

3) '18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 강화 : 490백만원

- 어린이제품 유해·안전성 검증·분석(어린이제품안전시험분석센터) : 440백만원 (11품목×40백만원)
- 어린이제품 제조기업「원스톱지원체계」구축·운영 : 50백만원(10개사×5백만원)

○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기반 조성 : 230백만원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교재 개발 : 160백만원(4종×40백만원)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 : 70백만원(100명×0.7백만원)

○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70백만원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연구학교 지정·운영 : 100백만원(10개교×10백만원)
- 어린이제품 찾아가는 안전 교육 : 70백만원(20개교×3.5백만원)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 100백만원(2개소 × 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참가자 (단위:명)	목표				300	350	예산 추이는 전년과 동일하나 전년대비 증가치 설정	Σ 년간 교육이수 인력	연구학교 및 찾아가는 안전교육 참여자 명단
	실적					-			
	달성도					-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참가자 (단위:명)	목표				300	350	예산 추이는 전년과 동일하나 전년대비 증가치 설정	Σ 년간 교육이수 인력	연구학교 및 찾아가는 안전교육 참여자 명단
	실적					-			
	달성도					-			

※ 성과지표가 세부사업 단위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단위사업 별로 개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단위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해 작성

※ 성과지표가 여러개인 경우 모두 적시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4	해당없음
2015	해당없음
2016	해당없음
2017	어린이제품안전교육교재 개발 4종 어린이제품유해ㆍ안전성 검증ㆍ분석 10품목 어린이제품안전체험관 조성 2개소

③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안전한 어린이제품의 시장 유통 및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 안전취약 어린이제품 부적합률 획기적 개선 : ('14년) 30% ⇒ ('18년) 15%
- '14년 27,381건의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18년까지 25% 감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보조금 사업〉

○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 강화 및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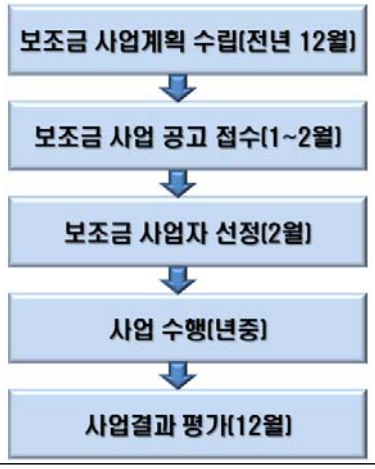

〈교육프로그램 운영〉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6	'17	'18	'19	'20	'21
'16~'20	-					
'17~'21		950	990	990	990	99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 지적사항 말미에 괄호( )로 기관명 및 출처 표시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3) 자체평가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세계적으로 최초로 어린이 안전관련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령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제1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 - 이를 위해 (전략 1) 전주기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전략 2) 어린이제품 안전 생태계 기반조성, (전략 3) 어린이제품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가 절실히 요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4	-	-	-	-	-	-						
2015	-	-	-	-	-	-						
2016	-	-	-	-	-	-						
2017	950	950	-	-	-	-	950	949.7	99.9	99.9	-	0.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4										
2015										
2016										
2017. 12월기준	710	710	710	710	-	710	71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2014	해당사항없음
2015	해당사항없음
2016	해당사항없음
2017	불용 : 292,580원(집행잔액)

라. 기타 추가자료

제1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요약

□ 기본계획 수립배경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14.6.3 제정, '15.6.4시행) 제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1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16~2018)을 수립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현황 및 필요성

○ (현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대상을 13세 이하 모든 어린이제품으로 확대하고 불법 危害제품 유통·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을 추진중

* 통관단계 및 유통시장 안전성조사,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운영 등

○ (필요성) 어린이는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 제품위험 대처능력이 떨어지므로 성인대상 공산품과 차별화된 별도의 안전관리가 필요 및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 등 유통경로 다양화로 선제적 안전관리가 필요

* 제품안전주체(정부, 소비자, 시험기관, 기업)의 역할수행을 위한 유기적 안전생태계 구축

□ 어린이 제품안전 비전 및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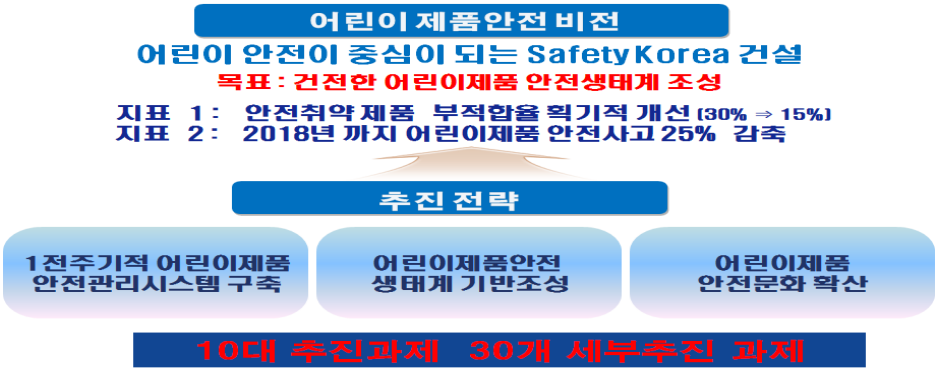

☞ "**어린이 안전이 중심이 되는 Safety Korea 건설**"의 어린이제품안전비전을 위해 **3대 추진전략**下 **30개 세부과제**를 도출

전략① 전주기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포괄적 안전관리제도 정착, 유통 어린이제품 안전관리강화, 어린이제품 인프라확충" 추진

전략② 어린이제품안전 생태계 기반조성 "기업의 제품안전역량강화와 수출지원 추진"

전략③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제품안전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제품안전홍보활동"을 통해

➡ **"안전취약 어린이제품 부적합률 개선, 어린이제품사고 감축을 추진"**

□ 소요예산 2018년까지 총 18,219백만원 투입

* 2017년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신규사업(3,500백만원) 확보추진

□ 기본계획 발표 제1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발표회(2016.3.9)

사 업 명
(8)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3733-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110	114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3	304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신산업표준개발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숙래	신상훈	최현아(연구사)
		043-870-5390	043-870-5391	043-870-539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	1,042	1,010	1,010	889	889	△121	△11.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6					2017('17.12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095	1,095	1,042	-	53	1,010	1,010	1,010	1,003	-	6.9	889
・인체치수측정사업	325	325	304	-	21	300	300	300	300	-	-	279
・인체정보보급사업	770	770	738	-	32	710	710	710	703	-	6.9	610
○ 비목별 분류(합계)	1,095	1,095	1,042	-	53	1,010	1,010	1,010	1,003	-	6.9	889
・시험연구비(210-13)	45	45	44	-	1	45	45	45	45	-	-	46
・업무추진비(240-01)	4	4	4	-	-	4	4	4	3.8	-	0.2	3
・일반연구비(260-01)	-	-	-	-	-	961	961	961	954	-	6.7	630
・정책연구비(260-02)	846	846	816	-	30	-	-	-	-	-	-	-
・민간위탁사업(320-02)	-	-	-	-	-	-	-	-	-	-	-	210
・자산취득비(430-01)	200	200	178	-	22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인체적합성이 우수한 제품과 생활에 필요한 인체치수, 인체형상, 인체활동 범위, 인지적 데이터 등을 조사하여 관련 산업계에 보급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21세기 편안하고 쾌적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제품 기능 및 품질수준의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국제표준 제안 및 인체 정보가 반영된 KS 표준의 제정, 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과 인간공학적 제품설계를 위한 활용 및 기술 개발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참조표준"이라 함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인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자료로서 물리화학적 상수, 공인된 물성값, 공인된 과학기술적 통계등을 말한다.

-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①정부는 산업과학기술과 정보화사회에 필요한 표준 참고자료를 제정·평가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관련기관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②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제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측정데이터의 수집·분석·평가 체계의 확립 2. 참조표준 제정절차의 수립 및 사후관리 3. 참조표준 및 측정데이터의 축적 및 보급체계의 확립 4. 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표준원으로 하여금 참조표준에 관한 측정데이터의 수집·축적 및 평가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산업표준화법

-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 확인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통계법

-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①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0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통계법시행령

- 제7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법 제9조제1항 본문과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79년부터 : 의류치수 규격 마련을 위해서 ’79년 처음으로 국민체위조사 실시한 이후 5~7년 주기로 4차례 측정 사업 수행

○ ‘00년이후 :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급격한 체형변화로 최신의 인체치수 정보와 3차원 인체형상 자료, 동적치수 정보 등 새롭고 다양한 인체치수 자료에 대한 산업계 요구 증가

○ ‘03~’04년 : 전국 남녀(0~70세이상) 2만여명에 대한 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및 인체형상 측정 사업 실시 및 DB 구축

○ ‘05~’09년 : ①한국인 인체정보 보급을 위한 홈페이지(sizekorea.kats.go.kr) 및 인체표준정보실 개설과 관련 측정 정보 통계청으로부터 승인 통계로 지정
②장애인에 대한 인체치수 측정 등 과거 측정사업에서 측정하지 못한 분야를 측정사업 지속 추진 및 한국인 인체정보의 산업계 활용을 위한 보급 사업 지속 추진

○ ‘10~’17년 : ①제6차 및 제7차 한국인인체치수 측정사업(전국민 대상 표본추출 직접측정 사업) 및 계층별(5개) 3D 인체형상 측정사업 실시
②계층별*(5개) 3D 표준인체형상 및 활용가이드(7종: 스마트글라스, 안경, 학생용 책걸상, 장애인 보조기기, 머리분야, 몸통분야, 기능성 베개) 개발 및 보급
*계층별 : 어린이(7~13세), 청소년(14~19세), 성인(20~39세), 중장년층(40~69세), 고령자(70~85세)
③장애인·고령자 동적범위 측정 및 보행패턴 측정 사업 실시
④인체치수정보 활용 플랫폼 구축
⑤해외인체정보 교류체계 구축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의류, 가구, 신발, 자동차,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인체관련제품 생산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18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인체정보 측정사업>

○ 고령자 인체 근력 측정 조사를 위한 사업비 : 279백만원

- (산출내역) 인건비(162)+측정경비(69)+피측정자 사례비(48)=279백만원

· (인건비) 9명×6개월×3백만원=162백만원

· (측정경비) 측정장비 대여비 40(8종×5백만원)+측정피복비 10(2종×100개×5만원)+재료비 10(5종×2백만원)+회의비 9(10회×9명×10만원) = 69백만원

· (피측정자 사례비) 800명×60,000원=48백만원

<인체정보 보급사업>

○ 산업계의 한국인 인체치수정보 활용가이드 개발 및 보급 : 250백만원

-（산출내역) 인건비(144)+개발경비(97)+피측정자 사례비(9)=250백만원

· (인건비) 6명×6개월×4백만원=144백만원

· (개발경비) 시제품 제작비 30(3종×2회×5백만원)+측정장비 대여비 10(5종×2백만원)+전산장비 대여비 10(2종×5백만원)+재료비 30(10종×3백만원)+회의비 15(15회×10명×10만원)+기타소모품 2(4종x500,000원) = 97백만원

· (피측정자 사례비) 90명x100,000원=9백만원

○ 서비스 플랫폼 구축(활용가이드와 인체치수정보 상호연계 서비스 개발) : 150백만원

- (산출내역) 인건비(96)+개발경비(54)=150백만원

· (측정 연구원 등 인건비) 6명×4개월×4백만원=96백만원

· (개발경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20(2종×10백만원)+전산장비 대여 10(2종×5백만원)+전산장비 대여 10(2종x5백만원)+회의비 12(10회×12명×10만원)+여비 10(10회x5명x200,000원)+소모품비 2(4종x500,000)=54백만원

○ 산업계 지원을 위한 표준인체정보실 운영 : 210백만원

- (산출내역) 인건비(144)+개발경비(66)=210백만원

· (측정 연구원 등 인건비) 6명×6개월×4백만원=144백만원

· (개발경비) 재료비 30(10종×3백만원)+회의비 20(20회×10명×10만원)+소모품비 10(20종×500,000원)+장비대여 6(2종x3백만원)=66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17예산	'18요구	증감	주요 변동내역
총 계	1010	889	△121	
1 인체정보측정사업	410	279	△131	-
① 인체정보 측정사업	410	279	△131	ㅇ 측정대상의 변경(고령자 동작범위 →고령자 근력)으로 인한 비용 감소 : △131백만원
2 인체정보보급사업	600	610	10	-
① 활용가이드 개발 및 보급	300	250	△50	ㅇ 개발대상의 변경(기능성베개, 안마기, 몸통관련 제품 → 퍼스널 모빌리티, 유아동 카시트, 다리관련 제품)으로 인한 비용 감소 : △50백만원
② 서비스 플랫폼 구축	200	150	△50	ㅇ 개발대상의 변경(3D형상 임의 치수 랜드마크 편집 서비스 → 활용가이드와 인체치수정보 상호연계 서비스)으로 인한 비용 감소 : △50백만원
③ 정보실 운영	100	210	110	ㅇ 정보실 운영증액 : 110백만원 - 인원증가(2인 → 4인)로 인건비 상승 : 80백만원 - 재료비, 회의비 등 상승 : 3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한국인인체정보의 보급 건수 (단위: 건)	목표	3500	4000	4500	4950	5400	과거실적 및 증가추세 감안	Σ(보고서 다운로드수+ 인체정보 가공요청 건수)	국가기술표준원 내부통계 및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
	실적	3950	4226	5195	-	-			
	달성도	113%	107%	64%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4	· 고령자 인체3D형상 측정조사(70~85, 4개 자세, 942명) · 청소년 계층 남녀 3D표준인체형상 12종 제작
2015	· 한국인인체치수 직접측정조사(대상 : 16~69세, 6413명) · 고령자(4종) 및 3세유아(1종) 3D표준인체형상 개발 및 보급 · 한국인인체치수 활용가이드(2종 : 스마트글라스, 안경) 개발 및 보급
2016	· 장애인 동적측정 및 법보행 측정 · 한국인 인체치수 활용가이드(3종 : 머리분야, 학생용 책·걸상, 휠체어) 개발
2017	· 고령자(300명) 동작범위 측정 · 한국인 인체치수 활용가이드(2종 : 몸체분야, 기능성 베개) 개발 · 인체치수정보 활용 플랫폼 구축

③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품 설계에 필요한 인체치수정보 및 3차원 인체형상정보, 동적측정정보 등 종합적인 인체표준정보 DB 구축 및 주기적인 인체정보 업데이트
- 측정 정보를 활용하여 KS규격 제·개정 추진
-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매년 한국인인체관련 정보 보급 추진을 통하여 산업계가 인체 친화적 제품 생산 및 보급에 따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인 경우 작성

7) 사업 집행절차

1단계	사업수행을 위한 관련 전문가 및 자문위원회 개최
↓	
2단계	수요조사 실시
↓	
3단계	사업추진계획 수립
↓	
4단계	측정 사업 및 보급 사업 추진
↓	
5단계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등의 사업 점검
↓	
6단계	측정결과 검토
↓	
7단계	측정결과 통계분석 및 DB구축 작업 실시
↓	
8단계	측정결과 발표 및 보급 사업 지속 추진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6	'17	'18	'19	'20	'21
'16~'20	1,095	1,095	1,095	1,095	1,095	
'17~'21		1,010	957	909	1,095	1,09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측정사업

- ○ 국제 기준에 상응하는 고품질의 한국인 최신 인체치수 및 산업체 인체형상정보 활용도 향상을 위한 기업 맞춤형 데이터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 ○ 장애인, 고령자 등의 사회적 배려계층 등 특수계층에 대한 측정사업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사업 성장 도모
- ○ 국가표준 및 산업규격의 설정을 위한 과학적 자료의 제공
- ○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미국, EU 등의 인체관련 정보를 획득하여 관련 산업계에 보급함으로써 수출 제품의 경쟁력 강화

□ 보급사업

- ○ 인체치수정보 보급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산업체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최종 가공된 인체정보 보급 및 활용기술 개발지원 활성화 추진
- ○ Size-Korea DB 개선 및 지속적인 기초 통계자료 제공으로 효율적인 DB 관리/운영 및 웹기반 User Interface 시스템을 개발
- ○ 누구나 인체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DB 구축 및 관련 웹사이트 정비
- ○ 측정된 인체정보를 이용하여 연령별 대표 체형, 특이 체형 정보 제공 및 관련된 규격에 최신 정보의 지속적 반영
- ○ 미국, 유럽 등의 해외 인체치수정보를 확보·보급함으로써 현지인 몸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 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
- ○ 산업군별 응용 통계 및 3차원 모형 제공 서비스 추진으로 연령, 성별에 따른 표준 인체 부위별 분석자료 및 3차원 모형 제공
- ○ 산·학·연·관(軍 포함)의 인체표준 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4	812	812	-	-	-	-	812	806	93.3	93.3	-	6
2015	1,216	1,216	-	-	-	-	1,216	1,215	99.9	99.9	-	1
2016	1,095	1,095	-	-	-	-	1,095	1,042	95.2	95.2	-	53
2017	1,010	1,010	-	-	-	-	1,010	1,003	99.3	99.3	-	7

2) 주요 결산사항

2014	-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 및 입찰 잔액
2015	- 집행잔액
2016	- 조달낙차 차액 및 집행잔액
2017	- 집행잔액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9)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3733 - 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4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진흥 · 고도화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3	308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신산업표준개발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 · 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계량측정제도과	최미애		배승호(연구사)
		043-870-5510		043-870-551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A
법정계량선진화 기반구축	1,405	1,332	1,332	1,229	1,229	△103	△7.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6					2017('17.12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445	1,445	1,405	29	11	1,332	1,332	1,361	1,169	-	-	1,229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821	821	817	-	4	706	706	706	654	-	-	679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178	178	178	-	-	261	261	261	234	-	-	144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275	275	243	29	3	195	195	224	163	-	-	175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171	171	167	-	4	170	170	170	118	-	-	231
○ 비목별 분류(합계)	1,445	1,445	1,405	29	11	1,332	1,332	1,361	1,169	-	-	1,229
·일반수용비(210-01)	127	127	127	-	-	127	127	127	99	-	-	128
·임차료(210-07)	-	-	-	-	-	-	-	-	-	-	-	-
·시험연구비(210-13)	127	127	123	-	4	127	127	127	99	-	-	187
·관리용역비(210-15)	210	210	178	29	3	130	130	159	98	-	-	110
·국내여비(220-01)	20	20	20	-	-	19	19	19	19	-	-	20
·국외업무여비(220-02)	22	22	21	-	1	20	20	20	19	-	-	19
·사업추진비(240-01)	7	7	7	-	-	7	7	7	7	-	-	6
·일반연구비(260-01)	200	200	199	-	1	258	258	258	187	-	-	100
·정책연구비(260-02)	25	25	23	-	2	25	25	25	22	-	-	0
·민간경상보조(320-01)	707	707	707	-	-	619	619	619	619	-	-	65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선진 법정계량제도의 관리·운영을 위한 기반 확충 및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을 통한 공정상거래 질서 확립
- 지능화되는 불법계량기 위조 등의 부정 계량행위 근절을 위한 계량기 감시·단속 강화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라 한다)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형식승인)** ①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1조(정량표시상품)** ① 정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정량표시상품사업자"라 한다)는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성명 및 정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54조(소비자감시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계량관리를 위하여 계량에 관한 지식이 있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및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소비자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량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0조(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량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수출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1조(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량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기업의 신기술 계량기 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65조(한국계량측정협회)** 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계량에 관한 법률』은 국제단위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여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금지(1961년)
  * 면적의 단위에 대하여 평(坪)단위는 1983년부터 사용을 금지
-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05)에 따라 법정단위 정착을 추진
  · '07년 7월부터 "평", "돈" 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사전 홍보 부족 및 부정적 여론 등으로 인해, 홍보·계도(경고) 위주로 추진
  · '10.6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게 「과태료 부과」를 병행 추진
- "계량제도 선진화 종합계획" 수립(장관/'12.16) : '12년부터 현장 중심의 홍보·계도와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불법제품 단속을 실시하고 우리나라 법정계량 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정계량선진화 추진
-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추진 및 시행('15.1.1)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9 ~
- 사업규모 : '17년까지 기투입액(64.53억원)

※ 전국 67백만대 법정계량기 및 정량표시상품, 법정단위 관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계량기 사용 전국민 및 관련 기업, 유관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계량측정협회	100	계량에관한법률 제65조

3) '18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 679백만원**

- 기술기준·지침 개발 : 100백만원

* 기술기준 및 지침 개발, 실태조사 연구 (25백만원×4건=100백만원)

- 계량공무원 및 사업자 교육(민간보조) : 112백만원

* 교재 제작, 강사료, 임차료, 워크숍 개최 등 (5백만원×22회≒112백만원)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제도 운영(민간보조) : 120백만원

* 불법계량기 조사반 운영 (40백만원) / 포상금 및 계도비 (28백만원) / 홍보물 제작 및 대중매체 노출 (52백만원)

- 소비자감시원 운영(민간보조) : 322백만원

* 감시원 수당 (50천원×150명×35일≒262백만원) / 교육 및 워크숍 (30백만원×2회=60백만원)

- 국제법정계량기구 대응 및 국제협력 : 25백만원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아시아태평양법정계량기구포럼(APLMF), 한일계량협력위원회 등 참가 (19백만원) / 국제기구 대응 기술위원회 간담회(6백만원)

○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 144백만원**

- '평(坪)', '돈(匁)' 등 非법정단위 근절 및 'm2', 'g' 등의 법정단위 사용 정착을 위한 홍보 : 104백만원

* 홍보물 제작·배포(리플렛, 포스터 등 6종×10백만원=60백만원) / 법정단위 공모전(44백만원)

- 법정단위 모니터링 및 사용 촉진(민간보조) : 40백만원

* 20개 언론사 광고 비법정단위 사용 모니터링 및 계도 (35백만원), 법정단위 확산 협의체 운영(5회×1백만원=5백만원)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 175백만원**

- 계량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DB구축 : 110백만원

* 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80백만원), 계량데이터 DB화(30백만원)

- 계량검사정보 사전알림 서비스(민간보조) : 65백만원

* 안내문 제작 및 DM 발송(0.6천원×50,000건=30백만원)/ DB정비 및 운영(35백만원)

○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 231백만원**

- 형식승인계량기 시판품조사 : 151백만원

* 시료구입비 (250천원×33종×시료 3개≒25백만원)

* 시험수수료 (3,800천원×33종≒126백만원)

- 검정계량기 오차검사 : 44백만원

* 전문가 수당(150천원×10명×16일=24백만원)

* 출장비(125천원×10명×16일=20백만원)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 36백만원

* 시료구입비 (20천원×시료 450개=9백만원)

* 시험수수료 (60천원×시료 450개=2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계량정보시스템 일평균 이용자수 (단위:명)	목표	신규	3,288	3,518	4,116	4,527	전년도 접속건수 대비 증가율 10%를 목표치로 산정	계량정보시스템 일평균이용자수 = 년 이용자수/365	계량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실적	-	3,528	3,560					
	달성도	-	107%	101%					

※ 성과지표가 세부사업 단위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단위사업 별로 개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단위 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해 작성

※ 성과지표가 여러개인 경우 모두 적시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4	□ 계량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 ● 생활용 계량기 검정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활용방안 연구 등 7개과제 수행 □ 계도・홍보관련 ● 옥외 전광판 광고(4곳/서대전역,) ● 법정계량단위 지하철 내부 광고(2,3,4호 및 지방 4개선) ● 법정계량단위 파일홀더 인쇄 및 배포(3만부, 부동산중개업소) ● 법정계량단위 홍보물(노트, 메모지, 머그컵, 달력 등) 제작 및 배포(소비자단체 등) □ 기타 ● 국제계량기술회의 및 대외협력회의 참여(5회)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조사(적산열량계 : 9업체, 9종, 27개) ● 실량상품 시판품조사(대형마트 PB상품, 소비자 민원제기 상품 등 506개 품목) ● 전국계량공무원 전문교육(4회), 순회교육(9회), 워크숍(4월, 10월) ● 계량사업자 순회교육(8회) ● 계량기 오차검사 실시 : 주유기(191대), LPG미터(92대)
2015	□ 계량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 ● 계량기사후관리실효성확보를위한처리기준(안)개발 등 7개과제 수행 □ 계도・홍보관련 ● 옥외 전광판 광고(6곳/서초구청 등) ● 법정계량단위 한국부동산뉴스, 주택저널 월간지광고(각 5회), 주택협회 홈페이지 배너광고 ● 법정계량단위 파일홀더 인쇄 및 배포(3만부, 부동산중개업소) ● 법정계량단위 홍보물(노트, 메모지, 머그컵, 달력 등) 제작 및 배포(소비자단체 등) ● 법정단위 기획, 슬로건 및 엠블렘 제작 ● 법정단위 홍보를 위한 관련 전시 및 축제 참여(4회, 식품대전 등) ● 법정단위 홍보를 위한 영상공모전(접수 105건, 시상 8건) □ 사후관리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조사(수도미터 : 18종 54제품)

	• 정량표시상품 소비자피해 예방 위한 시판품조사 실시(시중 유통상품 27종 535품목) * 조사 결과 정량 위반 1업체, 표시위반 4업체 적발 및 시정 명령 조치 • 계량기 오차검사 실시 : 주유기(512대) • 저울 합동점검(서울 등 5개 지역 402대) 및 추석대비 특별점검(부산 등 9개 지역 602대) □ 기타 • 국제계량기술회의 및 대외협력회의 참여(4회) • 전국계량공무원 순회교육(8회), 워크숍(12월) • 계량사업자 순회교육(4회)
2016	□ 계량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 • 비자동저울의 형식승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등 10개과제 수행 □ 계도・홍보관련 • 법정단위 캐릭터 개발 4건 • 법정단위 블로그 및 페이스북 구축·운영 • 법정단위 카드뉴스 및 인포그래픽 제작·배포(15건) • 법정단위 디지털 배너(14건), 포스터(2건), 모바일 리플릿(3건) 제작·홍보 • 법정단위 홍보를 위한 포스터, UCC 공모전 개최(접수 323건, 시상 24건) □ 사후관리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조사(가스미터 12종, 적산열량계 4종, 수도미터 5종) • 정량표시상품 소비자피해 예방 위한 시판품조사 실시(시중 유통상품 27종 496품목) • 계량기 오차검사 실시 (LPG미터 262건) □ 기타 • 국제계량기술회의 및 대외협력회의 참여(6회) • 전국계량공무원 교육 (6회, 264명)
2017	□ 계량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 • IT 융복합 전력량계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개발 등 8개과제 수행 □ 계도・홍보관련 • 법정단위 블로그 및 페이스북 구축·운영 • 법정단위 SNS 광고 30회 • 법정단위 홍보를 위한 포스터, UCC 공모전 개최 2건, 참여 이벤트 4건 • 법정단위 오프라인 광고 2건(아파트미디어보드, 버스 등) □ 사후관리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조사(전력량계 17종 85대) • 정량표시상품 소비자피해 예방 위한 시판품조사 실시(시중 유통상품 27종 513품목) • 계량기 오차검사 실시 (LPG미터 262건) □ 기타 • 국제계량기술회의 및 대외협력회의 참여(5회) • 전국계량공무원, 소비자감시원, 사업자 등 교육 (578명)

③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법정계량의 선진화 기반마련

・국제무역, 상거래 및 측정의 기본인 법정계량에 대한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법정계량제도의 선진화 기반 마련

- 법정단위 사용 정착률 향상을 통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국제교역 촉진

・법정단위의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언론・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율 향상을 통해 상거래 질서 확립과 국제교역 촉진
* '평" 사용 대신 법정단위 "m^2"의 사용 정착율(%) 향상 : ('09) 69.0% → ('16) 83.6%

- 불법·불량계량기의 유통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시판품 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손실방지 및 소비자 권익보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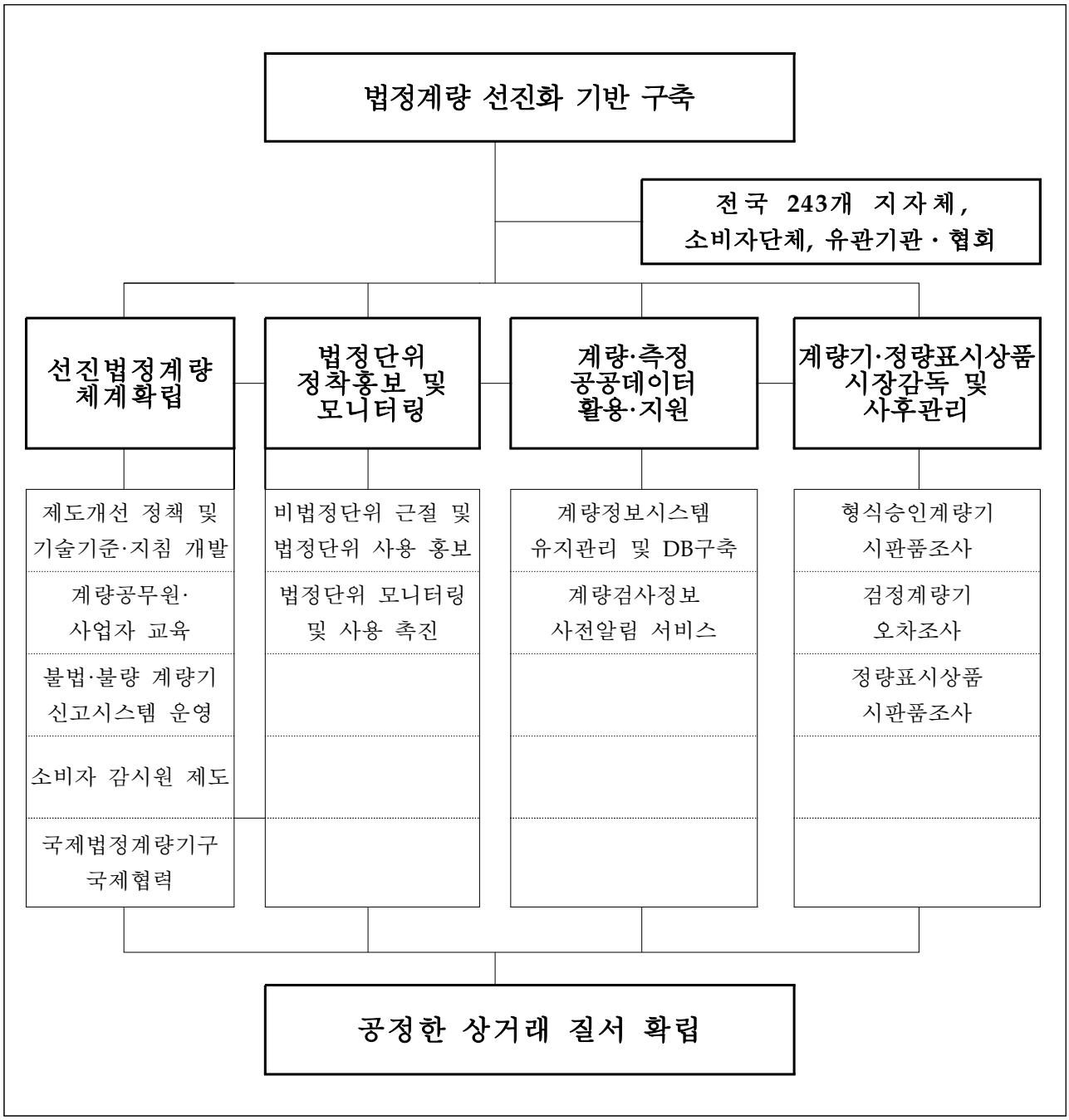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6	'17	'18	'19	'20	'21
'16~'20	1,445	1,332	1,445	1,445	1,445	
'17~'21		1,332	1,238	1,445	1,445	1,44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계량관리

○ 공정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국제무역 촉진을 위하여 모든 나라가 계량의 기준을 법으로 정하여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음

- 또한, 법정계량기 거래규모는 국내총생산(GDP) 1,485조원의 약 45% ('14년 기준 668조원*)를 차지할 정도로 모든 경제활동의 바탕이 되는 기반산업으로 지속적인 사업 지원 필요

* 세부내역 : 주유기 62.2조, 전력량계 44.4조, 가스미터 21.2조, LPG미터 6.9조, 수도미터 3.4조, 적산열량계 3.0조, 비자동저울 527.4조

□ 비법정단위 사용금지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

○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m, kg 등을 법정단위로 규정, 상거래 및 증명에서 "평", "돈" 등 비법정단위 사용을 금지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 하지만, 국민 생활현장(부동산 중개업소, 귀금속 판매소 등)을 조사한 결과 "평", "돈" 등 비법정단위 사용률은 '16년 37.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법정단위 사용금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 계량기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 대부분의 거래가 저울, 주유기, 가스미터 등 법정계량기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계량기의 정확도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임

- 법정계량기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14년부터 적산열량계, 수도미터, 가스미터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 3종의 계량기에 대해서만 오차를 2%로 가정하더라도 불공정 거래규모는 약 3조 4천억원으로 추정 가능

- 이러한 문제발생의 원인은 단가 경쟁을 위해 저렴한 부품으로 제품을 변경해도 사후관리에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 관리 강화가 필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6년도 기재부 재정사업자율평가(단위사업명: 신산업표준개발) : 보통
- '15년도 기재부 보조사업 평가결과 : 정상추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4	1,000	1,000		±20			1,000	961	96.1	96.1		39
2015	1,250	1,250					1,250	1,239	99.1	99.1		11
2016	1,445	1,445					1,445	1,405	97.2	97.2	29	11
2017	1,332	1,332	29				1,361	1,169	87.8	85.9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4	80	80	80	80	-	80	80	-	-	100
2015	588	588	588	588	-	588	588	-	-	100
2016	707	707	707	707	-	707	707	-	-	100
2017	619	619	619	619	-	619	619	-	-	100

2) 주요 결산사항

2014	- 이·전용 등 사유 : 법정단위 홍보를 위해 위탁사업비를 일반수용비로 세목 조정(20백만원) - 불용 사유 :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39백만원)
2015	- 불용 사유 : 낙찰 차액 등의 집행 잔액(11백만원)
2016	- 이월 사유 : 수입물품 세관장 확인 시스템 개발사업의 과업범위 확대 및 관세청 DB 연계 강화를 위하여 사업기간 연장(29백만원) - 불용 사유 : 낙찰 차액 등의 집행 잔액(11백만원)
2017	- 특이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참고자료)

① 계량 선진화 추진계획

② 계량·측정 관련 통계

③ 계량에 관한 법률 요약

④ 법정단위 사용 정착

⑤ 계량정보시스템 현황

⑥ 소비자 감시원 운영

⑦ 계량관련 국제기구

참고 1 계량 선진화 추진계획

정책 목표

국민이 신뢰하는 계량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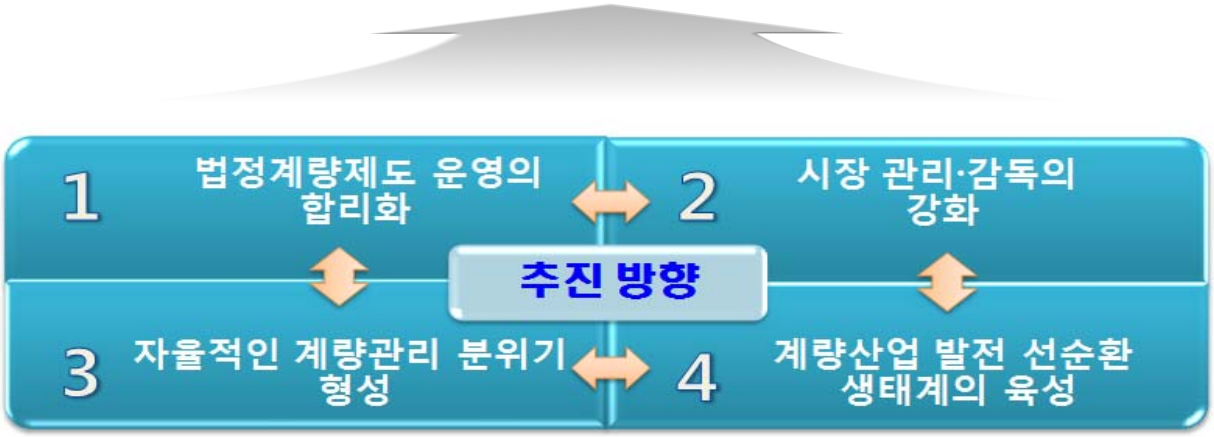

추진 과제

1. 법정계량제도 운영의 합리화	2. 시장 관리·감독의 강화
1-1 『계량에 관한 법률』 및 하부법령 개정	2-1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 조사
1-2 저울 관리의 실효성 제고	2-2 계량업무 위탁기관 사후관리 실시
1-3 친환경 차량용 충전기 관리방안 마련	2-3 포장상품 정량표시 관리제도 개선
1-4 스마트미터링 선제적 대응	2-4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시스템 운영

3. 자율적인 계량관리 분위기의 형성	4. 계량산업 발전 선순환 생태계의 육성
3-1 국민 참여형 법정단위 정책 전개	4-1 계량·측정 기술향상 기반조성
3-2 소비자감시원 활동의 내실화	4-2 국제협력 강화 및 대응체제 확립
3-3 사업자 자율관리의 확대	4-3 "계량측정의 날" 정부포상 및 행사 개최
3-4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4-4 계량검사공무원 및 계량사업자 역량강화
3-5 지자체와 협업 활성화	4-5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성능향상 기술개발

참고 2 계량·측정 관련 통계

❑ 법정계량에 의한 상거래 현황

○ 경제활동의 기본이 되는 계량산업에 대해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12종의 계량기를 정하여 관리

- '14년 기준 국내총생산의 약 45%가 법정계량기로 거래되고 있으며, 계량기의 사용오차가 0.15%라고 가정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불공정 거래 발생

* 연도별 국내총생산 규모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GDP(조)	1,173조	1,235조	1,377조	1,429조	1,486조

* 국내 법정계량기에 의한 상거래 규모('14년 기준)

- 주 유 기 : 62.2조원
- 전력량계 : 44.4조원
- 가스미터 : 21.2조원
- LPG미터 : 6.9조원
- 수도미터 : 3.4조원
- 적산열량계 : 3.0조원
- 비자동저울 : 527.4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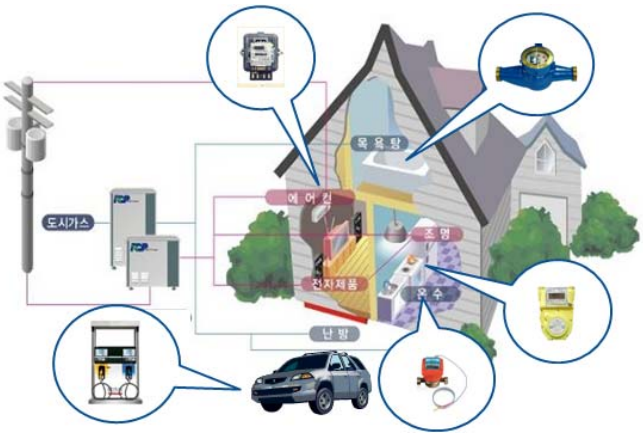

○ 계량측정 산업은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는 인프라 산업으로 미래 **첨단 기술개발의 기반이 되는 지식산업**

○ 계량기의 불법 개조 및 불량계량기의 사용 등 나날이 지능화, 전문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부정 계량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관리기준 및 감시를 위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증가**됨

참고 3 계량에 관한 법률 요약

❑ 계량은 **경제활동의 근간**으로써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 모든 나라에서 **법제화**하고 있음

① **(법정단위)** 7개 기본단위* 등의 법정단위를 규정하고, 상거래 및 증명에서 비법정단위 사용을 금지

* m(길이), ㎏(질량), s(시간), K(온도), mol(물질량), A(전류), cd(광도)

② **(법정계량기)** 상거래 공정성 확보 위해 오차관리가 필요한 계량기를 법으로 정하여 형식승인, 검정 및 사후관리 의무화

③ **(정량표시상품)** 포장 개봉없이 실제량 확인이 어려운 상품을 법으로 정하여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

* 곡류, 과자류, 육류, 유제품, 음료 및 주류, 위생용품, 생활용품 등 27종

k 마크가 표시된 제품은 정량이 들어있는 제품! 믿고 구매할 수 있다!

참고 4 법정단위 사용 정착

❑ 추진 배경 및 경과

○ 우리나라는 1961년에 계량법을 제정하여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단위**로 채택하고, **非법정단위**의 사용을 금지

* 국제단위계 : 미터법이 현대화 된 것으로 m, ㎏ 등이 기본 단위

○ '07년부터 일제 잔재인 '평(坪)·돈' 단위 사용 근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인치, 야드, 파운드 등의 단위는 계도 중심으로 추진

- '09년에 비법정단위를 사용한 법령, 지자체 조례 등 제도 정비
- '10.6월부터 언론광고 상습위반자 과태료 처분
- '13.1월부터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모델하우스 등의 위반자 단속
- '15년부터 미래의 경제주체인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및 10·20대를 겨냥한 SNS 기반 홍보 전개

< 추진경과 >

❑ 법정단위(m^2) 정착 현황

○ 주요 언론매체(기사, 광고)의 m^2 정착율은 '10년 대비 13.6% **증가**

- **TV뉴스**와 **경제신문** 기사의 m^2 정착율이 높으나, **일간신문**의 기사 및 **신문광고**는 **낮은 경향**

(단위 : %)

연도	TV 방송	신문(기사)		신문 광고	평균
		일간지	경제지		
2016	83.2	76.7	87.9	84.0	**83.6**
2015	93.6	78.4	88.2	84.8	**85.7**
2014	91.4	71.2	87.0	87.9	**85.0**
2013	92.9	69.9	85.7	82.4	**82.9**
2012	92.1	69.4	84.4	82.9	**81.1**
2011	93.4	67.6	84.0	72.7	**77.4**
2010	95.5	66.6	81.6	54.4	**70.3**

* 조사대상 : TV(KBS, MBC, SBS, mbn, YTN),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등 15종

○ '16년 전국 부동산중개사무소, 귀금속 판매소 등 14,623곳을 조사한 결과 법정단위 사용율은 62.4%로 나타나 지속적인 확대 필요

* 부동산 등 법정단위 사용율: '12년(40.9%) → '14년(61.5%) → '16년(62.4%)

참고 5 계량정보시스템 현황

❑ 시도 지자체·인증기관 등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계량기 시험·검사·단속 정보의 통합관리 및 대국민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계량기의 검사·사용이력 추적·관리를 위한 데이터 DB 추진**

- 기관별 비전산 형태의 계량 데이터 및 신규생성 데이터 중 주유기 등 생활 활용이 높은 계량기 위주로 DB화

○ **계량기 검사정보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

- 재검정 또는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사용자에게 온라인(SMS, e-mail)이나 오프라인(우편)으로 검사정보의 사전 알림 서비스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 운영**

- 계량기 변조자, 변조 계량기 사용자, 제조결함 계량기에 대한 온라인 신고센터의 구축 및 운영
- 위반사업자 및 피해사례 언론보도 정보 대국민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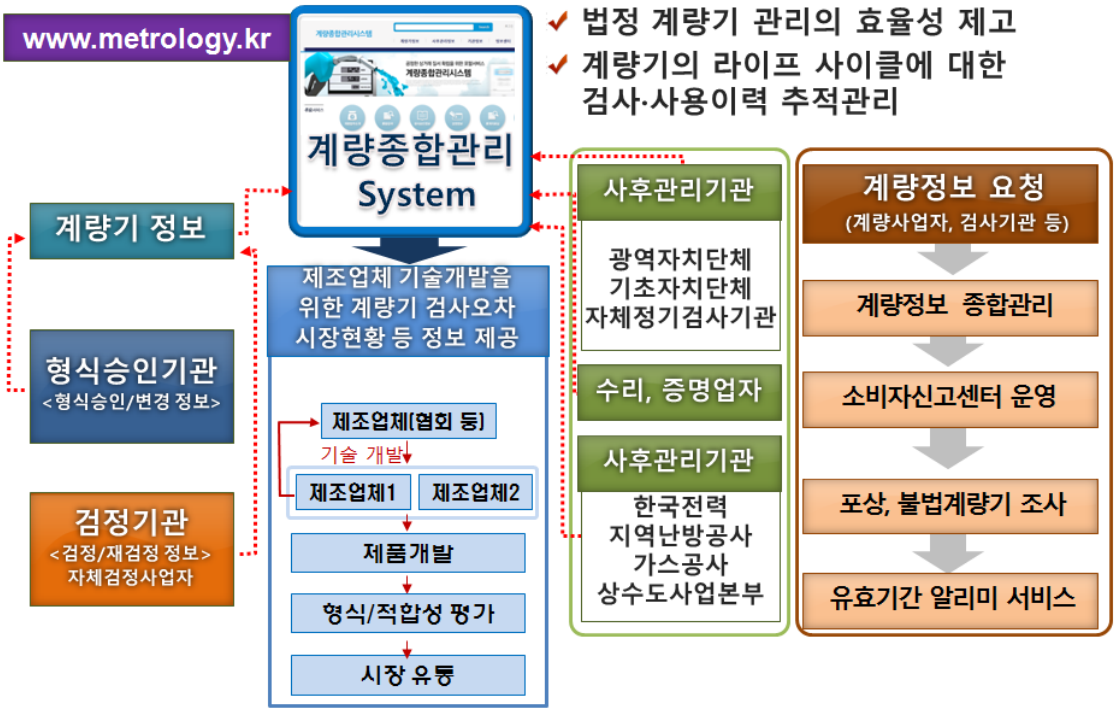

참고 6 소비자 감시원 운영

❑ 소비자감시원 운영 현황

○ **소비자에 의한 계량분야 시장감시 강화**를 위하여 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하여 **2015년 시범운영** 실시

* 감시원 60명이 부동산중개업소 비법정단위 사용 감시와 합동점검 지원

주요업무

① 비법정단위 사용여부 확인
② 재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 확인
③ 정기검사 및 단속 업무의 보조
④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여부 확인 지원

감시계획

① 부동상중개사무소 비법정단위 사용 감시
② 전통/수산/약재 시장 저울 사용 감시
③ 합동특별점검 업무 보조 등

❑ '17년 소비자감시원 운영

○ 자체정기검사사업자제도 운영 등 **계량기 자율관리 확대**에 따라 저울 정기검사 여부 확인 **감시활동 강화** 필요

○ **소비자감시원 인력 확대**

- 현행 광역도시 중심(5개 지역)에서 위성도시까지 소비자감시원 활동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150명)

○ **소비자감시원 감시 직무 확대**

- 비법정단위 사용 감시 중심의 시범운영에 이어 주요 저울에 대한 재검정, 정기검사 수검여부 감시활동 본격 운영

* 전통시장, 전문시장(한약, 수산물), 대형마트, 정육점 저울의 감시

- 계량측정기술 고도화사업으로 개발한 저울 사후관리를 위하여 NFC 태그 부착 및 정보 등록

○ **소비자감시원 교육 강화**

- 소비자감시원의 감시역량을 높이고, 감시활동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워크숍을 상·하반기로 개최

참고 7 계량관련 국제기구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Métrolgie Légale)

○ **(설립목적)** 계량기의 국제적 통일로 무역장벽의 해소를 위해, 1955년 24개국이 참가한 프랑스 파리에서 OIML 협약 체결

※ OIML 협약: Convention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 **(회원국 현황,** '17년 기준)

- 정회원국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62개국, 준회원국은 필리핀, 이란, 북한, 우크라이나 등 66개국

- 우리나라는 법정계량제도의 국제적 통일을 위해 1978년 가입

○ **(주요활동)** 회원국 간 법정계량제도의 통일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업무 협조/ 상거래, 안전, 보건 및 환경 분야에서 소비자 등 일반국민의 보호를 위한 법정계량제도 규제 및 개발도상국의 법정계량기관을 지원 등

□ 아태법정계량포럼 (APLMF, Asia-Pacific Legal Metrology Forum)

○ **(설립목적)**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국가의 정부 간 회의로, 회원국 간 법정계량제도의 국제적 조화로 기술장벽 해소 및 국제교역 촉진을 위해 1994년 설립

○ **(회원국 현황)**

- 정회원국: 20개국(한국, 호주,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북한,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아, 필리핀, 러시아, 싱가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

- 준회원국: 6개국(부르나이,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라오스)

○ **(주요활동)** 아·태 지역 내의 법정계량기관들 사이의 상호 신뢰 유지 및 개발 / 법정계량분야에서 무역에 대한 기술 및 행정 장벽 제거 등

□ 한·일 계량협력위원회

○ **(설립목적)** 양국의 계량측정분야 상호 기술협력을 위해 「한·일계량계측표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

○ **(추진경위)** 한·일과학기술장관회담에서 위원회 설립 합의('75.8월) / (韓)공진청 국립공업시험원, (日)공업기술원 계량연구소간 회의('76~'00) / (韓)산업부 기술표준원, (日)계량표준종합센터간 회의('01~현재)

○ **(주요활동)** 계량 및 기술 정보교환 등 상호협력, 계량 기술 및 법규 등 양국 관심사항 논의

□ 한·중 계량협력위원회

○ **(설립목적)**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역할 확대, 양국 간 계량기 교역 증대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등 법정계량분야의 협력 채널이 필요

○ **(주요활동)**

- 상설 대화기구로 계량협력위원회를 구축하여, 계량 기술 및 법규 등 양국 관심사항 논의

  * 개최방식 : 매년 상반기 한국과 중국에서 교대로 개최

- 계량 및 기술 정보교환 및 R&D 공동 수행, 국제 및 지역별 기구에서의 상호협력 등을 도모

사 업 명
(10) 국가표준활성화 (3733-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110	114
명칭					산업·중소기업	산업진흥·고도화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3	309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신산업표준개발	국가표준활성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표준정책과	주소령	-	전 설(연구사)
		043-870-5340	-	043-870-534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A
국가표준활성화	4,283	3,919	3,919	3,758	4,058	139	3.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6					2017('17.12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국가표준활성화	4,287	4,312	4,283 [1,911]	-	29	3,919	3,919	3,919	3,413 [1,872]	-	12	4,058
·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1,545	1,570	1,556	-	14	1,187	1,187	1,187	816	-	12	1,101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1,681	1,681	1,681 [1,681]	-	-	1,692	1,692	1,692	1,692 [1,692]	-	-	1,797
· 표준화실태조사	230	230	230 [230]	-	-	180	180	180	180 [180]	-	-	100
·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501	501	500	-	1	600	600	600	487	-	-	500
· 표준이행확산 기반구축	50	50	48	-	2	30	30	30	29	-	-	30
· 청소년표준올림피아드	100	100	88	-	12	80	80	80	70	-	-	80
· 표준화교육	180	180	180	-	-	150	150	150	139	-	-	150
· 표준화혁신 생태계조성(신설)	-	-	-	-	-	-	-	-	-	-	-	300
○ 비목별 분류(합계)	4,287	4,312	4,283 [1,911]	-	29	3,919	3,919	3,919	3,413 [1,872]	-	12	4,058
· 일반수용비(210-01)	264	264	214	-	-	110	110	110	107	-	-	140
· 시험연구비(210-13)	895	895	894	-	1	967	967	967	487	-	-	876
· 일반용역비(210-14)	100	100	136	-	14	180	180	180	172	-	-	210
· 국내여비(220-01)	17	17	17	-	-	16	16	16	16	-	-	17
· 국외업무여비(220-02)	10	10	9	-	1	9	9	9	8	-	-	9
· 사업추진비(240-01)	50	50	50	-	-	45	45	45	43	-	-	39
· 일반연구비(260-01)	760	785	774	-	11	720	720	720	708	-	12	600
· 정책연구비(260-02)	280	280	278	-	2	-	-	-	-	-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신설)	-	-	-	-	-	-	-	-	-	-	-	270
· 사업출연금(350-02)	1,911	1,911	1,911 [1,911]	-	-	1,872	1,872	1,872	1,872 [1,872]	-	-	1,89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WTO·FTA에 따른 국제표준의 글로벌 시장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간 상호협력 확대 등을 위한 국제표준 수준의 국가표준 개발·정비 추진
-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국가표준(KS)를 개발·정비하고 민간중심의 표준화 기반을 조성하여 국내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 국민불편해소,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위한 생활밀착형 표준개발 확대 및 유망신산업 견인을 위한 융·복합분야 표준인프라 조기 구축 지원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광범위한 산업 환경 변화에 적기 적응하기 위해 국가표준화 체계의 신속한 혁신을 통하여 기업 및 소비자 신수요에 대응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 제18조(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 제22조(제품인증)
-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산업표준화법

- 제3조(산업표준화 기본계획 등)
-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 제6조(산업표준의 제정등의 신청・협의)
-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0.11.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국무총리 주재 국가표준심의회에서 11개 부처가 참여하여 확정)

- 국가표준제도기반구축(국가표준 종합정비체계의 확립, 국가표준체계 혁신, 국가표준화 활동기반 강화), 적극적인 국가표준 선진화 활동전개(성문표준의 세계화, 전략적 표준화 기술개발, 국제표준 활동강화) 등을 수립

○ 2006. 5.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중 “국가표준체계의 선진화 등 4대과제”를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 153호)

- 국가표준체계의 선진화(국가표준·기술기준 제정시스템 혁신,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제도 도입), 민간표준활성화(민간표준화 역량의 전략적 육성, 생산자단체의 표준제정활동 촉진, 표준전문가인력양성 및 활용시스템 활성화)

○ 2007.5.25 산업표준화법 개정(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민간표준 참여확대 등에 대한 산업표준화법 명문화 규정

○ 2007.6.1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7년도 시행계획』수립

- 수출 주력산업 및 신기술 분야의 표준화 활동 강화, 국책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한 표준화 활동 전개,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 등을 추진

○ 2008.7.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8년도 시행계획』수립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제도 도입, 표준화포럼의 효율적 운영체제 확립, 단체표준 개발 심의 및 운영 관리 등을 추진

○ 2009.6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수립

- 부처별 표준·기술기준간 중복·이원화를 해소하고, 단일번호 체계를 이용한 통합 국가표준 관리시스템 도입
- 단일 제품에 대한 중복인증 문제를 해소하고, 시험·검사·인증 등 적합성 평가제도 전반을 국제기준에 부합화

○ 2010.6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0년도 시행계획』수립

- 국제표준 제안 활동 강화, 국제표준화기구 정책이사회 및 기술위원회 참여 확대, IT 국제사실상표준화 활동 지원, 기술보호무역 선제대응체제 구축, 기술보호무역 대응매뉴얼 개발

○ 2010.11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표준개발 : 신성장 원천기술 표준개발 확대, 원천기술 국제표준 선점, R&D-표준화 연계 활성화 등
- 기업하기 좋은 표준기반 구축 : 기업 친화적 인증제도 개선, 사용자 편의형 표준 지원, 측정표준 글로벌 산업 경쟁력 선도 등
-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 생활 밀착형・서비스 표준화, 사회안전・보안 표준화, 공공・행정표준화 등
-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표준행정 실현 : 선진형 표준체계 구현, 민간 표준참여 향상, 표준관련 부처협업 등

○ 2011.4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수립

- 신성장 원천표준 개발확대 : 융합산업 지원을 위한 기술표준 체계 마련
- 원천기술 국제표준화 선점 : 표준코디네이터 사업, 국제표준화 대응 및 협력채널 다각화, 국제표준화 목표전략 수립 및 이행관리
- 선진형 표준체계 구현 : 민간 자발적 참여형 국가표준 운용체계로 전환, 국가표준 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국가표준 제도 정비,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춘 개방형 표준 추진체계 구축 등
- 민간 표준참여 향상 : KS의 민간 관리 확대 및 KS 제도 개선 추진, 기업의 표준화 참여전략 마련, 사실상국제표준화 대응 등

○ 2012.3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수립

-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표준개발 : 녹색성장/신성장동력/고부가서비스 등 원천표준 개발 확대, 원천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제안될 수 있는 체계와 전략을 마련, R&D-표준 연계 지원 등
- 기업하기 좋은 표준기반 구축 : 친기업적 인증제도 내실화로 인증단축・비용부담 완화,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표준부합화 시스템 개발 추진, 초정밀 측정표준 개발 등
-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 국민생활・서비스, 의료・복지・식품 등의 생활밀착형 표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활용, 사회시스템표준, 환경 및 공공표준 개발
-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표준행정 실현 :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중심으로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 포럼/컨소시엄 지원 등 민간 표준활동 참여 기반 구축, 표준관련 정부부처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 2012.7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수립(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VIP보고)

- 기업부담완화를 위한 인증제도의 개선 : 부처별 인증 중복해소, 인증기간 및 비용 단축 그리고 규제 합리화 추진 등

- 국가 표준·인증체계 개선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운영체계 개편,기술기준과 표준과의 조화 및 중복성 사전검토, 기업수요 중심의 KS인증제도 개선 등
- 중장기 글로벌 표준강국 발전 방안 : 원천기술 표준·인증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국제규범 선점을 위한 표준·인증외교 강화 등

○ 2014.5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방안』 수립(국가정책조정회의)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 산업계에서 필요한 표준이 적시에 개발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참여 확대
- 국가표준과 기술기준간 체계 정립 : WTO 등 국제규범에 따라 국제표준과 부합한 국가표준을 기술기준에서 인용하여 기업의 표준-기술기준 불일치로 인한 애로 해소

○ 2016.3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2016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수립
-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 스마트·융복합 신산업 표준화 확대, 제조기반 서비스산업 표준화 추진, 시장주도형 국제표준 선점 강화
- 기업성장 지원 표준기반 확충 : 기업친화형 표준적합성 체계 확립,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산업의 측정표준 품질 선진화
-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 : 즐거운 생활 표준화 확산, 편리하고 건강한 생활 표준화 확대, 안전한 생활표준화 강화
-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확산 : 민간자율 표준활동 강화, 표준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소통·개방형 표준체계 혁신

○ 2017.3 『2017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수립
-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 ICT 융합 신성장 산업의 국제표준 선점으로 글로벌 신시장 창출 지원, 서비스산업 표준화를 통한 국가산업기반 강화, 반도체 인쇄전자기술 등 국제표준 선점으로 글로벌시장을 주도
- 표준기반 확충으로 기업의 성장을 지원 : 융합 신제품의 신속인증 등 기업친화형 표준적합성 체계 확립, TBT 애로해소 등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강화, 측정·참조표준 개발 확대로 기업의 신산업 창출을 지원
-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 확대 : 모바일 3D 콘텐츠 서비스 등 즐겁고 쾌적한 국민생활 표준화 확대, 스마트홈 서비스 등 편리하고 건강한 생활표준화 확대, 제품·식품·의료 등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국민생활 보장
-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구현 등 표준체계 혁신 : 표준전문기관 역할 강화로 민간주도의 표준 개발 및 관리, 수요자 맞춤형 표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가동,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제 구축·운영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0~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52개 기관	100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2(출연금)

3) '18년도 예산 산출 근거

○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 1,101백만원

- 표준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표준화 개발, 전략분야 표준화 로드맵 등 표준화 정책 연구

- 국가표준(안) 검토·심의 등을 위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 산출내역 :

* 연구용역 : 18과제 × 40백만원(2017년) → 15과제 × 40백만원(2018년) = 600백만원
* 회의수당 : 560회 × 0.1백만원(1회 평균수당) × 8명(2017년)
→ 605회 × 0.1백만원(1회 평균수당) × 8명(2018년) = 484백만원
* 인쇄비 등 기타비용 : 17백만원(2017년) → 17백만원(2018년)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1,797백만원

-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융합 신기술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표준화를 선도하여 시장 창출 및 수출 증대 지원

- 산업계의 표준화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국가표준 개발·관리에 대한 부분을 민간에 이양하여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조성

▪ 산출내역 : 114개 기술위원회(TC) × 15백만원(2017년)
→ 120개 기술위원회(TC) × 15백만원(2018년) = 1,797백만원

○ 표준화 실태조사 : 100백만원

- 「산업표준화법」 개정(시행 '15.7월)에 따라 정부는 매년 의무적으로 표준화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표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

- 산업분야별 국내 기업의 표준화 및 인증제품의 활용 실태 등을 조사

▪ 산출내역 : 3,000업체 × 0.06백만원(2017년) → 1,667업체 × 0.06백만원(2018년) = 100백만원

○ KS인증제품 시판품 조사 : 500백만원

- 불량 KS제품 시중유통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KS인증제품 중 품질 취약 품목 대상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표시제거, 판매정지 등 행정조치 수행

▪ 산출내역 : 400개 × 1회 × 1.5백만원(2017년)
→ 333개 × 1회 × 1.5백만원(2018년) = 500백만원

○ 표준이행확산기반구축 : 30백만원

- 세계 표준의 날 행사 개최를 통해 대국민 표준인식 제고 및 표준화 활동 유공자 포상

▪ 산출내역 : 세계 표준의날 행사개최 1회 × 30백만원(2017년)
→세계 표준의날 행사개최 1회 × 30백만원(2018년) = 30백만원

○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 80백만원

- 국내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표준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는 경진대회인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의 표준에 대한 인식제고

- 표준화 교육 주도국으로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국제대회로 개최('14~)

▪ 산출내역 :

* 대회운영비 : 과제개발비, 예·본선 과제 심사비, 통역비, 기타 운영비 : 50백만원(2017년)
→ 과제개발비, 예·본선 과제 심사비, 통역비, 기타 운영비 : 50백만원(2018년)

* 대회장 임차 : 30백만원(2017년) → 30백만원(2018년)

○ 표준화 교육 : 150백만원

- '표준교육 연구학교' 지정·운영 및 '찾아가는 표준교육'

* 표준교육 연구학교 : 지정학교에서 1년간 다양한 활동(포스터 그리기, 표준 신문만들기 등)을 통해 표준에 대한 교육

* 찾아가는 표준교육 : 표준전문강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1시간동안 표준과 관련된 강의를 제공(1학교당 100여명내외 교육 실시)

- 학교 교육의 주체인 초·중·고 교원대상으로 표준에 대한 중요성 및 교육방법에 대한 연수 실시

▪ 산출내역 :

* 연구학교 지정운영 : 5개교×100명×10만원(2017년)
→ 5개교×100명×10만원(2018년) = 50백만원
* 찾아가는 표준교육 : 50개교×100명×1만원(2017년)
→ 50개교×100명×1만원(2018년) = 50백만원
* 교사연수·교재개발 등 : 50백만원(2017년) → 50백만원(2018년)

○ 국가표준화혁신생태계 조성 : 300백만원

-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포럼* 개최('17.11.22.)를 계기로, 국제표준화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표준포럼 발족 및 한국에 사무국 설치·운영

* 김태년의원 주최로 주요국의 표준화전략을 공유,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논의

-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 대한 표준분과위원회를 구성·지원하여 민·관 표준화 협력 생태계 조성

*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국제표준포럼" 연계를 통해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세계 모범 사례 창출

▪ 산출내역(2018년 신설)

*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분과위원회 운영 및 표준 개발
: 10개×20백만원 = 200백만원(2018년)
*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포럼 운영 및 개최
: 통역비, 해외연사출장비, 회의장 임차료, 기타 운영비 = 100백만원(2018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신산업·신수요 분야의 국가표준개발율 (단위: %)	목표	55	65	65	70	70	국제표준화 동향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표준화 우선순위, 예산 등을 감안하여 신산업·신수요 분야의 국가표준 개발율 목표치 설정	∑신산업·신수요분야 국가표준 개발수/∑국가표준 개발수*100	국가기술표준원 내부 통계자료, 홈페이지
	실적	55	65	66	73	-			
	달성도	100	100	101.5	104.3	-			
표준올림피아드 참가자 만족도 및 표준인식도 (단위: 점)	목표	80	85	90	90	90	해당년도 표준올림피아드의 결과 및 효과 평가를 위하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목표치 설정	해당년도 전국 중·고등부의 표준올림피아드 참가자들의 만족도 및 표준 인식도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
	실적	82	95	91	90	-			
	달성도	102	112	101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4	○ KS 제정·정비 및 국제표준 부합화('14년말 KS 20,520종) - KS 제·개정 고시(6,108종) : 제정 982종, 개정 2,171종, 확인 2,010종, 폐지 945종 - (표준안개발) 의류치수 표준화 연구 등 16과제 - (정책·기타) 국가표준 정비 및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등 24과제 ○ 민간 중심의 상향식 표준화 체계 전환 - 신규 표준개발협력기관 6개 추가 지정, 총 60개 지정 운영 ○ 불량KS인증제품에 대한 시장사후관리 강화 - 최근 사회적 안전 이슈 및 소비자 민원 등에 따른 품질취약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보호를 위해 시판품 조사 확대 추진 ○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학생대표, 지도교사, 공무원 참가 → 국제대회로 격상시키기 위한 시범대회 운영 및 한국의 표준교육 시스템의 글로벌화 기반 조성
2015	○ KS 제정·정비 및 국제표준 부합화('15.6월말 KS 20,569종) - KS 제·개정 고시(680종) : 제정 122종, 개정 228종, 확인 257종, 폐지 73종 ○ 민간 중심의 상향식 표준화 체계 전환 - 표준개발협력기관 59개 지정 운영

	: KS 20,569종 중 15,812종(77%) 관리 이양 ○ 불량KS인증제품에 대한 시장사후관리 강화 - 국민 재산 및 신체 위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사회적 안전 이슈 및 소비자 민원 등에 따른 품질취약 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확대 추진 ○ 표준올림피아드 국제대회 실시 - 자국의 예선을 거치고 우리나라의 본선에 참여하도록 안내 - 일본, 페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르완다 등 5개국 참가 예정 - 향후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대회로 도약 준비 ○ 찾아가는 표준교육 대상학교 확대 - 전국 12개 시·도 1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표준교육 실시
2016	○ KS 제정·정비 및 국제표준 부합화('16.6월말 KS 20,521종) - KS 제·개정 고시(3,667종) : 제정 170종, 개정 1,510종, 확인 1,689종, 폐지 298종 ○ 민간 중심의 상향식 표준화 체계 전환 - 표준개발협력기관 58개 기관 지정 : KS 20,521종 중 15,198종(74%) 관리 이양 ○ 불량 KS인증제품에 대한 시장사후관리 강화 - 국민 재산 및 신체 위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KS인증제품의 품질 확보 및 소비자 민원 등에 따른 품질취약 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확대 추진 ○ 표준올림피아드 국제대회 실시 - 자국의 예선을 거치고 우리나라의 본선에 참여하도록 안내 - 일본, 페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르완다 등 5개국 참가 예정 - 향후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대회로 도약 준비 ○ 찾아가는 표준교육 대상학교 확대 - 전국 12개 시·도 1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표준교육 실시
2017	○ KS 제정·정비 및 국제표준 부합화('17.6월말 KS 20,211종) - KS 제·개정 고시(624종) : 제정 133종, 개정 182종, 확인 238종, 폐지 71종 ○ 민간 중심의 상향식 표준화 체계 전환 - 표준개발협력기관 57개 기관 지정 : KS 20,211종 중 15,313종(76%) 관리 이양 ○ 불량 KS인증제품에 대한 시장사후관리 강화 - 국민 재산 및 신체 위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KS인증제품의 품질 확보 및 소비자 민원 등에 따른 품질취약 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확대 추진 ○ 표준올림피아드 국제대회 실시 - 자국의 예선을 거치고 우리나라의 본선에 참여하도록 안내 - 향후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대회로 도약 준비 ○ 찾아가는 표준교육 대상학교 확대 - 전국 12개 시·도 1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표준교육 실시

	○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포럼’ 개최(‘17.11.22, 국회 헌정기념관) - 표준이 만들어 갈 더 똑똑한 스마트시티, 독일 인더스트리 4.0을 성공으로 이끄는 표준화 전략 등 4차 산업혁명에 있어 표준의 역할을 논의하는 장 마련 (주최 : 국회 김태년 국회의원실, 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표준협회, 참석 : 정세균 국회의장, 김태년 의원, 산업부 차관, 국가기술표준원장, ISO 차기회장, IEC 사무총장, 독일 인더스트리 4.0 표준화위원회 이사,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 등 300여명)

③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글로벌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국제표준 추세 및 산업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국가표준 개발·정비 지속 추진

* 국가표준 개발·정비(개정, 폐지 및 확인) 건수 : ('16) 3,667종 → ('17) 3,700종 → ('18) 3,750종

○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운영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급속한 기술발전과 다양한 시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 및 민간의 표준화 역량 강화

* 국가표준관리 민간이양 확대 : ('16) 74% → ('17) 76% → ('18) 76%

○ 청소년표준올림피아드대회를 전 세계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대표행사로 정착

○ 중·고등학교 정규 교과과정(기술·가정)에 “표준” 단원 추가 작업 추진

○ 국제표준포럼 구성·운영을 통해 국제표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및 미러포럼 역할 수행으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표준 제정을 통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포럼 표준 개발 추진 : (‘18) 10종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가표준 제·개정 절차> (산업표준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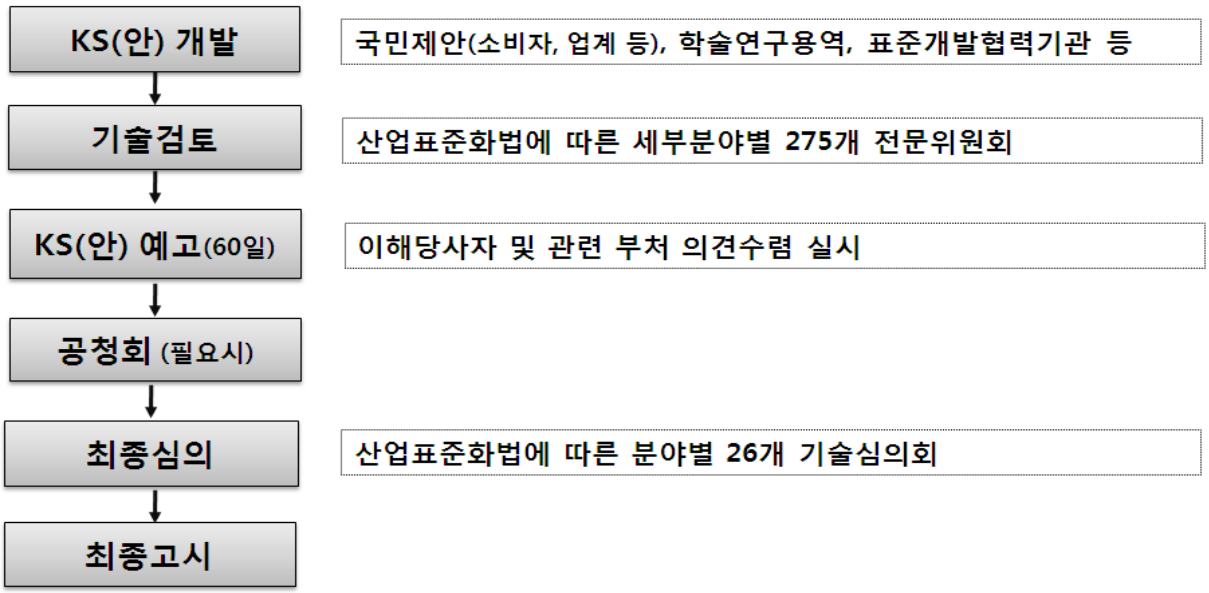

< 표준개발협력기관 사업지원 절차>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 운영요령)

표준이행확산기반구축 (표준의 날 행사)	공고 및 신청/접수 ► 서류심사 ► 포상자 선정 ► 기념식 기획 ► 기념식 개최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과제 개발 ► 대회 홍보 ► 예선대회 개최(온라인) ► 본선대회 개최(합숙) ► 결과 시상
표준화교육	연구학교 지정 ► 교사 W/S ► 연구학교 운영 ► 중간평가 실시 ► 운영보고회 개최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6	'17	'18	'19	'20	'21
'16~'20	4,287	3,919	4,287	4,287	4,287	
'17~'21		3,919	4,058	3,723	3,723	3,72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15년 국회(’14년 결산 상임위)1

- (지적사항) 국가표준활성화사업의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14년도 말 기준 표준개발협력기관 57개 중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한 기관이 20개에 달하고 있음

・(답변) 표준개발협력기관별 사업계획 수립시 수요분석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선별적 예산배정 및 주기적인 추진실적 모니터링 등을 통해 표준개발협력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

- (지적사항) 국민행복표준화는 생활 속 불편사항 해소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위한 것으로 표준화 일정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며, 환경부의 기술기준과 중복되거나 표준제정의 실효성이 없어 미추진된 과제가 다수 발생하였음

・(답변) 국민행복표준화 후보과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단계에서 이해당사자 및 유관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사전조사를 면밀히 실시할 계획임

○ ‘16년 국회(’15년 결산 상임위)

- (지적사항) 연구개발 과제의 연도말 집행을 지양하여 이월 방지 필요

・(답변) 시급한 사회적 이슈제기에 대한 정책 마련 및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앞으로는 조기 공고 및 과제 관리를 강화하여 사업비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가표준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추진
- 최근 국제표준 동향 및 산업추세를 반영하여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등을 추진하여 국내 글로벌 산업경쟁력 기반 구축
- 시장파급효과가 높은 유망 전략분야 중심의 선도적 국가표준화 추진
  - ①융복합, ②스마트IT, ③친환경·녹색, ④미래물류 분야별 원천기술의 국가표준화를 통한 산업인프라 조성 및 시장 조기진출 지원 추진

○ 국가표준 운영체계 개선
- 정부는 품질,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KS만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최신 국제표준 및 산업환경 추세에 맞게 기존 KS의 실시간 업데이트 등 선순환관리체계 구축
- 민간주도 표준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분야별 표준개발협력기관을 확대 운영하고, 국가표준 개발·관리 업무를 단계적으로 이양

○ 현재 국내대회인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를 국제대회로 개최하여 세계의 청소년이 한국의 표준을 접하고 우리의 수준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 마련

○ 표준화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표준에 대한 기초교육 확대
* 전국의 초등학교 6,000여개에 비해 표준화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은 미미한 상황

○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외에 대학생 표준화 강좌, 취업준비생 인턴십, 기업인 표준화 교육 등 표준교육 대상을 점차 확대 추진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산업체의 기술력 및 시장 중심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포럼 활동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국내외 전문가들의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민간의 표준화 역량 강화 및 민간 중심의 포럼 표준화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
* 공적표준화기구(ISO, IEC, ITU)에서는 신속하고, 비정형적인 논의에 한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17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상위평가)에서 보통으로 평가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4	5,040	5,040	68	-	-	-	5,108	4,985	98.9	97.6	37	86
2015	4,497	4,497	37	-	-	-	4,534	4,442	98.8	98.0	25	67
2016	4,287	4,287	25	-	-	-	4,312	4,283	99.9	99.3	-	29
2017	3,919	3,919	-	-	-	-	3,919	3,413	87.1	87.1	-	1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4	2,070	2,070	2,070	2,070	−	2,070	2,070	−	−	100
2015	2,070	2,070	2,070	2,070	−	2,070	2,070	−	−	100
2016	1,911	1,911	1,911	1,911	−	1,911	1,911	−	−	100
2017. 12월기준	1,872	1,872	1,872	1,872	−	1,872	1,872	−	−	100

2) 주요 결산사항

2014	- 이월 : 연구용역 수행기간 지연으로 37백만원 - 불용 :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86백만원
2015	- 이월 : 연구용역 수행기간 지연으로 25백만원 - 불용 :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67백만원
2016	- 이·전용 등 사유 : 일반수용비(210-01) 비목으로 계상된 행사위탁 용역사업을 사업성격에 맞게 위탁사업비(210-15) 비목으로 변경 - 불용 : 집행잔액 29백만원
2017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국가표준화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 설명서

『국가표준화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 설명서

《 국가표준화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 개요 》

○ 4차 산업혁명 관련 표준 선도국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과의 표준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포럼을 우리나라 주도로 발족하고,

- 사무국을 한국에 설치함으로써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선점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강화
-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분야의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한 포럼 표준화 추진

○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국가표준화 체계 혁신을 통하여 기업 및 소비자 수요에 대응

□ 4차 산업혁명 시대 표준의 역할

○ 표준은 단순성·호환성·안전성·최저품질·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는 **사람·기기·시스템간 상호운용성을 제공**

구 분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기	18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
핵심기술	증기기관	전기에너지	반도체·인터넷	빅데이터IoTAI
생산 방식	생산 기계화	대량 생산	부분 자동화	시뮬레이션을 통한 자동생산
산업 및 사회의 변화	영국 섬유공업의 거대산업화	컨베이어 벨트기반 대량 생산, 미국의 최강대국화	디지털혁명으로 미국 주도의 글로벌 IT기업 부상	사람사물공간의 초연결 초지능화, 산업사회시스템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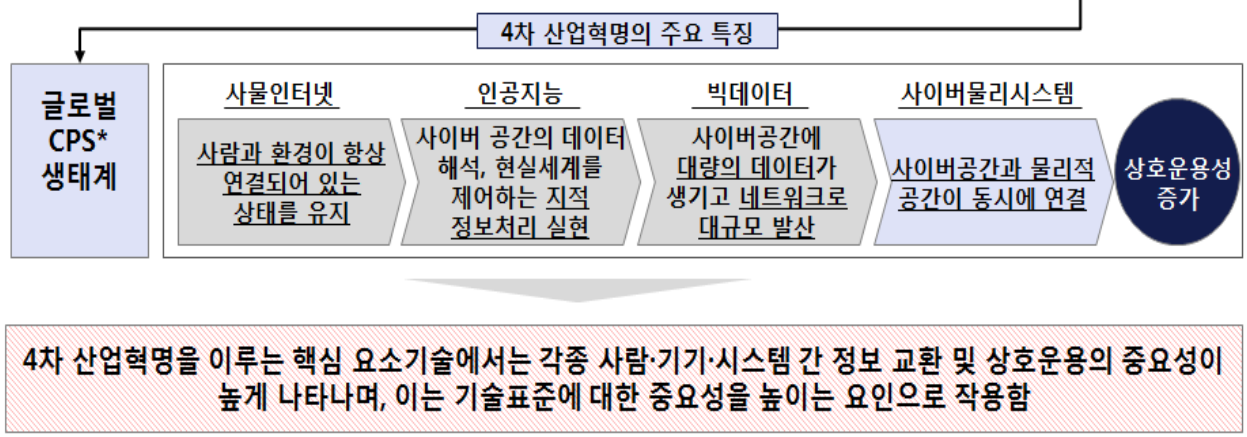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을 이루는 핵심 요소기술에서는 각종 사람·기기·시스템 간 정보 교환 및 상호운용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나며, 이는 기술표준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Source :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IT & Future Strategy (2014.05.30)

□ 사업 필요성

○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대규모 변화를 초래하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표준의 역할이 더욱 긴요**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산업체의 기술력 및 시장 중심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포럼 활동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 OCF(Open Connectivity Foundation) : 삼성전자, 인텔, 시스코 등 100여개 회사가 참여하여 사물인터넷분야 표준을 제정하는 포럼

- 국내외 전문가들의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민간의 표준화 역량 강화 및 민간 중심의 포럼 표준화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

* 공적표준화기구(ISO, IEC, ITU)에서는 신속하고, 비정형적인 논의에 한계

□ 국제표준포럼 구성·운영 계획

○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포럼* 개최(11.22일)를 계기로, 국제표준화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표준포럼 발족 및 한국에 사무국** 설치·운영

* 김태년의원 주최로 주요국의 표준화전략을 공유,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논의

-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 대한 표준 분과위원회를 구성·지원**하여 **민·관 표준화 협력 생태계** 조성

*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국제표준포럼" 연계를 통해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세계 모범 사례** 창출

○ **국제표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및 미러포럼 역할 수행**으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표준 제정**을 통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포럼과의 협력 강화

□ 예산구성 및 산출내역

○ 신규 세부사업 신설보다는 **"국가표준활성화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국가표준화 혁신생태계 조성"**을 신설

내역사업명	소요예산	산출내역
국가표준화 혁신생태계조성	300백만원	○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포럼 및 국제표준 개발(200백만원) ○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포럼 운영 및 개최(100백만원)

사 업 명
(11) 신기술제품인증 (37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일반회계	110	114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4	301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개발기술의 실용화	신기술제품인증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인증산업진흥과	한상미	황성범 연구관	-
		043-870-5500	043-870-5509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A
신기술제품인증	2,137	2,223	2,223	2,066	2,066	△157	△7.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6					2017('17.12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137	2,137	2,137	-	-	2,223	2,223	2,223	2,187	-	-	2,066
・신기술인증 등 지원	1,710	1,710	1,710	-	-	1,710	1,710	1,710	1,705	-	-	1,486
・인증제품판로지원 및 확산	427	427	427	-	-	320	320	320	320	-	-	300
・인증제품 신뢰성제고	-	-	-	-	-	30	30	30	10	-	-	30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지원	-	-	-	-	-	163	163	163	163	-	-	250
○ 비목별 분류(합계)	2,137	2,137	2,137	-	-	2,223	2,223	2,223	2,187	-	-	2,066
・일반수용비(210-01)	-	-	-	-	-	57	57	57	52	-	-	37
・시험연구비(210-13)	-	-	-	-	-	30	30	30	10	-	-	30
・사업추진비(240-01)	-	-	-	-	-	2	2	2	2	-	-	2
・일반연구비(260-01)	-	-	-	-	-	30	30	30	30	-	-	50
・민간경상보조(320-01)	2,137	2,137	2,137	-	-	2,104	2,104	2,104	2,104 [1,756]	-	-	1,94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내 최초 신기술(NET), 신제품(NEP), 우수 재활용제조제품(GR) 및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품을 발굴・평가・인증하여 국내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신속한 시장진출 확보 및 판로지원 강화

NEP인증 (New Excellent Product)	국내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평가, NEP마크 부여하고 판로 등을 지원
NET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	국내최초 신기술 또는 대체기술을 평가하여 NET마크 부여하고 실용화를 지원
GR인증 (Good Recycled)	자원·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우수품질의 친환경 재활용 제조제품을 평가하여 GR마크를 부여하고 판로 등을 지원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국내 인증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아 시장출시가 곤란한 융합신제품에 대해, Fast-Track(6개월 이내)으로 필요한 인증을 부여하여 신속 시장출시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신제품(NEP)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 촉진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 신기술(NET) 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 촉진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 촉진사업)
-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재활용 제품의 규격·품질 기준)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 산업융합촉진법 제3장(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5. 5.10 : 제15회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기계류· 부품·소재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를 시행토록 결정

○ ‘04.11.25 : 각부처의 유사기술 및 제품인증에 대한 정부인증제도 통폐합(5개 부처, 7개 신기술 인증 업무를 신기술·신제품 인증으로 통합 정비)

○ ‘06.10.30 : NEP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화(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 ‘07.10.29 : 공공구매제도 주관부처를 산자부에서 기술표준원으로 변경

○ ‘08. 2.29 : 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하던 IT분야 신제품(NEP)인증 업무 및 과기부의 신기술(NET)인증 업무를 기술표준원으로 이관

○ ‘11.10.6 :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제도 도입

○ ’16.2.17 : 제9차 무역투지진흥회의,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신속 시장 진입지원체계로서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센터” 구축 등 보고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 ~ 계속
- 사업규모 : NEP, NET, GR 등 7,000여건 인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전 산업분야 인증업체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신제품(NEP)인증 평가기관*	7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57조
(사)한국신제품인증협회	8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신제품(NEP)인증및구매촉진등에관한운영요령 제37조
(사)자원순환산업인증원	89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 제36조
신기술(NET)인증 평가기관*	4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71	산업융합촉진법 제13조,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19조의2

* 신제품 및 신기술 인증 평가기관은 현재 공모 진행 중으로 향후 평가를 통해 지정예정(18년2월)

3) ’18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신기술인증 지원(평가비용지원, 제도개선 등) : 1,486백만원

- NEP, NET, GR인증 483건×3.86(단가)* ×75%= 1,397백만원(320-01, 민간경상보조), (신기술제품 등 인증신청증가로 ‘17년 지원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나, ’18년 예산안 요구 감소에 따라 ‘17년 대비 224백만원 감축)

  * 1건당 평가비용 (‘17년대비 단가변동 없음)

    = {1차심사(서류·대면) 15명 + 2차심사(현장) 4명 + 3차심사(종합) 20명}

    ×0.66(참석율)×0.15(수당) = 3.86백만원

- 인증제도(NEP,NET,GR) 효율화를 위한 조사・분석 등 = 2백만원(240-01, 사업추진비), (‘17년과 동일)
- 연구용역비(인증제도 개선방안, 만족도 조사 등 2건) : 50백만원(260-01, 일반연구비),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위해 ‘17년 대비 20백만원 증액)
- 인증업무 관련 법률자문(행정소송 등), 인증평가시스템 개선 등 : 37백만원(210-01, 일반수용비), (‘17년 대비 20백만원 감축)

○ 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확산 : 300백만원(320-01, 민간경상보조)

-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 포상심사 및 촉진대회 : 140백만원 (‘17년 대비 20백만원 감축)

  * 임차료(65백만원), 심사수당(25백만원), 기획대행비 및 인쇄비 등(50백만원)

- 공공구매활성화 등 인증기업 판로확대지원 : 160백만원 (‘17년과 동일)

  * 160백만원=188백만원×85% : 임차료(110백만원), 인쇄비 등(50백만원)

○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사후관리) : 30백만원(210-13, 시험연구비), (‘17년과 동일)

- 22품목×1.4백만원(수당, 시험검사 수수료 등)* = 30백만원

  * 심사위원수당 3명×15만원, 여비(교통비·식비 등) 3명×4만원, 시험검사수수료 87만원/품목당

○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운영 및 활성화 : 250백만원(320-01, 민간경상보조)

- 제도운영(인증평가) 및 규제현황 조사분석 등 : 228백만원(제도의 본격적인 활성화에 따른 수요증가로 ‘17년 대비 65백만원 증액)

  * 인증기준 개발 39백만원(13건), 인증조사・분석 189백만원(7건)

- 적합성인증제도 정책홍보 등 : 22백만원(‘17년 대비 1백만원 감축)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공기관 인증제품 구매실적 (단위: 억원)	목표	13.5	13.7	13.9	14.8	15.2	유효인증 품목당 평균 구매액('15년 14.8억원→'16년 15.6억원) 증가에 따라 '17년 대비 상향수준의 목표 설정	공공기관 인증제품 구매실적 = A / B (A : 전년도 공공기관 구매실적, B : 전년도 인증 유효기간내 제품수)	공공기관 구매실적 결과보고서
	실적	13.9	14.8	15.6	-	-			
	달성도	103%	108%	112%	-	-			
공공구매품목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목표	65.0	66.0	67.0	69.0	69.0	인증제품 관련 수요자중심 정보채널 다각화, 인증제품의 신뢰성 유지·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17년 수준으로 목표 설정	공공기관 의무구매 담당자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만족도 = A / B (A: 공공구매 만족도, B : 공공구매 만족도 조사 총점) x 100점	전문기관의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66.4	68.6	69.2	-	-			
	달성도	102%	104%	10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4	① 신기술 인증 평가지원 - 신제품(NEP) 인증(신청 166건/인증 28건) - 신기술(NET) 인증(신청 479건/인증 111건)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신청 151건/인증 86건) ② 인증제품 판로지원 - 워크숍 2회(226명) - 설명회 5회(791명) - 구매상담회 5회(483명) ③ 인증제품 사후관리 - '14년 사후관리 대상 153건 중 153건 완료(NEP : 68건 , GR : 85건)
2015	① 신기술 인증 평가지원 - 신제품(NEP) 인증(신청 227건/인증 61건) - 신기술(NET) 인증(신청 72건/인증 427건)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신청 92건/인증 88건) ② 인증제품 판로지원 - 워크숍 1회(123명) - 설명회 3회(841명) - 구매상담회 5회(412명) ③ 인증제품 사후관리 - '15년 사후관리 대상 89건 진행(NEP : 54건 , GR : 35건)
2016	① 신기술 인증 평가지원 - 신제품(NEP) 인증(신청 252건/인증 47건) - 신기술(NET) 인증(신청 511건/인증 79건)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신청 105건/인증 69건) ② 인증제품 판로지원 - 워크숍 1회(122명) - 설명회 5회(1224명) - 구매상담회 3회(223명) ③ 인증제품 사후관리 - '16년 사후관리 대상 건 64완료(NEP : 29건 , GR : 35건)
2017	① 신기술 인증 평가지원 - 신제품(NEP) 인증(신청 336건/인증 36건) - 신기술(NET) 인증(신청 441건/인증 83건)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신청 113건/인증 85건) ② 인증제품 판로지원 - 워크숍 1회(113명) - 설명회 5회(702명) - 구매상담회 13회(623명) ③ 인증제품 사후관리 - '17년 사후관리 대상 105건 완료(NEP : 59건 , GR : 46건)

③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내에서 개발된 미래산업 선도 신기술 제품의 기술성 및 품질·성능을 평가하여 우수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수입대체 등 개발기술의 경쟁력 제고

- 수출 우수기업 가산점 부여,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등의 제도를 통하여 신제품의 세계 시장진출과 판로지원 기반 구축

- 인증관련 애로를 겪고 있는 융합 신제품의 적시 시장 진입을 지원함에 따라 융합 산업분야 시장선점 및 활성화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GR인증 집행절차 (소요기간 : 90일)

신청서접수	⇒	1차 인증평가 (서류·면접, 현장심사)	⇒	2차 인증평가 (종합심사)	⇒	인증서 교부, 공고, 사후관리 등
국표원		국표원, 인증지정기관		국표원		국표원

② NEP인증 집행절차(소요기간 : 90일)

신 청
- ㅇ **신제품인증신청서 접수**

인증 평가위원회
- ㅇ **평가기관**
  -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위촉(학계, 연구소, 관련업체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
  - 신청제품의 신기술성 평가
  - 제품평가 기준 작성
  - 현장심사위원(3인이상) 선정
- ㅇ **신청업체**
  - 신청제품에 대한 기술성 설명
  - 평가위원 질의에 응답

현장심사 제품심사
- ㅇ **현장심사위원**
  - 고유기술·제품 개발 여부의 현장 확인
  - 실무평가위원회 결과의 사실 확인
  - 안정된 품질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가능여부 판단
  - 현장심사 평가표 작성
  - 시료 채취 후 시험 의뢰
- ㅇ **신청업체**
  - 신청제품의 개발·생산·시험평가 현장 안내
  - 현장심사위원 질의에 응답

인터넷 예고
- ㅇ **국가기술표준원**
  - 신청제품의 신기술성에 대한 관련 업계 의견 수렴(30일간)

인증 심의위원회
- ㅇ **평가기관**
  - 인증심의위원회 위원 위촉(현장심사위원, 학계, 연구소, 관련 단체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
  - 종합평가보고서 위주로 신청제품 평가
- ㅇ **신청업체**
  - 신청제품에 대한 기술성 설명
  - 평가위원 질의에 응답

신제품인증
- ㅇ **국가기술표준원**
  - 인증서 발급

③ NET인증 집행절차(소요기간 : 1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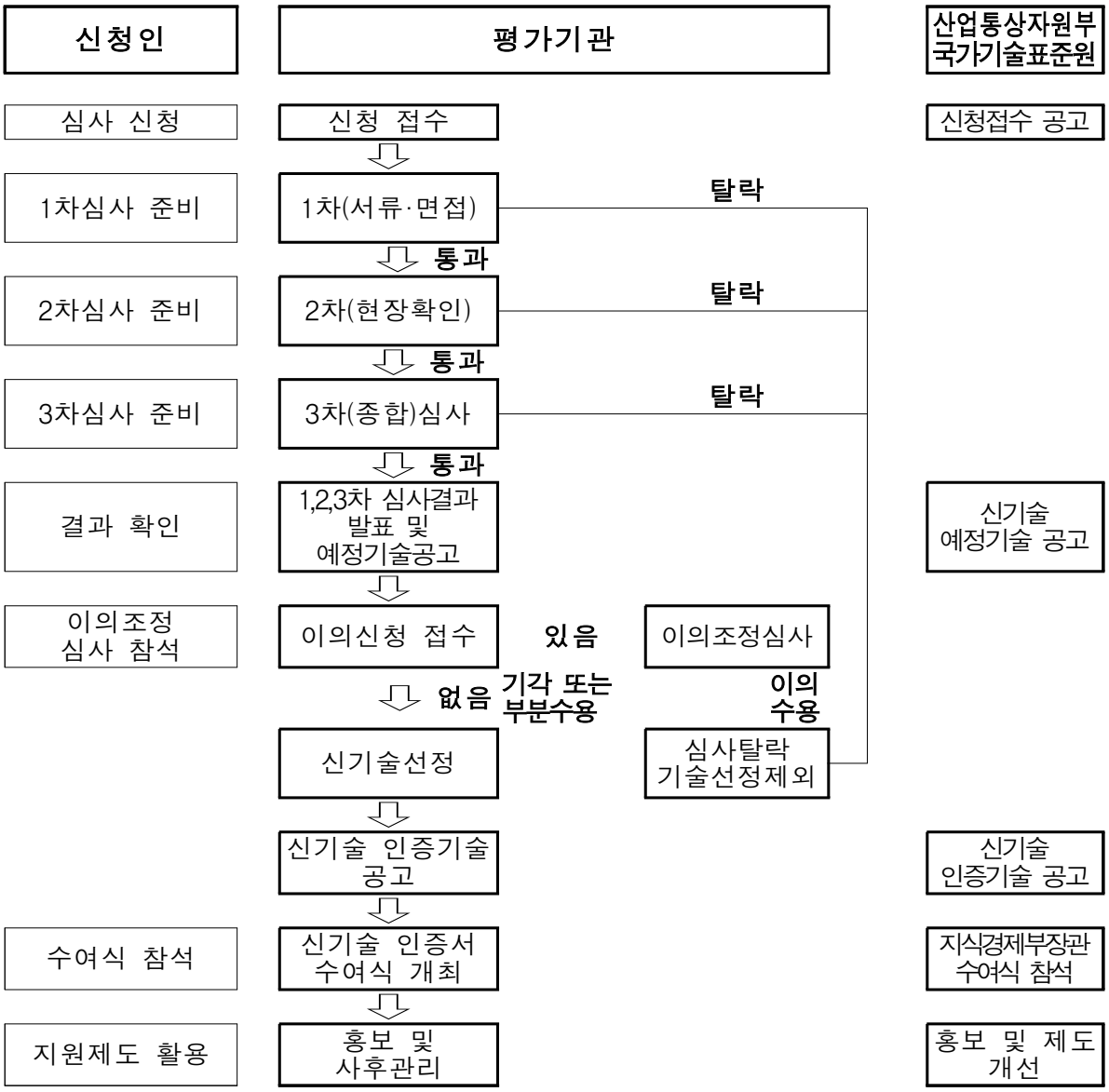

④ **인증제품 판로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28조

⑤ 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6개월)

신 청

○ **제조자등(신청인)→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신청서 및 별첨 자료 제출

접수사실 통보

○ **접수기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신청서 사본 및 별첨 자료 송부
- 접수 후 5일 이내

심사대상 여부 통보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신청인**
- 심사대상 여부와 예정기간 등 통보
-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적합성 인증 심사

○ **인증 관련 사항 협의**

협의체 구성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체 구성**
-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 신청 후 30일 이내

협의체 회의 및 안건 의결

○ **적합성인증 협의체 회의 및 안건 의결**
- 적합성 인증기준
- 적합성인증 시험·검사 방법 및 절차
- 적합성 인증 시험·검사기관
- 그 밖에 적합성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결과 통보

○ **적합성인증 협의체 회의 결과 통보**
- 협의체→신청인, 시험·검사기관, 관련 기관
- 신청 후 90일 이내

시험·검사 및 결과 통보

○ **제조자등→시험·검사기관**
-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료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시험·검사기관→중앙행정기관**
- 시험·검사 결과통보

인증서 발급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신청인**
- 6개월 이내에 적합성 인증 결과서 및 적합성 인증서 발급
-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심사기준 등의 고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적합성 인증 후 10일 이내 홈페이지 또는 관보 게재
- 의견수렴 후 심사기준 등을 관보고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나인 경우에 대한 절차임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6	'17	'18	'19	'20	'21
'16~'20	2,137	2,223	2,137	2,137	2,137	
'17~'21		2,223	2,066	2,223	2,223	2,22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상임위) 지적

① 신기술인증제도 활성화 필요

○ (지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온 오프라인 설명회 확대 등 인증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대책) 기업이 인증신청 전에 인증심사 기준 등 인증획득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률 제고 유도**

- 관련 정보포털 강화 및 제도 설명회 개최 확대

②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철저

○ (지적) 인증제품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 유도 필요

○ (대책) 불량 인증제품 유통으로 인한 인증제품의 신뢰도 하락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 강화 추진**

③ 신기술제품 공공기관 구매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확대 지원 필요

○ (지적) 의무구매 실적이 부진한 교육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홍보강화 필요

○ (대책) 현, 광역시 도(215개) 단위의 홍보에서 시 군 구 단위(약 400개)까지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음

④ 신제품(NEP) 문제점과 개선책 미흡

○ (지적) 민간협회 보조사업을 제외한 국가기술표준원 직접수행 예산에 대해 신제품(NEP)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감액

○ (대책)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향후 추진방향

○ 수출 우수기업 가산점 부여,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등의 제도를 통하여 신제품의 세계 시장진출과 판로지원 기반 구축

○ 최신 기술의 융합, 제품·서비스 융합 등 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

□ 세부 추진계획

○ 강소기업이 개발한 NET, NEP, GR,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품 등 우수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하여 친환경 성장 구현 및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

- 우수 제품 인증을 통해 인증 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의 구매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개척 지원

- 기업 성공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해 인증 지원제도 미활용 초기중소기업을 추가 발굴·인증 하여 우수 기술제품 사장화 방지

○ 국내·외 신기술 트랜드 분석 및 신기술 인증제도의 정책 다변화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 인증 연계 방안 마련

○ 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인증애로 발굴통로 다각화 및 적합성 인증제도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인증 관련 애로지원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14년)**

- 2013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확인·점검 결과(기재부)
  · 개발기술의 실용화(신기술제품인증) : 62점(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4	1,943	1,943	-	-	-	-	1,943	1,932	99.4	99.4	-	11
2015	2,248	2,248	-	-	-	-	2,248	2,247	99.9	99.9	-	1
2016	2,137	2,137	-	-	-	-	2,137	2,137	100	100	-	-
2017	2,223	2,223	-	-	-	-	2,223	2,187	98.8	98.8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4	1,094	1,094	1,094	1,094	-	1,094	1,094	-	-	100
2015	1,860	1,860	1,860	1,860	-	1,860	1,860	-	-	100
2016	2,137	2,137	2,137	2,137	-	2,137	2,137	-	-	100
2017.12월기준	2,104	2,104	2,104	2,104	-	2,104	1,756	-	-	83.5

2) 주요 결산사항

2014	- 경상경비절감계획에 따라 11백만원을 불용
2015	- 경상경비절감계획에 따라 1백만원을 불용
2016	- 불용액 없음
2017	- 집행 중, 불용예상액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제9차 대통령 주재 무역회의('16.2),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융합신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진입" 강화 필요

→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이후 '15년말까지 인증제품이 4건에 불과하였으나 '16.3월 적합성인증센터 설립이후 신규발굴 건이 23건으로 급증

□ 개 요

○ **(필요성)** 기존 **법령 미비**로 산업융합 신제품의 **'판매 불가'** 또는 **'시장출시 지연'**이라는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작용할 때,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 필요

- 융합신제품의 경우, **기존 인증체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새로운 **인증기준 마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시장출시가 어려움**

  * 트럭과 지게차가 결합된「트럭지게차」의 경우, 건설기계 및 자동차 분류에 따른 관련법·규정으로 인해 시장 출시까지 총 3년 9개월이 소요됨

  → 반면,「산업용 융합안전모」는 적합성인증제도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시장출시

○ **(목적)** 융합신제품 중 국내 **인증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아** 시장출시가 곤란할 경우, **Fast-Track(6개월 이내)**으로 시장출시에 필요한 인증 부여

- **적기 시장출시**로 시장선점 등 **기업경쟁력 강화** 및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가능

○ **(절차)** 소관부처 중심으로 **적합성 인증협의체**를 구성, 인증절차 진행

인증신청 접수 (소관부처)	⇨	적합성인증 협의체 구성 (30일 이내)	⇨	인증기준 마련 (90일 이내)	⇨	인증 심사	⇨	인증서 발급 **(6개월 이내)**

□ 추진 실적

○ (기반구축) 적합성인증 획득과 관련한 **대표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표원 內 **적합성 인증 센터** 개소('16. 3. 24.)

< 센터개소 이후 실적 >

- **인증센터 개소 이후 23건이 발굴**되어 접수·신청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5건은 접수**되어 산업융합촉진법 상의 절차가 진행
- 나머지 18건은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적합성 인증 제도 활용 대상 여부를 검토 中

사 업 명
(12)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373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110	114
명칭					산업·중소기업	산업진흥고도화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6	301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무역기술장벽대응기반강화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정책과	정 석 진	안 광 희	이 보 하
		043-870-5520	043-870-5522	043-870-552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A
무역기술장벽대응 지원	4,051	4,380	4,380	4,100	4,100	△280	△6.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6					2017('17.12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4,059	4,059	4,051	-	8	4380	4380	4380	4,359	-	21	4,100
·해외기술규제 조사·분석 및 대응지원	2,350	2,350	2,350		0	2,860	2,860	2,860	2860		-	2,655
·TBT 대응 및 국제 협력 지원	299	299	298		1	298	298	298	294		4	288
·FTA·TBT 협상 이행 강화	410	410	403		7	395	395	395	378		17	370
·한·중 FTA TBT 종합지원	1,000	1,000	1,000		0	827	827	827	827		827	787
○ 비목별 분류(합계)	4,059	4,059	4,051	-	8	4,380	4,380	4,380	4,359	-	21	4,100
·일반수용비(210-01)	272	272	272		0	173	173	173	172		1	168
·임차료(210-07)	50	50	50		0	50	50	50	50		0	50
·국외업무여비(220-02)	115	115	114		1	115	115	115	113		2	112
·사업추진비(240-01)	12	12	12		0	15	15	15	14		1	13
·일반연구비(260-01)	3,610	3,610	3,603		7	4,027	4,027	4,027	4,009		17	3,7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관세, 수량제한 등 눈에 잘 보이는 무역장벽은 점차 완화되고 있는 반면, 기술상의 무역장벽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필요

* WTO TBT 통보문 추이 : ('13) 2,142건 → ('14) 2,239건 → ('15) 1,988건 → ('16) 2,336건

** '15년 비관세장벽의 관세 환산치는 13.7%로, 세계평균관세인 7.7% 보다 높고, 그 중 무역기술장벽이 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TBT 7.3%, SPS 3.5%, 기타 2.9%, 2015년 OECD)

- WTO/TBT 협정의 효율적인 이행, TBT 업무의 국내 총괄조정기능 및 TBT 중앙사무국으로서 대외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수출 기업의 TBT 애로 해소를 위한 TBT통보문 분석, 업계전파, 의견수렴, 국제대응・협상 및 정보제공 지원

*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통관절차, 위생검역 조치, 시험·인증 등 기술규제 장벽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므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수출시 제약요건으로 작용하는 해외 기술규제 애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지원근거(법적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제26조의2 (무역기술장벽 관련 시책의 추진), WTO TBT 협정 제2.2조, 제10.1조, 제10.2조, 한·미 FTA 협정('07)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 ① 정부는 산업표준, 정보・통신표준, 환경기준, 보건 및 안전기준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새로운 표준을 제정한 때에는 제정한 내용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의2** ① 정부는 국가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가 국제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적합성평가 절차와 달라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이하 "무역기술장벽"이라 한다)가 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및 국내·외 협력
2.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WTO/TBT 협정('95)** 제10.1조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및 다른 회원국국내의 이해 당사자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문의에 응답할 수 있고 아래에 관한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문의처가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제10.2조 그러나 법적 또는 행정적 이유로 인하여 회원국이 둘 이상의 문의처를 설치하는 경우, 이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게 각 문의처의 책임의 범위에 한하여 완전하고 분명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는 잘못 송부되어진 모든 문의가 정확한 문의처로 신속히 전달되는 것을 보장한다.

○ **한·미 FTA 협정('07)** 제9.6조 (투명성) 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그 제안을 통보할 때에, 이와 동시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미합중국 질의처, 또는 이 장의 부속서 9-가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조정자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제안을 전달한다.

제9.8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부속서 9-가에 규정된 대로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의 점검

나.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채택·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문제의 신속한 처리

다.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개선에 대한 협력 증진

라.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 영역의 정부 및 비정부 적합성 평가기관을 포함하여, 적합성 평가기관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제안의 검토 원활화

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장의 이행에 관하여 공동위원회에 보고

부속서 9-가(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는 다음이 주관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미합중국의 경우, 미합중국무역대표부 또는 그 승계기관

○ **OECD 규제개혁보고서('07.4)**

Conclusions and policy options *3. Strengthen efforts to avoid unnecessary trade restrictiveness and further promote international harmonisation of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 Encourage greater co-ordination between ministries in the area of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viding KATS/MOFAT with greater authority for such co-ordination in its review under the 2nd National Standards Plan (2006-2010). In addition, the creation of a central WTO Enquiry Point would facilitate trade and increase transparency.

② 추진경위

- '06.6 FTA/TBT 협상 및 TBT 업무를 관장하는 기술규제대응과 신설
- '07.4 OECD 보고서 관련 국무조정실 TBT 중앙사무국 운영 계획보고
- '08.9 TBT 중앙사무국 개설 후 무역기술장벽(TBT) 전담 대응(예산 신설)
- '13.12 WTO/FTA-TBT 협상·이행 및 TBT 업무를 관장하는 기술규제대응국 신설
- '15.5.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기타결 FTA 국내보완대책』에 "한·중 FTA TBT 종합지원"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수출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18년도 예산 산출 근거

○ 해외 기술규제 조사 분석 및 대응지원 : 2,655백만원(△205백만원)

- WTO TBT 통보문 요약문 번역 및 현황조사 : 2,217건 × 70,000원/건 = 155백만원
- 주요 기술규제 조사 및 규제원문 심층분석 : 392건 × 5백만원/건 = 1,960백만원**(△40백만원)**
  * 400건 × 5백만원=2,000백만원(2017년) → 392건 × 5백만원=1,960백만원(2018년)
- TBT 미 통보문 주요 기술규제 번역·심층분석 : 375백만원(△125백만원)
  * 100건 × 5백만원=500백만원(2017년) → 75건 × 5백만원=375백만원(2018년)
- WTO/TBT 대응전략 및 방안마련 : 160백만원(△40백만원)
  * 5건 × 40백만원=200백만원(2017년) → 4건 × 40백만원=160백만원(2018년)
- 해외기술규제 조사·분석을 위한 대응회의체 운영 : 5백만원

○ TBT 대응 및 국제협력 지원 : 288백만원(△10백만원)

- WTO TBT 위원회 및 양자협력 회의 참가 : 112백만원(△3백만원)
  * 16.5건× 2명×3.5백만원= 115백만원(2017년) → 16건× 2명×3.5백만원= 112백만원(2018년)
- TBT 저변확대를 위한 전문가그룹 운영 및 대응 회의 개최 지원 : 50백만원
  * 행사 5회×10백만원
- TBT 저변확대를 위한 전문가그룹 운영 수당 : 20백만원
  * 수당 20회×1백만원
- TBT 대응 관련 국제법률 자문 : 40백만원
  * 4건× 10백만원 = 40백만원
- TBT 활용가이드 제작·배포 : 30백만원(△10백만원)
  * 4건× 10백만원 = 40백만원(2017년) → 3건× 10백만원 = 30백만원(2018년)
- 원문 번역비 등 : 28백만원(+5백만원)
  * 4건× 5.8백만원 = 23백만원(2017년) → 4건× 7백만원 = 28백만원(2018년)
- 무역기술장벽 국제협력 대응회의체 운영 : 8백만원(△2백만원)
  * 10백만원(2017년) → 8백만원(2018년)

○ FTA TBT 협상·이행 강화 : 370백만원(△25백만원)

- FTA TBT 제도분석 : 90백만원(△10백만원)
  * 2건× 50백만원 = 100백만원(2017년) → 2건× 45백만원 = 90백만원(2018년)
- FTA TBT 기술규정 분석 : 135백만원(△15백만원)
  * 3건 × 50백만원 = 150백만원(2017년) → 3건 × 45백만원 = 135백만원(2018년)
- FTA TBT·MRA 공동연구 : 145백만원
  * 2건×72.5백만원 = 145백만원

○ **한·중 FTA TBT 종합지원 : 787백만원(△40백만원)**

▪ China 기술표준분석 : 390백만원(+40백만원)

① 제품별 표준 분석(+60백만원) : 240백만원(120종×2백만원)(2017년) → 300백만원(150종×2백만원)(2018년)

② 책자제작(△10백만원) : 80백만원(800부×0.1백만원)(2017년) → 70백만원(700부×0.1백만원)(2018년)

③ 표준 전파 설명회 : 20백만원(1회×20백만원)

③ 중국표준구입(△10백만원) : 10백만원(2017년) → 0(2018년)

▪ FTA TBT 종합지원 포털 운영 : 80백만원

* 포털운영안정화 : 80백만원(웹로그분석개발 2인×8백만원, 운영비 32백만원, 디자인수정보완 32백만원)

▪ FTA TBT 애로 해소 지원 : 147백만원

① 애로지원컨설팅 : 60백만원(60건×1백만원)

② 中TBT정보 모니터링 및 분석 : 10백만원(100건×0.1백만원)

③ 규제심층분석 : 70백만원(14건×5백만원)

④ 협업채널 운영 : 7백만원(1회×7백만원)

▪ FTA TBT 교육 및 홍보 : 100백만원

① 실무/전문가과정 교육 : 30백만원(6회×5백만원)

② 중국현지교육 : 20백만원(1회×20백만원)

③ 동영상 콘텐츠 : 10백만원(1건×10백만원)

④ 지하철광고 : 24백만원(3개월×8백만원)

⑤ 책자/홍보물 디자인제작 : 16백만원(1식×16백만원)

▪ 현지 대응체제구축 : 70백만원

① 한·중 협의채널 구축(△20백만원) : 40백만원(2회×20백만원)(2017년) → 20백만원(1회×20백만원)(2018년)

② 한·중 협의채널 운영(△20백만원) : 30백만원(3회×10백만원)(2017년) → 10백만원(1회×10백만원)(2018년)

③ 초청 및 방문세미나(△52백만원) : 72백만원(4명×6회×3백만원)(2017년) → 국내설명회 : 20백만원(2회×10백만원)(2018년)

④ 기술규제 국내외 협의체 회의(12백만원) : 8백만원(1회×8백만원)(2017년) → 20백만원(4회×5백만원)(2018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무역기술장벽 (TBT)협상건수 (단위 : 건)	목표	33	35	57	71	75	WTO TBT대응 실적 증가 건수(9건)와 '16년도 미통보 대응 실적을 고려하여 '17년 목표 대비 '18년도 목표치를 설정	무역기술장벽(TBT) 협상 건수= 서면 건수 + 양자 협상건수 + 다자 협상(WTO TBT 위원회)건수	국가기술 표준원 통계
	실적	34	56	66	-	-			
	달성도	100	160	115	-	-			
무역기술장벽 (TBT)대응 만족도 (단위 : %)	목표	70.0	72.2	72.2	72.7	74.0	'16년 증가율의 50%를 '17년도 목표 대비 '18년도 목표치를 상향 설정	TBT 대응 기업만족도 = 전체 만족도를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균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주)코리아데이타 네트워크
	실적	70.4	71.3	73.5	-	-			
	달성도	100	98.7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4	① TBT통보문 번역 및 배포 : 1,634건 (TBT통보문 원문과 번역문을 TBT통합정보포털에 게제하고 자동경보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 ② TBT 종합정보허브(www.knowtbt.kr) 업그레이드 및 수요자 접근 편리성 확대 ③ TBT 컨소시엄 구성·운영 : 18개 단체 및 18개 품목협의회 운영 ④ FTA TBT 협정이행, 협상진행 및 여건조성(EU, 싱가폴, 사우디, 미국, 중국, 인니, 베트남, 한·중·일, 일본, 캐나다) 등 34건 ⑤ TBT 지방 순회 세미나 실시(5개지역)
2015	① TBT통보문 번역 및 배포 : 1,989건 (TBT통보문 원문과 번역문을 TBT통합정보포털에 게제하고 자동경보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 ② TBT 종합정보허브(www.knowtbt.kr) 업그레이드 및 수요자 접근 편리성 확대 ③ TBT 컨소시엄 구성·운영 : 27개 단체 및 25개 품목협의회 운영 ④ FTA TBT 협정이행, 협상진행 및 여건조성(EU, 싱가폴, 사우디, 미국, 중국, 인니, 베트남, 한·중·일, 일본, 캐나다) 등 25건 ⑤ TBT 지방 순회 세미나(19회), 산업분야·지역인증별 설명회(6회), TBT 세미나 개최(1회) 및 "TBT 홍보관"을 통해 현장 컨설팅(111건)
2016	① TBT통보문 번역 및 배포 : 2,336건 (TBT통보문 원문과 번역문을 TBT통합정보포털에 게제하고 자동경보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 ② TBT 종합정보허브(www.knowtbt.kr) 업그레이드 및 수요자 접근 편리성 확대 ③ TBT 컨소시엄 구성·운영 : 27개 단체 및 25개 품목협의회 운영 ④ 수출기업이 호소하는 TBT 애로 66건 중 36건을 해소

	⑤ FTA TBT 협정이행, 협상진행 및 여건조성(EU, 싱가폴, 사우디, 미국, 중국, 인니, 베트남, 한·중·일, 일본, 캐나다) 등 26건 ⑥ 중소기업을 위한 국내 TBT 설명회(27회), 국외 진출기업의 TBT 설명 및 애로발굴 설명회(2회) 및 수출기업 TBT 현장 컨설팅(125건) ⑦ 국내외 기술동향에 대한 뉴스레터(주간 52편, 월간 12편) 발행 ⑧ 홍보실시(MBC 라디오, 12월), 기획홍보(전자신문, 11월)
2017	① TBT통보문 번역 및 배포(2,406건, '17.11월 기준), 미통보 숨은규제 306건 발굴 및 업계 전파, 심층분석 687건(원문과 번역문을 TBT통합정보포털에 게제하고 자동경보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 ② TBT 컨소시엄 구성·운영 : 28개 단체 및 26개 품목협의회 36회 개최 ③ 수출기업이 호소하는 TBT 애로 74건 중 45건을 해소 ④ 수출확대를 위한 FTA 협상 및 이행위원회(RCEP 4차례협상, 한-이스라엘, 한-중-일3국 협상추진, 한-에콰도르 5차례협상, 한-인도 CEPA 2차례 협상, EFTA 영자회의, 한-EU 규제대회체회의, 한-아세안 대회체설립, 한-베트남 FTA 이행회의, 한-중FTA 전기전자제품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이행 후속 조치('17.9.27 TBT 위원회, '17.11.2 한중 적합성 소위)) ⑤ 중소기업을 위한 국내 TBT 설명회(29회), 국외 진출기업의 TBT 설명 및 애로발굴 설명회(4회) 및 수출기업 TBT 애로 컨설팅(90건) ⑥ 대중 수출기업 애로 컨설팅(64건), 일반교육(3회), 심화교육(14회), 맞춤형교육(17회), 중국 23개 기관 모니터링 정보수집(70건), 중점관리대상 10대 소비재 관련 기술표준분석(121건) ⑦ 기획홍보 10회(한국경제 4월, 전자신문 12월), 라디오 홍보(238회, MBC 12월), 2016년 무역기술장벽 보고서 발간 배포, 월간동향(11편), 뉴스레터(11편), 이슈리포트(5개분야) 제작 배포 ⑧ 인력양성을 위한 논문대회(11월) 및 대학강좌(서울대, 연세대 3학점), TBT 특강 실시(9회), 대학교재개발 및 발간(10챕터) ⑨ 민·관 대응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2월), 정책포럼구성운영(3개분과, 9월), 심포지엄 개최 및 유공자포상(12월)

③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TBT 통보문 요약문 2,000건 및 본문 내용 심층분석 약 500건 이상의 해외기술규제 분석 정보 제공

○ WTO/TBT 미통보문 약 300건 이상의 해외 기술규제 발굴 및 분석 정보 제공

○ 설명회, 세미나, 교육 등 정보 공유 및 기업애로 지원 활동 확대

○ WTO TBT 위원회 참여(연 3회) 및 양자 TBT 수시 협의를 통해 60건 이상의 해외기술규제에 적극 대응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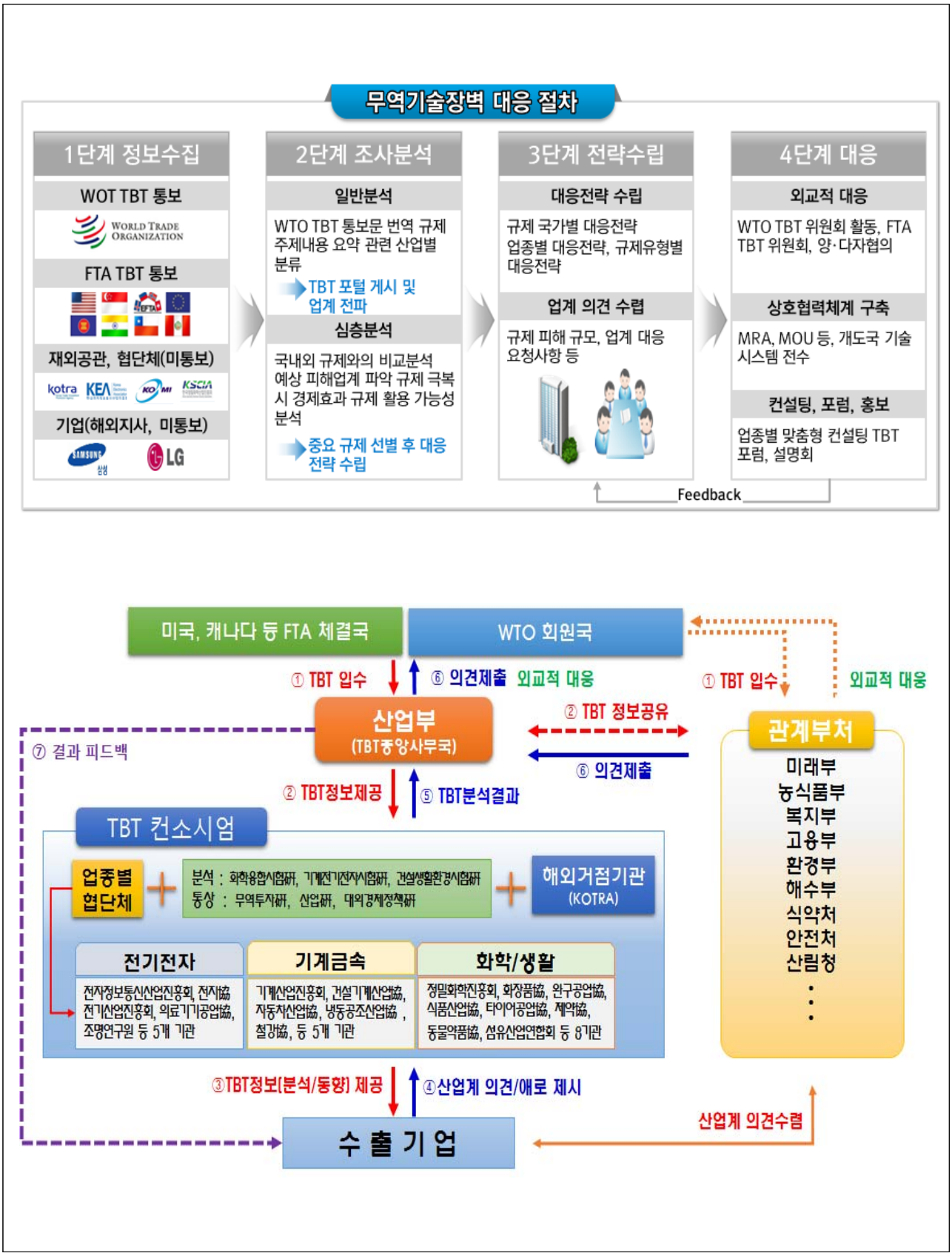
무역기술장벽 대응 절차
1단계 정보수집
WOT TBT 통보
WORLD TRADE ORGANIZATION
FTA TBT 통보
재외공관, 협단체(미통보)
kotra KEA KOMI KSCIA
기업(해외지사, 미통보)
SAMSUNG LG
2단계 조사분석
일반분석
WTO TBT 통보문 번역 규제 주제내용 요약 관련 산업별 분류
TBT 포털 게시 및 업계 전파
심층분석
국내외 규제와의 비교분석 예상 피해업계 파악 규제 극복 시 경제효과 규제 활용 가능성 분석
중요 규제 선별 후 대응 전략 수립
3단계 전략수립
대응전략 수립
규제 국가별 대응전략 업종별 대응전략, 규제유형별 대응전략
업계 의견 수렴
규제 피해 규모, 업계 대응 요청사항 등
4단계 대응
외교적 대응
WTO TBT 위원회 활동, FTA TBT 위원회, 양·다자협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MRA, MOU 등, 개도국 기술 시스템 전수
컨설팅, 포럼, 홍보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TBT 포럼, 설명회
Feedback
미국, 캐나다 등 FTA 체결국
WTO 회원국
① TBT 입수
⑥ 의견제출 외교적 대응
① TBT 입수
외교적 대응
산업부
(TBT중앙사무국)
② TBT 정보공유
⑥ 의견제출
관계부처
미래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
안전처
산림청
⑦ 결과 피드백
② TBT정보제공
⑤ TBT분석결과
TBT 컨소시엄
업종별 협단체
분석 : 화학융합시험센터, 기계전기전자시험센터, 건설생활환경시험센터
통상 : 무역투자센터, 산업센터, 대외경제정책센터
해외거점기관 (KOTRA)
전기전자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자협, 전기산업진흥회, 의료기기공업협, 조명연구원 등 5개 기관
기계금속
기계산업진흥회, 건설기계산업협, 자동차산업협, 냉동공조산업협 , 철강협, 등 5개 기관
화학/생활
정밀화학진흥회, 화장품협, 완구공업협, 식품산업협, 타이어공업협, 제약협, 동물약품협, 섬유산업연합회 등 8기관
③TBT정보(분석/동향) 제공
④산업계 의견/애로 제시
산업계 의견수렴
수 출 기 업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6	'17	'18	'19	'20	'21
'16~'20	4,059	4,380	5,694	6,263	6,889	
'17~'21		4,380	5,694	6,263	6,889	7,57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15년도 재정자율평가 결과 "우수(82점)"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민·관 협력의 범정부적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해 사무국 기능·역할 정립, 지원조직 강화 등 現 TBT 대응체계를 개선·발전할 필요

-「TBT 중앙사무국」 역할강화를 통한 범정부적 총괄기능을 확립하고 TBT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임시 지원 조직을 통한 대응체제를 개선하여 통합적인 TBT 대응지원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는 전담 지원센터 신설 추진

-「TBT 중앙사무국」 설치,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예산비목 변경 및 집행절차 개선

* 국표법 개정('16.12월 상정, 現 국회 계류 중) 및 신규 법률 개정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국가재정법」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보통
2)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3)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4)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4	2,000	2,000					2,000	1,974	98.7	98.7		26
2015	2,000	2,000					2,000	1,972	98.6	98.6		28
2016	4,059	4,059					4,059	4,051	99.8	99.8		8
2017	4,380	4,380					4,380	4,359	99.5	99.5		21

2) 주요 결산사항

2014	- 불용 : 연구용역 집행잔액(26백만원)
2015	- 불용 : 연구용역 집행잔액(28백만원)
2016	- 불용 : 연구용역 집행잔액(8백만원)
2017. 12월기준	- 불용 : 연구용역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21백만원)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지원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무역기술장벽(TBT)**이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음

○ '15년 비관세장벽의 관세 환산치는 **13.7%**로, 세계평균관세인 7.7% 보다 높고, 그 중 **무역기술장벽**이 **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95) 13.1% → ('00) 11.07% → ('05) 9.1% → **('15) 7.7%** (WorldBank DB)
** 비관세장벽 관세 환산치(13.7%) : TBT 7.3%, SPS 3.5%, 기타 2.9% (2015, OECD)

○ 특히, '16年 세계 각국이 WTO에 통보한 기술규제는 **2,336건**으로 WTO 출범 이 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 TBT 통보건수 : ('00) 632건 → ('05) 902건 → ('10) 1,874건 → **('16) 2,336건**
** (미국) 442건, (브라질) 128건, (이스라엘) 123건, (유럽연합) 100건, (한국) 83건 등

○ 또한, '16년 WTO 통보되지 않은 **숨어 있는 기술규제 275건** 발굴·전파하였으나, **숨은규제가 전체의 40%(약600건)정도 될 것으로 판단**됨

* 숨은규제 발굴 및 전파 건: ('14) 118건 → ('15) 195건 → **('16) 275건**
** 신규 STC 중 미통보[40%(115건/46건)]: ('14) 28%(47/13) → ('15) 51%(37/19) → ('16) 45%(31/14)

2. 지원 필요성

□ **무역기술장벽**은 외국 정부를 상대해야 하는 사안의 특성상 **기업이 자체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국가간 관세 장벽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기술기준, 인증 등 기술규제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음**

-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수출시 제약요건으로 작용하는 무역기술장벽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특히, 기술규제가 많은 **개도국**의 경우, 수출기업과 규제당국간 협상이 불가능 하고 규제정보 입수가 어려워 수출**기업 스스로 대응할 수 없음**

* 개도국 건/비중 : ('08년) 852건/68% → ('12년) 1,146건/80% → **('16년) 1,256건/76%**

- 따라서, 해외 기술규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분석하고, **해외 기술규제를 제거하거나 완화시켜야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3. 사업내용

□ **무역기술장벽 대응기반 강화 및 수출기업 애로 경감**

○ **(규제애로 해소)** WTO TBT 위원회 다자·양자회의 및 외국 규제 당국 면담 등을 통해 **외국의 무역기술장벽**(TBT) **애로**

* ('15) 60건 협의(24건 해소) → ('16) 81건 협의(42건 해소)

○ **(규제정보 전파)** '16년 TBT 통보문 2,336건, 미통보 규제 275건의 **기술규제정보**를 전파하고 그 중 475건은 **심층분석*** 후 **전파**

○ **(TBT 인식제고)** ①보고서발간, 주·월간 뉴스레터, 자동경보메일발송, ②국내·외 설명회·홍보부스, ③ 대학강좌 및 논문대회 실시

* △TBT대응보고서 등 2건, △주간(44건)·월간(11건) 레터, △경보메일 1,695건(24만명)
** △우석대 강좌(3학점), 표준·기술규제 정책 관련 논문대회('16.12月)

□ **숨은 규제 발굴, 정보제공, 컨설팅 등 수출기업 지원 강화**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방문 컨설팅*을 시범실시**하고 **TBT 대응 설명회** 개최 및 **자료제공** 확대

* 해외인증취득(중기부), 지재권(특허청), 통관(관세청) 등 관련부처와 협력

- KOTRA, 수출기업 해외지사 또는 해외 규제당국 모니터링을 통해 WTO 통보되지 않은 **숨은 기술규제 발굴**

□ **WTO/FTA** 등의 **협상 내실화**를 통한 **TBT 애로 해소**

○ **해외 기술규제**를 **분석·전파**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규제당사국과 **WTO TBT委를 통한 협상**을 실시하여 **애로 해소**

- **美, EU, 중국 등 FTA 체결국가**와 협의 등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고 **인도** 등 **개도국**과도 **상호인정**(MRA) 등 추진

□ **對중국 규제협력** 및 TBT **애로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사업 추진**

○ **(규제협력) 시험성적서 상호인정(MRA)**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한-중 적합성소위원회** 등을 통하여 **양국간 규제협력 강화**

* ('16) 전기전자제품(MRA 체결, 산업부) → ('17) 전자파(미래부) 협의 추진

○ **(애로해소) 중국 표준**(GB)을 **심층 분석**하여 **對中 수출업체**에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애로해소 컨설팅** 등을 위한 종합지원사업 실시

참고 2 2016년 WTO 기술규제(TBT) 통보문 현황

〈 '16년 기술규제(TBT) 통보문 : 총 2,336건 〉

- 최근 3년간 TBT 통보문은 평균 : 2,180건 이상

→ '15년 대비 약350건 증가하고, 개도국의 TBT 통보건수가 선진국보다 크게 우위

* 통보문 비율 : 선진국 24%, 개도국 : 66%, 최빈국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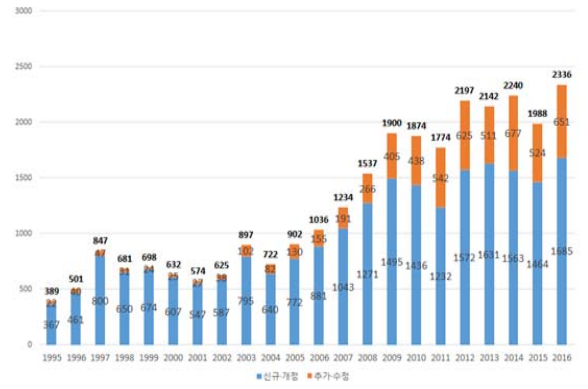

<년도별 기술규제 통보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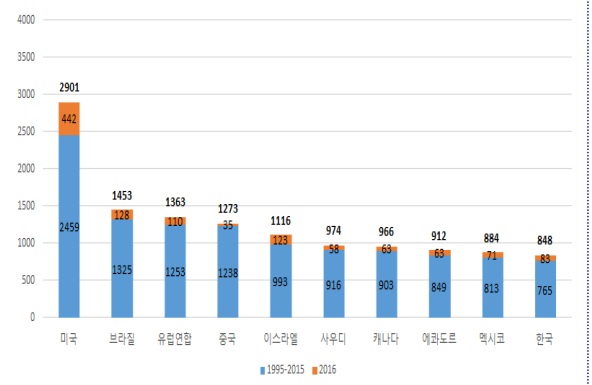

<주요국 기술규제 통보문 현황>

○ **(국가별)** 미국의 경우 전년 대비 285건에서 442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중국의 경우 식의약품 분야는 증가세를 보였으나63건에서 35건으로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임

* ('16년) 1위 미국 442건, 2위 브라질 128건, 3위 이스라엘 123건, 4위 EU 110건

○ **(산업별)** 식의약품, 전기전자, 화학세라믹의 3개 분야가 약 55% 차지

- 화학세라믹, 농수산품, 교통/안전, 에너지, 소재나노, 기계건설등의 분야는 '15년에 비해 크게 증가

대분류	2014년		2015년		2016년	
	통보건수	비율(%)	통보건수	비율(%)	통보건수	비율(%)
식의약품	826	36.9	717	36.1	701	30.0
전기전자	383	17.1	261	13.1	306	13.1
화학세라믹	202	9.0	216	10.9	299	12.8
생활용품	181	8.1	183	9.2	158	6.8
농수산품	95	4.2	38	1.9	197	8.4
교통/안전	133	5.9	119	6.0	186	8.0
기계	107	4.8	108	5.4	85	3.6
에너지	70	3.1	63	3.2	114	4.9
소재나노	87	3.9	57	2.9	85	3.6
건설	69	3.1	46	2.3	87	3.7
기타	54	2.4	144	7.2	44	1.9
정보디지털	24	1.1	35	1.8	51	2.2
바이오환경	9	0.4	1	0.1	23	1.0
합계	**2,240**	**-**	**1,988**	**-**	**2,336**	**-**

참고 3 2016년 특정무역현안(STC) 현황

〈 '16년 STC 통보문 : 총 80건 〉

•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742건의 특정무역현안(STC) 논의
→ 2013년 감소했던 STC 건수는 2014년부터 지난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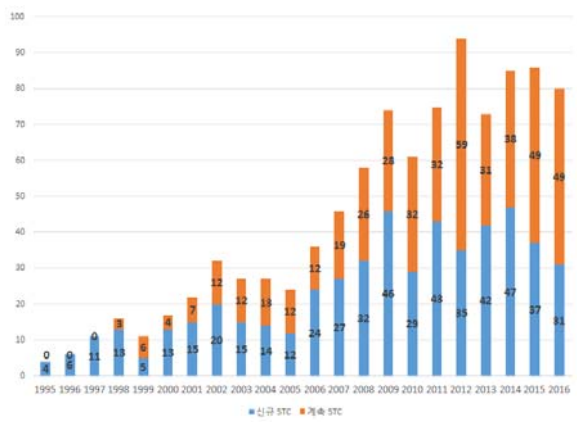

<년도별 STC 논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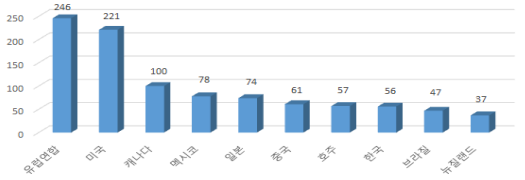

<'95 – '16년 STC를 제기한 상위 10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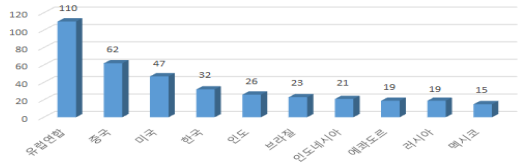

<'95 – '16년 STC를 제기 받은 상위 10개국>

* STC(Specific Trade Concerns, 특정무역현안 : 신규 또는 시행 중인 기술규제가 교역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TBT 위원회에서 이의 제기)

○ **('국가별)**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신규 STC를 가장 많이 제기 받은 국가 상위 10개국, 1위 유럽연합(EU) (110건), 2위 중국(62건), 3위 미국(47건)에 이어 우리나라는 4위(32건)를 차지

○ **(산업별)** 2016년 STC 분야별로 살펴보면, 「식의약품」 분야의 STC가 62%(19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바이오환경」 분야가 13%(4건), 「생활용품」 분야가 7%(2건), 그 외 분야는 각 1건(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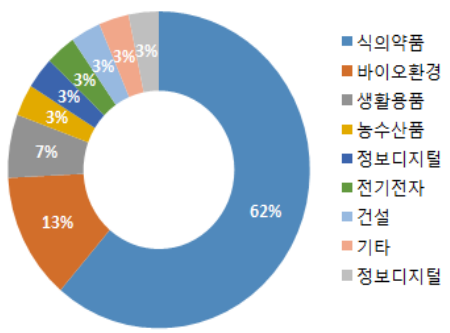

<2016년 신규 STC의 분야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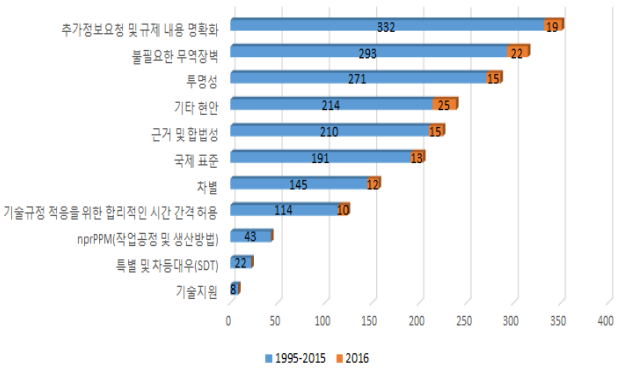

<'95 – '16년 STC를 제기 받은 상위 10개국>

참고 4 숨은 해외기술규제 발굴 현황 및 STC

□ 숨은 해외 기술규제(WTO/TBT 미통보 기술규제)

○ WTO 미 가입국가의 경우에는 통보의무가 없으며, 가입국가도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굴이 필요

* 해외 기술규제는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 중남미, 서남아시아 국가 등에서 기술규제를 통보하지 않고 규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증가

- '16년, 해외 기술규제 모니터링 및 애로조사를 통해, WTO에 통보되지 않는 **숨어 있는 해외 기술규제 275건 발굴·전파**

* 수출기업, 해외정보사이트(complianceandrisk.com), 외국 규제기관 홈페이지, 국내기업 TBT 애로조사(6月, 8月) 등을 통해 발굴

년도	2014	2015	2016	계
건수	118	195	275	588

○ 미통보 기술규제는 특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고 표준인증 및 무역통상 전문가의 규제 발굴, 분석을 필요로 하므로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 중견 수출기업에 애로로 작용

□ 숨은 해외 기술규제와 STC

○ 최근 3년간 미통보 기술규제에 대한 신규 STC 제기 건수는 2015년도에 19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16년도에 다시 14건으로 감소

- 2016년의 신규 STC 31건 중 미통보 기술규제에 대한 신규 STC 제기 건은 14건으로 통보된 기술규제 17건(55%)보다 더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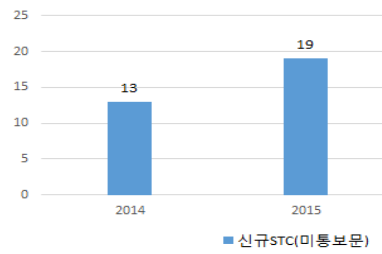

<미통보 기술규제에 대한 최근 3년간 신규 특정무역현안(STC)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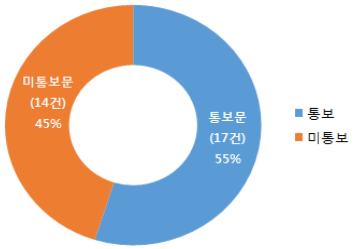

<통보문 vs. 미통보 기술규제의 2016년 신규 특정무역현안(STC) 비율>

참고 5 국내 FTA TBT 진행현황

단계	FTA	이행관련 주요현안
발효된 FTA (11개)	- 한-칠레('04.4 발효)	
	- 한-싱가포르('06.3 발효)	o 한-싱 MRA 후속조치(KT net)
	- 한-EFTA('06.9 발효)	
	- 한-ASEAN('09.5 발효)	
	- 한-인도(CEPA, '10.1 발효)	o MRA논의(전자, 정보기기)
	- 한-EU('11.7 발효)	o 전기전자 기술전문가 대화체 설치 운영('14. 합의사항)
	- 한-페루('11.8 발효)	o 전기제품 안전인증제도 구축지원 ('13. 페루측 요청사항)
	- 한-미('12.3 발효)	o TBT위원회('15. 上) 대응 - 업계 애로사항 수렴
	- 한-터키('13.5 발효)	o 전기전자 MRA 타당성 검토
	- 한-호주('14.12 발효)	o 규제협력방안 논의
	- 한-캐나다('15.1 발효)	o 자동차, 목재 등 기술규제 정보교환
	- 한-중('15.12 발효)	o 상호인정, TBT애로 완화, 제품안전 협력, 시험인증기관 중국 진출 등
타결된 FTA (3개)	- 한-콜롬비아('13.2 서명)	o 우리나라만 비준('14.4)됨
	- 한-뉴질랜드('15.3 서명)	o MRA 공동작업프로그램 설치협의('15) - 대상분야 : 전기전자, 정보통신, 전자파, 의료기기, 알콜음료
	- 한-베트남('15.5 서명)	o 건자재분야 표준협력, 시험인증기관 진출지원 등
협상진행 FTA (3개)	- 한-중-일('13.3~'15.5, 7차)	o 3국 TBT협력체계 구축 등
	- RCEP('13.3~'15.8, 8차)	o 아세안, 인도 TBT 애로 반영 등
	- 한-중미('15)	o 한-중미 6개국 FTA 협상 개시('15.6)
협상재개 여건조성 FTA (3개)	- 한-인니(CEPA, '12.7~'14.2, 7차) - 한-멕시코('06~'08) - 한-GCC('08~'09)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FTA (4개)	- 한-MERCOSUR, 한-이스라엘, - 한-말레이시아, 한-에콰도르TA	o 한-에콰도르TA TOR 교환

참고 6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성공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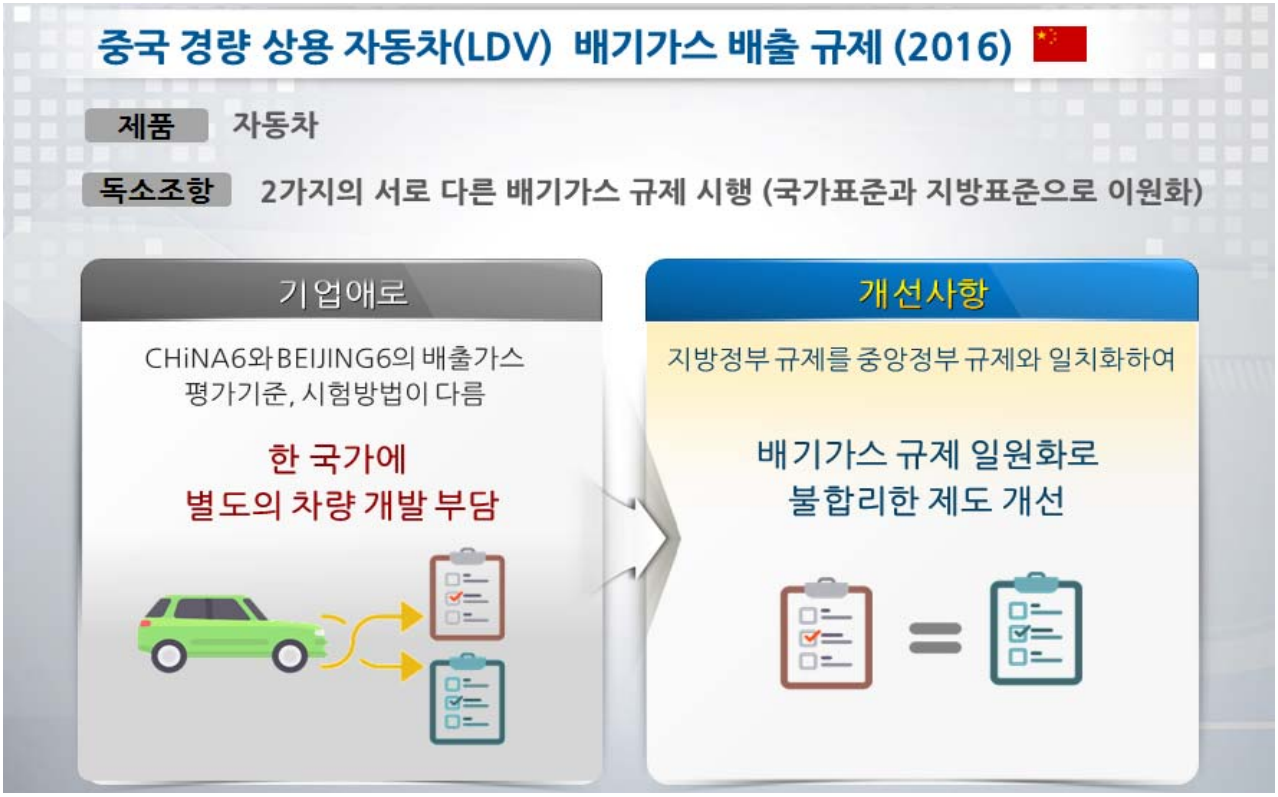

【 TBT 대응 성공 사례 】

중국 경량 상용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규제

○ **(개요)** 중국내 3.5톤 이하 승용·화물차에 적용되는 배기가스 배출규제가 EURO-6 기반 CHINA6와 LEV-Ⅲ(미국) 기반 BEIJINGⅥ로 강화(미통보)

* 대상제품 對중국 수출액 : 9억 3천만불('15년)

○ **(애로 사항)** CHINA6와 BEIJINGⅥ는 배출가스 평가기준 및 규제치, 시험방법이 달라, 각 **규제 만족을 위해 별도의 차량개발 필요**

○ **(대응 활동)** 공식서한 발송,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16년)를 통해 중국측에 규제중복 등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규제 일원화를 요청

○ **(대응 결과)** 중국은 배기가스 규제를 CHINA 6로 일원화('16.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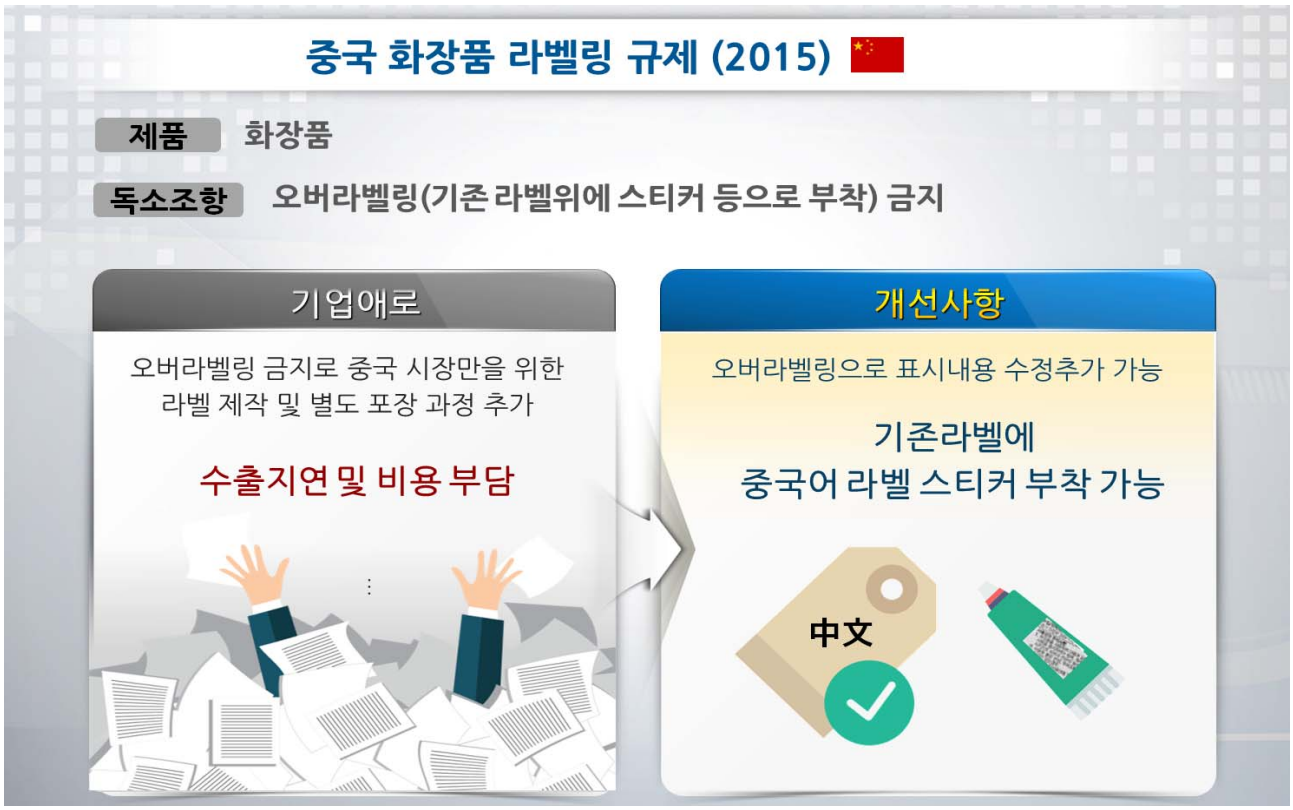

【 TBT 대응 성공 사례 】

중국 화장품 라벨링 규제

○ **(개요)** 중국은 수입화장품에 대해 스티커 라벨 부착(오버 라벨링*) 방식을 금지하고 제품용기에 중국어 라벨을 영구 인쇄, 각인하도록 하는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을 시행예정임을 통보 (WTO 통보일: '14.12월, 시행일: '15.7월)

* 수입국 규정에 따른 화장품 표시사항을 제품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
** 대상제품 對중국 수출 : 2.87억불('13년)

○ **(애로 사항)** 중국 수출 제품을 위한 별도의 화장품 용기를 제작해야하기 때문에, 업계에 생산비용 증가 부담 및 수출 지연 문제 발생

○ **(대응 활동)** WTO TBT 위원회에서 중국과 양자회의 개최('15.3월) 및 미국, 캐나다, EU, 일본과 함께 특정무역현안으로 규제 개선 촉구

○ **(대응 결과)** 중국은 화장품 '오버 라벨링' 금지에 대한 기술규제를 철회하기로 공식 발표('15.6월)

사 업 명
(13)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3736-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110	114
명칭					산업·중소기업	산업진흥·고도화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6	302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무역기술장벽대응기반강화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조정과	신재혁	홍경태	
		043-870-5550	043-870-5557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A
기술규제개혁 선진화체계구축	1,086	1,172	1,172	1,063	1,063	△109	△9.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6					2017('17.12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119	1,119	1,086		33	1,172	1,172	1,172	1,158			1,063
・기술규제영향평가	840	840	816		24	840	840	840	830			708
・중소중견 기업애로 기술규제 발굴	139	139	134		5	167	167	167	163			171
・미통보 기술규제 발굴	140	140	136		4	165	165	165	165			184
○ 비목별 분류(합계)	1,119	1,119	1,086		33	1,172	1,172	1,172	1,158			1,063
・일반수용비(210-01)	50	50	48		2	50	50	50	50			31
・임차료(210-07)	15	15	10		5	10	10	10	5			10
・국내여비(220-01)	5	5	5		0	5	5	5	5			5
・사업추진비(240-01)	10	10	10		0	13	13	13	12			11
・일반연구비(260-01)	1,039	1,039	1,013		26	1,094	1,094	1,094	1,086			1,00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범부처 기술규제개혁 컨트롤 타워 구축 및 규제완화를 통한 벤처·중소기업 육성 등의 원활한 수행

-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 적용
- 신산업분야에 대해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

○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과 국가기술표준원이 기술규제 분야 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규제 영향평가 및 규제개혁 과제 발굴

- 등록규제건수: ('10) 13,386건 → ('14) 14,928건
- 각 부처 운영 기술기준(약 2만여종) 및 국가표준(KS, 2만여종)과의 불일치 관리 필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80호)

② 추진경위

- '12.12.12.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개혁작업단 TF팀 신설
- '12.12.13. 국무총리실, 국무총리훈령 개정
- '13.01.01.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개혁작업단 TF팀,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 '13.02. 국정과제 '136.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합리화'에 '137-5. 기술규제영향평가 등을 통한 기술인증제 합리화' 포함
- '16.12.28. 국무총리훈령 제680호로 개정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18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기술규제 영향평가 : 708백만원

- 각 부처별 기술기준, 시험·검사·인증 관련 법령 제·개정시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위한 사업비

·전문가분석 : 565건 × 1.4백만원* = 791백만원(2017년) → 500건 × 1.4백만원* = 700백만원(2018년) (260-01 연구개발비)

* 1건당 : (0.35백만원 × 3일 = 1.05백만원) + 자료구입비 0.35백만원(2017년) → (0.35백만원 × 3일 = 1.05백만원) + 자료구입비 0.35백만원(2018년)
* ‘15 엔지니어링 업체 대가 기준 임금(건설 및 기타 기술사 : 348,021) → ’16 엔지니어링업체 대가 기준 임금(건설 및 기타 기술사 : 348,258원)

·간사기관 운영비=44백만원(2017년) → 4백만원(210-01 일반수용비)(2018년)
·사업추진비=5백만원(2017년) → 4백만원(2018년) (240-01 사업추진비)

○ 중소·중견기업 애로 기술규제 발굴 : 171백만원

- 기업현장의 기술규제 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연계 등 현장 중심의 기술규제 애로발굴을 위한 사업비

·전문가 분석(135건 × 1.05백만원) = 142백만원(2017년) → 전문가 분석 120건 × 1.05백만원 =126백만원(2018년) (260-01 연구개발비)

* 1건당 : 0.35백만원 × 3일 = 1.05백만원(2017년) → 0.35백만원 × 3일 = 1.05백만원(2018년)
* ‘15 엔지니어링 업체 대가 기준 임금(건설 및 기타 기술사 : 348,021) → ’16 엔지니어링업체 대가 기준 임금(건설 및 기타 기술사 : 348,258원)

·기술규제정책포럼운영비 = 6백만원(2017년) → 5백만원(2018년) (210-01 일반수용비)

- 기업애로 발굴과제에 대한 부처협의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기술규제전문위원회 신설에 따른 운영 사업비

·회의비(12.5백만원) + 자문비(9.5백만원)=22백만원(2018년) (210-01 일반수용비)

* 회의비 : 13만원 × 16인 × 6회 = 12.5백만원
* 자문비 : 10만원 × 16인 × 6회 = 9.5백만원

·기술규제정책 포럼, 워크샵 개최 등 =10백만원(2017년) → 10백만원(2018년) (210-07 임차료)
·사업추진비=5백만원(2017년) → 4백만원(2018년) (240-01 사업추진비)
·국내여비=4백만원(2017년) → 4백만원(2018년) (220-01 국내여비)

○ 미통보 기술규제 발굴 : 184백만원

- 각 부처에서 기술규제 제·개정시 국조실에 미통보하여 기술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사례 및 이로 인한 기업불편 제거를 위한 사업비

· 전문가 분석 : 110건×1.08백만원*=119백만원(2017년) → 110건×1.05백만원*=115백만원(2018년) (260-01 연구개발비)

* 1건당 : (0.35백만원 × 2일 = 0.7백만원) + 자료구입비 0.38백만원(2017년) → (0.35백만원 × 2일 = 0.7백만원) + 자료구입비 0.35백만원(2018년)
* '15 엔지니어링 업체 대가 기준 임금(건설 및 기타 기술사 : 348,021) → '16 엔지니어링업체 대가 기준 임금(건설 및 기타 기술사 : 348,258원)

- 부처별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 3년 주기 실효성 검토 대상을 선정하여 통합 가능성, 비용편익 등을 심층 검토하여 제도 정비

* 인증현황 : 총 175개(국토부 30, 해수부 25, 산업부 23, 농림부 17, 환경부 13, 그 외 67)

· 전문가 분석 : 40건×1.05백만원 = 42백만원(2017년) → 62건×1.05백만원* = 65백만원(2018년) (260-01 연구개발비)

* 1건당 : 0.35백만원 × 3일 = 1.05백만원(2017년) → 0.35백만원 × 3일 = 1.05백만원(2018년)
* '15 엔지니어링 업체 대가 기준 임금(건설 및 기타 기술사 : 348,021) → '16 엔지니어링업체 대가 기준 임금(건설 및 기타 기술사 : 348,258원)

· 사업추진비=3백만원(2017년) → 3백만원(2018년) (240-01 사업추진비)
· 국내여비= 1백만원(2017년) → 1백만원(2018년) (220-01 국내여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명 (단위:)	목표	-	65	66	67	68	강화·신설 규제에 대한 기술규제 영향평가 의견 반영율의 평균 59%*의 110%인 67%를 '18년 목표로 설정 (15년 53%, 16년 65%의 평균)	기술규제 영향평가 의견 반영률(%) = (∑각 부처 의견 수용 건수/∑기술규제 영향평가 검토 의견 제시 건수)×100	국가기술표준원 내부자료 (국무조정실)
	실적	-	53	65	-	-			
	달성도	-	81%	98%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4	-
2015	- 기술규제 영향평가 : 602건 검토(조정의견 제시 102건 → 반영 66건)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87건) → 검토 후 개선(17건)
2016	- 기술규제 영향평가 : 329건 검토(조정의견 제시 77건 → 반영 50건)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37건) → 검토 후 개선(19건)
2017	- 기술규제 영향평가 : 352건 검토(조정의견 제시 55건 → 반영 34건)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80건) → 검토 후 개선(16건)

③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각 부처의 기술기준 및 인증·시험 등 규제 신설·강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시 부적절한 기술규제에 대한 사전 예방을 통해 기업의 이중 부담 감소

* 16년 기술규제 영향평가(329건) → 조정 의견 제시(77건) → 의견 반영(50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술규제 영향평가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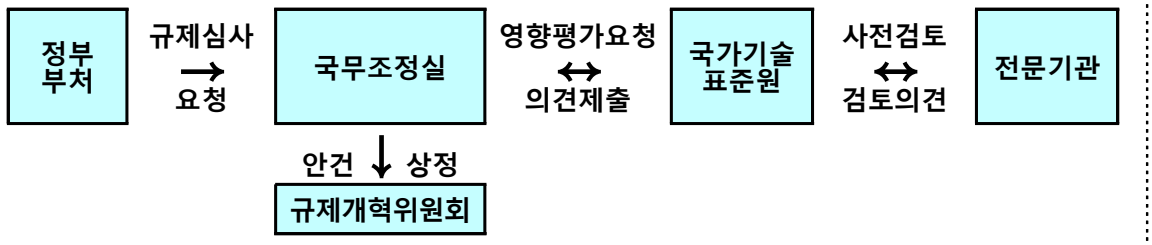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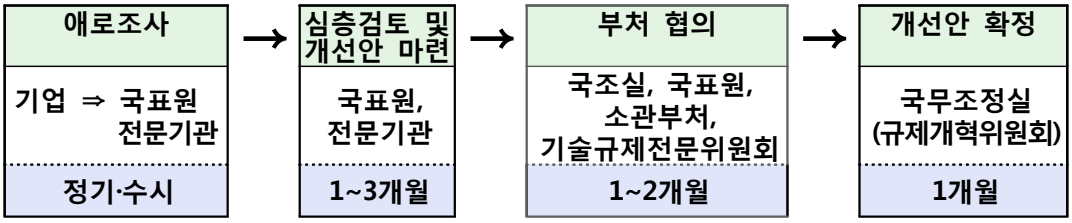

○ 미통보 규제 발굴

《의원입법 기술규제 검토 절차》

(1단계) 법률안 마련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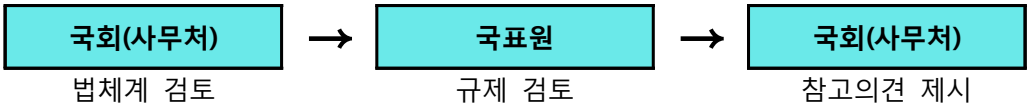

(2단계) 정부 협의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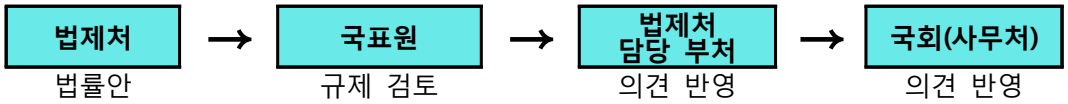

○ 3년주기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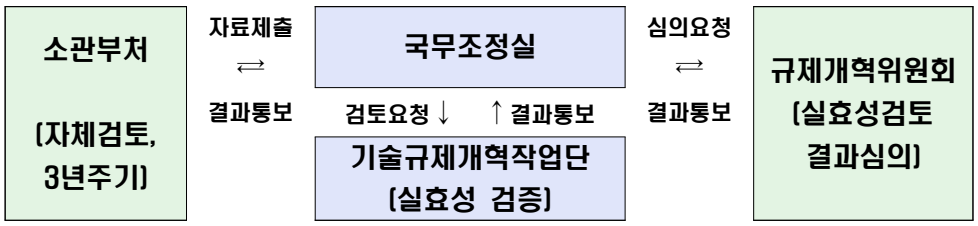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6	'17	'18	'19	'20	'21
'16~'20	1,119	1,172	1,199	1,300	1,300	
'17~'21		1,172	1,199	1,300	1,300	1,3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기술규제 신설·강화 사전 방지

- 全 부처의 법령 등 제·개정 시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대해 사전 심의·조정

○ 기술규제 사후 정비 및 개선

-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타당성·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업계 의견수렴,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
- 대표적 기술규제인 법정인증제도(약 175개)에 대해 매 3년 주기로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정, 통합, 폐지 등 제도 정비

○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사전 방지하고 사후 제도정비·개선 등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內 기술규제위원회 신설·운영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4	-	-	-	-	-	-	-	-	-	-	-	-
2015	1,119	1,119	-	-	-	-	1,119	1,105	98.7	98.7	-	14
2016	1,119	1,119	-	-	-	-	1,119	1,086	97.1	97.1	-	33
2017	1,172	1,172	-	-	-	-	1,172	1,158	98.8	98.8	-	1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2014	- 해당사항 없음
2015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2016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2017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라. 기타 추가자료(참고자료)

사 업 명
(14) IT기반 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3740-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110	114
명칭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40	301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협력과	박재형	유용재(연구관)	
		043-870-5560	043-870-556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A
IT기반기술표준 정보화체계구축	736	590	590	627	627	37	6.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6					2017('17.12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755	755	736	-	19	590	590	590	573	-	17	627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249	249	243	-	6	382	382	382	370	-	12	419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230	230	220	-	10	185	185	185	180	-	5	185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200	200	197	-	3	-	-	-	-	-	-	-
·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및업무SW구매	76	76	76	-	0	23	23	23	23	-	0	23
○ 비목별 분류(합계)	755	755	736		19	590	590	590	573		17	627
· 일반수용비(210-01)	24	24	24		0	-	-	-		-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30	230	220		10	-	-	-		-	-	-
· 관리용역비(210-15)	249	249	243		6	567	567	567	550	-	17	604
· 일반연구비(260-01)	200	200	197		3	-	-	-		-	-	-
· 자산취득비(430-01)	52	52	52		0	23	23	23	23	-	0	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범정부적 협업 시스템인「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정부 24개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표준·인증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고, 유사·중복 인증·기준 발굴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규제를 근원적으로 해소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업무포털, 홈페이지 등)에 대한 기능개선·유지보수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대국민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행정·정책업무 수행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② 추진경위

- '07.12월 : IT 기반의 국가표준 정보화 전략('08~'12) 수립
- '09.2월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부처별 실행계획('09~'12)에 반영
- '12.7월 :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VIP 보고(국경위)
  * 국가표준·인증 선진화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필요성 공감 및 조속히 구축 지시
- '13.5월 : 국정과제 '정부3.0'(행자부 주관)의 세부 사업과제로 반영
- '14.3월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VIP 지시 및 후속조치 이행
  *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불합리한 것은 의견제시 가능토록 실시간 정보 제공할 것
- '14.5월 :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운영체계 도입방안 보고 시 범부처 통합정보시스템 조기구축 요구
- '14.6월 : 총리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 보고 시 범부처 통합정보시스템 중요성 언급
- '15.11월 : 총리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인증제도 혁신방안)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
- 사업기간 : '10년~계속
- 사업규모 :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기업

3) '18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1 (21-0003)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17) 382 → ('18요구) 419백만원

- 정부 19개 부처 표준· 기술기준· 인증제도 및 해외기술규제(무역기술장벽 통보문) 정보 등 총 5만여종의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원문정보 포함)
- 통합 DB 활용, 국조실 규제심사(기술규제영향평가)시 유사중복 규제 도입방지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완료('14-'16)

▪ 표준· 인증· 기술기준 등 국내· 외 기술규제 정보의 통합운영 관리 지원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유지보수, 관리용역비)

구분	금액	요율	유지보수비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5,529,842,000원	6.65%	367,734,493원
상용SW 도입	787,400,000원	6.48%	51,023,520원
합 계(백만단위 미만 반올림)			**418,758,013원**

2 (21-0004)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17) 185 → ('18요구) 185백만원

표준제정, 소비자 제품안전, 무역기술장벽 해소, 시험인증 서비스 등 국민과 기업에 필요한 국가기술표준원 정책 정보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국가기술표준원 메인·업무별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정보 서비스 운영관리 (7개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 / 인프라 관리 / 헬프 데스크 종합 운영지원)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위탁운영, 관리용역비)

업무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투입인력		5	12	13
노임단가		284,440원	226,537원	190,790원
월평균일수		21		
직접인건비합계		139,039,194원		
제경비	직접인건비×10%	13,903,919원		
기술료	(인건비+제경비)×10%	15,294,311원		
부가세	(인건비+제경비+기술료)×10%	16,823,742원		
합 계(백만원단위 미만 반올림)		**185,061,166원**		

3 (21-0005) 국가기술표준원 기반 인프라 구축운영 : ('17) 23 → ('18요구) 23백만원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관제 및 시설유지를 위한 HW / SW 도입비용

- 업무용 PC 및 인터넷 PC 등 보안 SW 라이센스 비용
  - 백신 등 SW 라이센스 비용(기타운영지원, 자산취득비)
    * 산출근거 : (PC500개×0.028백만원)+(서버30개×0.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표준인증 종합정보센터 월평균 방문자 수(단위: 건)	목표	125000	-	-	-	-	-	국가표준인증 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14년 접속 로그 분석	국가표준인증 종합정보센터
	실적	148448	-	-	-	-			
	달성도	118.8	-	-	-	-			
국가표준인증 정보서비스 연간 이용건수 (단위: 만건)	목표	-	-	165	184	203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설정	검색이용건수 (로그기록)	e-나라표준인증 로그분석을 통한 데이터 수집 합산
	실적	-	-	208	-	-			
	달성도	-	-	126.0	-	-			
대국민 홈페이지 고객 만족도(단위: %)	목표	70	73.5	75	76	77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설정	라커트 5점 척도에 의거 10개 항목의 만족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매우 불만족: 0점, 불만족: 25점, 보통: 50점, 만족: 75점, 매우만족: 100점), 평균점수 산출 - 조사대상 : 대국민 홈페이지 이용 고객 - 표본추출방법 : 무작위 추출법	대국민 홈페이지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물
	실적	73.1	73.9	75.2	76.3	-			
	달성도	104.4	100.5	100.3	100.4	-			
정보시스템 가동율(단위: %)	목표	-	99	99.5	99.8	99.9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설정	(가동 계획시간 - 서비스 중단시간) / 가동 계획시간 × 100 - 가동 계획시간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수 × 365일 × 24시간 - 서비스 중단시간 :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연간 서비스 중단시간 ※ 가동율 측정대상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서버, 전송장비, 보안장비, SW) ※ 시설점검, 기능개선 등을 위한 일과시간외 시스템 중단은 장애시간에서 제외	정보시스템 가동 상태 검사 및 장애보고서
	실적	-	99.9	99.9	99.9	-			
	달성도	-	100.9	100.4	100.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4	**①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국가기술표준원 업무별 홈페이지 및 업무포털 전면개편 실시 **② 국가기술표준원 내용연수 경과 전산장비 연차적 교체 및 업무용 SW 구매** - 내용연수 경과 전산장비 교체,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 **③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관리**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체계 운영 **④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고도화** - '14년 지방이전에 따른 정보화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자체 정보화교육장 설치
2015	**①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서비스 관리시스템 구축 **②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내용연수 경과 전산장비 교체,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 **③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관리**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체계 운영 **④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고도화** - 백업시스템 등 HW 구매 **⑤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구축** - 개방형 제품안전정보망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2016	**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체계 운영 **②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③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서버 등 HW 구매,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 **④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체계 운영
2017	**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체계 운영 **②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체계 운영 **③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서버 등 HW 구매,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

③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정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5만여종의 표준·기술기준·인증정보를 단일창구(Single Window)에서 통합하여 제공하여 표준·인증 정보획득 시간·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통합 DB를 활용하여 유사· 중복 제도 도입을 방지하여 규제환경 개선 기반 조성

-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안전·시험인증·기술규제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전달력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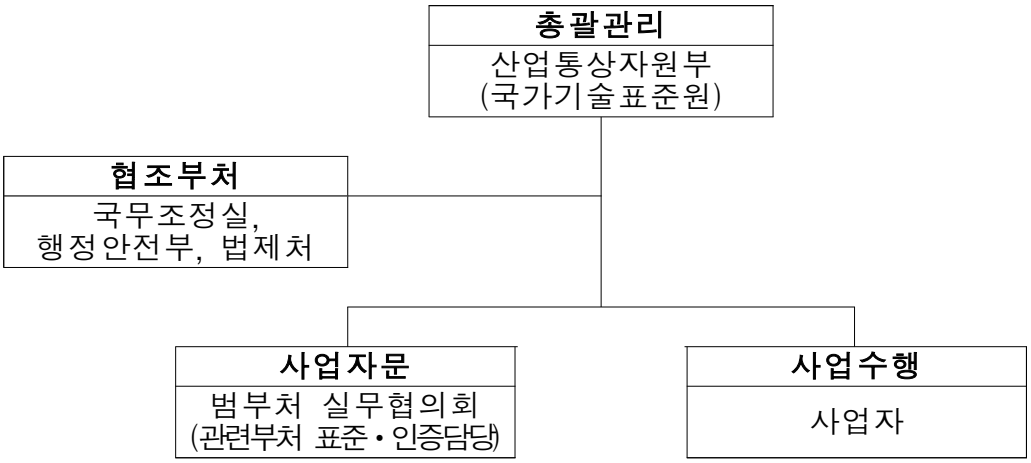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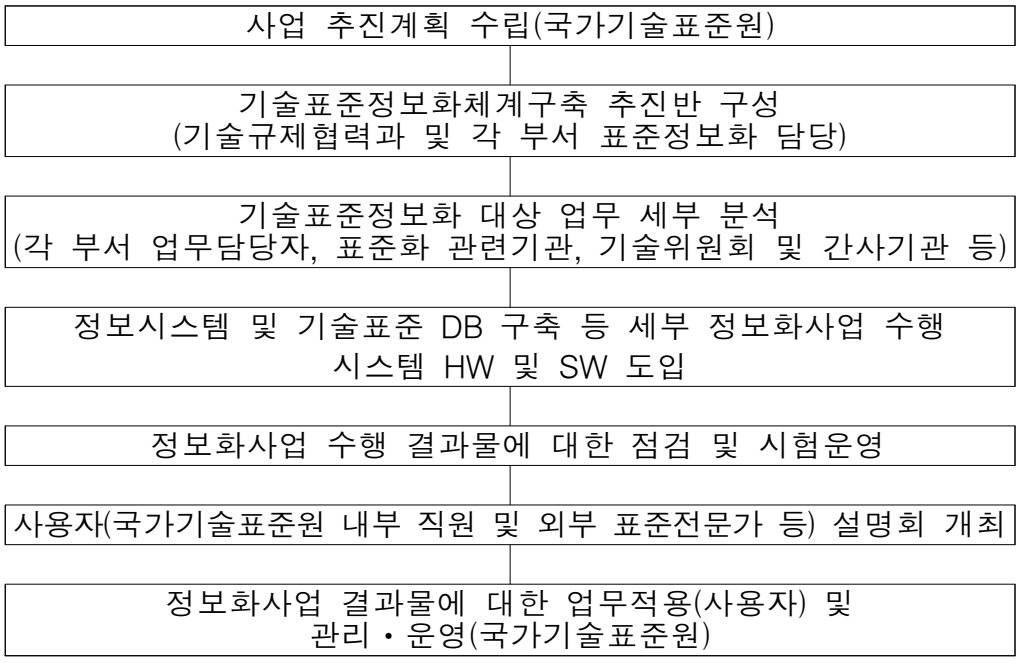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6	'17	'18	'19	'20	'21
'16~'20	755	590	590	590	590	
'17~'21		590	755	755	755	75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16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국회예산정책처)

지적사항	답변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노후서버 교체비용을 견적금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조달단가에 비해 높게 편성하였으므로, 조달단가와의 차액(2,251만원)을 감액 조정 필요	○ 국가기술표준원 노후서버 신규구입은 조달품목을 구입하여야 하나, 행정정보시스템의 실제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부득이 조달품목보다 높은 사양의 서버 구입비용 편성 - 조달품목 사양은 행정정보시스템 탑재 시 메모리와 디스크 용량이 부족 * 조달품목 사양 : 메모리/디스크 32GB/900GB (2개 정보시스템 탑재) * 국표원 필요사양 : 메모리/디스크 64GB/2480GB (5개 정보시스템 탑재) - 조달품목과 모델명은 동일하지만 서버 사양이 달라 구매비용 차이 발생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표준・기술기준・ 인증제도 정보서비스 확충 및 과학기술・산업무역 관련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시스템 활용도 지속 확산 추진

*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 무역정보포털(tradenavi), 통합시험장비포털(e-tube)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수요자 중심 기능개선으로 원내 행정・정책업무 지원 및 맞춤형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

* 표준・제품안전・해외기술규제・시험인증 정책 및 관련정보의 신속한 제공 추진

□ 추진계획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2018	627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419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23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185백만원
2019	755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498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23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185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49백만원
2020	755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498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23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185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49백만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015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기획재정부 심층평가 결과 : 우수(종합점수 83.0점)

○ 2016년 통합재정사업평가결과 :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4	595	595	-	-	-	-	595	580	97.5	97.5	-	15
2015	676	676	-	-	-	-	676	631	93.3	93.3	-	45
2016	755	755	-	-	-	-	755	736	97.5	97.5	-	19
2017	590	590	-	-	-	-	590	573	97.1	97.1	-	17

2) 주요 결산사항

2014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2015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2016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2017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라. 기타 추가자료

- 별첨 참조

붙임 1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사업현황('14~'16)

□ 사업목적

○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정보**가 **산재**되어 **기술정보 획득**이 **어렵고** 부처간 소통부재에 따른 **중복규제 발생**

* 정부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에 대한 통합정보 관리체계 구축으로 실시간 정보제공 및 중복해소 필요성 강조(**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 애로과제, '14.3.20.**)

□ 추진경과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범부처 차원의 종합 정보관리 및 부처간 협업을 위한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사업명)**」 구축

* ('14) 시스템 기반구축, 35억 → ('15) 시스템 확대, 38억 → ('16) 시스템 고도화, 19억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현황('14~'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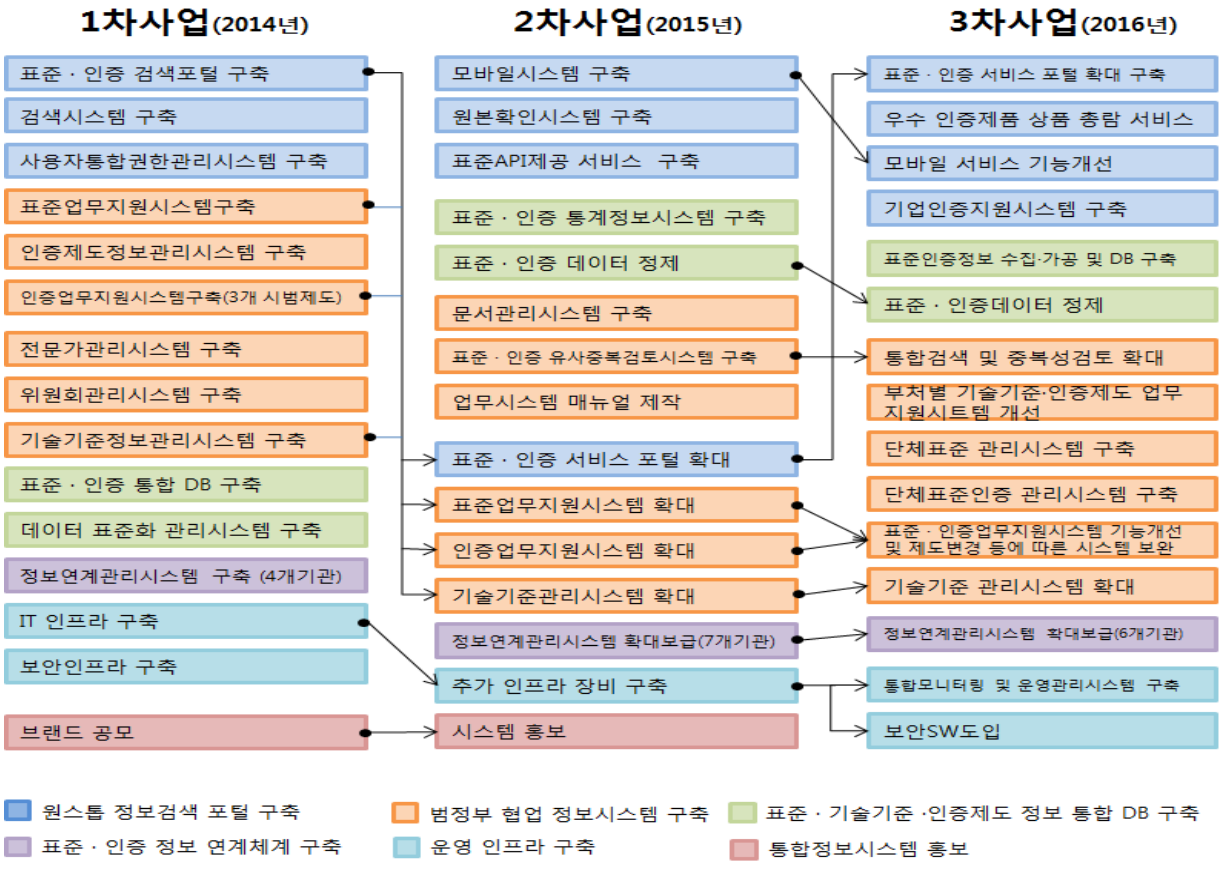

붙임 2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현황('14~'16)

구분	정보시스템 명칭	주요 업무기능	구축 연도
대국민 종합포털	포털·검색·사용자 권한 관리 시스템 (e-나라표준인증 포털)	정부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단체표준·해외 기술규제(TBT) 통합검색, 사용자 권한 부여, API 지원, 모바일 검색서비스 제공	'14년 ~ '16년
범부처 협업 시스템 구축	표준업무지원시스템	국가표준 개발, 국제표준 투표지원 시스템	
	인증업무지원시스템	범부처 국가표준(KS) 인증지원사무국 업무 처리 지원(인증업체 관리 및 사후관리 등)	
	전문가관리시스템	국가표준 개발 전문가 생성·관리	
	위원회관리시스템	국가표준 개발 위원회 생성·관리	
	기술기준 정보관리시스템	정부 기술기준 정보의 통합관리 시스템	
	유사중복성 시스템	표준-기술(인증)기준 유사중복 내용 검증	
	통계정보 시스템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종합통계 정보제공	
	기업인증지원시스템	KS 인증 자가진단, 인증가이드 정보제공	
	단체표준·인증관리시스템	단체표준 개발업무 처리지원 및 단체표준 인증기관 관리지원 시스템	
	문서관리시스템	생성·수정 문서, 이미지 등 통합관리	
	인증제도 정보관리시스템	법정인증제도 정보 통합관리 지원시스템	
통합 DB 관리	데이터표준화 관리시스템	표준·기술기준·인증 DB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연계	정보연계관리시스템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운영 관계부처·기관 연계정보 관리시스템	
인프라 지원	운영인프라 및 관제시스템	서비스 무중단 시스템, 운영관제 시스템 웹 서비스 및 서버 보안 솔루션 등	

붙임 3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표준인증.kr)

① **통합검색 서비스 :** 표준·인증 통합검색 정보서비스 제공(5개 항목*)

* 국가표준(2만여종), 기술기준(3천여종), 인증제도(200여개), 단체표준(4천여종), TBT통보문(2만여종)

② **품목별 인증검색 :** 검색 품목에 대한 인증제도-인증기준-KS 표준간 상호연관 정보 제공

③ **분야별 상세검색 :** 국가표준, 인증제도, 기술기준, TBT 통보문, 단체표준 항목별 조건검색

④ **주요서비스 바로가기 :** 자주 찾는 서비스에 대한 단축메뉴 제공(5개 주요 서비스)

붙임 4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현황(총 7개)

구분	시스템명	주요 업무기능	설치장소
국표원 행정 정보시스템 (대국민)	국가기술표준원 (www.kats.go.kr)	우리원 소개, 공지사항, 각종 행사, 기술자료 및 분야별 주요업무 게재, e-홍보관 등	국가 기술 표준 원내 (충북 음성)
	TBT 종합정보허브 (www.knowtbt.kr)	무역기술장벽(TBT) 중앙사무국 소개, WTO 무역기술장벽,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국내·외 기술규제정보 제공	
	e-KOLAS (www.kolas.go.kr)	시험교정기관 공인인정기관 평가(KOLAS), 사후관리 등 KOLAS 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	
	KAS 시스템 (www.kats.go.kr/kas)	한국공인 제품인정기구(KAS) 소개, 제품인정기관(KAS) 안내 및 제품인정 분야 정보 등	
	사이즈코리아 (sizekorea.kats.go.kr)	인체치수자료 및 표준인체 측정법 소개	
국표원 행정 정보시스템 (업무처리)	국가기술표준원 업무포털	업무 관련 자료 공유, 업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링크 및 내부 게시판 등	
	정책홍보도우미	정책고객들에게 국내외 표준동향, KS 고시정보 등 정책정보를 e-mail을 통해 일괄 발송	

붙임 5 법적 근거 및 추진 경과

□ 법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제20조)

-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준이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3)

- 제15조의 3(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정과제 : 134.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 법제도 정비 실적 및 계획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 보고(2013.8, 국가정책조정회의)

- 다양한 인증제도 간의 시험검사 성적 상호인정 제도화 추진
- 신규 인증제도 도입 및 기존 인증제도 변경 시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 검토

○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 보고(2014. 8, 총리주재 규제개혁위원회)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신속구축 지시

○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완료(2015. 7.1 시행)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망 구축·운영근거 마련(법 제20조 제3항)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완료(2015. 7.29 시행)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 세부규정 마련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고시(2016. 6)

붙임 6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SW 현황

□ 홈페이지, 업무처리시스템 관련 전산장비

시스템명	전산장비	
	모델명	수량
VM 서버 스토리지	IBM V3700	2
VM 서버 스토리지	HP MSA2040	1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HP ProLiant BL460c Gen8	8
국가기술표준원 업무포털		
사이즈코리아		
TBT 종합정보허브		
통합 DB		
NEP 신제품인증		
KAS 한국제품인정제도		
웹통합관리자		
e-KOLAS AP	IBM P720	1
e-KOLAS DB	IBM P720	1
e-KOLAS 스토리지	IBM DS3512	1
코라스 HMC	IBM X3550 M3	1
PDF 변환	패키지 SW 제조사 납품	1
장애관리시스템	IBM X3650M3	1
홈페이지 다운로드 서비스	삼성 ZSS132-Q-001W	1
개발서버(내부망)	HP DL380	1
개발서버(외부망)	HP DL380	1
백업서버	arcserve	1
보안 USB / 넷클라이언트	HP DL380 G6	1
외부망 PC 지키미서버	HP DL380 G6	1
간부회의 서버	HP workstation X4000	1
합 계		24

□ 상용 패키지 SW

패키지명	패키지 SW		
	모델명	용도	수량
제품명 : VMWare vCenter	제조사 : VMWare	가상서버 운영을위한 SW	4
제품명 : VMWare vSphere	제조사 : VMWare	가상서버 관리를위한 SW	4
제품명 : IPKeeper	제조사 : INIMAX	망관리 SW	2
제품명 : SOLAS	제조사 : 아이네크	도서관리SW	1
제품명 : ThunderMail 4.5	제조사 : (주)앤드와이즈	정책고객관리	1
제품명 : D'amo	제조사 : 펜타시큐리티	개인정보 DB 암호화	1
제품명 : DestinyEDM4	제조사 : 사이버다임	전자문서관리	1
제품명 : Oracle 9i	제조사 : Oracle	전자문서관리 DB	1
제품명 : PDF-Gateway	제조사 : 이파피루스	PDF변환SW	1
제품명 : CharkraMax	제조사 : ㈜펜타시큐리티	개인정보 접근제어	1
제품명 : NetClient	제조사 : ㈜닥터소프트	SW자산관리	2
제품명 : SafeUsb	제조사 : 닉스테크(주)	보안USB	2
제품명 : Rpoint	제조사 : 코드링크	인터넷망 문서삭제SW	1
제품명 : arcserve	제조사 : 아크서브	백업SW	1
제품명 : Jeus+Webtob	제조사 : 티맥스	e-KOLAS WAS SW	1
제품명 : MS-SQL 2008	제조사 : Microsoft	통합DB운영	1
제품명 : ITSM	제조사 : 이지서티	개인정보상시모니터링	1
제품명 : PolcyCenter	제조사 : 안랩	V3 관리	2
합 계			28

□ 전송·보안장비 및 기타 전산장비

구분	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수량
전송장비	업무망 백본스위치(메인백본)	제품명 : OmniSwitch OS9700 제조사 : Alcatel Lucent	1
	업무망 백본스위치(서브백본)	제품명 : OmniSwitch OS6800 제조사 : Alcatel Lucent	4
	인터넷망 백본스위치(메인백본)	제품명 : OmniSwitch OS9700 제조사 : Alcatel Lucent	1
	인터넷망 백본스위치(서브백본)	제품명 : OmniSwitch OS6800 제조사 : Alcatel Lucent	4
	업무망 액세스스위치	제품명 : OmniSwitch OS6300 제조사 : Alcatel Lucent	24
	인터넷망 액세스스위치	제품명 : OmniSwitch OS6400 제조사 : Alcatel Lucent	40
	업무망 L4 스위치	제품명 : PIOLINK 제조사 : Application Switch 3000	1
	소계		75
보안장비	업무망 방화벽	제품명 : Secureworks 2500 제조사 : 어울림정보기술	1
	업무망 방화벽	제품명 : Secureworks 4.0 K1000 제조사 : 어울림정보기술	1
	인터넷망 방화벽	제품명 : WeGuardia 제조사 : 퓨처시스템	1
	인터넷망 웹방화벽	제품명 : 와플2.0 제조사 : 펜타시큐리티	1
	업무망 망관리시스템서버	제품명 : X3550M3 제조사 : IBM	1
	인터넷망 망관리시스템서버	제품명 : X3550M3 제조사 : IBM	1
	업무망 PC보안서버	제품명 : X3550M3 제조사 : IBM	1
	인터넷망 PC보안서버	제품명 : X3550M3 제조사 : IBM	1
	업무망 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서버	제품명 : X3550M3 제조사 : IBM	1
	인터넷망 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서버	제품명 : X3550M3 제조사 : IBM	1
	소계		10
스토리지	보조기억매체스토리지	제품명 : DS3512 제조사 : IBM	1
백업장비	백업장비	제품명 : DL180 G6 제조사 : HP	1
합 계			**87**

사 업 명
(15)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374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4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41	306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제인증제도기반구축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적합성평가과	이재만		김은영
		043-870-5490		043-870-549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국제적합성 평가기반구축	2,266	2,311	2,311	2,309	2,309	△2	△0.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6					2017('17.12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266	2,266	2,266 (2,252)		14	2,311	2,311	2,311	2,311 (2,305)	-	-	2,309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76	976	976 (962)		14	1,026	1,026	1,026	1,026 (1,023)	-	-	802
·국제동등성유지, 국제 상호인정기반구축	284	284	284			284	284	284	284 (283)	-	-	528
·국제시험인증 제도기반구축	558	558	558			558	558	558	558 (558)	-	-	556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지원	448	448	448			443	443	443	443 (441)	-	-	423
○ 비목별 분류(합계)	2,266	2,266	2,266 (2,252)		14	2,311	2,311	2,311	2,311	-	-	2,309
· 일반수용비(210-01)	72	72	72			162	162	162	162 (162)	-	-	110
· 임차료(210-07)	25	25	25			25	25	25	25 (25)	-	-	20
· 시험연구비(210-13)	15	15	15			15	15	15	15 (15)	-	-	15
· 국내여비(220-01)	10	10	10 (8)		2	9	9	9	9 (7)	-	-	10
· 국외업무여비(220-02)	52	52	52			47	47	47	47 (46)	-	-	58
· 사업추진비(240-01)	18	18	18			18	18	18	18 (18)	-	-	16
· 일반연구비(260-01)	1,284	1,284	1,284 (1,272)		12	1,245	1,245	1,245	1,245 (1,242)	-	-	1,290
· 민간경상보조(320-01)	440	440	440			440	440	440	440 (440)	-	-	440
· 기관운영출연금(350-01)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	-	3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국내 공인기관의 제품, 서비스, 품질, 시스템, 의료분야 등의 시험·측정·검사 결과가 국제기준, 규정에 부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가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국간 별도의 절차 없이 상호 통용될 수 있도록 적합성 평가 제도를 운영하여, 공인기관을 유지·관리 하므로써, 우리산업의 보호 및 수출증대 기여

○ 국제공인기관 숙련도시험 시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국내시험·검사·교정·인증기관들의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기술규제 대응 및 수출기업 지원

○ 국내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인증서를 국제적으로 통용하기 위해 국제상호 인정협정(MRA, MLA) 체결・유지 및 국제동등성 확보, 국제적 시험·인증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 추진

○ 시험・인증제도의 신뢰성 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국제 시험・인증제도 기반구축
-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실태조사 등을 통한 ISO 경영시스템 등 인증제도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 및 국가인정체계의 효율적 운영

○ 정부 규제의 한 형태로 인식되었던 시험인증 서비스산업은 FTA, 기술규제 강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산업으로 체계적인 지원・육성이 필요
-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신산업 시험·인증분야 발굴 및 고부가 가치 시험인증 서비스의 육성 등 기반 확보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가표준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법제상, 재정상,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표준에 맞게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은 국가표준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①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 관련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4.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국적 교정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측정과학기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교정제도 확립을 위하여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① 정부는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표준물질의 인증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고 그 유지·발전을 위하여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추진의 구체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정 및 인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시험·검사기관 인정
4. 교정기관의 인정
5.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6.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9. 그 밖에 체제 인증 등 신규 인증제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①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① 정부는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 촉진을 위하여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 및 환경경영체제(ISO 14000 표준시리즈)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인증 및 그 인증제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① 정부는 국내 인정기구와 국제인정협력기구 간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과 조화를 이루며 관련 국제기준에 규정된 공정관행(公正慣行)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제28조(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①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초정밀 측정, 시험, 검사,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자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함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94이전 : 국내 기업들이 BSI(영국표준협회), 로이드 선급협회 등 외국계 인증기관으로부터 ISO 9000인증을 획득
- '94이후 :「공산품 품질관리법」을 「품질경영촉진법」으로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 공업진흥청에서 ISO 9000인증 업무를 수행
- '97. 5 : ISO 9000인증 관련 업무를 한국인정원(KAB)에 위탁
- '00. 9 :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 '01. 1 : ISO 9000인증 관련 업무를 한국인정원에 완전 이양(인정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도 권한만 법에 존치)
- '02. 3. : 국가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03.12 : 신성장 산업의 국제표준화 5개년 계획 수립(장관 보고)
- '04. 2 : "차세대성장동력 관련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시장 선점" 산자부 업무보고
- '04. 4. : 시험검사능력 고도화대책 수립 및 시행
- '04. 5 : 권역별 종합교정기관 육성대책 수립(장관 보고)
- '04. 6 : 계량측정분야 고도화 추진전략 수립(장관 보고)
- '05. 7 : 국가측정표준의 고도화 추진전략 수립(장관 보고)
- '05.12 : 제2차 국가표준 기본 계획 수립(장관 보고)
- '05.12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인증기관의 "인증현황 보고" 제도를 도입('06.12월 시행)
- '07.12 : ISO 9001/14001 인증제도 관리업무를 기술표준원으로 이관

- ‘09.12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제정고시
- ‘10. 4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ISO 인증제도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대한 권고
- ‘12. 5 : 국가단일인정체계 구축 방안 보고(장관 보고)
- ‘12. 7 :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보고(VIP 보고)
- ‘13. 5 : 적합성평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구성
- ‘13. 6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BI 콘테스트 우수제안 선정
- ‘13. 7 :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 ‘13. 5 : 적합성평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구성
- ‘13. 6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BI 콘테스트 우수제안 선정
- ‘13. 7 :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 ‘13. 8 : 서비스산업 발전(국정과제 14) 관련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13.7.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의 세부과제로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추진
- ‘14. 1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 ‘14. 4 :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선정
- ‘15. 3. : ’2015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전략로드맵‘ 발표
- ’15. 7. : ’15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2개 과제 지원
- ’16. 2. : ’2016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전략로드맵’ 발표
- ’16. 7. : ’16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2개 과제 지원
- ’17. 2. : ’2017년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전략로드맵’ 발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출연금
-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국가기술표준원, (민간보조)(재)한국인정지원센터, (출연금)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 수혜자 : KOLAS(시험, 교정, 검사, 메디컬, 숙련도), KAS(제품, 경영시스템), ISO인증을 활용하는 기업, 소비자, 정부, 공공기관 및 연구소 등 제품성적서・기업인증서를 활용하여 수출하는 모든 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한국인정지원센터	100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18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802백만원

- 공인기관 (시험·교정 등) 시험능력 평가 및 향상을 위한 숙련도시험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단위 : 백만원)

비 목	년도	금액	산출내역	내 용
일반수용비 (210-01)	’17	45	(10명×0.15백만원)×30회	숙련도시험 기술위원회 수당
	’18	30	(10명×0.15백만원)×20회	
시험연구비 (210-13)	’17	15	3백만원×5건	표준물질 구입
	’18	15	3백만원×5건	
국내여비 (220-01)	’17	5	0.2백만원×25회	숙련도시험 평가관련 여비
	’18	7	0.2백만원×35회	
일반연구비 (260-01)	‘17	961	30백만원×32건	숙련도시험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숙련도 확인체계 구축
	‘18	750	30백만원×25건	숙련도시험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합 계	’17	1,026		
	’18	802		

② 국제동등성유지, 국제상호인정기반구축 : 528백만원

- 주요 수출대상국과의 시험성적서·인증서 상호인정을 위한 국내시험·인증기관의 국제상호인정(MRA) 확보 기반구축
  - ▪ 국제기구 (ILAC, IAF) 국제 동등성 유지 및 대응
  - ▪ 국제인정기구 협력체 (PAC) 동등성 평가 수검 및 조치
  - ▪ 국제상호인정협정(MRA, MLA) 유지를 위한 국제기구총회, 협정회의 및 국제인정교육 참석 등 국제협력

(단위 : 백만원)

비 목	년도	금액	산출내역	내 용
일반수용비 (210-01)	‘17	117	(10명×0.15백만원)×42회	인정위원회(시험·교정·검사 등) 수당
			3백만원×18개분야	국제동등성 평가수검 대응 인쇄비 및 운영비
	‘18	80	(10명×0.15백만원)×20회	인정위원회(시험·교정·검사 등) 수당
			4백만원×5건	국제문서 번역(운영기준, 국제지침서 등)
			3백만원×6개분야	인정기구메뉴얼, 절차서 제·개정 등 인쇄
			0.3백만원×40회	국제동등성 평가 수검 운영비 및 위원회 개최
임차료 (210-07)	‘17	15	5백만원×3회	국제동등성 평가수검 대응 회의 등
	‘18	10	10백만원×1회	국제동등성 평가수검 회의장, 사무기기 임차
국외여비 (220-02)	‘17	32	3백만원×2명×5.5건	IAF/ILAC, APLAC/PAC총회 등 국제회의 참석
	‘18	48	3백만원×2명×6건	IAF/ILAC, APLAC/PAC총회 등 국제회의 참석
			4백만원×3명×1건	국제동등성평가 수검 평가반 여비지원
일반연구비 (260-01)	‘17	120	30백만원×4건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인정기구 운영기준 정비 (메뉴얼·절차서, 운영요령 등)
	‘18	390	300백만원×1건	제품인증(KAS) 업무시스템 구축
			30백만원×3건	적합성평가분야 국제인정동향 조사
합 계	‘17	284		
	‘18	528		

③ 국제시험인증제도기반구축 : 556백만원

- 공인시험·인증제도의 공신력 및 효율성 향상 기반구축

▪ ISO 인증제도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 시험·검사, 제품인증, 경영시스템 등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단위 : 백만원)

비 목	년도	금액	산출내역	내 용
임차료 (210-07)	'17	10	5백만원×2회	국제인정동향 세미나 개최 등
	'18	10	5백만원×2회	
사업추진비 (240-01)	'17	18	(0.03백만원×20개기관) ×3개 분야×10회	시험·인증발전, 단일 인정기구 구축, 부정성적서·인증서 방지 등 협의
	'18	16	(0.03백만원×20개기관) ×3개 분야×9회	
일반연구비 (260-01)	'17	90	30백만원×3건	신수요 시험·인증기법 개발
	'18	90	30백만원×3건	신산업 시험·인증기법 등 개발
민간경상보조 (320-01)	'17	440	140 백만원×1건	ISO인증제도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300 백만원×1건	시험·검사, 제품인증, 경영시스템 등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18	440	140 백만원×1건	ISO인증제도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300 백만원×1건	시험·검사, 제품인증, 경영시스템 등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합 계	'17	558		
	'18	556		

* ISO 인증제도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 140 백만원

-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 80백만원(2명(인건비)×40백만원)
- 부실인증신고센터 전산망·서버 유지보수 : 20백만원
- 인증현황 실태조사 실시 : 17백만원 (34건×2명×0.25백만원)
- 부실인증처분을 위한 법률자문 : 10백만원 (10건×1백만원)
- 부실인증 예방활동비(안내책자 발간, 인식제고 활동 등) : 13백만원

** 시험·검사, 제품인증, 경영시스템 등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 300 백만원

- 국가인정체계운영 지원 : 300백만원 (3개분야×2명(인건비)×50백만원)

④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지원 : 423백만원

- 유망 제품의 적합성평가 지원을 통한 인증서비스 개발 사업 및 경쟁력 강화 시책 마련

(단위 : 백만원)

비 목	년도	금액	산출내역	내 용
국내여비 (220-01)	'17	4	0.2백만원×20회	시험인증 현황 조사
	'18	3	0.2백만원×15회	시험인증 실태 및 유망제품산업 현황조사
국외여비 (220-02)	'17	15	3백만원×2.5명×2회	신흥국, 개도국 수출지원 국제협력
	'18	10	3백만원×2명×1.7회	아·태지역 유망산업해외사례조사
일반연구비 (260-01)	'17	74	30백만원×2.5건	시험인증 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18	60	30백만원×2건	시험인증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
출연금 (350-01)	'17	350	175백만원×2건	유망시험인증서비스 발굴 및 시범사업비
	'18	350	175백만원×2건	
합 계	'17	443		
	'18	423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숙련도 프로그램 평균 이용기업 수 (단위: 개)	목표	27	27	30	40	41	숙련도 프로그램 최근 3년간 개발 건을 고려하여 산출	당해연도 총 숙련도프로그램 참여기관수/총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건수	국가기술표준원 내부 통계 및 학술연구용역 수행결과 보고서
	실적	27.5	37	36	-	-			
	달성도	**102**	**137**	**120**	-	-			
숙련도 프로그램 합격률 (단위: %)	목표	신규	80	85	95	95	숙련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들의 만족률 감안	[숙련도프로그램의 합격기관수/숙련도 프로그램 참여기관수]×100	숙련도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실적	신규	92	94	-	-			
	달성도	**-**	**115**	**110**	-	-			
부실인증 처분율 (단위: %)	목표	50	55	75	80	81	최근 3년간 부실인증 최종확인건수와 해당부실인증에 대한 국내외시험인증기관의 처분건수를 감안하여 설정	부실인증 최종 확인 건에 대한 국내외 인정기관의 처분건수/부실인증 최종 확인 건수]×100	ISO 인증현황 보고시스템(ICIS) 및 해당 인정기관 홈페이지 등
	실적	62.5	100	100	-	-			
	달성도	**125**	**182**	**13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4	▸ 숙련도시험 시료/프로그램 개발 : 식품(쌀)중 중금속 분석 숙련도시험 등 25건 ▸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 창호의 기밀성 시험 등 20개 운영 ▸ KAS 운영의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절차, 기준개발 및 전략수립 등 인프라 확충 : 2014년 PAC-MLA 동등성평가 수검완료
2015	▸ 숙련도시험 시료/프로그램 개발 : 자동차 배출가스 분석 숙련도시험 등 25건 ▸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 PS(Polystyrene)제품의 Phthalate가소제 분석 등 25개 운영 ▸ KOLAS 운영의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절차, 기준개발 및 전략수립 등 인프라 확충 : 2016년 APLAC-MRA 동등성평가 대응을 위한 KOLAS 품질문서 정비 등 4건
2016	▸ 숙련도시험 시료/프로그램 개발 : 의학, 병리학 시스템별 숙련도시험 등 31건 ▸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 광휘도계 숙련도시험 등 25개 운영 ▸ KOLAS 운영의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절차, 기준개발 및 전략수립 등 인프라 확충 : 2016년 APLAC-MRA 동등성평가 수검 완료
2017	▸ 숙련도시험 시료/프로그램 개발 : 메디컬분야 (간염진단 등) 숙련도 시험 등 30건 ▸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 태양광발전 모듈 시험 등 31개 운영 ▸ KAS 운영의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절차, 기준개발 및 전략수립 등 인프라 확충 : 2018년 PAC-MLA 동등성평가 대응을 위한 KAS 품질문서 정비 등 4건

③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 메디컬, 에너지 성능평가 등 숙련도시험 시료개발 및 운영을 통해 신수요 분야의 국내 시험·교정·검사기관의 능력을 국제수준으로 향상

  · 토양·식품·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분석, 군용기기 전자기적합성, 법과학 시험 등 30개 숙련도 시험 시료 및 프로그램 개발 중

  · 한국인정기구(국가기술표준원)의 숙련도시험대상 169개 분야 중 정책방향과 신수요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숙련도시험 시료/프로그램 개발 추진
  ('16년 (31건) →'17년 (30건)→'18년 (25건)→'19년 (50건 예정))

- 한국인정기구(KOLAS), 한국제품인정기구(KAS) 운영의 지속적인 국제동등성 확보를 통해 국내 시험성적서 및 제품인증서의 국제상호인정으로 수출기업을 지원

*** KOLAS 인정 : 시험, 교정, 검사, 메디컬 업무를 수행 ('93~)**
* 국제인정기구 협력체 : ILAC MRA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95개국 협정)
* 국제동등성 평가 수검 : 국제지역기구인 APEC(아시아태평양기구)에서 4년마다 수검
('16년 수검완료, '20년 수검예정)

*** KAS 인정 : 제품, 경영시스템 업무를 수행 ('01~)**
* 국제인정기구 협력체 : IAF MLA (국제인정기구포럼, 58개국 협정)
* 국제동등성 평가 수검 : 국제지역기구인 PEC (아시아태평양기구)에서 4년마다 수검
('14년 수검완료, '18년 상반기 수검예정)

- 국내 공인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증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 공인기관 성적서 발급, 기록저장 및 유통 시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강화

  * 성적서 진본 확인시스템, 위·변조 방지기술 소개 보수교육 추진

- 인정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추진

  · 모든 인정업무를 전산상 처리가능 하도록 구축·운영하고, 인정의 효율화를 위해 KOLAS와 KAS 홈페이지 운영을 통합하고, 다양한 정보 및 교육 업데이트 추진

- 통합인정기구 운영체계 구축 등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관련문서 개정, 국제협력(APLAC 이사회 등 국제회의) 참가를 통한 국제적 통용성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숙련도 시료 및 프로그램 개발>

주요국가간의 상호인정체결
현황 자료 분석

⇓

공인기관의 국제표준 및 선진국 기술규정에 의한
시험분석능력 조사

⇓

기업 및 공인기관의 숙련도 시료 및
프로그램 개발 수요조사

⇓

시험평가용 숙련도시료 개발 및
보급체계 기본계획 수립

⇓

시험능력 비교평가 프로그램
개발기관 선정 및 개발

⇓

개발시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비교 숙련도 시험 실시(국외 및 국내)

⇓

시험능력 비교평가(숙련도 시험)에 대한
결과보고, 분석 및 시정조치

<KOLAS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절차>

프로그램 시급성 검토
시험기관 128개, 교정기관 41개 분야 등
국제상호협정(MRA)을 체결한 169개 분야에 대하여 검토
(기준 : 최소 3년에 1회 이상 해당분야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

프로그램/시료 개발
차기년도 학술연구용역을 통한 프로그램/시료 개발
(자격을 갖춘 기관을 선별하여 시료개발, 프로그램개발 또는
시료 및 프로그램 동시개발 의뢰)

⇓

기술위원회 검토
한국인정기구(KOLAS) 숙련도 기술위원회를 통해
숙련도 시험, 시료, 프로그램의 적절성 검토

⇓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결정
KOLAS 사무국에서 연간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직전연도에 개발된 숙련도 프로그램으로 운영

⇓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수립된 계획에 따라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② 국제동등성 유지, 국제상호인정기반 구축

< 국제동등성 평가수검 (KOLAS, KAS) 절차 >

인정기구 (KOLAS / KAS) : 국제기구(APLAC / PAC) 사무국에 서면 신청

접수, 평가팀장 선임 및 평가팀 구성 동의

⇓

인정기구(KOLAS/KAS) : 모든 문서제출(현장방문평가 3개월전)

MRA 신청 절차의 제출문서에 따른 작성

⇓

국제기구 사무국 : 평가팀의 임명을 인정기구(KOLAS/KAS)에 통보

평가팀 문서검토,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추가자료 요청

⇓

반장 : 팀원, 인정기구, MRA 이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방문계획 수립

⇓

인정기구(KOLAS/KAS) 평가실시 : 사무국, 입회평가 등을 포함 평가 진행

인정기구 사무국 평가, 입회평가 등 실시,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팀 : 인정기구의 시정조치와 일정에 대해 검토

현장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계획를 평가팀에 제출

⇓

인정기구(KOLAS/KAS) : 시정조치계획 포함, 모든 평가결과에 대한 답변

만족할 경우 팀장은 국제기구 사무국장에게 최종보고서, 시정조치 및 권고사항을 제출

⇓

APLAC / PAC MRA 이사회 : 최종 보고서 검토

APLAC/ PAC MRA이사회는 최종 보고서 검토 후 MRA 안건으로 상정

⇓

APLAC / PAC MRA 이사회 : 서명기구 자격 유지여부 결정

인정기구는 이사회 참석, 평가에 대한 질의응답

③ 국제시험인증제도 기반구축

< ISO 인증현황 보고제도 운영 절차 >

인증기관 인증현황 자료 접수	-인증기관이 인증현황 자료를 전산시스템(ICIN)입력 - 제출 자료의 유효성 검증 및 확인
↓	
인증현황 분석 (중복심사 등 부실인증사례)	-인증현황 자료 검증 및 분석
↓	
현장실태조사 (인증기관 및 기업)	-인증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
↓	
소명자료 요청 및 확인 (인증기관 및 심사원)	-조사 결과,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인증기관에 소명 요청
↓	
부실인증사례 처분요청 (국내·외 인정기구)	-부실인증에 대해 각국 인정기구에 처분 요청

<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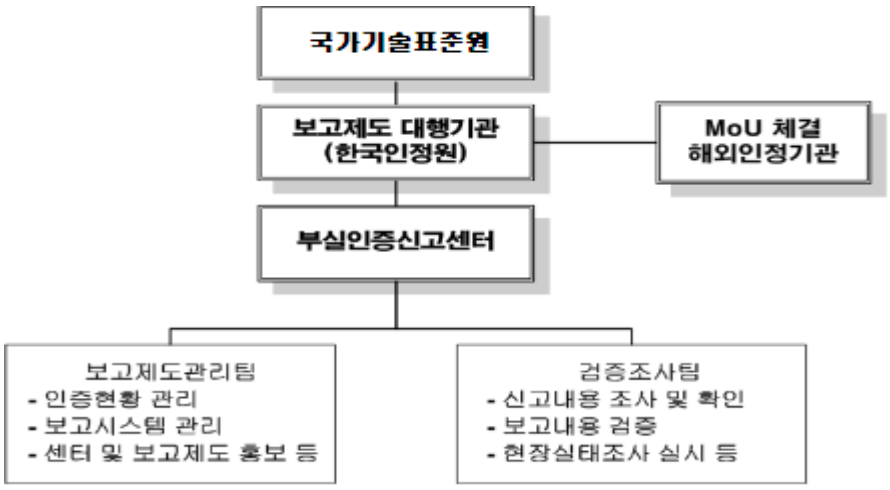

④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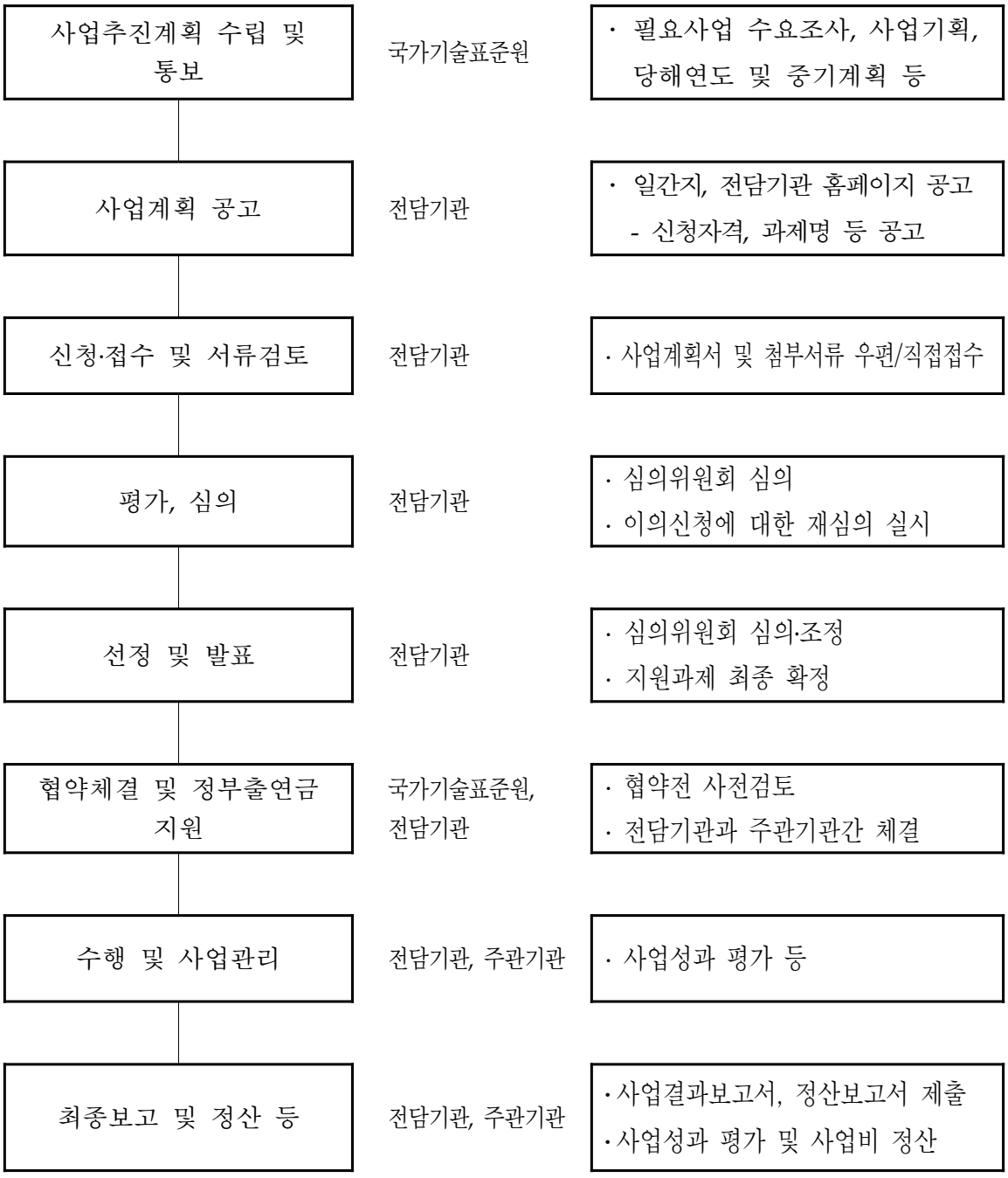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6	'17	'18	'19	'20	'21
'15~'19	2,266	2,311	2,309	2,542	2,796	
'16~'20		2,311	2,309	2,542	2,796	3,07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향후 추진방향

- ○ 한국인정기구(국가기술표준원)의 숙련도시험대상 169개 분야 중 정책방향과 신수요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숙련도시험 시료/프로그램 개발
- ○ 인정기구(KOLAS, KAS)의 국제동등성 평가 대응을 통해 주요수출국 95개국과 국제상호인정(MRA, MLA)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마련 등 인프라 구축
- ○ 경영시스템인증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인증기관 관리 강화 및 부실인증 사전 예방를 통한 인증의 신뢰성을 제고
- ○ 시험·검사, 제품인증, 시스템인증의 국가단일인정체계 구축을 통해 인증제도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험·인증분야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집중 육성
- ○ 신수요 분야 시험·인증기업 개발 등을 통해 수요자에게 적기에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하고 개도국 시험인증서비스 산업 진출 육성

□ 세부 추진계획

- ○ 800여개 KOLAS 공인기관의 능력을 국제수준 유지를 위해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
- ○ 인정기구(KOLAS, KAS)의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해 국제협력활동을 확대하며 지속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기구에서 영향력 확대 추진
- ○ 경영시스템 인증신뢰성 향상을 위한 운영규정 제·개정
- ○ 단일인정체계 구축·운영추진 : KOLAS, KAS, KAB 인정기구 통합
- ○ 정보기술서비스경영체제(ISO 20000) 등 신규 인증제도 개발
- ○ 신수요 시험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시험인증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산업화 지원
- ○ 개도국 적합성평가 제도와 서비스 산업 동반 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 ○ 통합재정사업평가 : 2016년, 보통
- ○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 2016년, 정상추진

12) 부처 건의사항

본 사업을 통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적합성평가기구(KOLAS)로써, '92년부터 현재까지 25년간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ILAC :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의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

* 회원국 자격의 유지에 따라,

- 국내 공인기관의 제품, 서비스, 품질, 시스템, 의료분야 등의 시험·측정·검사 결과가 국제기준, 규정에 부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가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 95개국간 별도의 절차 없이 상호 통용될 수 있도록 적합성 평가 제도를 운영하여, 공인기관을 유지·관리 하므로써, 우리산업의 보호 및 수출증대 기여하고 있음

  - '92년 KOLAS 설립 이후 공인기관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담당공무원은 20% 감소에 따라, KOLAS 공인기관의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
    ■ 공인기관 수 : 605개('10년) → 802('16)(34% 증가), 직원 수: 10명('10년) → 8명('16)(20% 감소)

□ KOLAS 공인기관의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평가 위원회 수당, 국내 여비 증액 필요

○ '17.05.26.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발표한 발전소용 목재펠릿 납품비리 관련 수입업체 수사중 **'000 시험연구원'의 성적서 조작 확인**
- 000 시험연구원은 KOLAS 공인기관으로 특별사후관리(1차,2차)를 통하여 KOLAS 인정업무 전반과 시험성적서에 대한 **정밀점검 수행 (3주간, 23명 특사파견)**

○ KOLAS 공인기관의 성적서 조작 등의 납품비리는 공인기관의 신뢰성 하락은 물론, 대정부 신뢰도 실추로 연결 우려
- KOLAS 공인기관의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특별 사후관리(해당기관 조사)에 소요되는 평가위원수당, 평가위원여비 등의 긴급한 예산 소요**(3주간, 23명 특사파견, 5000만원 예산소요)** 발생, 이에 따른 위원회 수당, 현장평가 여비가 요구됨

□ KOLAS 공인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숙련도시험 시료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예산에 대한 증액 요구

○ KOLAS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가 95개국 간 별도의 절차 없이 통용이 가능할 수 있는 자격(국제상호인정협정)을 위해서는 숙련도 시험에 최소 3년에 1회(메디컬 분야 1년에 2회) 이상 의무적 참여 필요

* KOLAS 공인기관 : 국제기준(ISO)에 따라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하여 해당기관이 수행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기관
(KOLAS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국표원))

○ 숙련도 시험 분야가 169개(공인기관수 2,195개), 3년에 1회 참여 실적이 필요하므로 산술적으로 169÷3≒56 즉, 최소 56건의 숙련도 프로그램이 매년 운영되어야 하나, 최근 3년간 평균 28개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증액이 요구됨
('15년 (25건) →'16년 (31건) →'17년 (30건)→'18년 (25건 예상))

* 국제기준에 따라 KOLAS 공인기관은 숙련도시험 참가 의무(ISO 17025의 5.9항)
* 인정기구는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ISO 17011의 7.15항)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부족에 따라, 해외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에 참가 하므로써, 소요되는 공인기관 지출액

< 연간 50건의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경우 >
- KOLAS 숙련도 프로그램 참가비 : 100,000원
- KOLAS 제공 프로그램 : 100,000원×(2,195÷3)=73,000,000원

< 연간 50건의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참가할 경우 >
- 해외 숙련도 프로그램 참가비 : 약 1,000,000원
- 해외 숙련도 프로그램 : 1,000,000원×(2,195÷3)=730,000,000원

○ 비용 외, 결과를 얻는 소요시간도 고려해야함
- 해외 숙련도에 참여할 경우 시험시료 배송기간,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사후관리 및 갱신 기간에 맞게 유효한 숙련도 결과를 획득하지 못할 수 있어 인정 정지, 인정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4	2,072	2,072	-	-	-	-	2,072	2,071	99.9	99.9	-	1
2015	1,968	1,968	-	-	-	-	1,968	1,964	99.8	99.8	-	4
2016	2,266	2,266	-	-	-	-	2,266	2,252	99.4	99.4	-	14
2017	2,311	2,311	-	-	-	-	2,311	1,957	84.7	84.7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4	790	790	790	790	-	790	790	-	-	100
2015	790	790	790	790	-	790	790	-	-	100
2016	790	790	790	790	-	790	790	-	-	100
2017. 6월기준	790	790	790	570	-	570	570	-	-	72

2) 주요 결산사항

2014	- 집행잔액 0.01억원(업무용역 수행후 정산에 따른 불용)
2015	- 집행잔액 0.04억원(업무용역 수행후 정산에 따른 불용)
2016	- 집행잔액 0.14억원(업무용역 수행후 정산에 따른 불용)
2017	- 집행 중

라. 기타 추가자료 :

참고1.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사업 설명자료

참고2.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개요

참고 1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사업 설명자료

□ 사업의 목적

○ 국내 KOLAS 및 KAS 공인기관의 제품, 서비스, 품질, 시스템, 의료분야 등의 시험·측정·검사의 수행 능력이 국제기준, 규정 등에 부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KOLAS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가 95개국간 별도의 절차 없이 상호 통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공인기관을 관리하여 우리산업의 보호 및 수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 적합성평가 개요

○ 정의 : 제품, 서비스, 품질, 시스템 등이 법, 규정, 표준 등에 부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행위 → 국제적으로 통용

* 적합성평가의 대상 : 제품, 시험, 교정, 검사, 인증, 메디컬 등

○ 인정기구 체계 : 국가 인정기구 간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공인기관 성적서의 국제적 통용과 수용을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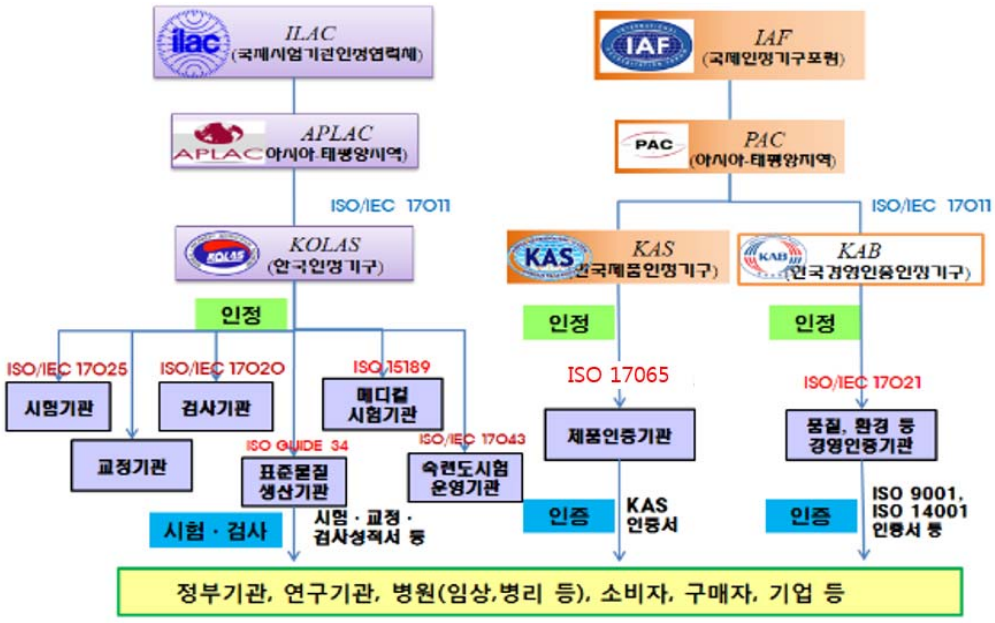

* ILAC :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 IAF : 국제인정기구포럼(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 APLAC : 아태시험기관인정협력체(Asia-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 PAC : 아태인정기관협력체 (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
* KOLAS : 한국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KAS : 한국제품인정기구(Korea Accreditation System)
* MLA : 다자간상호인정협정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 국내 적합성평가 체제

구분	KOLAS	KAS	KAB
국문명칭	한국인정기구	한국제품인증인정기구	한국경영인증인정기구
영문명칭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rea Accreditation System	Korea Accreditation Board
로고			
설립년도	'92.12월	'01.7월	'95.9월
인정분야	시험·교정·메디컬기관 등	제품인증 기관	경영시스템인증 기관
기관수('17.6)	810개	21개	58개
국제기구	ILAC (95개국간 상호인정협정)	IAF (58개국간 상호인정협정)	IAF (58개국간 상호인정협정)
평가수검 (매4년마다)	APLAC (아시아태평양기구) ('16년 수검완료, '20년 수검예정)	PAC (아시아태평양기구) ('14년 수검완료, '18년 수검예정)	PAC (아시아태평양기구) ('16년 수검완료, '20년 수검예정)
국내운영기관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재)한국인정지원센터

□ 적합성 평가 제도의 효과

○ 성적서 국제상호인정으로 **우리나라 수출제품이 별도 시험없이 국제무역상 통용되어 수출기업 지원 효과**(시간, 비용절감)

- 법정 규제당국(안전, 보건 등)에게 정책 추진의 기준 및 확실성
- 국제교역 활성화로 인한 국가간 정치적/경제적 유대관계 강화

적합성평가제도 성공사례

* 사례 1) D 조선회사 : 해양구조물의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를 NIST에서 교정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내 교정기관을 통해 계측기를 교정 (연간 120억원의 비용 절감)

* 사례 2) L 제조회사: 휴대폰 유럽수출을 위해 KOLAS 시험성적서로도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제품인증을 받아 수출 가능(138억원/년 비용절감)

* 사례 3) H 제철 : "H 빔","PFC 찬넬"등의 호주 수출시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요구 H제철은 KOLAS 시험기관 인정받아 호주 수출 가능(약 50,000톤/년,약 3천7백만불)

참고 2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 개요

○ 숙련도시험(PT, Proficiency Testing) 개요

- 정의 : 미지(未知)의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 또는 측정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KOLAS 공인기관 또는 공인기관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관의 시험분석, 측정능력을 확인하는 필수 절차임.

- 숙련도 시험은 KOLAS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시험·교정성적서가 95개 국가에서 동시에 통용이 가능한 국제상호인정 지위 유지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 국제표준 (ISO/IEC 17011, ISO/IEC 17043)*에 의거 KOLAS 공인기관의 시험분석·측정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소간 비교 시험이며, 숙련도 시험결과에 따라 시험자의 교육상태, 장비의 교정여부 등 시험기관의 수행능력정도,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ISO/IEC 17011 인정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ISO/IEC 17043 숙련도 시험 일반 요구사항

- 숙련도 시험 실시방법은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이 품질특성이 동일한 시료를 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 배포하여 시험토록 한 후, 각 기관에서 제출한 결과를 취합·분석하여 평가에 참가한 각 기관에 분석결과를 통보함

  ex) 동일한 분동(추)을 각 공인기관에게 무게를 측정하도록 하여서 측정한 값들을 통계처리 하여서 산포를 확인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 (9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계량측정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국립수산과학원,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 **KOLAS 공인기관은 해당 기술 분야당 3년에 1회(메디컬분야 1년에 2회,** 메디컬시험기관은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므로 더욱 엄격한 기관관리가 요구되므로 중분류**당 **1년에 2회** 실적 필요) **이상 숙련도 시험에 참여해야 함 (의무)**

**중분류란 : KOLAS 공인기관의 기술분야 분류 기준 169개 기술분야, (2,195개 기관 참여) (시험 128개 분야, 교정 41개 분야)를 운영 중

- 각 기관은 통보받은 시험결과에 따라, 숙련도 시험의 적합여부와 기술적 통계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결과가 나온 기관은 원인파악 및 시정조치를 통해 해당기관의 시험분석·측정 능력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게 됨.

○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절차**

- 전문가 회의 개최를 통한 프로그램 시급성 검토
- 직전연도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시료개발포함)에 대한 KOLAS 숙련도 기술위원회 검토
- 연간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숙련도 프로그램 참가 결과는 KOLAS 숙련도 기술위원회 검토 후 실적으로 인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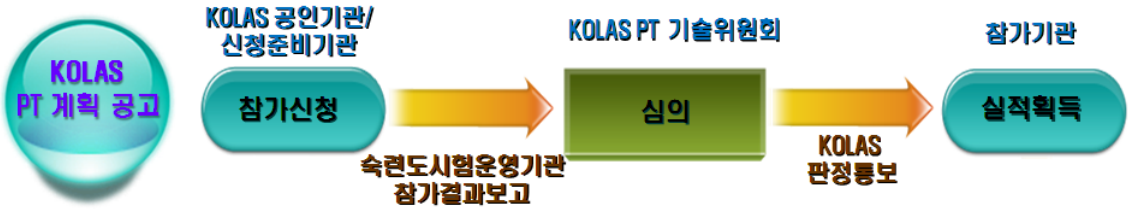

○ **숙련도시험의 효과**

- KOLAS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시험/교정성적서가 협정국가에서 동시에 통용이 가능한 국제상호인정(ILAC/APLAC-MRA) 지위 유지를 위한 필수조건 만족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시험검사기관의인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정부)이 한국인정기구(KOLAS)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인정기구는 국제표준(ISO/IEC 17011)의 요구조건인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 **숙련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이익**

- KOLAS 공인기관들의 해외숙련도 참여로 발생하는 **외화유출 방지**

·국내기업 들은 KOLAS 공인기관을 통해 국제적으로 유통가능한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국내기업의 수출에 소요되는 시간 및 부대비용 절약

ex) 국내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의 운영부족으로 해외 숙련도 시험에 참여할 경우 사후관리, 갱신 기간에 맞게 유효한 숙련도 결과를 획득하지 못할 수 있어 **인정정지**, **인정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사 업 명
(16) 안전인증역량강화 (374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110	114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45	301
명칭	산업기술표준화 및 제품안전관리	표준화 및 인증	안전인증역량강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O (재기획)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책과	임헌진	-	이동진(연구사)
		043-870-5410	-	043-870-541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A
안전인증역량강화	-	-	-	6,425	6,425	순증	순증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6,425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	-	-	-	-	-	-	-	-	-	4,025
・차세대계량기술개발	-	-	-	-	-	-	-	-	-	-	-	1,500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	-	-	-	-	-	-	-	-	-	-	700
・기획평가관리비	-	-	-	-	-	-	-	-	-	-	-	2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6,425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360-04)	-	-	-	-	-	-	-	-	-	-	-	160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	-	-	-	-	-	-	-	-	-	6,2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 및 후생증진을 위해 제품안전기준 및 차세대 계량기술을 개발하고 제품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개선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안전취약 위해제품과 융복합제품의 안전기준 연구와 신종 위해물질 등 위해성 평가 및 시험검사방법 개선연구 등을 통한 소비자 제품안전 강화
- (차세대계량기술개발) IT융복합 기술활용을 통한 계량·측정기기 성능향상 및 불법 조작 방지로 4차산업, 에너지 신산업 대응과 국민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국민 안전과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규제 강화에 따라 산업혁신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기반 확충 및 화학사고 예방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① 법령상 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및 제18조(제품안전 연구 등에 대한 출연)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및 31조(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 전기용품 및 생활제품 안전관리법 제38조(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② 추진경위

- '08.3월 : 제품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장관보고)
- '08.12월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 '09.4월 : 지원대상과제 선정 및 사업비지원
- '10.2월 : 제품안전기본법 제정 공포
- '11.2월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 '11.3월 : 제1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4.2월 :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5.6.4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 '16.12월 ~ '17.5월 : '18년 일몰에 따른 신규사업 재기획

○ 차세대계량기술개발

① 법령상 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계량산업의 육성 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② 추진경위

- '12.2월 : '법정계량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추진
- '15.1월 : 계량법 전부개정을 통한 '계량산업 육성' 지원근거 마련
  ※「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제5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 '16.12월 ~ '17.5월 : '18년 일몰에 따른 신규사업 재기획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① 법령상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4조)
- 화학물질관리법(제36조, 제41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

② 추진경위

- '11.4월 :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 공식보고
- '12.9월 : 구미 불산사고 등 화학안전사고 다수 발생
- '12.12월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총리실) 발표
- '13.5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13.6월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 공포
- '13.7월 :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부처합동) 발표
- '14.4월 ~ '18.3월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 기반구축사업 수행(1~4차년도)
- '16.12월 ~ '17.5월 : '18년 일몰에 따른 신규사업 재기획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8 ~ '20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연구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및 관련 산업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내기업, 연구소 및 협·단체, 시험인증기관 등	70%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 **차세대계량기술개발**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내기업, 연구소 및 협·단체, 시험인증기관 등	100%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00%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3) '18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4,025백만원

○ **(기술개발)** 융·복합제품 안전기준 적기마련 및 어린이 안전취약·사고다발 제품 및 기술진보 제품의 안전기준 업그레이드 등 연구

- (융복합제품) IoT 연결 또는 AI 작동 스마트 제품 및 관련 소프트웨어 안전성 평가
- (어린이제품) 위해유형별 모듈형 안전기준 개발
- (기술진보) 노트 7은 국내·외 7개국에서 안전인증을 받았으나 배터리 발화사고 발생

○ **(기반조성)**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한 非관리제품 및 신규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위해제품 효율적 차단을 위한 안전 관리체계 개선 및 기업 자율적 제품안전경영체계 구축 등 연구

- (비관리제품) 대형 유통매장(오프라인)의 취급 상품 43만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관리제품이 41만건(95%), 비관리제품이 2만건(5%)
- (위해성평가) EU는 장난감의 안전관리대상 중금속을 확대(8종→19종, '19.2. 시행)
- ICBM(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제품안전관리 체계 개선

< 산출내역 >

◆ (다/상) 8개 × 234백만원 x9/12 = 1,400백만원
◆ (단/상) 15개 × 175백만원 = 2,625백만원

② 차세대계량기술개발사업 : 1,500백만원

○ **(기술개발)** IT 융·복합 계량기술 고도화(스마트미터링), 에너지신산업(태양광 발전, 친환경 차량 등) 확산을 위한 차세대 계량기술 개발 및 관련 핵심소재·부품 개발 등에 관한 연구

○ **(기반조성)** IT 융·복합 계량기술 및 차세대 계량기술 평가·인증을 위한 시험·검사 방법, 신뢰성 평가기반 조성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 산출내역 >

◆ (단/상) 10개 × 150백만원 = 1,500백만원

③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 700백만원

○ **(기반확충)** 국내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시험·평가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장비·운영체계 구축, 기술·노하우보급·저변확대를 위한 기반확충

○ **(기반확충)** 화학물질 영세공급망 단위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관리 현황, 관련 법령·안전 진단 및 전주기관리시스템 보급·활용

< 산출내역 >

◆ (다/상) 2개 × 360백만원 x 9/12= 540백만원
◆ (다/상) 1개 × 214백만원 x 9/12= 160백만원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사업 중장기 로드맵 >

구분	1단계 사업 ('14～'17)	2단계 사업 ('18～'20)	3단계 사업 ('21～)
전략과제 1	**(질적기반 구축)** 국내 미비 7개 시험항목에 대한 GLP 인증기관 육성	**(양적기반 확충)** 국내 양적 기반이 부족한 12개 시험 항목에 대한 GLP 인증 기관 확충	**(기반 보급·활용)** 구축기반을 활용한 GLP 시험자료 생산 및 시험노하우·기술 이전을 통한 GLP 기관 저변확대
전략과제 2	**(원천기술 개발)** 화학물질 전주기관리 기술 개발 및 실용화·실증화	**(기술 보급·지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가 미비한 국내 중소·영세기업 대상 전주기 관리 기술 보급·활용 지원	**(기술 확산·사업화)** 전주기 관리 기술 활용기업 확대 및 기술 이전·패키지화를 통한 전문기업 육성

④ 기획평가관리비 : 2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안전기준 제·개정(안) 마련 실적 (단위: 건)	목표	-	-	-	-	5	'18년도 신규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18년도 안전기준 기술개발지원 과제(13건) 대비 40% 설정	안전기준(안) 개발건수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지원한 과제에 대한 전수조사(성과분석 통계자료 또는 분석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기술개발과제 제품화성공율 (단위: %)	목표	-	-	-	-	30	'18년도 신규사업인 점과 형식승인 준비절차 및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목표치로 설정	형식승인 신청건수/전년도 기술개발 종료과제수)X 100	차세대계량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한 과제에 대한 전수조사(성과분석 통계자료 또는 분석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국제공인 GLP 인증 신청률 (단위: %)	목표	-	-	-	-	100	'18년도 신규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신청률 100%를 목표로하되, '19년부터 GLP 인증획득률로 개선 예정	당해연도 GLP인증 신청 시험항목수/당해연도 시험기반을 구축한 시험항목수 X 100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사업으로 지원한 과제에 대한 전수조사(성과분석 통계자료 또는 분석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성과지표가 세부사업 단위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단위사업 별로 개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단위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해 작성

※ 성과지표가 여러 개인 경우 모두 적시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안전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등의 안전기준*을 전수조사하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을 정비(新융복합제품의 안전요건 반영)하고 신제품에 대한 기준 적기 개발

- 특히,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제품** 등에 함유된 화학물질 위해성에 대해 환경부와 협업하여 평가하고 적기에 안전기준에 반영

  * 안전기준 현황(819종) : 전기용품 695종 / 공산품 87종 / 어린이 37종

  ** 어린이제품 사고건수 : '13년)3,043건→'14년)4,361건→'15년) 4,873건(11.7%증가)

- (안전사각지대 해소) 제품군별 안전관리*를 통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부처 협업형 위해제품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이마트 43만개 등록제품의 전수조사('17.1월)를 토대로 제품군별 분류 작업 추진중(생활제품 56%, 어린이제품 26%, 화장품 5%, 생활화학제품 0.8%)

  ** 제품안전정책협의회('17.9월 신설, 사무국:국표원)을 통해 제품군별 소관부처를 지정·관리토록 하고, 다부처 소관제품은 부처 간 협업·대응(예: 얼음정수기)

ㅇ 차세대계량기술개발

- (불법계량기 조작방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정계량기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 사우나 도시가스 계량기(가스미터) 불법조작('15.7), 주유기 불법조작('16.5)

- (계량기술 고도화) 스마트미터링 기술 등과 같은 융복합 법정계량기술 고도화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에 따른 계량분야 R&D지원 확대

  * (산업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RPS)상향 조정

    ⇒ RPS(%) : '18년) 4.5→5.0, '19년) 5.0→6.0, '20년) 6.0→7.0

ㅇ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 (화학물질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자립기반 구축) 국내 미비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항목 7개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기준에 따라 12개의 국제공인 GLP* 인증 획득

  * Good Laboratory Practice, 시험 신뢰성 보증을 위한 OECD 국제공인 인증

- (화학물질 전주기관리 기술 개발) 국내 최초로 5대* 화학법령 대응 화학물질안전관리·법령이행 기술개발 및 중소영세기업 보급(70개사 이상)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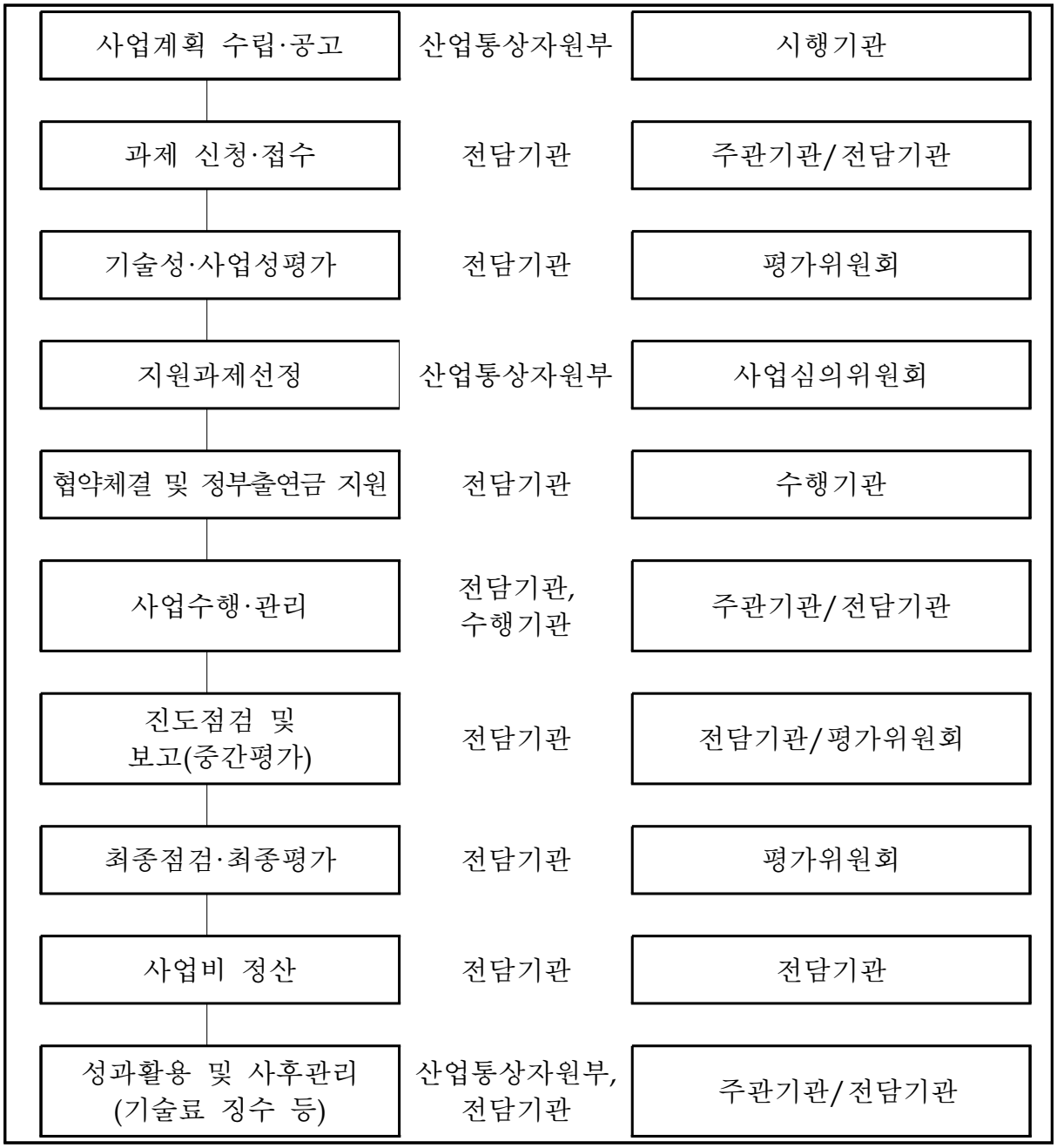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차세대계량기술개발사업**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6	'17	'18	'19	'20	'21
'16~'20	-	-	6,425	8,580	8,386	
'17~'21		-	6,425	8,580	8,386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①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향후추진 방향

- 어린이 제품 및 기술진보 제품의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관리 사각제품 및 유해물질 함유 제품의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 4차 산업혁명 대비 다변화되는 유통체계를 반영한 제품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융복합제품 안전기준 개발
- 기업(특히,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한 제품 생산 역량을 강화토록 제품안전경영체계 구축 지원

○ 향후추진 계획

- 기업이 사전에 안전성을 검증 후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시험·검사방법 등)의 개발·보급함과 안전취약제품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병행
  - ·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 개발
  - · 기술진보 제품의 안전기준 정비
  - · 시중유통 비관리제품 및 유해물질 함유제품 위해성 평가
  - · 융복합 제품의 안전기준 개발
  - · 제품안전관리제도 개선
  - ·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프로그램 개발

② 차세대계량기술개발

○ 향후추진 방향

-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IT 융복합

응용기술 개발 및 신수요 장비의 대응을 통하여 무역수지 적자 증가 추세인 계량·측정산업을 고도화하고 대외경쟁력을 제고

· 계량·측정기의 성능향상 및 IT 융복합에 따른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불법·불량 계량기의 유통방지를 통한 국민의 손실방지

○ 추진계획

- 선진국 대비 뒤져 있는 계량·측정기 검·교정기술 및 장비 개발과 성능·유효성 평가 방법 개발 등을 통해 제품의 융합형 성장환경을 조성·확산

③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 향후추진 방향

- 국내 기반이 미비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평가 운영체계 조기 구축 및 중소기업 사업장 내 화학물질에 대한 효율적 안전관리 체계 확보

· 국내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평가 비용 절감, 민간 시험기관 역량 강화 및 육성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화학물질 모니터링·진단·처방 체계 선진화

○ 향후추진 계획

- 국내 기반 미비 9개 유해성 시험항목에 대한 시설·장비, 시험평가운영체계 등 구축 지원, 시험기관의 양적 저변확대를 위해 민간중소기업 사업 공동 참여 및 시험분석 인력양성을 통한 기술지원 및 시험평가운영체계 습득 유도
- 중소영세기업 대상 화학물질 전주기관리 기술 보급·확산 및 실증화·고도화 실시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국민생활안전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가습기살균제, 갤럭시노트7 리콜 등으로 **제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제품의 융복합화로 인한 위해제품 노출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점, **주유소 계량기 불법조작****, **신종유해물질 대응***** 등 현안 문제 해결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예산 지속 지원 필요

* 제품안전기본법 제18조, 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 없음

1) 결산표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 없음

사 업 명
(17)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3745-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110	114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45	302
명칭	산업기술표준화 및 제품안전관리	표준화 및 인증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표준정책과	주소령		김국호(연구사)
		043-870-5340		043-870-534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A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30,096	29,962	29,962	28,824	28,824	△1,138	△3.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6					2017('17.12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0,096	30,096	30,096 [30,096]	-	-	29,962	29,962	29,962	29,962 [29,962]	-	-	28,824
・국가표준기술력향상	26,046	26,046	26,046 [26,046]	-	-	25,912	25,912	25,912	25,912 [25,912]	-	-	24,514
・국가참조표준데이타 개발・보급	2,250	2,250	2,250 [2,250]	-	-	3,250	3,250	3,250	3,250 [3,250]	-	-	3,250
・국가표준코디네이터	1,000	1,000	1,000 [1,000]	-	-	-	-	-	-	-	-	-
・기획평가관리비	800	800	800 [800]	-	-	800	800	800	800 [800]	-	-	1,060
○ 비목별 분류(합계)	30,096	30,096	30,096 [30,096]	-	-	29,962	29,962	29,962	29,962 [29,962]	-	-	28,824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30,096	30,096	30,096 [30,096]	-	-	29,962	29,962	29,962	29,962 [29,962]	-	-	28,82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 개발·제안 및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관련 참조표준데이터(빅데이터) 개발·보급

- 기술선도 및 융·복합기술 분야 등에 대한 국가·국제표준 개발 및 표준화 추진, 표준화 기반구축 등을 통해 수출 시장 선점 견인

- 산업기술 분야 참조표준의 체계적 개발과 보급・확산을 통해 기술개발 비용 및 기간 단축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① 법령상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30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31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각종 시책의 마련)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② 추진경위

- ’96년 : ‘산업기술개발 5개년 계획’ 수립
- ’99년 : 국가표준기본법(제27조) 제정으로 표준개발 지원근거 마련
- ’00년 : 30억원 예산지원으로 표준화기술개발사업 시작
- ’07년 : ‘표준화기술개발사업’과 ‘표준화기반구축사업’을 통합
- ’09년11월 :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수립
- ’09년 5월 : 녹색성장위원회(지경부) ‘녹색기술 표준화 전략’ 발표
- ’10년 6월 : 지식경제부 R&D사업구조 개편으로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으로 통합
- ’15년 5월 : 산업통상자원부 R&D사업구조 개편으로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분리
- ’16년12월 : 일몰기간 연장(‘18년 일몰 → ’20년 일몰)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② 추진경위

- ’99년 :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참조표준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규정
- ’06년 : 「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참조표준개발계획 반영・개발 추진

- ’06년 8월 :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
- ’06년 8월 : 「국가참조표준센터」 설립 및 참조표준 평가・보급
- ’11년 :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신규 지원
- ’15년 5월 : 산업통상자원부 R&D사업구조 개편으로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분리
- ’06년~’16년 : 27개 데이터센터 지정
- ’16년12월 : 일몰기간 연장(‘18년 일몰 → ’20년 일몰)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7년 ~ ’20년(일몰)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분석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및 관련 산업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국가표준기술력향상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업, 대학, 연구소, 업종별단체, 시험인증기관 등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용요령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참조표준센터,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100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용요령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3) ’18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요구 내용)** 4차 산업혁명 관련 표준화가 전세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표준 선점 및 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을 위한 전략적 표준화 추진

*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는 스마트제조,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국제표준화를 활발히 추진 중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신산업민관협의회, ‘16.12월)’로 제안된 12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IoT, AI, 로봇,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국제표준화 전략을 마련하고 전략적인 표준화 추진

②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의 필수 기반 참조표준데이터 개발 및 보급 추진

③ **(기획평가관리비)**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수요조사 및 신규 사업 신문 공고·설명회 개최, 신규・중간・최종평가 및 관리, 사업성과 분석 등

○ **(산출 근거)**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17) 25,912백만원 → (’18) 24,514백만원 (△1,398백만원)

* ’18년 산출근거 :

① 신규과제 5,527백만원 [(다/상) 4,777백만원 = 36개×176.9백만원×9/12개월 + (단/상) 750백만원 = 5개×150백만원×12/12개월]

② 계속과제 18,987백만원 [(계속) 3,103백만원 = 21개×177.3백만원×10/12개월 + (종료) 7,442백만원 = 42개×177.2백만원×12/12개월 + (기일치) 8,442백만원 = (2개×150백만원×12/12개월=300백만원) + (46개×177백만원×12/12개월=8,142백만원)]

②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17) 3,250백만원 → (’18) 3,250백만원

* ’18년 산출근거 : (단/상) 3,250백만원=21개×154.7백만원×12/12개월

③ 기획평가관리비 : (’17) 800백만원 → (’18) 1,060백만원 (26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표준 제안건수(건)	목표	-	-	44	45	46	1개 과제 평균 정부출연금 6억원(총사업비)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정부출연금 총액을 나누어 성과목표를 설정	지원과제로 국제표준화기구(공적, 사실상)에 제안한 국제표준안 건수의 합	국제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안 제안 여부 확인
	실적	-	-	45					
	달성도	-	-	102					
신규 국제표준(안) 채택건수(건)	목표	-	-	28	29	30	국제표준안 제안건수 대비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국제표준안 채택률을 64% 수준으로 설정하여 목표치 산출	국제표준화기구(공적, 사실상) 신규 국제표준안 채택건수의 합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화 추진 승인 여부 확인
	실적	-	-	36					
	달성도	-	-	129					
표준안 개발 건수(건)	목표	-	70	-	-	-	투입 예산 및 지원과제수를 고려하여 표준안 개발 목표를 산출	지원과제에 대한 표준안 개발 건수의 합	사업수행기관 보고서 또는 성과분석 보고서
	실적	-	72	-	-	-			
	달성도	-	103	-	-	-			
국내표준제안 건수(건)	목표	73	-	-	-	-	-	-	-
	실적	78	-	-	-	-			
	달성도	107	-	-	-	-			
국제표준안 개발건수(건)	목표	50	-	-	-	-	-	-	-
	실적	54	-	-	-	-			
	달성도	108	-	-	-	-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참조표준D/B 활용도(%)	목표	18	18	18	18	17	참조표준센터 DB 접속건수를 종합적으로 평가	(당해접속건수-3년 평균접속건수)/3년 평균접속건수×100	국가참조표준센터 홈페이지
	실적	25	21.6	26.5					
	달성도	139	120	147					
참조표준 DB 활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	목표	-	-	-	76	78	'19년 최종목표가 만족(80점) 수준이 되도록 단계적 상향	참조표준 DB 실제 사용자(수요자)를 대상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	제3자 기관을 통한 DB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적	-	-	-					
	달성도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2014	o 계속과제 : 차세대 플렉시블 PCB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등 98개 o 신규과제 : ICT 융합형 스마트 녹색교통서비스 국제표준 개발 등 48개
2015	o 계속과제 : MPEG Type-1 표준 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화 등 67개 o 신규과제 : 웨어러블 기기용 센서 및 기기의 내환경 표준화 개발 등 71개
2016	o 계속과제 : 에너지경영시스템 보급 확산 기반구축사업 등 101개 o 신규과제 : 스키마 기반 비주얼 감성표현 시스템 표준 개발 등 43개
2017	o 계속과제 : 스마트 공장을 위한 기간시스템·플랫폼·설비 간 상호 운영성 표준화 기반조성 등 106개 o 신규과제 : 건강검진결과 정보활용서비스 표준화 기반조성 등 62개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2014	o 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원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3개 신규지정 및 23개 데이터센터 측정능력/품질시스템 향상을 지원하여 참조데이터 전문생산기관으로 육성 o 활용패키지 개발·보급(4종) - 플라즈마 물성, 심뇌혈관 참조표준 활용패키지 등 개발
2015	o 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원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2개 신규지정 및 26개 데이터센터 측정능력/품질시스템 향상을 지원하여 참조데이터 전문생산기관으로 육성 o 활용패키지 개발·보급(5종) - 플라즈마 물성, 심뇌혈관 참조표준 활용패키지 등 개발
2016	o 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원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3개 신규지정 및 28개 데이터센터 측정능력/품질시스템 향상을 지원하여 참조데이터 전문생산기관으로 육성 o 활용패키지 개발·보급(12종) - 한국인 비만지수, 한국인 경동맥 두께 참조표준 활용패키지 등 개발
2017	o 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원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3개 신규지정 및 27개 데이터센터 측정능력/품질시스템 향상을 지원하여 참조데이터 전문생산기관으로 육성 o 활용패키지 개발·보급(6종) - 철강소재 미세조직 데이터북, 뇌MR영상 참조표준 활용 패키지 등 개발

③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국제표준 선점으로 글로벌 표준시장 선점으로 세계시장 창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등

  * 18년 목표 : 국제표준(안) 제안 46건, 채택 30건을 통한 글로벌 표준강국 진입 기반 조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신산업민관협의회, '16.12월)'로 제안된 12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IoT, AI, 로봇,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화 전략을 마련하고 전략적 표준화 추진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국가공인 참조표준데이터를 개발·보급함으로써, 국가전략산업의 R&D 중복연구 및 개발에 따른 경제적 손실방지를 통한 국가 R&D 효율성 증대

  * '18년 목표 : 25종 DB 개발 및 6개 패키지 개발(국가참조표준 데이터 개발과제 : 19개, 국가참조표준 활용 모델 기획 및 개발과제 : 2개, 데이터센터 운영 : 30개)을 통해 4만 9천건(누적) DB 구축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신뢰성 있는 참조표준데이터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제품·기술개발 및 공정 혁신에 기여

- 참조표준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기반 신산업 창출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읍

7) 사업 집행절차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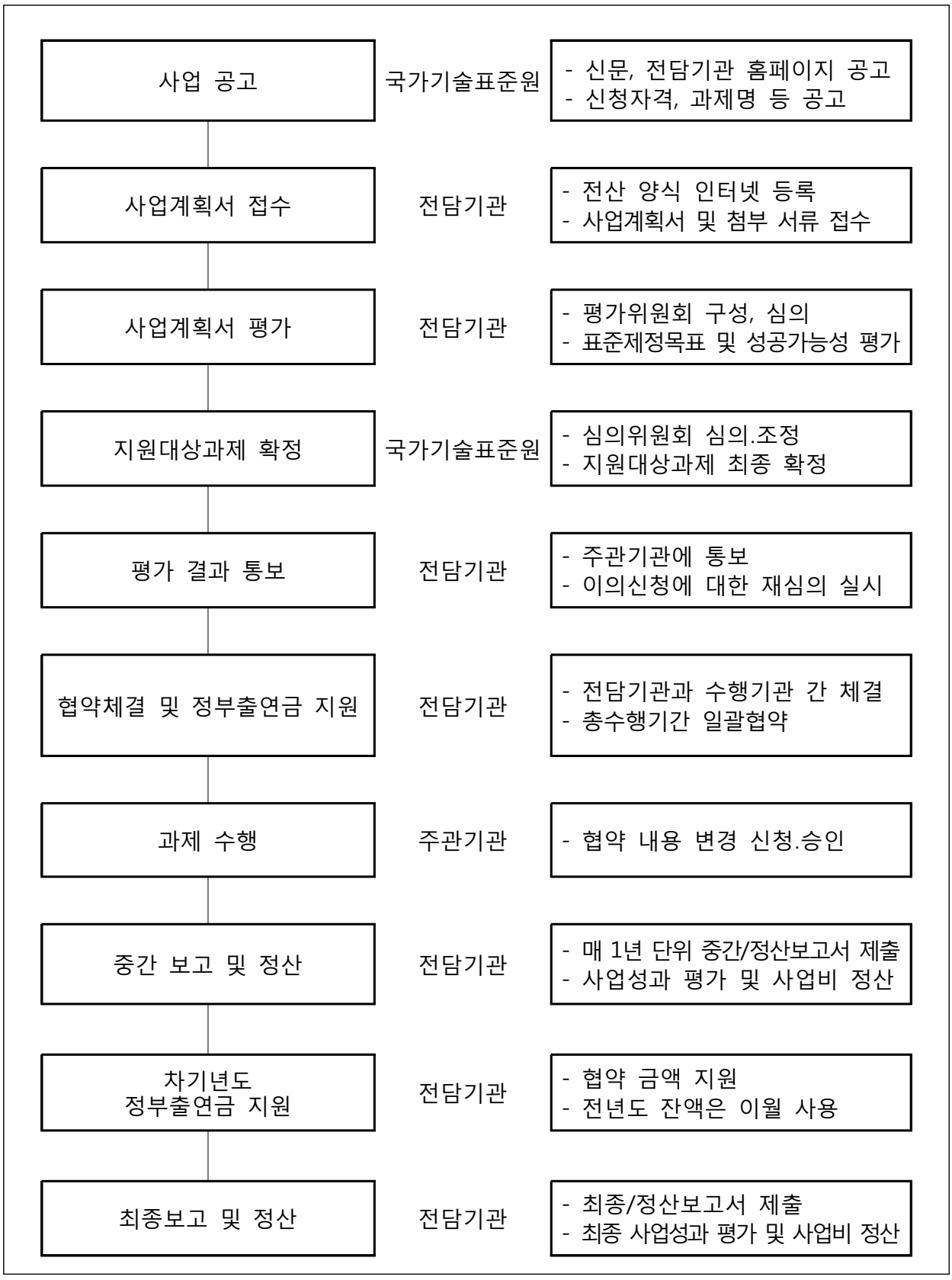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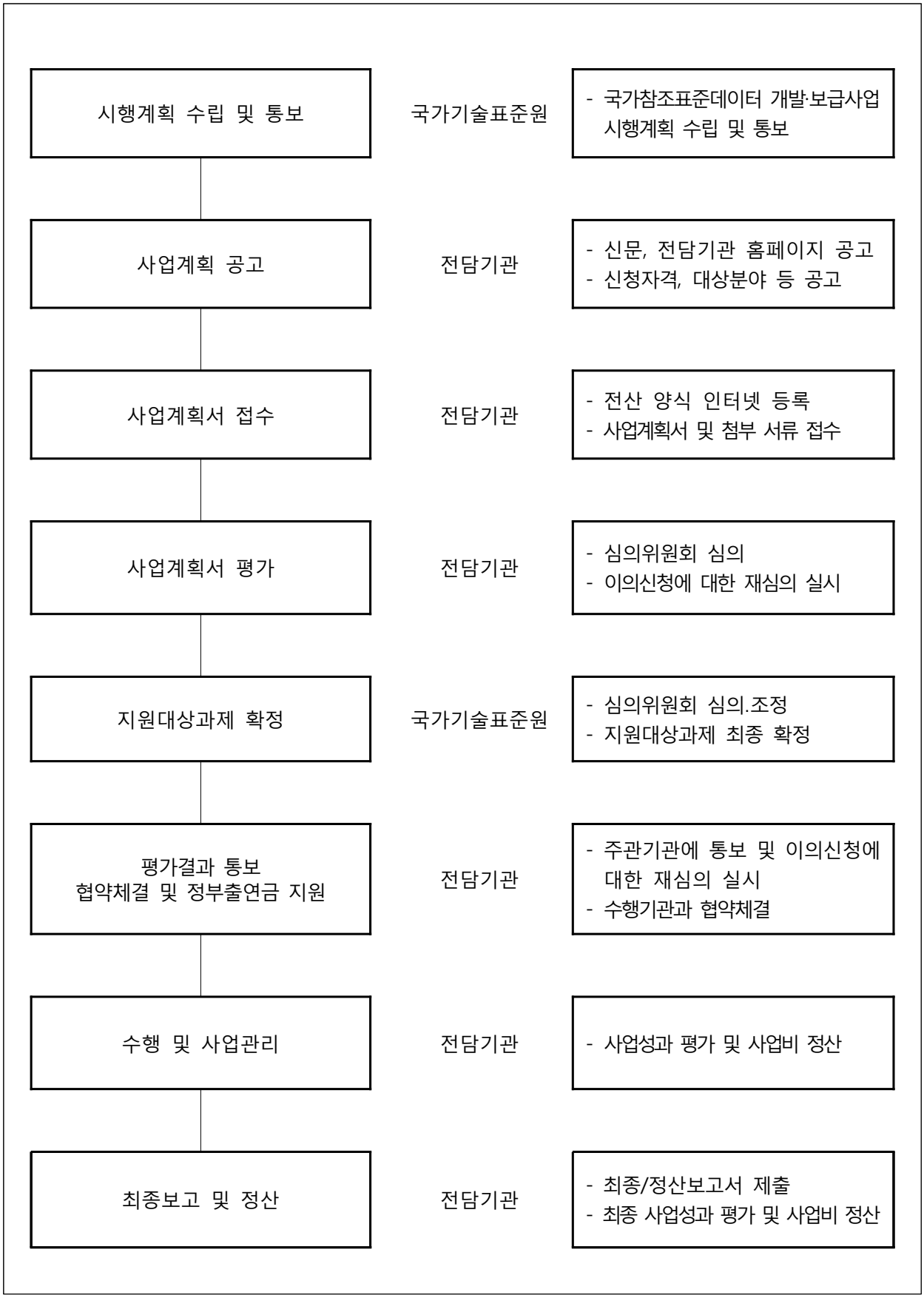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6	'17	'18	'19	'20	'21
'16~'20	30,096	29,962	29,962	29,962	29,962	
'17~'21		29,962	28,464	28,464	28,464	28,46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 향후추진 방향

- FTA 체계 하에서 국가간 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해 각 국가의 표준·기술 규정에 국제표준 수용이 확대됨에 따라 전략적 도구로서의 미래유망산업분야의 표준 발굴
- 우리 기술 선도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제안 및 표준화기반조성 추진
  -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
  -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보유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제안 확대로 국제적 강소기업 육성

○ 세부추진 계획

-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신산업민관협의회, '16.12월)'로 제안된 12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IoT, AI, 로봇,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스마트제품/서비스 관련 국제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적 표준화 추진

②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향후추진 방향

-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 데이터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 지정·운영하여 신뢰성 있는 국가참조표준데이터 제정 및 보급

○ 세부추진 계획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의 필수 기반 참조표준데이터 개발 및 보급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상위평가 결과('14) : 보통

지적·권고사항	조치내용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전략 필요	이원화된 과제기획프로세서 도입('15년), 영리기관 참여유도('15년), 지원목표(CD채택 → DIS채택) 상향('15년), 경쟁확대를 품목지정 도입('17년) 등 지속적인 사업체계 개선 추진
성과 확산·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구성 필요	성과데이터 상시 수집 및 관리시스템 개선('15년),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한 객관적인 성과측정 및 검증·분석('15년), 수행기관 선정평가 시 성과활용성 강화('16년) 등 지속적인 성과확산 활용 도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4	28,890	28,890	-	-	-	-	28,890	28,890	100	100	-	-
2015	29,145	29,145	-	-	-	-	29,145	29,145	100	100	-	-
2016	30,096	30,096	-	-	-	-	30,096	30,096	100	100	-	-
2017	29,962	29,962	-	-	-	-	29,962	29,962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4	28,890	28,890	28,890	28,890	−	28,890	28,890	-	-	100
2015	29,145	29,145	29,145	29,145	−	29,145	29,145	-	-	100
2016	30,096	30,096	30,096	30,096		30,096	30,096	-	-	100
2017	29,962	29,962	29,962	29,962		29,962	29,962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붙임] 내역사업 세부 설명자료

붙임 내역사업 세부 설명자료

1.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07~'20 일몰)

□ 사업개요

사업목적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 표준화 기반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지원대상	기업/대학/연구소/업종별 단체/시험인증기관 등
지원조건	출연 (총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매칭)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추진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4조,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
담당자	(산업부) 표준정책과 박해범 사무관(☏ 043-870-5341)

□ 사업내용(지원내용)

○ 글로벌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개발·제안 및 주요 산업분야별 표준기반 R&D 기획연구 등

- **(표준화연구개발)** 연구개발을 통해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을 제안하여 DIS(CDV)등록까지 가능한 과제(2억원 이내/년, 1~4년)

- **(표준기반조성)**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이끌기 위한 표준전략, 정책개발 및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이 필요한 과제(4억원 이내/년, 1~3년)

□ 기대효과·성과

○ 기대효과

- **(글로벌시장 선점)** 4차 산업혁명 및 지속가능사회 실현 관련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글로벌시장 경쟁력 강화

- **(국제사회 위상 강화)** 국제표준화기구 의장, 간사 등 수임 확대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 및 위상 강화

○ 주요 개발성과

- 국제표준 선점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 영향력 확대를 통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 **(국제표준 선점 대표사례)** 로봇 청소기의 경우 우리나라 청소환경 및 제품특성을 반영한 성능평가방법을 국제표준화 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견인{세계시장 점유율 '11년: 14% (0.8억불) → '15년: 19%(2.2억불)}

<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하여 추진된 국제표준화 성공사례 >

관련 표준	표준 기여 효과	표준 기여도(%)	연간 경제가치 (추정기간)
고강도 철근(SD600)	생산확대, 신규 수출, 건축비 절감	5.7	672억원 ('15~'19)
파인세라믹스	생산확대, 수출확대, 무역수지 개선	11.8	2,952억원 ('15~'20)
건축용 창유리 필름	관련 시장 확대, 관련 장비 수출, 냉방에너지 소비량 감소	4.6	170억원 ('16~'25)
선체보호 도장(PSPC) 기준	IMO규제 사전대응, PSPC 비용절감	5.0	1,381억원 ('13~17)
평판디스플레이 측정방법	OLED 세계시장점유 확대	1.8	886억원 ('10~'13)
BLU 광원성능 및 안전요구	부품(CCFL) 기술개발을 통한 원가절감 및 가격인하	5.1	1,089억원 ('11~'16)

* 출처: 국내외 표준동향조사를 통한 국가표준기술 경쟁력 향상방안 도출(산업연구원, '16.8월)

*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표준화 주도)**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IEC TC 신설 및 간사국 수임('17.2.8)

* **(국제표준화기구 영향력 확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 채택 순위 상승('16년: 일본에 이어 2위), IEC 전문가 참여수 7위 등

< IEC 국제표준 제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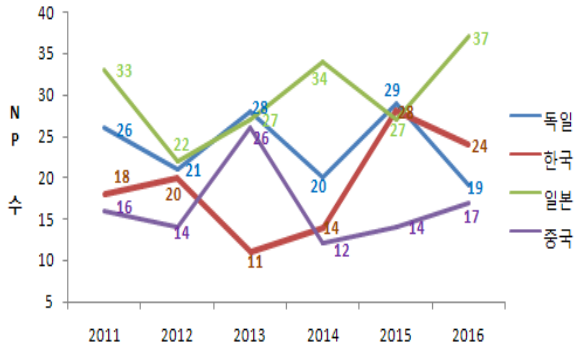

< IEC 전문가 참여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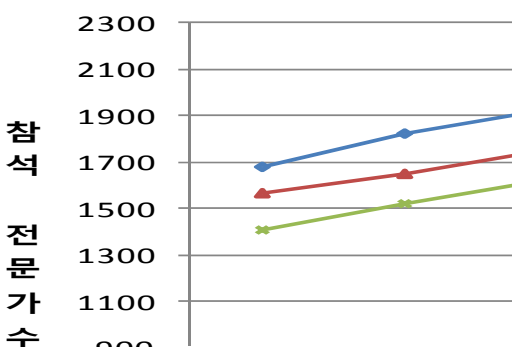

2.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사업 ('11~'20 일몰)

□ 사업개요

사업목적	국가참조표준의 체계적 개발과 보급·확산을 통해 기술개발 비용 및 기간을 단축하여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국가참조표준센터(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원조건	출연 (총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매칭)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추진근거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 제27조
담당자	(산업부) 표준정책과 박해범 사무관(☏ 043-870-5341)

□ 사업내용(지원내용)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참조표준데이터(빅데이터) 개발·보급 지원

- **(참조표준데이터 개발)**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생산한 데이터를 참조 표준화하여 기초연구자료 확충을 통해 국가 산업·기술 기반 마련
- **(참조표준 보급)** 참조표준을 제품·연구에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가공하여 제공하고, 활용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 **(참조표준 DB 구축·운영)** 신뢰성 있는 과학·기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기 위해 개별 데이터센터를 지정하고, 측정장비·시험방법 등을 검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생산된 데이터의 신뢰도 제고

□ 기대효과·성과

○ 기대효과

- **(미래성장동력 창출)** 신뢰성 있는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은 세계 선도형 제품·기술개발 및 공정 혁신에 기여
- **(신산업 창출)** 산업간 융합을 통한 데이터 활용 신산업 창출 기대
- **(중복투자 방지)** 중복 연구·개발 방지를 통한 R&D 생산성 증대
- **(삶의 질 향상)** 한국인 고유특성이 반영된 의료분야 참조표준을 진단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용 절감 및 삶의 질 향상

○ 주요 개발성과

① 국가참조표준 개발 및 DB 구축

- 참조표준을 생산·관리하는 데이터센터 지정을 통하여 과학기술, 인체치수 등 10개 분야 32,000여개의 참조표준을 개발('16.12월 기준)

  * 재료, 물리, 화공, 보건의료 등 27개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운영

분 야	'13년 이전	'14년	'15년	'16년	합계
재료	3,446	76	82	88	3,692
물리	561	47	61	88	738
화공	1,185	512	105	3,700	5,502
생명과학	220	0	1	1	222
기계	55	0	21	0	76
보건의료	6,792	203	539	369	7,903
농림수산	0	0	0	40	40
에너지 자원	6,954	617	44	21	7,636
환경	0	0	0	26	26
항공우주천문해양	0	0	6,260	0	6,260
합 계	19,213	1,455	7,113	4,307	32,095

< 참조표준 DB 접속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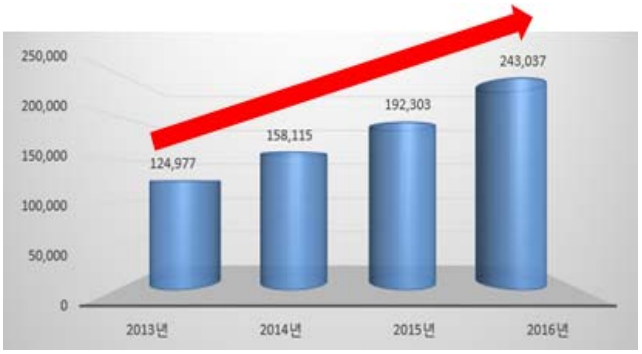

구분	접속건수	전년대비
2013년	124,977	
2014년	158,115	26.5%
2015년	192,303	21.6 %
2016년	243,037	26.4 %

② 신 데이터산업 창출(소프트웨어 국산화 및 인공지능 활용)

- 플라즈마물성 참조표준 기반 반도체 장비 공정용 시뮬레이터 SW국산화 성공 사례

  * ㈜경원테크가 국산화한 K-Speed 시뮬레이터는 반도체 식각 및 증착공정에 사용되는 SW로서 해외 제품에 의존해온 반도체 공정해석 핵심기술을 국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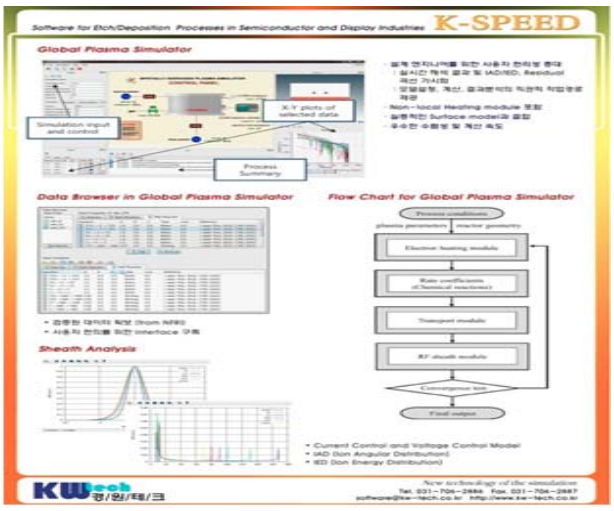

③ 한국인 허혈 뇌지도 개발

- 한국인 뇌MR 영상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질환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한국인 허혈 뇌지도' 개발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

  * 급성뇌경색 환자 5,000여명의 MR 영상 빅데이터 (10만장) x 200개 임상정보 구축

  * 뇌졸중 질환의 예방활동 강화를 통한 의료비 절감혜택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16.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한국인의 데이터' 사용 의무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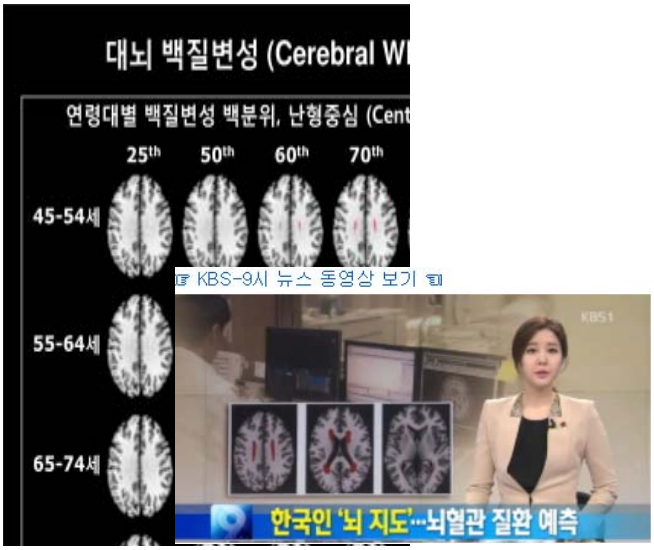

<한국허혈뇌지도 참조표준도판>

<뇌MR영상 표준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의료 플랫폼 공동 개발, 전자신문 16.4.12>

사 업 명
(18) 표준안전기반구축 (3745-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4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45	303
명칭	산업기술표준화 및 제품안전관리	표준화 및 인증	표준안전기반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인증산업진흥과	한상미	김상연	
		043-870-5500	043-870-550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A
표준안전기반구축	22,089	24,166	24,166	14,029	14,029	△10,137	△41.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6					2017('17.12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2,089	22,089	22,089 [22,089]	-	-	24,166	24,166	24,166	24,166 [24,166]	-	-	14,029
· 국제상호인정시험 평가능력기반구축	13,745	13,745	13,745 [13,745]	-	-	16,122	16,122	16,122	16,122 [16,122]	-	-	12,673
· 제품안전품질혁신 기반구축	5,744	5,744	5,744 [5,744]	-	-	4,367	4,367	4,367	4,367 [4,367]	-	-	800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2,000	2,000	2,000 [2,000]	-	-	2,000	2,000	2,000	2,000 [2,000]	-	-	-
· 중소기업화학물질 안전관리기반구축	-	-	-	-	-	1,005	1,005	1,005	1,005 [1,005]	-	-	-
· 기획평가관리비	600	600	600 [600]	-	-	672	672	672	672 [672]	-	-	556
○ 비목별 분류(합계)	22,089	22,089	22,089 [22,089]	-	-	24,166	24,166	24,166	24,166	-	-	14,029
· 장비시스템구축비 (360-04)	13,745	13,745	13,745 [13,745]	-	-	16,341	16,341	16,341	16,341 [16,341]	-	-	11,128
· 연구활동비 등 (360-05)	8,344	8,344	8,344 [8,344]	-	-	7,825	7,825	7,825	7,825 [7,825]	-	-	2,90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 인프라 확충,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품질 기반조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측정산업 선진화 지원

- 국제상호인정협정(ILAC-MRA) 유지, 국제기준에 의한 시험역량 확보 등을 통한 무역상 기술장벽(TBT) 극복 및 원천기술에 대한 수출지원

- 국민 소비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공산품, 전기용품 및 어린이용품 등)에 대해 기업이 사전에 안전성 검증 후 제품을 생산할 수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안전기준(시험·검사 방법 등) 개발·보급과 어린이용품 등 안전 취약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 등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8조(산업구조고도화의 기반확립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② 추진경위

- ’00.9월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 ’02.3월 : 국가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03.4월 :「MRA사업」1차년도 추진
- ’04.4월 : 시험검사능력 고도화대책 수립 및 시행
- ’07.2월 :「시험분석서비스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제3차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
- ’07.11월 :「시험분석장비 인프라 확충 방안수립」제24차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
- ’10.9월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제28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의결
- ’12.3월 :「FTA시대 국가 R&D전략」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결
- ’14.1월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

① 법령상 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조(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② 추진경위

- ‘08.3월 : 제품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장관보고)
- ‘08.12월 : 제1차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 ‘10.2월 : 제품안전기본법 제정 공포
- ‘11.2월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 ‘11.3월 : 제1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4.2월 :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5.6월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20(’18년 일몰)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연구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및 관련 사업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75%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한국건설생활환경시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조명연구원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내기업, 연구소 및 협·단체, 시험인증기관 등	100%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3) '18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①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12,673백만원**('17년 대비 3,449백만원 감소)

○ (장비구축) **무역상기술장벽(TBT) 극복**을 위한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유지·확대토록 국내 시험인증 기관의 **국제적 수준의 인프라구축** 필요에 따라 고가의 장비 지원 금액으로 11,128백만원 요구

- 시험인증기관에 구축하는 장비들은 타 R&D 장비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국내의 모든 수출기업**들이 시험인증기관의 장비를 이용하여 **수출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12대 신산업 분야 등 신수요 산업분야의 국제시험평가능력 향상을 위한 첨단 시험장비 구축
- 조선해양 관련 글로벌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험인증 장비 구축

○ (장비개발 및 해외진출) 고가의 **시험평가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45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 (계속) 7개 × 1,353백만원 × 12/12 = 9,468백만원
- (계속) 1개 × 1,660백만원 × 12/12 = 1,660백만원
- (계속) 4개 × 311백만원 × 12/12 = 1,245백만원
- (계속) 1개 × 300백만원 × 12/12 = 300백만원

②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 : 800백만원**('16년 대비 3,567백만원 감소)

○ **(기반조성)** 제품안전성 및 품질수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방법** 등 제도개선·안전기준 개발을 위한 계속과제 사업비 800백만원 요구

-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의 안전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연평균 약 28,000건)함에 따라 신제품 또는 안전인증대상에 대한 안전기준 및 품질관리 기술 표준화 개발 계속 지원

< 산출내역 >

- (계속) 5개 × 160백만원 × 12/12 = 800백만원

구 분	'17예산	'18요구	연구개발단계	주관기관
□ 표준안전기반구축	24,166백만원	14,029백만원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16,122백만원	12,673백만원	기타	비영리기관
▪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	4,367백만원	800백만원	기타	비영리기관
▪ 기평비	672백만원	55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시험능력향상도(%)	목표	78	82	85	88	90	선진국 시험능력수준을 100으로 설정하고 국내시험기관의 시험능력수준을 평가하되, 신수요 확보분야는 관련 평가장비 가격이 이전에 비하여 고가임에 따라 예산 규모에 비해 성과 증가율이 둔화	평가위원회를 통해 시험측정항목, 국제시험능력, KOLAS 성적서 발행건수를 종합적으로 평가	사업수행 시험연구기관 보고서
	실적	78.3	82.5	86.6	-	-			
	달성도	100	100	102	-	-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제품화실적 (매출액, 억원)	목표	-	-	0.2	0.2	0.2	양적 지표에서 질적 지표로 신규변경에 따라 목표치 신규설정	지원 예산 10억원에 대한 발생 매출액 (=매출액/기술개발과제 중 '제품화과제'지원 예산)	사업수행기관 결과 보고서 및 성과분석 자료
	실적	-	-	-	-	-			
	달성도	-	-	230	-	-			
품질개선 개발기술의 활용 실적(%)	목표	-	-	-	100	-	공정개선 기술 개발 지원과제에 대한 개발기술의 활용 실적을 건수로 평가	(개발기술 활용 건수 / 전년도 공정개선 기술 지원과제 수)×100	
	실적	-	-	-	-	-			
	달성도	-	-	-	-	-			
제품화실적 (건)	목표	15	15	-	-	-	지원과제에 대한 제품화 실적을 건수로 평가	전년도 제품개발과제 중 제품화 실적수	제품안전기반조성 성과분석 자료
	실적	15	15	-	-	-			
	달성도	100	100	-	-	-			
품질경영 촉진사업 실적(건)	목표	37	37	40	-	-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개선 실적 건수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개선 실적 건수의 합	사업수행기관 결과 보고서
	실적	37	37	-	-	-			
	달성도	100	37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2014	o KOLAS 인정규격수 : 852건 o MoU 건수(해외) : 32건 o 기술수준향상도(비교숙련도 실시 건수) : 112건 o 홍보활동 건수(브로셔, 학회, 기타 홍보 건수) : 239건 o 기존시장 확대 기여도(수출관련 성적서 발행 건수) : 74,052건 o 애로기술 지원 건수 : 373건 o 초정밀장비 구축 건수 : 6건
2015	o KOLAS 인정규격수 : 1355건 o MoU 건수(해외) : 45건 o 기술수준향상도(비교숙련도 실시 건수) : 99건 o 홍보활동 건수(브로셔, 학회, 기타 홍보 건수) : 220건 o 기존시장 확대 기여도(수출관련 성적서 발행 건수) : 94,186건 o 애로기술 지원 건수 : 342건 o 초정밀장비 구축 건수 : 7건
2016	o KOLAS 인정규격수 : 800건 o MoU 건수(해외) : 30건 o 기술수준향상도(비교숙련도 실시 건수) : 100건 o 홍보활동 건수(브로셔, 학회, 기타 홍보 건수) : 220건 o 기존시장 확대 기여도(수출관련 성적서 발행 건수) : 95,000건 o 애로기술 지원 건수 : 410건 o 초정밀장비 구축 건수 : 8건
2017	o KOLAS 인정규격수 : 225건 o MoU 건수(해외) : 23건 o 기술수준향상도(비교숙련도 실시 건수) : 100건 o 홍보활동 건수(브로셔, 학회, 기타 홍보 건수) : 138건 o 기존시장 확대 기여도(수출관련 성적서 발행 건수) : 61,700건 o 애로기술 지원 건수 : 664건 o 초정밀장비 구축 건수 : 13건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2014	o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품개발 및 안전기준 고도화를 위한 기반조성 과제 지원('14년도 과제 지원 건수 : 25건) - 어린이제품* 과제지원 : 6건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15.6) 시행에 따른 어린이제품 지원 장려 - 안전기준(안) 개정 : 1건
2015	o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품개발 및 안전기준 고도화를 위한 기반조성 과제 지원('15년도 과제 지원 건수 : 29건) - 어린이제품 과제지원 : 9건 - 안전기준(안) 개정 : 5건
2016	o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품개발 및 안전기준 고도화를 위한 기반조성 과제 지원('16년도 과제 지원 건수 : 27건) - 어린이제품 과제지원 : 8건 - 안전기준(안) 개정 : 6건
2017	o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품개발 및 안전기준 고도화를 위한 기반조성 과제 지원('16년도 과제 지원 건수 : 25건) - 어린이제품 과제지원 : 5건 - 안전기준(안) 개정 : 6건(목표)

③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부담 경감**

- (비용) 국내 시험평가기관을 통한 시험성적서 발급 비용*은 **해외 소재 시험기관 대비 평균 27% 수준**
  * 例) 인공관절(의료기기) 인증비용 : 해외기관 2~3억원, 국내 3~5천만원 **(83% 절감)**

- (시간) 해외 기관을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불필요한 **왕복 소요시간, 체류 시간, 행정절차 처리시간 대폭감소***
  * 성적서 발급 소요 기간 : (평균) 해외 125.7일 → 국내 39.4일

- (기술) 외국기관에 시험 의뢰시 발생할 수 있는 **시험과정에서의 新기술유출**(회로도 및 부품 등의 세부정보) **발생위험*을 차단**
  * 사례 : 업계 관계자 "**해외 시험기관에 시험인증을 의뢰**해놓고 왔는데, 해외 전시회에 나가보면 **똑같은 제품과 디자인이 유통되고 있다**" <해럴드 경제>

❖ 제도시행 이후 '15년까지 수출비용 **총 1.34조원 절감**(산업연구원 용역 결과)

< 비용·시간 절감 例 >

제 품	해 외		국 내
멀티에어컨디셔너	5,000만원, 6개월		1,000만원, 1개월
송풍기	2,000만원, 6개월	⇨	500만원, 1개월
고무발포보온재(판넬)	300만원, 2개월		100만원, 15일
디지털 도어록	2,000만원, 2개월		300만원, 15일

○ 국내 시험평가기관의 **국제적 수준의 시험 역량 확충**

- **후발주자**로서 선진국과의 격차(2017년 현재 약 86% 수준)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
  * 국내 시험기관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고가 장비 **자체적 구입에 한계**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

○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공산품・전기용품 등)은 인증 등 규제를 통한 제품안전관리에도 불구하고 제품안전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 사고건수(소비자원):'13)26,079건→'14)30,375건→'15)27,166건(연평균 약 28,000건 발생)

- 다양한 신제품(드론, 3D프린터 등) 출시,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 등 제품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 위해 제품 및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 제품안전 기술력 향상과 적기 안전기준 개발 등 안전취약제품 원인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국민 생활안전 확보 필요

○ 선진국 대비 품질경쟁력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국가별 순위는 정체상태이며, 중국의 '가격→품질'로의 산업 체질개선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소재·부품 등 산업에서 對중국 수출경합도가 심화되고 있음

* 선진국 대비 품질경쟁력지수 수준 : ('13) 92.9% → ('15) 94.1% 향상 (코트라)
품질경쟁력 순위 : ('13) 27위 → ('15) 28위 정체 (WEF 세계경제포럼)

* 품목의 63% 對中 품질 비교우위 약화, 87% 수출경합도 심화 (2014, 현대경제연구원)

– 중소기업의 품질혁신 자생력 강화를 통한 주력산업 글로벌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정 및 품질검사 기술 개발 및 공정표준화 등 기반조성 필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6	'17	'18	'19	'20	'21
'16~'20	22,089	22,089	22,089	22,089	22,089	
'17~'21		24,166	14,619	13,315	2,009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이 정부정책 방향에 부합함(산업기술R&D 전략기획단)('17.3)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①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향후추진 방향

- 기술무역장벽(TBT)을 극복하기 위한 활용도가 높은 신수요 장비구축 지속 지원
  · 수출기업지원을 위한 국내에서 시험 불가한 ISO, IEC 등 국제 규격에 대한 시험능력 확보를 위한 신수요 첨단장비구축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 신수요 산업분야 : 그린카, 바이오/의료, 원전기자재, 융합부품/소재, 건축물안전, 반도체 조명
  · 국내 기업과 시험평가기관이 공동으로 시험 장비를 개발·적용함으로서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발급에 따른 홍보 및 수입 장비 대체를 기대

○ 향후추진 계획

- 각 주관기관의 특성에 부합되며 구입 예상 장비의 공익성 및 활용도가 높은 장비를 지원
  · 각 주관기관의 자체예산 투자실적을 감안 지원비 인센티브 부여
- 국제협력을 통한 시험결과의 상호인정을 위한 선진시험기관과의 MOU체결 확대

②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향후추진 방향

- 제품 개발에만 치중, 보다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의 기술 개발은 미진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미 제품이 개발되어 있어도 국민의 안전에 危害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발굴하여 개발(개선)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제품의 개발 유도
- 특히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시행('15.6.4)으로 어린이제품 전체산업이 안전관리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관련제품의 기술개발 및 안전기준 개발에 중점 지원
- 우리 제조기업의 공정·부적합 개선 품질기술기반 조성, 보급·확산 및 고도화
- 우리 산업 전체 품질의 상향평준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 향후추진 계획

- 기업이 사전에 안전성을 검증 후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하도록 안전기준(시험·검사방법 등)의 개발·보급함과 안전취약제품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병행
-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통한 불량개선 품질기술 개발 지속 지원
- 확보한 품질기술의 분석·조합을 통한 품질기술 플랫폼 콘텐츠 지속 개발
- 플랫폼 콘텐츠를 활용하여 수요기업으로 불량개선 품질기술 보급·확산
- 품질기술 적용 성과 재투입을 통한 플랫폼 고도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4	18,251	18,251	-	-	-	-	18,251	18,251	100	100	-	-
2015	21,660	21,660	-	-	-	-	21,660	21,660	100	100	-	-
2016	22,089	22,089	-	-	-	-	22,089	22,089	100	100	-	-
2017	24,166	24,166	-	-	-	-	24,166	24,166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4	18,251	18,251	18,251	18,251	−	18,251	18,251	−	−	100
2015	21,660	21,660	21,660	21,660	−	21,660	21,660	−	−	100
2016	22,089	22,089	22,089	22,089	−	22,089	22,089	−	−	100
2017	24,166	24,166	24,166	24,166	−	24,166	24,166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참고자료)

사 업 명
(19)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71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		110	116
명칭					분야명	부문명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4	301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국가기술표준원정책수립운영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	이용구	이승준	곽현규
		043-870-5320	043-870-5328	043-870-533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A
국가기술표준원	1,384	1,444	-	1,576	1,576	132	9.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6					2017('17.12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451	1,451	1,384	-	67	1,444	1,444	1,444	1,297	-	-	1,576
· 운영비	1,407	1,407	1,341	-	66	1,407	1,407	1,407	1,267	-	-	1,507
· 보전금	2	2	1	-	1	2	2	2	0	-	-	2
· 민간이전	42	42	42	-	-	35	35	35	30	-	-	67
○ 비목별 분류(합계)	1,451	1,451	1,384	-	67	1,444	1,444	1,444	1,297	-	-	1,576
· 임차료(210-07)	400	400	334	-	66	400	400	400	363	-	-	400
· 유류비(210-08)	-	-	-	-	-	15	15	15	15	-	-	15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987	987	987	-	-	85	85	85	77	-	-	85
· 차량·선박비(210-10) (폐지)	20	20	20	-	-	-	-	-	-	-	-	-
· 관리용역비(210-15)	-	-	-	-	-	907	907	907	812	-	-	1,007
· 포상금 등(310-03)	2	2	1	-	1	2	2	2	-	-	-	2
·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	-	-	-	-	-	67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35	35	35	30	-	-	-
· 연금지급금(320-03) (폐지)	42	42	42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

2) 사업내용 : 해당없음

3) '18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임차료(400백만원)**

통근버스 5대 운영(5대×200일×400천원)(2017년)

→ 통근버스 5대 운영(5대×200일×400천원)(2018년)

○ **차량유류비(15백만원)**

평균연간유류비(2.5백만원) x 6대(2017년)

→ 평균연간유류비(2.5백만원) x 6대(2018년)

○ **시설장비유지비(85백만원)**

건물유지비(29백만원), 기계·통신 및 전기시설유지비(56백만원)(2017년)

→ 건물유지비(29백만원), 기계·통신 및 전기시설유지비(56백만원)(2018년)

○ **청사관리용역비(1,007백만원)**

청사관리용역비(907백만원)(2017년) **→ 청사관리용역비 : 1,007백만원(2018년)**

○ **포상금 등(2백만원)**

포상금 등(2백만원)(2017년) **→ 포상금 등(2백만원)(2018년)**

○ **민간경상보조(67백만원)**

충북혁신도시 공동 보육시설 운영비(6,700원×5명)(2017년)

→ 충북혁신도시 공동 보육시설 운영비(6,700천원×10명)(2018년)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6	'17	'18	'19	'20	'21
'16~'20	1,451	1,444	1,343	1,469	1,469	
'17~'21		1,444	1,371	1,371	1,371	1,37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4	1,122	1,122	-	12	-	-	1,134	1,133	101.7	99.9	-	1
2015	1,468	1,468	-	-	-	-	1,468	1,385	94.4	94.4	-	83
2016	1,451	1,451	-	-	-	-	1,451	1,384	95.4	95.4	-	67
2017	1,444	1,444	-	-	-	-	1,444	1,297	89.8	89.8	-	-

※ 이·전용 등 : 전용, 이용, 조정, 이체 전부 포함하여 작성

※ 추경은 추경증감액을 본예산에 합한 금액을 기입

※ 2017년은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은 이월예상액과 불용예상액으로 기입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2014	- 전용 : 업무용 차량 운영 예산 부족, 기타직 퇴직금 지급액 부족
2015	- 위와 동일하게 기술
2016	- 위와 동일하게 기술
2017	- 위와 동일하게 기술

라. 기타 추가자료(참고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20) 기술표준정책 (7134-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4	302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국가기술표준원정책수립운영	기술표준정책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표준정책과	주소령	-	전 설(연구사)
		043-870-5340	-	043-870-534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A
기술표준정책	1,647	1,529	1,529	1,523	1,523	△6	△0.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6					2017('17.12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687	1,708	1,647	-	61	1,529	1,529	1,659	1,584	-	-	1,523
· 운영비	767	767	727	-	40	685	685	685	199	-	-	729
· 연구용역비	115	115	97	-	18	50	50	180	171	-	-	-
· 포상금운영	5	5	4	-	1	5	5	5	0	-	-	5
· 국제표준화기구 국제부담금	800	821	819	-	2	789	789	789	500	-	-	789
○ 비목별 분류(합계)	1,687	1,708	1,647	-	61	1,529	1,529	1,659	1,584	-	-	1,523
· 상용임금(110-03)	380	380	345	-	35	380	380	380	331	-	-	433
· 일반수용비(210-01)	255	255	255	-	-	263	263	143	143	-	-	140
· 복리후생비(210-12)	6	6	6	-	-	6	6	6	-	-	-	8
· 시험연구비(210-13)	90	90	85	-	5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	-	-	-	-	-	-	120	118	-	-	104
· 일반연구비(260-01)	-	-	-	-	-	50	50	180	171	-	-	-
· 정책연구비(260-02)	115	115	97	-	18	-	-	-	-	-	-	-
· 포상금(310-03)	5	5	4	-	1	5	5	5	-	-	-	5
· 고용부담금(320-09)	36	36	36	-	-	36	36	36	34	-	-	44
· 국제부담금(340-02)	800	821	819	-	2	789	789	789	787	-	-	78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글로벌 표준경쟁이 심화되는 시장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표준·제품안전·적합성·기술규제대응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및 운영
- 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표준정책을 개발한 부서 포상을 통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개인역량 극대화를 유도
- 국제표준화기구 참여 확대를 통한 글로벌 표준 선도국 도약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 제4조(각종 시책의 마련)
- 제19조(국가측정표준확립사업의 추진),
- 제21조(적합성평가체계의 구축),
-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 제26조의2 (무역기술장벽 관련 시책의 추진)

○ 산업표준화법

- 제3조(산업표준화 기본계획 등)
-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 제6조(산업표준의 제정등의 신청·협의)
-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 계량에 관한 법률

- 제23조(계량산업의 지원)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제6조(품질경영 우수기업 지원)

○ 제품안전기본법

-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② 추진경위

- '10. 11 :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신설
- '12. 7 :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방안 대통령 보고
- '12. 12 :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개혁작업단 TF팀 신설
- '13. 12 :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신설
- '14. 1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경제장관회의 보고
- '14. 2 :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2.27)
- '14. 4 : TBT 컨소시엄 구성
- '14. 12 : 국무총리훈령 제638호로 개정
- '15. 6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6.4)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18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운영비(729백만원)

- 표준·제품안전·적합성·기술규제대응 분야 관련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 : 485백만원
  ▪ 산출내역 : 1.8백만원×12개월×19명(2017년) → 2.1백만원×12개월×19명(2018년)
- 품질경영 우수기업 선정 심사 및 회의 수당 등 : 140백만원
  ▪ 산출내역 : (현장심사 위원수당) 5개 분야 x 2일 × 58명 × 0.3백만원(2017년)
  → 5개 분야 x 2일 × 46명 × 0.3백만원 = 140백만원(2018년)
- 품질경영 우수기업 포상물 제작 및 품질경영 문화 확산 등 : 104백만원
  ▪ 산출내역 : (포상 및 문화확산) 88백만원(2017년) → 104백만원(2018년)

○ 지식관리 포상금 지원(5백만원)

▪ 산출내역 : 우수부서(1백만) × 5과 = 5백만원(2017년)
→ 우수부서(1백만) × 5과 = 5백만원(2018년)

○ 국제표준화기구 부담금(789백만원)

▪ 산출내역 :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 11개 기구
789백만원(2017년) → 789백만원(2018년)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6	'17	'18	'19	'20	'21
'16~'20	1,687	1,529	1,475	1,313	1,300	
'17~'21		1,529	1,523	1,452	1,452	1,45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4	1,853	1,853	-	-	-		1,853	1,728	93.3	93.3	-	125
2015	2,004	2,004	-	-	-		2,004	1,941	96.9	96.9	-	63
2016	1,687	1,687	-	21	-		1,708	1,647	97.6	96.4	-	61
2017	1,529	1,529	-	130	-		1,659	1,584	103.6	95.5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2014	- 불용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14백만원 및 전문과 휴직에 따른 인건비 11백만원
2015	- 불용 : 전문관 휴직에 따른 인건비 및 집행잔액 63백만원
2016	- 이·전용 등 : 환율변동에 따른 부족분을 “국가기술표준원 기본경비”에서 “국제부담금”으로 21백만원 - 불용 : 전문관 휴직에 따른 인건비 및 집행잔액 61백만원
2017	- 이·전용 등 : 학술연구용역의 예산 부족분을 “국가기술표준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연구비”로 130백만원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무역위원회

세출예산 총괄표(무역위원회)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결산	2017예산		2018예산		증 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
총 계	**1,303**	**1,234**	**1,234**	**1,314**	**1,314**	**80**	**6.5**
<일반회계>	**1,303**	**1,234**	**1,234**	**1,314**	**1,314**	**80**	**6.5**
무역구제지원사업 (1233-301)	1,303	1,234	1,234	1,314	1,314	80	6.5

사 업 명
(1) 무역구제지원사업 (12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110	113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무역및투자유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1
명칭	무역구제	무역구제지원	무역구제지원사업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무역조사실	무역구제정책과	최형기 과장	문인배 사무관	-
		044-203-5321	044-203-5855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A
무역구제지원사업	1,303	1,234	1,234	1,314	1,314	80	6.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6					2017('17.12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327	1,327	1,303	-	24	1,234	1,234	1,234	1,209 [1,209]	-	-	1,314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강화	390	390	390	-	-	390	390	390	386 [386]	-	4	490
· 무역구제진흥	290	290	290	-	-	197	197	197	195 [195]	-	2	177
· FTA모니터링 등 산업경쟁력조사 및 무역구제제도연구	300	300	295	-	5	300	300	300	285 [285]	-	15	300
· 전세계 무역구제 기관간 협력	347	347	328	-	19	347	347	347	343 [347]	-	4	347
○ 비목별 분류(합계)	1,327	1,327	1,303	-	24	1,234	1,234	1,234	1,209 [1,209]	-	25	1,314
· 운영비-일반수용비 (210-01)	623.5	623.5	623	-	0.5	526	526	526	518 [518]	-	8	606
· 운영비-일반용역비 (210-14)	190	190	185	-	5	190	190	190	190 [190]	-	-	190
· 국내여비 (220-01)	20	20	20	-	-	19	19	19	18 [18]	-	1	19
· 국외업무여비 (220-02)	102	102	89	-	13	107	107	107	106 [106]	-	1	107
· 업무추진비 (240-01)	11.5	11.5	11	-	0.5	12	12	12	12 [12]	-	-	12
· 연구비-정책연구비 (260-02)	300	300	295	-	5	300	300	300	285 [285]	-	15	300
· 민간경상보조 (320-01)	80	80	80	-	-	80	80	80	80 [80]	-	-	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증가하는 덤핑, 보조금,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산업 피해조사와 기업구제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5조(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결정), 제6조(직권조사), 제25조(산업경쟁력영향조사) 등
- 대외무역법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등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등)

② 추진경위

- '87년 무역위원회 설립(근거 : 대외무역법)
- '95년 덤핑, 보조금 조사업무 관세청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
- '01년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 제정, 제1회「무역구제서울국제포럼」개최
- '02년 미국 ITC의 개별산업 경쟁력조사 및 무역정책연구(美관세법332조)를 벤치마킹하여 산업경쟁력조사 예산 3억원을 확보, 자동차변속기 등 4개 과제 조사
- '06년 무역구제포털시스템 구축
- '07년 지재권 침해조사 기능 확대 및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 마련,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지정(시계, 의류, 시계 등 3개 업종단체)
- '08년 지재권 침해 조사 활성화 방안 발표
- '09년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 강화사업 수행
- '11년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무역구제 경연대회 개최
- '12년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및 자료 현행화
- '13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강화를 위한 무역위·경찰청간 공조체제 강화
- '14년 덤핑방지관세 관련 무역위·관세청간 업무협력 공조체제 강화
- '14～'15년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 WTO와 공동으로 개최
- '16년 제1차 한・중(북경)/한・베트남 FTA(서울) 무역구제분과 이행위원회 개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내 기업, 대학, 유관 협회 및 단체 등

3) '18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덤핑,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구제 조치, 관련 인프라 확충 사업비 1,314백만원 요구

▪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FTA 확대로 증가하는 덤핑,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등에 따른 추가 재원소요를 감안하여 '17년대비 6.5% 증액(+8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 무역구제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국내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 구제할 수 있는 WTO 체제가 인정하는 유일한 구제수단

□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정책에 따라 많은 수입규제를 경험, 세계 2위의 피소국, 세계 12위의 제소국

* 피소국(반덤핑) : ①중국(1,170건), ②한국(384건), ③대만(279건), ④미국(273건)
* 국내 피소현황('17.7 현재) : 28개국, 총 190건(규제중 144건, 조사중 46건)

○ 향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부각될 전망

□ 최근 저성장 기조,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수입급증 등으로 국내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반덤핑,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등 무역구제조치 활용 증대 예상

○ '17.8월 반덤핑 신청은 7건으로 전년대비('16년 총 5건) 이미 40% 증가하였으며,

- 현재 10여개 기업이 반덤핑, 지재권·특허권 침해 등 무역구제 제소 상담 중으로 하반기에 실제 제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 무역구제 조사활동에 소요되는 변호사(법률자문료*), 변리사(지재권 침해여부 감정료*) 등 전문가 자문료 예산 증액 필요

* 무역위원회 의결(수출입중지 등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조사대상 기업(피신청인)이 행정소송을 제기
* 일반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재권 침해여부에 대해 조사대상 1건당 3명의 변리사 감정비용이 소요

< 국내 무역구제조사 신청현황(단위: 건) >

구분		'87~'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8	계
반덤핑	국가	185	4	14	7	15	14	8	16	5	9	14	291 (192)
	품목	102	3	6	6	6	5	5	10	4	5	7	159 (111)
세이프가드		33	-	-	-	-	-	1	-	-	-	-	34 (22)
불공정무역행위*		266	6	9	12	8	9	8	10	9	12	2	351 (116)

* ( )은 구제조치 건수

* 불공정무역행위 : 지재권 침해(영업비밀 등), 원산지 위반 등

▪ 산출내역

① 불공정무역행위조사 : ('17) 390 → ('18) 490백만원 (+100백만원)

- 최근 FTA,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불공정무역행위 및 무역피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국내산업 보호

· 조사활동 및 전문가 자문료(194)*,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80), 소송대리인 비용(136)**, 조사보고서·의결서 인쇄 등(80)

* 무역구제 조사활동 및 전문가 자문료 : ('17) 140 → ('18 요구) 194

** 소송 대리인비용 : ('17) 90 → ('18 요구) 136

② 무역구제진흥 : ('17) 197 → ('18) 177백만원 (△20백만원)

- 무역구제제도의 인지도를 제고를 위한 학술세미나, 홍보 및 미래 무역구제 인력양성을 위한 논문대회, 경연대회 등 개최

· 학술세미나(26), 무역구제 논문대회(28), 경연대회(43), 무역구제지 발간(50), 무역구제제도 홍보 등(30)

③ 산업경쟁력 조사 및 제도 연구 : ('17) 300 → ('18) 300백만원

- 산업피해·덤핑·불공정무역행위 관련 국내외 조사제도 연구, 조사 사례별 이슈 및 시사점 분석

④ 전세계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 ('17) 347 → ('18) 347백만원

-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 개최 및 FTA 무역구제분야 협상 참여, 해외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190), 국제협력(157)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산업경쟁력조사 사업에 대한 만족도 (%)	목표	79	70	70	71	72	최근 3년간의 평균 실적을 고려하여 설정	업계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66.3	69.1	69.3	-	-			
	달성도	83.9	98.7	99.0	-	-			
홈페이지 무역구제 DB 만족도 (%)	목표	75	75	75	75	75	최근 3년간의 실적 평균치를 고려하여 설정	홈페이지 이용자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69.3	75.4	74.8	-	-			
	달성도	92.4	100.5	99.7	-	-			
무역구제 지원건수 (업체수)	목표	신규	신규	42	44	46	최근 3년간의 무역구제 지원건수 평균을 목표치로 설정	반덤핑 및 불공정무역행위 현지조사, 상담 등 지원 업체수	출장내역 및 지원보고서 등
	실적	-	-	43	-	-			
	달성도	-	-	102.4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4	- 2014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을 WTO와 공동으로 개최함에 따라 WTO가 후원하는 첫 번째 무역구제기관 간 고위급 협의체로써의 위상 제고('14.6월, 12개국 200여명 참석) - 중국, 일본 등 20개국을 대상으로 합판, 플로트판유리, 에탄올아민 등 총 14건의 반덤핑 조사를 수행 -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 등 10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5건 조사진행 - 한중 FTA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와 효율적인 운용방안 등 14개 정책연구용역 추진 - 반덤핑관세 관련 무역위원회·관세청간 협업체제 강화('14.8월) - 무역구제제도 저변확대를 위한 무역구제 아카데미 개최('14.6월, '14.11월) - 조사관 역량강화를 위하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상무부(DOC) 등 외국 무역구제기관 방문 현장교육 실시('14.11월) - 지재권 전문가, 업계 종사자 및 대학생 등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조사제도 안내를 위한 심포지움 개최('14.11월) -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조사를 신청하고 진행현황 확인 등이 가능토록 무역구제 업무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업무 효율성 및 이용편의성 제고
2015	- '14년에 이어 2015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을 WTO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한국의 무역구제기관(무역위원회) 위상 강화 및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15.6월, 18개국 250여명 참석) - 중국・싱가포르・일본산 PET필름, 중국산 침엽수 합판 등 4건의 반덤핑 조사개시 및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 등 3건의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 - 특허권 침해 등 10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5건 조사진행 - 무역구제 대국민 홍보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홍보 만화책 및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산학연 관련 기관 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 20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실시 - 무역구제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버스 광고 실시('15.5월) - '보조금률 조사 실제기법 연구' 등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개최를 통한 한중 무역구제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 RECP 제8차 협상(6월), 한·중·일 제7차(4월)·제8차(7월) 협상 등 FTA 협상 참여 - 무역위원회 설립이후부터 '08년까지 조사자료 DB구축 등 무역구제 정보시스템 고도화

2016	- 일본・인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중국산 합판 등 4건의 반덤핑 조사개시 및 미국・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후판 등 3건의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 - 상표권, 영업비밀 침해 등 12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5건 조사진행 - 무역구제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최신 이슈를 분석하는 무역구제지를 발간하여 산학연 관련 유관기관에 배포 -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무역위원회의 위상강화 및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미국, 중국, 인도, EU등 18개국 300여명 참석, '16.5월) - 제16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제1차 한중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 개최를 통한 한중 무역구제기관간(무역위원회-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협력채널 강화('16.6월) - 화장품, 의약품, 가공식품 등 5대 소비재 품목에 대한 산업경쟁력 조사 추진('16.8월) - 무역구제제도 인지도 제고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무역구제 경연대회 및 논문대회 추진('16.11월)
2017	- '17.8월 현재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 대만・태국・UAE산 PET 필림 등 6건의 반덤핑 조사 개시, 1건 조사개시 검토중이며,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등 2건에 대해 종료 재심사 - '17.8월 현재 상표권, 특허권 침해 등 2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 1건은 조사개시하고 1건은 종결 -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빈발 업종 중심으로 업종별 대표성이 있는 협회·단체 추가 지정 (('16)13개 → ('17) 16개) -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17.7월, 미국, 중국, 인도, EU등 13개국 330여명 참석) 및 참석한 미국, 중국, 인도 등 9개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들과 양자면담을 통해 對韓 수입규제조치 관련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논의 - 로봇, 전기차, OLED 제조장비 등 3개 품목에 대한 산업경쟁력 조사 추진('17.8월)

③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 운영을 통해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급격한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수입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산업 보호

- WTO, 美 ITC・상무부, 중국, 인도, 캐나다, EU 등 전세계 무역구제기관 및 전문가 300여명이 참여하는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전세계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한국 무역위원회의 위상 및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

- 보호무역주의, FTA 관련 무역피해 등에 민감한 품목에 대한 산업경쟁력 조사를 추진하여 국내기업의 예상피해를 사전 진단하고, 이를 관련 기업·협단체 등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전략에 활용 가능하게 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과 연계

- 무역구제 관련 대학생 논문발표대회 및 무역구제 경연대회 개최를 통해 미래의 정책 수요자인 대학생에게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관심 확대 및 이해 증진

- 무역구제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피해기업의 무역구제제도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고, 실시간으로 조사 진행상황 및 조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무역구제진흥

무역위원회 추진사업 및 과제 선정 ▸ 세부사업 계획 수립 ▸ 사업수행자 선정 ▸ 협약 체결 및 사업추진

○ 산업경쟁력 조사

업계 수요조사 ▸ 조사 대상 품목 선정 ▸ 용역발주 (전문연구기관) ▸ 산업경쟁력 조사 실시 ▸ 조사결과 제공 및 산업피해구제 반영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6	'17	'18	'19	'20	'21
'16~'20	1,327	1,234	1,160	1,102	1,255	
'17~'21		1,234	1,294	1,294	1,294	1,29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조사자료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조사결과를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무역구제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편의성 향상 및 투명성 확보 추진
- (중소기업 이용활성화) FTA 체결 확대에 부응하여 중소기업의 무역구제제도 이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절차 간소화, 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 (전문성 강화) 특허·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의 비중이 커지는 새로운 무역구제 수요에 대응하여 조사기법 수준 제고 및 조사역량 확보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4	1,470	1,470	15	-	-	-	1,485	1,465	99.7	98.7	12	8
2015	1,397	1,397	12	-	-	-	1,409	1,392	99.6	98.8	-	17
2016	1,327	1,327	-	-	-	-	1,327	1,303	98.2	98.2	-	24
2017	1,234	1,234	-	-	-	-	1,234	383	31.0	31.0	-	-

※ 2017년은 6월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은 이월예상액과 불용예상액으로 기입

2) 주요 결산사항

2014	예산절감 차원에서 8백만원을 불용하였으며, WTO 분쟁의 지속적인 증가로 '14년 하반기 사례까지 연구결과에 포함하는 등 충실성 제고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비 이월(12백만원)
2015	예산절감 차원에서 17백만원 불용
2016	예산절감 차원에서 24백만원 불용
2017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세출예산 총괄표(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결산	2017예산		2018예산		증 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
총 계	**73,814**	**71,984**	**71,984**	**68,032**	**82,717**	**10,733**	**14.9**
<일반회계>	**4,716**	**5,383**	**5,383**	**12,455**	**13,255**	**7,872**	**146.2**
동해자유무역지역조성 (3331-319)	0	500	500	7,501	7,501	7,001	1,400.2
마산자유무역지역 스마트혁신자원센터구축 (3331-320)	0	0	0	0	600	600	순증
자유무역지역관리 (7135-301)	4,022	4,244	4,244	4,327	4,527	283	6.7
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 (7136-451)	694	639	639	627	627	△12	△1.9
<지역발전 특별회계>	**69,098**	**66,601**	**66,601**	**55,577**	**69,462**	**2,861**	**4.3**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4901-301)	5,470	4,135	4,135	2,775	3,775	△360	△8.7
경제자유구역기 획단운영 (2733-301)	952	917	917	871	971	54	5.9
구역청투자유 치지원 (2733-302)	4,450	3,800	3,800	3,600	3,600	△200	△5.3
기타기반시설지 원 (2733-409)	14,723	22,757	22,757	19,897	25,474	2,717	11.9
주요기반 시설지원 (2733-415)	43,503	34,992	34,992	28,434	35,642	650	1.9

사 업 명
(1) 동해자유무역지역조성(3331-31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	110	114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19
명칭	지역경제활성화	자유무역지역조성	동해자유무역지역기반시설확충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O	-	-	O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	-	-	70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산업물류투자팀	정재남	백숙자	홍성진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이제오	-	이용욱
		044-203-4630	044-203-4631	044-203-4635
		03-522-6111		033-522-618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A
동해자유무역지역 기반시설확충	-	500	500	7,501	7,501	7,001	1,400.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6					2017('17.12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동해자유무역지역 기반시설확충	-	-	-	-	-	500	500	500	287 [287]	-	213	7,501
・저온물류창고형 표준공장 건축	-	-	-	-	-	500	500	500	287 [287]	-	213	7,501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500	500	500	287 [287]	-	213	7,501
・실시설계비(420-02)	-	-	-	-	-	500	500	500	287 [287]	-	213	-
・공사비(420-03)	-	-	-	-	-	-	-	-	-	-	-	7,501
・감리비(420-04)	-	-	-	-	-	-	-	-	-	-	-	-
・시설부대비(420-05)	-	-	-	-	-	-	-	-	-	-	-	-

* 낙찰차액 반납액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동해자유무역지역 입지여건에 특화된 맞춤형 생산기반시설('저온물류창고형 표준공장')을 구축하여 콜드체인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수출과 외투유치 촉진, 고용창출을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기반시설 확충 노력)
-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② 추진경위

- ('15. 9월) 자유무역지역 콜드체인 허브 구축 및 연계방안 연구용역
  : 동해자유무역지역의 특화된 biz Model로 수산물 가공 수출 및 유통모델 제시
- ('16. 5월) 동해 콜드체인 허브구축 사업 사전 경제성 분석 연구용역(한국산업관계연구원)
  : 동해기반시설확충사업의 사전 사업 타당성(BC 1.12) 및 입주 수요 조사
- ('16. 9월) 강원도 및 동해시와 지방비 매칭 협의 완료(매칭비율: 국비(70),지방비(30)
- ('17. 2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기획・설계 관리) 약정 체결 및 협의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28,004백만원

구분		'17년	'18년	'19년	합계
예산 (백만원)	**계**	**1,230**	**11,253**	**15,521**	**28,004**
	국비(70%)	500	7,501	11,602	19,603
	지방비(30%)	730	3,752	3,919	8,401
집행 (백만원)	공사비	-	10,561	14,586	25,147
	시설부대경비	1,230	692	935	2,857
	- 설계비	1,220	-	-	1,220
	- 감리비		662	914	1,576
	- 시설부대비	10	30	21	61

* 국비 : 지방비 = 70%(196억원) : 30%(84억원, 강원도 15%(42억원), 동해시 15%(42억원))

- 사업기간 : '17~'19년
- 사업규모 : 저온물류창고형 표준공장 1동(지상 3층, 연면적 10,136㎡)
  * 물류창고 5천㎡(냉동 2만톤, 냉장 5천톤), 가공공장 5천㎡, 물류자동차시설구축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사업 수혜자 : 동해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및 동해시 소재 수산 가공업체

3) ’18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저온물류창고형 표준공장 건축 공사비 : **7,501백만원**

- (산출기준) **표준공장 건축 공정률 42% 달성을** 기준으로 공사비+감리부대시설비 산출

- (산출내역) [공사비(25,147백만원) + 감리·시설부대비(1,637백만원)] x 공정률(42%)
= 총 11,249백만원 中 70%수준을 국비 지원 = 7,501백만원

* ’18년도 국비(7,501백만원)는 전액 공사비로, 자자체 예산은 공사비와 감리.시설부대리로 집행

‣ 공사비 : 계획 연면적(10,136㎡)에 유사시설* 공사 단가 적용

* 수협 인천분산물류센터(물류시설, 203백만원/㎡),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제조공장, 106백만원/㎡) 건축 공사비를 적용하여 산출

‣ 감리·시설부대비 : ‘201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지침’의 요율 적용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자유무역지역 입주율(%)	목표	70	78	82.7	87.2	88.5	전년목표대비 대비 1.5%증가	(입주면적/임대가능면적)×100	각 관리원 발간 입주업체 현황 자료
	실적	73	78.2	82.8	-	-			
	달성도	104.3	100.3	100.1	-	-			
자유무역지역 수출액(억달러)	목표	신규	24	22	22.6	23.2	전년목표치에 ‘18년 경제성장률(2.8%)를 곱하여 산출	각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수출액 합계	각 관리원 발간 입주업체 현황 자료
	실적	신규	21	20.4	-	-			
	달성도	신규	87.5	92.7	-	-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고용인원(천명)	목표	11.5	12	11.1	11.3	11.3	전년목표치와 동일하게 산출	각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등 고용인원 합계	각 관리원 발간 입주업체 현황자료
	실적	10.7	10.9	10.4	-	-			
	달성도	93.0	90.8	93.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18.3월까지 저온물류창고형 표준공장 실시설계 완료(예정)

③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동해 자유무역지역에 기 조성된 부지와 '저온물류창고형 표준공장'에 수산 가공·무역유통·물류 등 콜드체인 가치사슬업체를 유치하여 동해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해항을 중계 가공·물류 거점으로 육성

  * '17.8월 현재, 수산 제조·물류업체 3개社 입주 완료, 저온물류창고형 표준공장 완공 시점에 10개社 입주 예상

- 또한, 동해항 3단계 확장사업('16~'20년)과 연계하여 동행의 중계가공무역 발전 촉진

  * (연간하역) 21,702천톤 → 41,075천톤('20년), (연간접안) 16척 → 23척('20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14까지 기투자액	2015	2016	2017	2018(안)	2018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17~'19	-	-	-	12 (국비 5, 지방비 7)	112 (국비 75, 지방비 37)	156 (국비 117, 지방비 39)	280

□ **총사업비 변경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입주기업들이 요구하는 저온물류창고형 표준공장을 설계, 시공함에 있어 관련분야 감독전문인력을 확보한 조달청(맞춤형서비스제도)에 의뢰하여 시설물 신축

실시설계('17년~'18.3월)	(산자부 동해무역원, 조달청, 설계용역업체)
↓	
공사시공 및 감리시행('18년~'19년)	(산자부 동해무역원, 조달청, 시공자, 감리자)
↓	
조성공사 준공('19년)	(산자부 동해무역원, 조달청, 시공자, 감리자)

○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 시설공사의 전문인력이 없는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단계별(기획, 설계, 계약, 시공, 사후관리 등)로 대행하는 서비스제도

-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문인력을 확보한 조달청에서 품질·안전·하도급관리 등 전 단계를 일괄 대행하는 맞춤형 서비스임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6	'17	'18	'19	'20	'21
'16~'20	-	1,000	1,000	1,000	1,000	
'17~'21		500	9,551	9,552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저온 물류 창고형 표준공장 구축

- 실시설계('17년~'18.3월), 건축 시공('18~19년)
- 연차별 지자체 매칭액(총사업비의 30%) 기 협의 완료

○ 동해자유무역지역을 환동해권 수산물 가공수출 및 원자재 유통허브로 특화하기 위한 가치사슬 기업체(수산 가공·유통·무역·국제물류 등 대상) 유치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4	-	-	-	-	-	-	-	-	-	-	-	-
2015	-	-	-	-	-	-	-	-	-	-	-	-
2016	-	-	-	-	-	-	-	-	-	-	-	-
2017	500	500	-	-	-	-	500	287	57.4	57.4	-	213

※ 불용액 : 낙찰차액 반납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2017	표준공장 건축 실시설계비(5억원)중 287백만원 집행('17.10월) * 낙찰차액 213백만원은 불용

사 업 명
(2) 마산자유무역지역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구축 (3331-32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	110	114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20
명칭	지역경제활성화	자유무역지역조성	마산자유무역지역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산업물류투자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정재남 류금렬	백숙자 박종만	홍성진 정진우
		044-203-4630 055-294-2771	044-203-4631 055-294-2778	044-203-4635 055-294-274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A
마산자유무역지역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구축	-	-	-	-	600	600	60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6					2017('17.12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스마트혁신지원센터구축	-	-	-	-	-	-	-	-	-	-	-	6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600
・설계비(420-02)	-	-	-	-	-	-	-	-	-	-	-	580
・시설비(420-03)	-	-	-	-	-	-	-	-	-	-	-	-
・감리비(420-04)	-	-	-	-	-	-	-	-	-	-	-	-
・시설부대비(420-05)	-	-	-	-	-	-	-	-	-	-	-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입주업체의 판로 확보, 수출 확대, R&D와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및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공장등의 유지·보수와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2015.12 : 마산자유무역지역 발전방안 연구 용역(산업연구원)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225억원
- 사업기간 : 2018~2020(3년)
- 사업규모 : 스마트혁신지원센터(4층, 7,744㎡), 주차빌딩(3층, 6,30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경자단,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사업 수혜자 :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3) '18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 : 600백만원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구분		'18	'19	'20	합계
예산 투입	총사업비	850	15,166	6,484	22,500
	국 비(70%)	600	10,610	4,540	15,750
	지방비(30%)	250	4,556	1,944	6,750
예산 집행	총 사업비	850	15,166	6,484	22,500
	공사비	-	14,546	6,234	20,780
	시설부대경비	850	620	250	1,720
	설계비	830	-	-	830
	감리비	-	580	250	830
	시설부대비	20	40	-	60

- 공사비(20,769백만원) : 스마트혁신지원센터(16,378백만원), 주차빌딩(4,391백만원)
  - ▪ 스마트혁신지원센터(16,378백만원) : 연면적(7,744㎡) × 단가(2,115천원)
    * 조달청「2014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단가 적용
  - ▪ 주차빌딩(4,391백만원) : 연면적(6,200㎡) × 단가(605천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부지 내 건설된 면적당 공사비 단가 적용
- 실시설계비(831백만원) : 공사비(20,769백만원) × 설계요율(4%)
- 감리비(831백만원) : 공사비(20,769백만원) × 감리요율(4%)
- 시설부대비(62백만원) : 공사비(20,769백만원) × 시설부대비요율(0.3%)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자유무역지역 입주율(%)	목표	70	78	82.7	87.2			(입주면적/임대가능면적)×100	각 관리원 발간 입주업체 현황 자료
	실적	73	78.2	82.8-	-	-			
	달성도	104.3	100.3	100.1	-	-			
자유무역지역 수출액(억달러)	목표	신규	24	22	22.6			각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수출액 합계	각 관리원 발간 입주업체 현황 자료
	실적	신규	21	20.4	-	-			
	달성도	신규	87.5	92.7	-	-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고용인원(천명)	목표	11.5	12	11.1	11.3			각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등 고용인원 합계	각 관리원 발간 입주업체 현황자료
	실적	10.7	10.9	10.4	-				
	달성도	93.0	90.8	93.7	-				

※ 성과지표는 단위사업으로 작성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자유무역지역내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액 및 외국인투자액 증가

- 부가가치 증대효과 연간 약 2억원

- 주차차량 이용객 시간절감편익 연간 약 4억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 총사업비 500억 미만 건설사업으로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인 경우 작성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14까지 기투자액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18~2020	-	-	-	-	6	219	225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설계용역 입찰·계약 및 용역진행	(조달청, 설계용역업체 등)
↓	
공사 · 감리 입찰계약	(조달청, 시공사, 감리사 등)
↓	
스마트혁신지원센터 착수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시공사, 감리사 등)
↓	
공사 준공 및 사용개시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입주기업체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6	'17	'18	'19	'20	'21
'16~'20	-	-	600	10,610	4,540	
'17~'21		-	600	10,610	4,540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18.3~6 : 설계용역 입찰 및 선정(조달청)
- '18.6~10 : 실시설계 용역
- '18.10~12 : 시공자 입찰 및 선정(조달청)
- '19.1 : 스마트혁신지원센터 착공
- '20.6 :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완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참고자료)

- 첨부 :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개요

참고 1 마산자유무역지역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성장동력확충을 위하여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및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및 주차빌딩 건립

○ 사업기간 : ’18~’20년(3년간)

○ 총사업비 : 225억원(국비)

○ **사업내용 : 스마트혁신지원센터**(연면적 7,744㎡) **및 주차빌딩**(연면적 6,300㎡) **건축**

* 종합비즈니스센터는 1공구 표준공장 4호동 옆, 주차빌딩은 1공구 표준공장 3호동 옆

○ 사업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추진 실적

○ ‘15.12 :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방안 연구용역 (MFTZ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포함)

- 타당성 분석결과 B/C : 1.11 (사업성 인정)

□ 향후 추진계획

○ ’18.3~6 : 설계용역 입찰 및 선정(조달청)

○ ’18.6~10 : 실시설계 용역

○ ’18.10~12 : 시공자 입찰 및 선정(조달청)

○ ’19.1 : 스마트혁신지원센터 착공

○ ’20.6 : 스마트혁신지원센터 준공

□ 사업별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물량	단가	예산규모			
			총사업비	'18년	'19년	'20년
계			22,500	850	15,166	6,484
스마트혁신지원센터	7,744㎡	2,117	16,400	0	11,480	4,920
주차빌딩 건축	6,300㎡	695	4,380	0	3,066	1,314
시설부대경비 - 설계비(공사비의 4%) - 감리비(4%) - 시설부대비(0.3%)	-	-	1,720	850	620	250

□ 스마트혁신지원센터 및 주차빌딩 개요

구 분	스마트혁신지원센터	주차빌딩
위 치	**표준공장 4호동** 주차 부지	**표준공장 3호동** 주차 부지
대지면적	8,759㎡	25,686㎡
기존 건축면적	2,537㎡	11,723㎡
신규 건축면적	**1,936㎡(44m*44m)**	**2,100㎡(30m*70m)**
총건축면적	4,473㎡	13,823㎡
건폐율	51.1%	53.8%
층 고	지상 4층	지상 3층
기존 연면적	16,185㎡	45,576㎡
신규 연면적	**7,744㎡**	**6,300㎡**
총연면적	23,929㎡	49,776㎡
용적률	273.2%	193.8%

주: 주차빌딩은 옥상을 주차공간으로 사용가능하여 연면적은 6,300㎡(3층)이지만 사용면적은 8,400㎡(4층)임.

□ 스마트혁신지원센터 층별 계획(안)

4F (1,936㎡)	비즈니스 연계 전문식당, 다목적 홀(국제회의, 문화행사 공간, 대강당 겸용), 세미나실
3F (1,936㎡)	기업공동연구소, 기업제품전시 및 판매, 수출입상담 및 경영지원, 노동사무소, 회의실
2F (1,936㎡)	기업지원플랫폼 사무소, 산학협력실, 전문컨설팅 서비스(법무사,세무사, 회계사 등), 지식기반 서비스(정보통신서비스, S/W,전자상거래 등)
1F (1,936㎡)	편의점, 커피숍, 일반식당 외 근린생활시설, 금융기관(기술금융센터, 보증기능업무시설)
3F (2,100㎡)	주차장
2F (2,100㎡)	주차장
1F (2,100㎡)	주차장

□ 사업위치도

표준공장4호동 | "스마트혁신지원센터" | "주차빌딩" | 표준공장3호동

사 업 명
(3) 자유무역지역관리(713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 자원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5	301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소속기관기타행정지원	자유무역지역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산업물류투자팀	정재남	백숙자	홍성진
		044-203-4630	044-203-4631	044-203-463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A
자유무역지역관리	4,022	4,244	4,244	4,327	4,527	283	6.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6					2017('17.12월말)						2018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4,543	4,438	4,022 [4,022]	130	286	4,244	4,244	4,374	4,241	-	133	4,527
· 마산자유무역지역	1,414	1,388	1,258 [1,258]	-	130	1,108	1,108	1,108	1,019 [1,019]	-	89	1,095
· 군산자유무역지역	793	793	646 [646]	130	17	760	760	890	870 [870]	-	20	713
· 대불자유무역지역	516	516	499 [499]	-	17	531	531	531	522 [522]	-	9	593
· 동해자유무역지역	342	298	298 [298]	-	-	288	288	288	288 [288]	0	0	310
· 율촌자유무역지역	328	298	293 [293]	-	5	325	325	325	325 [325]	-	-	351
· 울산자유무역지역	642	637	552 [552]	-	85	627	627	627	612 [612]	-	15	628
· 김제자유무역지역	358	358	330 [330]	-	28	378	378	378	378 [332]	0	0	421
· 운영지원	150	150	146 [146]	-	4	227	227	227	227 [227]	-	-	416
○ 비목별 분류(합계)	4,543	4,438	4,022 [4,022]	130	286	4,244	4,244	4,374	4,241	-	133	4,527
· 일반수용비(210-01)	60	50	46 [46]	-	4	154	154	154	154 [154]	-	-	335
· 임차료(210-07)	-	-	- [-]	-	-	-	-	-	-	-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90	185	183 [183]	-	2	121	121	121	121 [121]	-	-	130
· 관리용역비(210-15)	2,336	2,236	2,132 [2,132]	-	104	2,601	2,601	2,601	2,468 [1,416]	-	133	2,833
· 국내여비(220-01)	10	15	12 [12]	-	3	9	9	9	9 [9]	-	-	10
· 국외업무여비(220-02)	11	6	5 [5]	-	1	10	10	10	10 [10]	-	-	10
· 사업추진비(240-01)	3	3	3 [3]	-	-	5	5	5	5 [5]	-	-	4
· 정책연구비(260-02)	85	95	95 [95]	-	-	68	68	68	68 [68]	-	-	57
· 실시설계비(420-02)	95	95	38 [38]	-	57	-	-	-	-	-	-	-
· 공사비(420-03)	1,448	1,444	1,244 [1,244]	130	70	1,276	1,276	1,403	1,403 [1,403]	-	-	1,058
· 시설부대비(420-05)	-	4	4 [4]	-	-	-	-	-	-	-	-	-
· 무형자산(440)	305	305	260 [260]	-	45	-	-	3	3 [3]	-	-	9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마산 등 7개 자유무역지역 국유건물(표준공장, 청·관사 등)과 국유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용가치를 제고하고, 입주기업 생산활동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제49조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공장 등의 유지·보수와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하며 그 소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마산개원('70.4) 군산('00.10), 대불('02.11), 동해('05.12), 율촌('05.12), 김제('08.12), 울산('09.1) 지정 이래 매년 국유재산(건물, 기반시설물) 및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있는 계속사업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70년 ~ 계속
- 사업규모 : 마산 등 7개 자유무역지역 총면적 577.2만㎡(자가공장 부지 416.1만㎡, 표준공장 45.5만㎡, 도로 및 청사 등 115.5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7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18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1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사업: 1,095백만원

< 관리용역비: 410백만원 >

① 청사 및 국유건물 시설관리 및 진단용역: **218백만원**

· (필요성) 표준공장 9개동 및 70년대부터 건립되어 건물 연령이 40년을 경과한 다수의 노후 국유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물 관리용역 필요

· (관련규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2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 (산출근거) 진단용역 218백만원(2명 고용)

❶ 관리용역: 2명×시중노임 단가×12개월=178백만원

❷ 청사 시설 유지·관리 용역 및 보안 용역: 20백만원

❸ 국유건물 건물안전진단: 20백만원

② 건물 및 시설물 전기·소방 점검·안전점검 용역: **94백만원***
* 94백만원: 안전수수료 23백만원, 소방점검용역 43백만원, 건물안전점검28백만원

1) 국유건물 전기안전관리 용역 및 전기,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23백만원)

· (필요성) 자가용 전기설비한 마산관리원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 (관련규정)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산출근거) ‘16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한국전기안전공사)규정

❶ 표준공장 8,9호동 및 청사보일러실 전기안전관리용역: 6백만원(’17년용역비)×1.03(기준수수료 상승분)=7백만원

❷ 표준공장 4,5,6,7호동 전기안전관리용역: 9백만원(’17년용역비)×1.03(기준수수료 상승분)=10백만원

❸ 청사 및 표준공장 전기정기검사: 2백만원

❹ 표준공장 1·2·3·8·9호동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4백만원

2) 국유건물(표준공장) 소방시설점검 용역(43백만원)

· (관련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산출근거)

❶ 표준공장 8,9호동(연면적 36,000㎡)×년 2회×기준 수수료: 7백만원

❷ 표준공장 3호동(연면적 43,648㎡)×년 2회×기준 수수료: 8백만원

❸ 표준공장 1,2호동(연면적 55,806㎡)×년 2회×기준 수수료: 9백만원

❹ 표준공장 4,5,6,7동(연면적 72,000㎡)×년 2회×기준 수수료: 15백만원

❺ 그 외 국유건물(청사,나래관,한국관)×년 2회×기준 수수료: 4백만원

3) 국유시설물(표준공장 및 삼호천교량) 안전점검 용역(28백만원)

· (관련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3조

· (산출근거) 1종·2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 기준

❶ 삼호천변교량(1종 시설물) 정기점검: 9백만원×년 2회 =18백만원

❷ 표준공장 3호동(2종 시설물)정기점검: 5백만원×년 2회=10백만원

③ 청사 청소 용역(2명 고용) 2명×39백만원=**78백만원**

④ 역내 조경관리 용역(4명 고용) 4명× 2백만원×2.5개월=**20백만원**

< 공사비: 685백만원 >

① 노후 시설물 철거 및 유지관리: **100백만원**

· (관련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3조가 삭제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자유로운 출입을 위해 초소 및 출입문에 대한 철거 및 개선 필요

· (산출근거)1공구 차량정문, 보행정문, 보행후문 철거 및 신축(연면적 226.55㎡)

② 국유재산 및 역내 시설물 유지 보수: **235백만원**

· (필요성) 역내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사고재해에 대한 예방

· (산출근거)

❶ 역내 주차차단기 설치: 120백만원: 주차차단기 16개×5백만원=80백만원 + 차량 인식기 8대×5백만원=40백만원

❷ 그 외 노후 시설물 및 국유건물 수리(동파, 누수, 건물도장 등): 115백만원

③ 국유건물(기숙사 D동) 내진보강 공사: **350백만원**

· (필요성) '16년 국유건물 기숙사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력부족에 따른 붕괴위험으로 해석되어 보강필요

· (관련규정)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대상물 관련법: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산출근거) 국민안전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관련 전수조사 추진계획 및 작성지침」에 따른 기준단가(건축물 경우, 1㎡당 95,000원)×(기숙사연면적(3294.76㎡)×부대비(1.1) = 350백만원

2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사업: 713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120백만원 >

① 국유건물·시설물 등 안전관리비 : 50백만원

▪ 역내 국유건물(청사동, 업무지원동, 표준공장 7개동, 물류창고동) 및 시설물 등 안전관리 비용 : 50백만원

-(산출근거) 소방시설 종합 안전진단 점검결과에 따른 주요설비 보수 및 교체(경보시설, 피난시설, 소화설비, 보조전원반 등) 48백만원 + 역내 가스시설 정압기 안전 분해점검 위탁용역비 2백만원

② 국유건물·시설물 등 유지·보수 비용 : 70백만원

▪ 옥상방수공사 및 가로등 도로 보수: 30백만원

▪ 표준공장 조적벽 균열 및 타일 보수: 30백만원

▪ 승강기 유지보수 : 10백만원

< 관리용역비: 443백만원 >

○ 국유건물·시설물 등 유지·보수 등 관리 위탁비 : 443백만원

▪ 시설관리용역 : 257백만원(5명 고용)

* '18년도 인건비, 재료비 상승예상분 1.03%반영

- 용역원가 : 5명 × 시중노임단가 × 12개월

- (산출근거)인건비(5명) 182백만원 + 인건비 제외한 용역원가(부가가치세포함) 73백만원 + 승강기유지관리비 2백만원

- (관리면적): 87,758.49㎡

▪ 청소용역: 90백만원(2명 고용)

* '18년도 인건비, 재료비 상승예상분 1.03%반영

- 용역원가 : 2명 × 시중노임단가 × 12개월

- (산출근거)인건비(2명) 57백만원 + 인건비 제외한 용역원가(부가가치세포함) 25백만원 + 저수조청소 4백만원 + 외부유리창닦기 4백만원

- (청소면적) 13,187.25㎡

▪ 조경관리용역 96백만원 (2명 고용)
* '18년도 인건비, 재료비 상승예상분 1.03%반영

- 용역원가 : 2명 × 시중노임단가 × 12개월

- (산출근거)인건비(2명) 57백만원 + 인건비 제외한 용역원가(부가가치세포함) 35백만원 + 외주관리비 4백만원

- (관리면적) 32,543㎡

< 공사비: 150백만원 >

① 개별 냉난방 시스템 에어컨 설치(청사동3층) : 100백만원

② 흡수식냉온수기 유지보수 및 정비 : 50백만원

3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사업: 593백만원**

< 관리용역비: 513백만원 >

① 산출내역

▪ 청소관리 용역: 165백만원(4명 고용)

· 인건비: 10,008천원×12월 = 121백만원

· 인건비를 제외한 용역원가(부가가치세 포함) : 44백만원

▪ 시설관리 용역: 254백만원(5명 고용)

· 인건비(주·야간 교대): 15,417천원× 12월 = 185백만원

· 인건비를 제외한 용역원가(부가가치세 포함) : 69백만원

▪ 조경관리 용역 : 94백만원(2명 고용)

· 인건비: 4,364천원('17년 2명 월평균 인건비×1.04)×12월 = 52백만원

· 인건비를 제외한 용역원가(부가가치세 포함) : 42백만원

< 무형자산: 30백만원 >

○ 무형자산 전세금 상승분

▪ 2018년 임차계약이 만료되는 5채의 전세금 상승분(총 6채)

· 전세금 인상분 1채당 600만원(평균 최소 요구) x 5채 = 30백만원

<공사비: 50백만원 >

① 국유도로 펜스(경계 울타리) 정비 및 보도블럭 보수공사비 : 30백만원

▪ 파손이 심각한 구간 약 1.4km+500㎡ 보수공사(경계블록 약 110m별도)

·산출근거: 인건비(10.4백만원)+재료비(9.1백만원)+폐기물처리비(2.5백만원)+ 경비・기업이윤・부가세 등(8백만원)

② 모자계량기 설치 공사비: 20백만원

▪ 국유건물에 입주한 업체의 불합리한 계약전력 안정화 사업

・ 인건비(3백만원)+재료비(15백만원)+경비・기업이윤・부가세 등(2백만원)

④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사업: 310백만원**

< 관리용역비 : 300백만원 >

① 시설관리용역 : 96백만원(2명 고용)

▪ 산출근거: 노무비・경비・재료비(2명×317만원×12개월 = 76백만원)+ 일반관리비(76.08백만원×0.05% = 3.8백만원) + 부대비용 ・이윤・부가세 등(16.5백만원)

② 전기안전관리용역 : 40백만원(1명 고용)

▪ 산출근거: 전기용역비(1명×258만원×12개월 = 31.06백만원)+ 일반관리비(31.06백만원×0.05% = 1.55백만원)+부대비용・이윤・부가세 등(6.85백만원)

▪ 법령근거: 전기사업법제73조 및 시행규칙제40조,4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③ 조경관리용역 : 34백만원(1명 고용)

▪ 산출근거: 노무비・경비(1명×223만원×12개월 = 26.86백만원)+일반관리비(26.86백만원×0.05 = 1.34백만원)+ 부대비용・이윤・부가세 등(6.26백만원)

④ 청소용역 : 114백만원(3명 고용)

▪ 산출근거:노무비・경비・재료비(96.5백만원)+일반관리비(3.5백만원)+부대비용・이윤・부가세 등(15백만원)

⑤ 기타 : 16백만원

▪ CCTV(21대) 리스 : 7백만원 + 승강기・화재(청사, 표준공장 등 국유건물 4동) 안전관리비 5백만원 + 제설용역(3개월) : 4백만원

< 무형자산: 10백만원 >

○ 무형자산 전세금 상승분

▪ 2018년 임차계약이 만료되는 전세금 상승분 10백만원

5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사업: 351백만원**

< 관리용역비 : 322백만원 >

○ (산출근거)

❶ 시설관리용역: 49.3백만원 × 3명=148백만원(3명 고용)

❷ 조경관리용역: 40백만원(1명 고용)

❸ 청소용역: 37백만원 × 2명 = 74백만원(2명 고용)

❹ 시설물안전진단용역 및 법정관리비(59백만원) × 1.03(물가상승률) = 60백만원

< 공사비: 29백만원 >

○ (산출근거)
* 지반침하 도로, 보도블럭 보강공사 : 29백만원

6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사업 지원: 628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백만원 >

○ 국유건물·시설물 등 안전관리비 : 10백만원

▪ (산출근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비 : 10백만원

▪ (관련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관리용역비: 424백만원 >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발표된 시중노임단가 및 '18년도 상승예상분 고려

① 시설관리용역 : 170백만원(2명 고용)

▪ 용역원가 : 1명×시중노임단가×12개월(건물관리인, 관리면적 43,924㎡), 2명×시중노임단가×12개월(기계·전기관리인, 표준공장동 3동 및 설비동)
▪ 인건비+인건비 제외한 용역원가(부가가치세 포함)+재료비, 일반관리비 등

② 역내청소용역 : 112백만원(3명 고용)

▪ 용역원가 : 3명×시중노임단가×12개월

▪ 인건비+인건비 제외한 용역원가(부가가치세 포함)+재료비 등

③ 청사청소용역 : 120백만원(3명 고용)

▪ 산출근거 : 3명×시중노임단가×12개월(건물 5,818㎡)

▪ 인건비+인건비 제외한 용역원가(부가가치세 포함)+분기별 내부 왁스작업 용역비+재료비 등

④ 역내 국유건물 및 시설물 점검용역 : 22백만원

▪ 경비 업무대행 용역비 3백만원(250천원×12개월), 소방시설 방화관리 용역비 3백만원(250천원×12개월),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비 10백만원(800천원×12개월), pc유지관리 용역비 2백만원(160천원×12개월), 역내 소독 용역비 4백만원(350천원×12개월)

< 공사비: 144백만원 >

① 역내 유휴부지 콘크리트 타설작업 및 주차장 조성 공사 : 84백만원

▪ 산출근거 : 유휴부지면적(약3,500㎡)×24천원

② 국유건물(청사동) LED 조명등 교체 공사 : 60백만원

▪ 산출근거 : 자재비(1204(개)×35천원)+설치비(18,000천원)

< 무형자산: 50백만원 >

① 직원 관사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재계약 전세금 인상분 : 50백만원

▪ 산출근거 : 전세금 인상분 1채당 약 10백만원(통상적인 전세금 평균 인상분)×보유관사(5채)

⑦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사업: 421백만원**

<관리용역비: 421백만원 >

① 시설물관리용역: 228백만원(5명 고용)

▪ 산출근거

· 용역원가: 5명 × 2백만원(노무비 + 각종 보험료 등 경비) × 12개월 = 180백만원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 38백만원

· 기타 수선유지 및 재료비 : 10백만원

② 청소 및 조경관리 용역: 193백만원(5명 고용)

▪ 산출근거

· 용역원가 : 5명 × 2백만원(직접노무비 + 각종 보험료 등 경비) × 12개월 = 120백만원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 38백만원

· 기타 수선유지 및 재료비 : 35백만원

⑧ **운영지원: 416백만원**

< 일반수용비: 335백만원 >

-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매체 홍보 등을 위한 홍보비, 사업평가 및 각종회의 부대비로 지출

- 산출내역
· 홍보브로슈어 등 발행 및 책자구입 : 20백만원(20백만원×1회)
· 각종회의 부대비 : 5백만원(50만원×10회)
· 홍보물 제작 및 매체 홍보 : 20백만원(50만원×4회)
· 자유무역지역 성과평가 수행 비용 : 90백만원(90백만원)
· 자유무역지역 성과평가 인센티브 제공 등 : 200백만원(200백만원)

< 국내여비 : 10백만원 >

- 7개 관리원이 전국에 산재해있어 업무협의를 위한 원거리 출장이 빈번히 발생
- 산출내역 : 8만원×125회= 10백만원

< 국외여비 : 10백만원 >

- 해외 각국의 자유무역지역 운영현황, 자료수집, IR활동을 위한 여비 지급
- 산출내역 : 250만원×2명×2회= 10백만원

< 사업추진비 : 4백만원 >

- 관련부처(국토부, 해수부, 관세청, 기재부 등) 및 국회 등 외부기관과 업무협의, 간담회 등에 사용

- 산출내역
· 관련부처(국토부, 해수부, 관세청, 기재부 등) 업무협의 : 10회×15만원=1.5백만원
· 자유무역지역 투자유치활동, 국회 등 입법과정 업무협의 : 10회×15만원 =1.5백만원
· 관리원장·직원 간담회 개최 : 2회×50만원=1백만원

< 정책연구비 : 57백만원 >

- 산출내역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관련 연구용역 : 57백만원

구 분	'17예산	'18요구
자유무역지역관리	**4,244백만원**	**4,527백만원**
□마산 FTZ 관리원	**1,108백만원**	**1,095백만원**
▪ 관리용역비	**355백만원** ▪ 국유건물·시설물 관리용역 (208) ▪국유건물 전기안전관리·소방시설점검(60) ▪ 청소· 조경관리 용역 (87)	**410백만원** ▪ 국유건물·시설물 관리 및 진단용역 (218) ▪ 국유건물 전가소방 안전점검·시설물안전검사 용역(94) ▪청소 · 조경관리 용역 (98)
▪ 공사비	**753백만원** ▪노후 건물 철거· 유지관리(100) ▪보건센터 옥상방수 공사(20) ▪파고라 교체 공사(30) ▪지적 측량 및 건물 감정평가(15) ▪역내 시설물 유지·보수(103) ▪도로 가로등 교체 공사(135) ▪국유건물(기숙사) 내진보강 공사(350)	**685백만원** ▪ 노후 시설물 철거·유지관리(100) ▪ 국유재산 및 역내 시설물 유지 보수(235) ▪ 국유건물(기숙사 D동) 내진보강 공사(350)
□군산 FTZ 관리원	**760백만원**	**713백만원**
▪ 일반수용비	19백만원 ■보도블럭, 도로보수용 시멘트, 시설 안전관리 소요자재 구입 (19)	-
▪ 관리용역비	430백만원 ■ 시설관리 용역 (220) · 5명×적용단가×12개월(관리면적 87,758㎡) ■ 청소 용역 (90) · 2명x적용단가x12개월(청소면적 13,187㎡) ■ 조경관리 용역 (120) · 2명x적용단가x12개월(관리면적 32,543㎡)	443백만원 ■ 시설관리 용역(257) · 5명×적용단가×12개월(관리면적 87,758.㎡) ■ 청소 용역 (90) · 2명x적용단가x12개월(청소면적 13,187㎡) ■ 조경관리 용역 (96) ·: 2명x적용단가x12개월(관리면적 32,543㎡)
▪ 공사비·시설장비유지비	311백만원 ■청사동, 설비동 기계실 내 냉온수기 세관 작업 및 냉온수 펌프밸브 교체(25) ■역내 도로 보수(20) ■역내 가로등 하자 보수 : (12) ■옥상방수(50) ■표준공장 조적벽 균열 및 타일 보수(50) ■역내국유건물(청사동, 업무지원동, 표준공장 (7개동), 물류창고 등) 및 시설물 안전관리 비용(50) ■차량출입 통제시스템 설치(104)	270백만원 ■옥상방수 및 가로등 도로 보수 (30) ■표준공장 조적벽 균열 및 타일 보수 (30) ■승강기 유지보수 (10) ■개별난방시스템에어컨설치(청사동3층) (100) ■흡수식 냉온수기 유지보수 및 정비 (50) ■역내국유건물(청사동, 업무지원동, 표준공장 7개동, 물류창고 등) 및 시설물 안전관리 비용 (50)

구 분	'17예산	'18요구
□ 대불 FTZ 관리원	531백만원	593백만원
▪ 관리용역비	433백만원 ■ 청소·시설관리·조경용역 (433)	513백만원 ■ 청소·시설관리·조경용역 (513)
▪ 공사비	98백만원 ■차량출입 통제시스템 설치(98)	50백만원 ■ 보도블럭, 펜스, 모자계량기설치(50)
▪ 무형자산	-	30백만원 ■ 전세금 인상분 (10)
□ 동해 FTZ 관리원	288백만원	310백만원
▪ 관리용역비	288백만원 ■청소·시설관리·조경·전기안전 등 민간위탁(288)	300만원 ■청소·시설관리·조경·전기안전 등 민간위탁(300)
▪ 무형자산		10백만원 ■ 전세금 인상분(10)
□ 율촌 FTZ 관리원	325백만원	351백만원
▪ 관리용역비	295백만원 청소·시설관리·조경·전기안전 등 민간위탁(295)	322백만원 청소·시설관리·조경·전기안전 등 민간위탁(322)
▪ 공사비	30백만원	29백만원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	627백만원	628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4백만원 국유건물 유지보수비 (14)	10백만원 ■국유건물 소방종합정밀점검비 (10)
▪관리용역비	422백만원 ■ 시설관리 용역 (180) · 산출근거 : 3명×적용단가×12개월 ■ 역내청소 용역 (117) · 산출근거 : 3명x적용단가x12개월 ■ 청사청소 용역 (125) · 산출근거 : 3명x적용단가x12개월	424백만원 ■ 시설관리 용역 (170) · 산출근거 : 3명×적용단가×12개월 ■ 역내청소 용역 (112) · 산출근거 : 3명x적용단가x12개월 ■ 청사청소 용역 (120) · 산출근거 : 3명x적용단가x12개월 ■ 시설물점검 용역 (22)
▪공사비	191백만원 ■ 도로보수 및 경비초소 이전공사(100) ■ 차량인식기 설치 공사 (91)	144백만원 ■ 역내 유휴부지 콘크리트 타설작업 및 주차장 조성 공사 (84) ·산출근거 : 유휴부지면적(약3,500㎡)×24천원 ■ 국유건물 LED 조명등 교체 공사 (60) · 산출근거 : 자재비(1204(개)×35천원)+설치비(18,000천원)
▪무형자산	-	50백만원 ■ 전세금 인상분 : 10백만원x보유관사(5채)

구 분	'17예산	'18요구
□ 김제 FTZ 관리원	**378백만원**	**421백만원**
▪ 관리용역비	378백만원 시설관리 (176) 청소용역 (202)	421백만원 시설관리 (228) 청소용역 (193)
□ 운영지원	**227백만원**	**416백만원**
▪ 일반수용비	135백만원	335백만원
▪ 국내여비	9백만원	10백만원
▪ 국외여비	10백만원	10백만원
▪ 업무추진비	5백만원	4백만원
▪ 정책연구비	68백만원	57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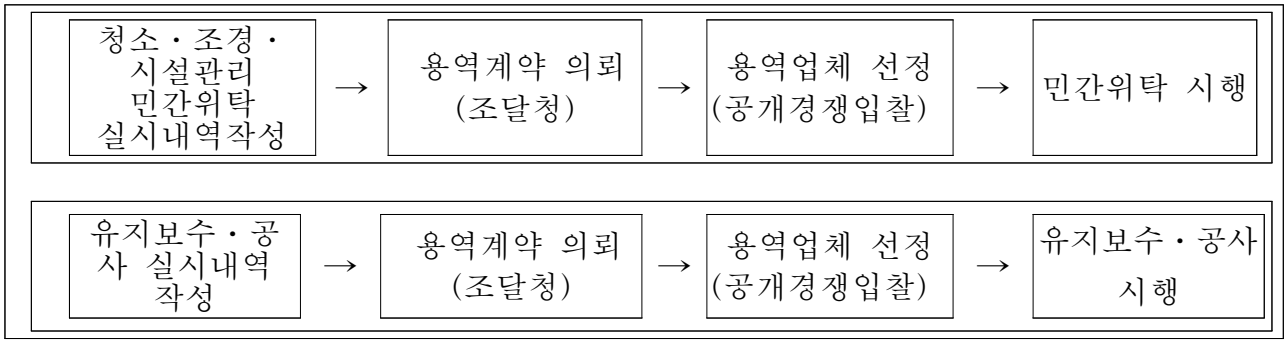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6	'17	'18	'19	'20	'21
'16~'20	4,543	4,020	4,116	4,091	4,070	
'17~'21		4,244	4,055	3,911	3,811	3,79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17년 예산관련 국회 산업위('16.10.24)에서 우원식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시중노임단가 현실화를 통한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관리사업 437*백만원(관리용역비) 추가 증액요구**(최종 미반영)**

* 증액요구(437백만원): 마산(254백만원), 대불(163백만원), 울산(20백만원)

10)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1) 부처 건의사항: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4	3,208	3,208	0	△73	0	0	3,135	3,029	94.4	96.6	0	106
2015	3,628	3,628	0	△81	0	0	3,547	3,360	92.6	94.7	0	187
2016	4,543	4,543	0	△105	0	0	4,438	4,022	88.5	90.6	130	286
2017	4,244	4,244	130	±105	0	0	4,374	4,241	99.9	97.0	-	133

※ 2017년은 12월말 기준으로 작성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2014	- (불용) 마산, 군산, 대불, 울산, 김제자유무역지역 낙찰차액 등 106백만원 불용
2015	- (전용) 군산자유무역지역 공사비 2백만원 전용, 울산자유무역지역 공공요금 및 외곽청소비용 79백만원 전용 - (불용) 마산, 군산, 대불, 김제, 행정지원 낙찰차액 등 187백만원 불용
2016	- (불용): 마산, 군산, 대불, 율촌, 울산, 김제, 행정지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86백만원 - (전용): 마산 등 4개 지역 청소용역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공동시설관리사업, 관리원 기본경비로 105백만원 - (이월) : 군산 화장실 보수공사 계약체결과 설계작업이 지연되어 130백만원 * 동 공사는 '17.1월에 완료되어 대금지급 후 사업종료
2017	- (불용): 마산, 군산, 대불, 울산 관리용역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33백만원

사 업 명
(4) 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7136-4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6	451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공동시설관리수입대체경비	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산업물류투자팀	정재남	백숙자	홍성진
		044-203-4630	044-203-4631	044-203-463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A
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관리	694	639	639	627	627	△12	△1.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6					2017('17.12월말)						2018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685	711	694	-	17	639	639	639	604 [582]	-	35	627
· 마산,공동시설유지관리	428	454	447 [447]	-	7	400	400	400	390 [390]	-	10	412
· 군산,공동시설유지관리	80	80	71 [71]	-	9	73	73	73	48 [48]	-	25	76
· 대불,공동시설유지관리	72	72	72 [72]	-	-	62	62	62	62 [62]	-	-	52
· 동해,공동시설유지관리	9	9	9 [9]	-	-	9	9	9	9 [9]	0	0-	8
· 율촌,공동시설유지관리	10	10	10 [10]	-	-	10	10	10	10 [10]	-	-	8
· 울산,공동시설유지관리	54	54	53 [53]	-	1	53	53	53	**53** [50]	**-**	**-**	**44**
· 김제,공동시설유지관리	32	32	32 [32]	-	-	32	32	32	32 [13]	0	0	27
○ 비목별 분류(합계)	685	711	694	-	17	639	639	639	604 [582]	-	35	627
· 일반수용비(210-01)	10	16	16 [16]	-	-	7	7	7	7 [7]	-	-	6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70	173	167 [167]	-	6	170	170	170	170 [170]	-	-	155
· 시설장비유지비(210-09)	505	522	511 [511]	-	11	462	462	462	427 [405]	-	35	46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마산 등 7개 자유무역지역 내 공동시설물(가로등, 도로, 공원, 화장실, 수목 등)의 유지·관리를 통해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공장 등의 유지·보수와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하며 그 소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안의 공동시설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마산개원('70.4) 군산('00.10), 대불('02.11), 동해('05.12), 율촌('05.12), 김제('08.12), 울산('09.1) 지정 이래 매년 공동시설물(가로등, 공원, 화장실, 수목 등) 유지・보수하고 있는 계속사업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70년 ~ 계속
- 사업규모 : 자유무역지역내 가로등, 도로, 공원, 화장실, 수목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7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18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마산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412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65백만원

- (산정근거)역내 가로등 등 전기료 = 5.4백만원 * 12개월 = 65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347백만원

- (산정근거) 공구내 도로 등 청소용역비 : 10명× 시중노임단가× 12개월
(28.9백만원 * 12개월 = 347백만원)
・청소면적 : 230,828㎡
・ 중기중앙회 발표 '17년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기준, 노임 단가 100% 적용 및 상여금 200%, 재료비의 물가상승률 등 추가분 반영

② 군산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76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 15백만원

- (산정근거) 역내 가로등 등 공동시설 전기료 = 1.25백만원 × 12 = 15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61백만원(2명고용)

- (산정근거) 30.5백만원×2명, 청소면적 : 98,001.30㎡

③ 대불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52백만원)

▪ 일반수용비: 2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25백만원(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등 월 2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25백만원

- 건축설비 유지보수비 : 8백만원

- 수배전반, 물탱크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 : 15백만원

- 수목관리, 가로수 및 경계울타리 정비 : 2백만원

④ 동해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8백만원)

▪ 일반수용비: 1백만원(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 등)

▪ 공공요금 및 제세: 7백만원

- (산정근거) 역내 가로등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월 58만원 × 12개월

⑤ 율촌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8백만원)

▪ 일반수용비: 1백만원(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 등)

▪ 공공요금 및 제세: 7백만원

-(산정근거) 역내 가로등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월 58천원 × 12개월

⑥ 울산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44백만원)

▪ 일반수용비: 2백만원(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 등)

▪ 공공요금 및 제세: 12백만원

- (산정근거) 역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월 1백만원×12개월

▪ 시설장비유지비: 30백만원(인도변 및 건물 주변 제초작업)

- (산출근거) 3.7백만원×연8회(제초작업, 공공용지 236,836㎡)

⑦ 김제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27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24백만원

- (산정근거) 역내 가로등 월 2백만원×12개월

▪ 시설장비유지비: 3백만원

– (산정근거) 내부도로, 보도블럭, 울타리, 공원 등 제초작업비 1.5백만원 * 2회 = 3백만원

구 분	’17예산	’18요구
□ 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639백만원	627백만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	공공요금, 도로청소, 가로등, 보도블럭 등 공동시설유지관리 400	공공요금, 도로청소, 가로등, 보도블럭 등 공동시설유지관리 412
▪ 군산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	공공요금, 도로청소, 가로등, 보도블럭 등 공동시설유지관리 73	공공요금, 도로청소, 가로등, 보도블럭 등 공동시설유지관리 76
▪ 대불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	공공요금, 도로청소, 가로등, 보도블럭 등 공동시설유지관리 62	공공요금, 도로청소, 가로등, 보도블럭 등 공동시설유지관리 52
▪ 동해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	공공요금, 도로청소, 가로등, 보도블럭 등 공동시설유지관리 9	공공요금, 도로청소, 가로등, 보도블럭 등 공동시설유지관리 8
▪ 율촌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	공공요금, 도로청소, 가로등, 보도블럭 등 공동시설유지관리 10	공공요금, 도로청소, 가로등, 보도블럭 등 공동시설유지관리 8
▪ 울산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	공공요금, 도로청소, 가로등, 보도블럭 등 공동시설유지관리 53	공공요금, 도로청소, 가로등, 보도블럭 등 공동시설유지관리 44
▪ 김제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	공공요금, 도로청소, 가로등, 보도블럭 등 공동시설유지관리 32	공공요금, 도로청소, 가로등, 보도블럭 등 공동시설유지관리 27

4) 사업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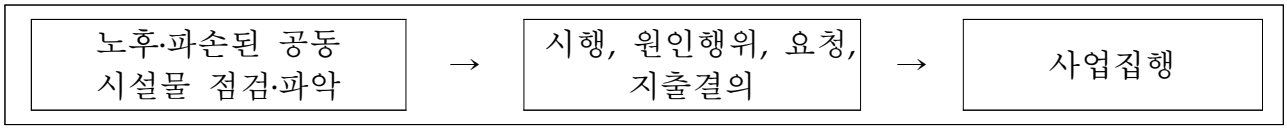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6	'17	'18	'19	'20	'21
'16~'20	685	640	636	631	628	
'17~'21		639	535	589	578	57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17년 예산관련 국회 산업위('16.10.24)에서 우원식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시중노임단가 현실화를 통한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사업 465*백만원(시설장비유지비) 추가 증액요구**(최종 미반영)**

* 증액요구(463백만원): 마산(439백만원), 군산(26백만원)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4	582	582	-	△24	-	-	558	537	92.3	96.2	-	21
2015	639	639	-	△19	-	-	620	589	92.2	95.0	-	31
2016	685	685	-	26	-	-	711	694	101.3	97.6	-	17
2017	639	639	-	-	-	-	639	604	94.5	94.5	-	3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2014	- (불용) 마산, 군산자유무역지역 경상경비 절감 7백만원 불용, 김제자유무역지역 부지준공 지연에 따른 12백만원
2015	- (전용) 동해자유무역지역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5백만원 전용, 울산자유무역지역 준공식 및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14백만원 전용 - (불용) 마산, 군산, 김제 자유무역지역 정산잔액 31백만원 불용
2016	- (불용): 마산 7백만원, 군산 9백만원, 울산 1백만원 등 3개 자유무역지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7백만원
2017	

사 업 명
(5)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490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발전 특별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경제발전 계정	110	114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900	4901	301
명칭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식서비스 투자팀	한영열	신국재	이셋별
		044-203-4620	044-203-4623	044-203-461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A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5,470	4,135	4,135	2,775	3,775	△360	△8.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6					2017('17.12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8,185	9,685	5,470 [4,685]	100	4,115	4,135	4,135	4,235	3,835 [3,785]	-	400	3,775
·외국교육연구기관의 설립준비비 및 초기 운영비 지원	4,685	6,185	4,085 [3,685]	100	2,000	2,985	2,985	3,085	2,685 [2,685]	-	400	3,500
·외국교육연구기관 성장기반 구축	1,000	1,000	1,000 [1,000]	-	-	1,150	1,150	1,150	1,150 [1,100]	-	-	-
·부산명지글로벌캠퍼스 건축비	2,500	2,500	385 [-]	-	2,115	-	-	-	-	-	-	-
·광양만권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건축비 지원	-	-	-	-	-	-	-	-	-	-	-	275
○ 비목별 분류(합계)	8,185	9,685	5,470 [4,685]	100	4,115	4,135	4,135	4,235	3,835 [3,785]	-	-	3,775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5,685	7,185	5,085 [4,685]	100	2,000	4,135	4,135	4,235	3,835 [3,785]	-	-	3,500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2,500	2,500	385 [-]	-	2,115	-	-	-	-	-	-	27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우수인재 양성, 산·학·연 협력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22조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연구시설·주택 등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지자체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해야 한다.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6항
> ⑥ 국가 및 지자체는 경자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 매입, 시설건축 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2.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 ’07. 8월 : 제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결정
- ’08. 5월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대통령 보고(경제자유구역 활성화방안)시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관련 예산지원 확대 결정
- ’09.5.20 : 인천글로벌대학캠퍼스 기공식 개최
- ’09.5.27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대통령 보고(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의 성공적 추진계획 등 보고)
- ’15. 12월 : 인천글로벌대학캠퍼스 준공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8 ~ 계속
-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백만원)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비	15,425	12,450	7,690	8,185	4,135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
- 사업 수혜자 :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외국연구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보조 (경제자유구역청)	25%(자본보조) 50%(경상보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22조

3) ’18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외국교육연구기관 초기운영비 : 3,500백만원

· 뉴욕주립대-FIT 등 3개 대학, 2개 연구소 지원

○ 광양만권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건축비 지원 : 275백만원

· 광양만청 초중등 외국교육기관(美 Shattuck-St. Mary's School) 건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27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외국교육·연구기관 건수 (단위:건수)	목표	17	17	17	17	-	MOU체결기관의 진행상황 및 증가추세 고려	협약체결 건수 (누계) 확인	협약서 사본제출 (경제자유구역청)
	실적	14	15	15	17	-			
	달성도	82	88	88	100	-			
외국교육기관 유학수지 적자 개선액 (단위:억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095	외국교육기관 유치 현황 및 유학수지 적자 개선액 등 실적치 고려한 연평균 증가율 (28.2%) 적용	Σ(외국교육기관별 재학생 수 × 1인당 평균 학비)	외국교육기관 정보공시 자료/교육부 정보공시 홈페이지 (www.isi.go.kr)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4	· 외국교육연구기관성장기반구축 (1,100백만원) · 외국대학 5개 예산지원 (4,705백만원) · 외국연구소 6개 예산지원 (7,778백만원)
2015	· 외국교육연구기관성장기반구축 (1,022백만원) · 외국대학 5개 예산지원 (3,985백만원) · 외국연구소 2개 예산지원 (1,750백만원)
2016	· 외국교육연구기관성장기반구축 (1,000백만원) · 외국대학 4개 예산지원(3,385백만원) · 외국연구소 1개 예산지원(700백만원) · 외국교육기관 건축비 지원(385백만원)
2017	· 외국교육연구기관성장기반구축 (1,150백만원) - 공동교육시설 운영·관리 지원(1000백만원), 성과평가 용역(150백만원) · 외국대학 3개 예산지원(2,685백만원)

③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 경제자유구역별 전략분야 산업과 연계한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를 통해 고용창출 등 외투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

* (인천) 바이오 등 첨단산업 및 호텔·관광 등 , (부산·진해) 화학·기계 등

○ 인천글로벌캠퍼스를 중심으로 동북아 교육·연구 허브로의 성장 발판 마련

-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 겐트대, 유타대 등 세계 우수대학의 인천캠퍼스 분교 설립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및 글로벌 인재 유치·양성 기반 구축

○ 음악, 패션, 호텔·관광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세계 우수대학 유치

-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과 해외 유학수요 흡수를 통해 유학수지 적자 개선 기대

* 인천글로벌캠퍼스내 10개 대학, 1만명 학생(정원) 유치시 연간 2,000억원 유학수지 개선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구역청 유치·지원 등에 대한 투자유치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신청시 지방비 매칭 범위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 (최대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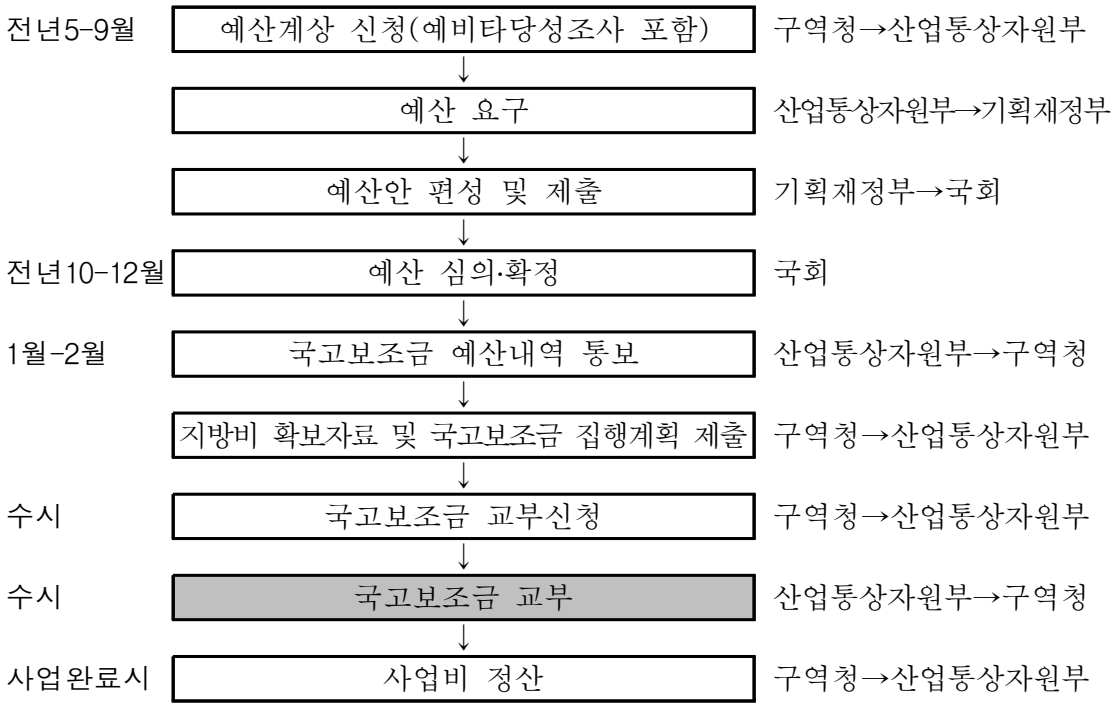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6	'17	'18	'19	'20	'21
'16~'20	8,185	4,135	5,000	4,700	4,573	
'17~'21		4.135	3,928	3,810	3,734	3,69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 지적
   ○ 해양플랜트 특화된 우수해외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14년 국감)
   ○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사업 실적제고가 필요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의 집행관리를 철저('14년 결산 산업위)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경남 하동군을 중심으로 해양플랜트 분야에 강한 애버딘대 하동캠퍼스를 유치
   * (전문가심의) '15.4월 (설립승인) '16.8월, (개교예정) '17.3월(석유공학 등 석박사 정원 185명)
   ○ 지자체의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초기부터 최종 유치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학생유치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중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세계 최우수 외국대학 및 특화전문대학을 적극 유치하여 인천글로벌캠퍼스 등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교육·연구허브로 육성·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기재부)* 결과 : 정상추진

* 국고보조사업의 실효성과 지원 필요성을 평가하고, 그 존속여부를 결정('11년 시행)

12) 부처 건의사항

○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사업은 국정과제(경제자유구역 서비스 허브화 추진)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따라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과 동북아 교육허브 구축을 위해 추진이 시급한 과제임

- 특히, 매년 36억불 규모의 유학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교육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한 개선이 시급함

⇒ 경제자유구역에 우수 외국대학·연구소를 적극 유치하여, 국정과제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4	12,450	12,450	5,777	-	-	12,450	18,227	13,583	109.1	74.5	1,200	3,444
2015	7,690	7,690	1,200	-	-	7,690	8,890	6,757	87.9	76.0	1,500	633
2016	8,185	8,185	1,500	-	-	8,185	9,685	5,470	66.8	56.5	100	4,115
2017	4,135	4,135	100	-	-	4,135	4,235	3,835	92.7	90.6	-	40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본예산	추경(A)								
2014	12,450	12,450	13,583	13,583	175	13,758	12,439	763	556	99.9
2015	7,690	7,690	6,757	6,757	763	7,520	6,220	1,300	-	80.9
2016	8,185	8,185	5,470	5,470	1,300	6,770	5,685	1,085	-	69.5
2017.12월기준	4,135	4,135	3,835	3,835	0	3,835	3,785	50	-	91.5

2) 주요 결산사항

2014	- 경남도 웅동지구 개발계획 컨셉 변경(진해 글로벌테마파크조성 추진)에 따라 창원국제학교 설립 추진 유보·변경에 따른 2,350백만원 불용 - 외국교육·연구기관 집행 잔액 발생으로 1,094백만원 불용 - 애버딘대 사업계획서 보완 등에 따른 설립추진 지연으로 600백만원 이월 - 러시아정부의 외국분교 설립승인 지연에 따른 러시아 국립음악원 추진 지연으로 인한 600백만원 이월
2015	- 러사아정부의 외국분교 설립승인 지연에 따른 러시아국립음악원 추진지연 및 외국교육·연구기관 집행잔액으로 633백만원 불용 - 이란경제제제 해제지연 등 대외적 변화에 따른 이란전통의학연구소 설립지연으로 500백만원 이월 - FAU부설연구소의 본교승인 및 사업계획서 보완 지연에 따라 1,000백만원 이월
2016	- 명지글로벌캠퍼스의 입주대학 의견반영에 따른 설계발주 지연으로 공사비 21억원 불용 - FAU대학 부설연구소의 사업계획 확정 지연으로 연구소 개소 일정 변경('16.12 →'17.12)으로 10억원 불용 - 이란전통의학연구소 투자의사 철회로 10억원 불용 - 머크연구소 국내파트너 기업 선정 문제로 연구소 설립이 지연되어 100백만원 이월
2017	- 에버딘대 개교 지연(당초 '17.9월→'18.3월)으로 초기운영비 3억원 불용 - 2016년 머크연구소 초기운영비(1억원) 예산을 2017년으로 이월하였으나, 연구소 측의 사업계획 미제출 등 실질적인 사업중지로 불용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6)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27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발전특별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발전계정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3	301
명칭	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	경제자유구역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장금영	-	염동현
		044-203-4610	-	044-203-4617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A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952	917	917	871	971	54	△5.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6					2017('17.12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952	961	823	-	138	917	917	917	871	-	-	971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952	961	823	-	138	917	917	917	871	-	-	971
○ 비목별 분류(합계)	952	961	823	-	138	917	917	917	871	-	-	971
· 일반수용비(210-01)	703	703	589	-	114	687	687	687	663	-	-	652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8	28	25	-	3	28	28	28	6	-	-	28
· 특근매식비(210-05)	-	-	-	-	-	-	-	-	-	-	-	-
· 임차료(210-07)	3	3	3	-	-	3	3	3	3	-	-	3
· 기타운영비(210-16)	-	-	-	-	-	-	-	-		-	-	-
· 국내여비(220-01)	46	46	46	-	-	44	44	44	44	-	-	43
· 국외업무여비(220-02)	81	81	63	-	18	70	70	70	70	-	-	68
· 사업추진비(240-01)	66	66	66	-	-	60	60	60	60	-	-	52
· 연구개발비(260-01)	25	34	31	-	3	25	25	25	25	-	-	1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을 통해 외국인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정책 및 제도의 수립·지원을 위해 설치된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사업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설치 및 운영) ①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둔다.
  ②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1의2.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대통령령 제25119호)
  제30조(직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해제
  4.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 및 변경
  5.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국제 협력
  7.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

8. 경제자유구역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및 지원
9.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애로사항잉 해소
10.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
11.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12.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법제이 운영
1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해제 및 조성

② 추진경위

- ('02.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3.7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구성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출범
- ('03.8~10월) 3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지정
- ('03.10~'04.3월) 3개 경제자유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개청
- ('07.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08.3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재정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체
- ('08.4월) 3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황해 : '08.7, 대구·경북 : '08.8, 새만금 : '08.8)
- ('08.5월) 경제자유구역내 규제완화·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 관련대책 대통령 보고(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09.1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특별법 전환, 외국인 임대주택공급규정 등)
- ('09.5월)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 방안관련 대통령 보고(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10.9월) 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 수립(위기관리대책회의)
- ('11.4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지정요건 신설, 사업시행자 요건 신설 등)
- ('12.9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등)
- ('12.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환지개발방식 도입 등)
- ('13.2월) 2개 경제자유구역(동해안, 충북) 추가지정
- ('13.7월)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 ('14.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SPC 출자비율 완화 등)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3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3) ’18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 971백만원 요구

- 운영비 : 683백만원
  . 국내외 투자유치 및 홍보(360), 경자구역 성과평가 실시(150), 위원회 개최비용(59), 인쇄비 및 사무용품구입비 등(83), 기타 기획단운영 기본경비 등(31)
- 국내·외 여비 : 111백만원(국내 43, 국외 68)
- 경제자유구역 관계기관과의 업무활성화 추진 : 52백만원
-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비 : 125백만원

구 분	’17예산	’18요구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운영	운영비 717.9백만원, 여비 114.1백만원, 업무추진비 60백만원, 연구개발비 25백만원 지원	운영비 683백만원, 여비 111백만원, 업무추진비 52백만원, 연구개발비 125백만원 지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 (단위: 억불)	목표	6.0	6.4	6.0	6.6	7.1	최근 3년간(’15년, ’16년) 평균치인 6.9보다 3% 높은 7.1로 ’18년 목표치를 설정	8개경제자유구역에 유치된 FDI 도착액	경제자유구역청 통계자료
	실적	14.3	5.7	8.1	2.0	-			
	달성도	238.3	89.1	135	30.3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1	-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4월) 및 하위 법령 정비(8월) -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全 구역청 확대 및 인센티브 적용 -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전략 수립 및 시행 -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내 뉴욕주립대 교과부 설립 승인(7월) -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실시(12월) - '11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유치 총 11.6억불 달성(신고액 기준)
2012	-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4월) -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2월) -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인천분교 개교(3월) - 외국교육 및 연구기관 유치지원 운영요령 개정안 마련 -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역(동해안, 충북) 선정('12.9) -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9월) 및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12월) - '12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유치 총 25.2억불 달성(신고액 기준)
2013	- 동해안권, 충북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2월) -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7월) -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내 조지메이슨대(8월), 겐트대(11월) 교육부 설립 승인 - 외국교육 및 연구기관 유치지원 운영요령 개정(9월) -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안 수립(10월) -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8월) 및 경자법 개정안 국회 제출(12월) - '13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유치 총 13.5억불 달성(신고액 기준)
2014	-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내 조지메이슨대(3월), 유타대, 겐트대(9월) 개교 - 인천 경자구역내 LOCZ社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및 적합통보(3월) - 개발규제 혁신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경자법(12월) 및 시행령(11월) 개정 - 규제 청문회(5월)를 통해 총 28건의 규제완화 방안 확정, 경자법령 개정 추진 -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실시(8월) - '14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유치 총 18.2억불 달성(신고액 기준)
2015	- 실시계획 관계기관 협의기간 단축 및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완화 관련 경자법 시행령 개정(3월) - 구역청의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구체화 관련 경자법 시행규칙 개정(6월)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제도 보완 관련 경자법 시행령 개정(7월)
2016	- 외국교육연구기관관련 에버딘대 교육부 설립승인 (8월) -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실시(2월, 8월) - 입주외투기업 7년형 조세감면 지원 (4건, '16.1월/7월/8월)
2017	-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7월, 8월) -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17.9월 미국 뉴욕주립대 패션기술대학/영국 애버딘대 개교, 17.12월 독일 FAU 부설 유체역학연구소 개소) - 복합리조트(외국인카지노 포함) 관련 제도개선(17.하반기)

③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및 글로벌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국내외 투자유치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거점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직접 수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6	'17	'18	'19	'20	'21
'16~'20	952	917	867	841	832	
'17~'21		917	962	962	962	96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발전비전 및 목표)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육성
  · 글로벌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는 상항에서 세계 각국의 특구 조성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조성
  ·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외국인투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첨단 기술 및 인적·물적 자원을 유인하기 위한 혁신 거점 조성
  · 첨단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경제특구로서 미래 성장의 전초기지 및 테스트베드 조성
- (추진전략 및 주요 정책과제)

추진 전략	선택과 집중으로 개발 활성화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으로 투자매력도 제고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로 성과 극대화	차별화·특성화로 발전 가속화
주요 정책 과제	①개발지구 최적화 ②개발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③개발지원 확대 및 재원 다변화	①외국인 정주 환경 개선 ②외국인 경영 여건 개선 ③외국인투자유치 규제 완화	①인센티브 개선 및 탄력적 운영 ②외투유치 역량 제고 ③전략적인 외투 유치 활동 추진	①경자구역별 차별화 ②타 특구와의 연계 강화 ③서비스산업 특화 거점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4	1,128	1,128	27	-	-	-	1,155	1,106	98.0	95.8	18	31
2015	970	970	18	-	-	-	988	975	100.5	98.7	9	4
2016	952	952	9	-	-	-	961	823	86.4	85.6	-	138
2017	917	917	-	-	-	-	917	871	95.0	95.0	-	-

2) 주요 결산사항

2014	- 연구용역 기간('14.12~'15.4) 미도래에 따른 용역비 18백만원 이월 -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31백만원 불용
2015	- 연구용역 기간('15.12~'16.3) 미도래에 따른 용역비 9백만원 이월 -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4백만원 불용
2016	- 집행잔액 및 경상경비 예산 절감 이행으로 138백만원 불용
2017	- 특이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7)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2733 - 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발전	산업통상	경제자유구역	경제발전	120	126
명칭	특별회계	자원부	기획단	계정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3	302
명칭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경제자유구역 지원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보조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장금영팀장	임경숙사무관	-
		044-203-4610	044-203-4615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A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	4,450	3,800	3,800	3,600	3,600	△200	△5.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6					2017('17.12월말)						2018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4,450	4,450	4,450 [4,102]	-	-	3,800	3,800	3,800	3,800 [3,800]	-	-	3,600
·구역청 운영비	4,450	4,450	4,450 [4,102]	-	-	3,600	3,600	3,600	3,600 [3,600]	-	-	3,600
·在中전시관 운영비	-	-	-	-	-	150	150	150	150 [150]	-	-	-
·해외비즈니스 파트너링	-	-	-	-	-	50	50	50	50 [50]	-	-	-
○ 비목별 분류(합계)	4,450	4,450	4,450 [4,102]	-	-	3,800	3,800	3,800	3,800 [3,800]	-	-	3,600
· 지자체경상보조 (330-01)	4,450	4,450	4,45 [4,102]	-	-	3,800	3,800	3,800	3,800 [3,800]	-	-	3,6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해 경자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7개 구역청의 운영과 투자유치 활동에 드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 국가경쟁력 강화, 균형발전 등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1항·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② 추진경위

- '02.12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포
- '03.7월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구성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출범
- '03.8~10월 : 3개 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지정
- '03.10~'04.3월 : 3개 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개청
- '08.4월 3개 구역(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추가지정
- '08.7~8월 3개 구역청(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개청
- '13.2월 2개 구역(동해안권, 충북) 추가지정
- '13.4월 2개 구역청(동해안권, 충북) 개청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7개 경제자유구역청
- 사업 수혜자 :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연구소, 학교 및 지역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해당없음 (정액보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3) ’18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7개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 : 3,600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16년) 평가결과 1,440백만 + 균등배분 1,440백만 + 규모비례 720백만
→ (’17년) 평가결과 1,400백만 + 균등배분 1,440백만 + 규모비례 720백만

구분	산식	비고
평가결과	7개 x (14~432백만원)	432(1위), 360(2위), 288(3위), 187(4위), 101(5위), 58(6위), 14(7위)
균등배분	7개 x (206백만원)	
규모비례	7개 x (24~300백만원)	300, 141, 92, 85, 44, 34, 24

< 세부 내역 >

구 분	’17예산	’18요구
□ 구역청 투자유치	3,800백만원	3,600백만원
▪ 구역청 운영비	3,600백만원 7개청x평균514백만원 (7개청 244~938백만원 차등)	3,600백만원 7개청x평균514백만원 (7개청 244~938백만원 차등)
▪ 在中 전시관 운영	150백만원 3개청x평균50백만원 (3개청 25~82백만원 차등)	-
▪ 해외비즈니스 파트너링	50백만원 1개청x1회x50백만원	-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경제자유구역 개발율(%)	목표	48.6	52.6	62.0	64.0	-	최근 2년간(’15~’16년) 예산 평균실적(65.05%)에 2년간 증가치(10%)를 반영하여 75.05%를 18년 목표치로 설정	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 대비 개발 진행 면적 (실시계획이 승인된 면적) 비율	구역청 통계자료
	실적	56.4	60.1	66.0	77.3	-			
	달성도	116.0	114.3	103.1	120.8	-			
외국기업 신규 입주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266	전년 실적 261개 대비 2% 상향한 266개를 18년 목표치로 설정	외국기업 신규 입주 수로 산정	구역청 통계자료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4	-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내 조지메이슨대(3월), 유타대, 겐트대(9월) 개교 - 인천 경자구역내 LOCZ社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및 적합통보(3월) - 개발규제 혁신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경자법(12월) 및 시행령(11월) 개정 - 규제 청문회(5월)를 통해 총 28건의 규제완화 방안 확정, 경자법령 개정 추진
2015	- 실시계획 관계기관 협의기간 단축 및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완화 관련 경자법 시행령 개정(3월) - 구역청의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구체화 관련 경자법 시행규칙 개정(6월)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제도 보완 관련 경자법 시행령 개정(7월)
2016	- 입주 외투기업 7년형 조세감면 지원(4건, 1월/7월/8월)
2017	- 외국교육연구기관 관련 뉴욕패션기술대, 에버딘대 개교(.9월)

③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률 100% 및 외국인투자유치 200억불 달성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거점으로 동북아를 대표하는 최상위 경제특구로 육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4분기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구역청→산업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	
1/4분기	1차 교부(균등배분, 규모별 차등배분)	산업부→구역청 (경자법제28조의2, 구역청운영경비집행지침)
	↓	
2/4분기	구역청 성과평가 실시	산업부 (경자법제28조의3, 성과평가관리지침)
	↓	
3/4분기	성과평가 결과확정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경자법제28조의3, 시행령제29조의2)
	↓	
3/4분기	2차 교부(평가결과 차등배분)	산업부→구역청 (경자법제28조의3, 구역청운영경비집행지침)
	↓	
익년초	실적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구역청→산업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6	'17	'18	'19	'20	'21
'16~'20	4,450	4,000	3,920	3,804	3,652	
'17~'21		3,800	3,610	3,502	3,432	3,39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 지적사항 :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사업의 집행지침 정교화 필요(산업위, '14년 결산 검토 보고서)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세부내역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조치('15년 예산 정산시)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추진방향) 제1차 경자구역 기본계획에 따른 구역별 중점유치업종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구역청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유인하고 경자구역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 (추진계획) 사업추진주체인 구역청의 사업 수요확대에 따른 재정지원을 확대하되,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사업 내실화를 도모

* 경자구역 개발성과를 바탕으로 투자유치 본격화와 신규 경자구역 개발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사업 안정적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4	4,950	4,950	0	0	0	4,950	4,950	4,950	100	100	0	0
2015	5,050	5,050	0	0	0	5,050	5,050	5,050	100	100	0	0
2016	4,450	4,450	0	0	0	4,450	4,450	4,450	100	100	0	0
2017	3,800	3,800	0	0	0	3,800	3,800	3,800	100	100	0	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4	4,950	4,950	4,950	4,950	77	5,027	3,947	669	334	80
2015	5,050	5,050	5,050	5,050	669	5,719	3,995	871	184	80
2016	4,450	4,450	4,450	4,450	871	5,321	4,102	301	47	92
2017. 12월기준	3,800	3,800	3,800	3,800	301	4,101	3,901	200	0	95.1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8) 기타 기반시설지원(2733-4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발전 특별회계	산업통상 자원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경제발전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3	409
명칭	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	경제자유구역지원	기타 기반시설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5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식서비스투자팀	한영열	김진구	이주연
		044-203-4620	044-203-4637	044-203-462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 기반시설지원	14,723	22,757	22,757	19,897	25,474	2,717	11.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6					2017('17.12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4,723	25,773	18,899 (6,609)	-	6,874	22,757	22,757	22,757	22,757 (16,088)	-	-	25,474
· 송도 6-8공구 간선도로	874	874	- (-)	-	874	-	-	-	-	-	-	-
· 아암로 확장	3,000	3,000	3,000 (-)	-	-	4,000	4,000	4,000	4,000 (1,353)	-	-	1,207.5
· 웅동지구 진입도로	1,000	1,000	1,000 (995)	-	-	4,050	4,050	4,050	4,050 (4,032)	-	-	3,477
·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1,810	1,810	1,810 (4)	-	-	500	500	500	500 (121)	-	-	3,166.5
· 갈사만 진입도로 4호선	838	838	838 (420)	-	-	500	500	500	500 (-)	-	-	1,179.5
· 갈사만조선산단 내부간선도로	-	6,000	- (-)	-	6,000	-	-	-	-	-	-	-
· 대송산단 내부간선도로	-	5,050	5,050 (413)	-	-	-	-	-	-	-	-	3,575
· 신덕지구 간선도로	1,080	1,080	1,080 (444)	-	-	-	-	-	-	-	-	-
· 팔마사거리-신대단지간 연결도로	1,073	1,073	1,073 (1,073)	-	-	1,803	1,803	1,803	1,803 (1,743)	-	-	-
· 경산지식산업지구 간선도로	1,788	1,788	1,788 (-)	-	-	1,000	1,000	1,000	1,000 (1,000)	-	-	631
· 경산지식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	2,000	2,000	2,000 (2,000)	-	-	2,500	2,500	2,500	2,500 (-)	-	-	4,637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도로	-	-	-	-	-	5,500	5,500	5,500	5,500 (5,500)	-	-	4,000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간선도로	-	-	-	-	-	500	500	500	500 (500)	-	-	500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	-	-	-	-	-	400	400	400	400 (400)	-	-	500
· 포승지구 진입도로	-	-	-	-	-	500	500	500	500 (74)	-	-	500
· 포승지구 간선도로	1,260	1,260	1,260 (1,260)	-	-	1,504	1,504	1,504	1,504 (1,365)	-	-	1,500.5
· 오송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	-	-	-	-	-	-	-	-	-	-	600
○ 비목별 분류(합계)	14,723	25,773	18,899 (6,609)	-	6,874	22,757	22,757	22,757	22,757 (16,088)	-	-	25,474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14,723	25,773	18,899 (6,609)	-	6,874	22,757	22,757	22,757	22,757 (16,088)	-	-	25,47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인천・부산진해・광양만・대구경북・황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 건설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제1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7조의2제3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1항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자유구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2. 경제자유구역 안의 간선도로
3. 철도·도시철도 및 공항·항만시설
4. 공원·녹지
5. 공동구·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반시설

② 추진경위

- '02.12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 '03. 7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구성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출범
- '03. 8～10 : 3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지정
- '03. 10～'04. 3 : 3개 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개청
- '04. 5 : 제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기반시설 국고지원 기준 마련
- '07.12 : 3개 경제자유구역(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2차 추가 지정

- ‘13. 2 : 2개 경제자유구역(동해안권, 충북) 3차 추가 지정
- ‘13. 7 :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4～계속
- 사업규모 : ‘18년 16개 기반시설(도로, 용수공급시설) 건설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자본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인천・부산진해・광양만・대구경북・황해 경제자유구역청
- 사업 수혜자 : 경제자유구역(인천・부산진해・광양만・대구경북・황해) 입주기업 및 입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6개 경제자유구역청)	5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3) ’18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경제자유구역내 11개 도로 건설 지원 20,337백만원
- (인천) 아암로 확장 1,207.5백만원
- (부산·진해) 웅동지구 진입도로 3,477백만원
- (광양만권)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3,166.5백만원 및 4호선 1,179.5백만원, 대송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3,575백만원
- (대구·경북)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도로 4,000백만원, 간선도로 500백만원, 경산지식산업지구 간선도로 631백만원
- (황해) 포승지구 진입도로 500백만원 및 간선도로 1,500.5백만원
- (충북) 오송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신규 600백만원

② 경제자유구역내 2개 용수공급시설 지원 5,137백만원
- (대구·경북)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 500백만원, 경산지식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 4,63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반시설 지원사업 집행율 (단위: %)	목표	96.0	91.4	94.1	95.0	-	최근 3년간 성과계획서 목표 등	기반시설 예산집행(국고교부)액/기반시설예산(국비)	D-brain 및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 자료
	실적	94.5	78.5	90.6	100.0	-			
	달성도	98.4	85.9	96.3	105.3	-			
기반시설 지원 사업 공정률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0	최근 2년간 계획공정률 대비 실제 공정률 평균치	기반시설 실공정률/기반시설 계획공정률	D-brain 및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 자료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4	○ 14개 도로사업 국비지원
2015	○ 13개 도로사업 국비지원(1개 도로 준공)
2016	○ 11개 도로사업 및 1개 용수공급사업 국비지원(7개 도로 준공)
2017	○ 10개 도로사업 및 1개 용수공급사업 국비지원(1개 도로 준공)

③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경제자유구역 기반인프라 구축에 따른 경자구역 개발 활성화 및 외국기업 투자유치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타당성조사 : 해당 없음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유무 및 그 결과요지 기재 : 해당 없음

□ 미시행 사유 : 사업규모(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미달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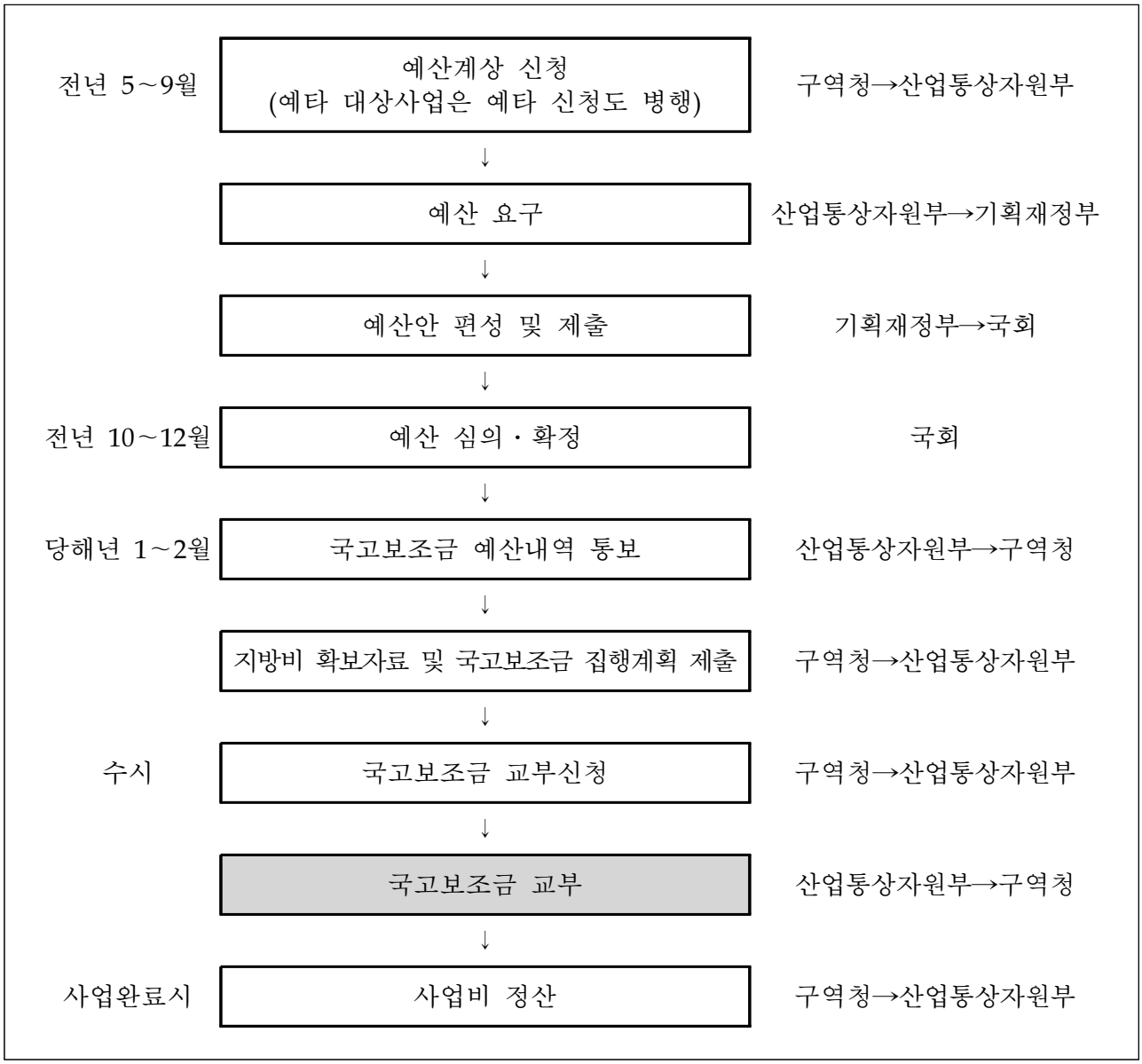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6	'17	'18	'19	'20	'21
'16~'20	14,723	12,300	13,800	11,900	17,500	
'17~'21		22,757	21,619	20,970	20,551	20,34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14년 상임위

-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예산 편성단계시 해당연도 사업추진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액을 산정하여 실집행 부진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자치단체의 실집행 실적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국고 예산을 교부하고 있으며, '16년도 예산안은 집행실적과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최소 필수 예산만 반영하였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1) 추진방향

- 실시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지원을 강화하며, 기존 사업의 조기 완공을 통한 지구개발 활성화 추진 도모

2) 추진계획

- 예산 편성시 지구 개발이 완료된 지구의 기반시설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적극 추진 및 기존 사업의 적기 완공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4	49,098	49,098	9,975	-	-	-	59,073	53,023	108	89.8	6,050	-
2015	44,122	44,122	6,050	-	-	-	50,172	38,093	86.3	75.9	11,050	1,029
2016	14,723	14,723	11,050	-	-	-	25,773	18,899	128.4	73.3	-	6,874
2017	22,757	22,757	-	-	-	-	22,757	22,757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2014	- 산업단지 개발지연 및 지방비 매칭액 부족으로 6,050백만원 이월
2015	- 지방비 매칭액 부족으로 11,050백만원 이월, 예산집행지침의 이월제한규정에 따라 이월 가능 초과금액 1,029백만원 불용
2016	- 국비 지원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874백만원 불용, 산업단지 소송으로 인한 도로공사 중지로 6,000백만원 불용
2017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9) 주요 기반시설지원(2733-41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발전 특별회계	산업통상 자원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경제발전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3	415
명칭	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	경제자유구역지원	주요 기반시설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식서비스투자팀	한영열	김진구	이주연
		044-203-4620	044-203-4637	044-203-462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A
주요 기반시설지원	43,503	34,992	34,992	28,434	35,642	7,208	25.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6					2017('17.12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43,503	43,503	47,053	-	-	34,992	34,992	34,992	34,992 (19,279)	-	-	35,642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	3,550	3,550	-	-	4,000	4,000	4,000	4,000 (4,000)	-	-	3,440
・소사-녹산간 도로	3,000	3,000	3,000 (2,990)	-	-	9,000	9,000	9,000	9,000 (8,846)	-	-	2,993
・석동-소사간 도로	17,618	17,618	17,618 (14,228)	-	-	8,261	8,261	8,261	8,261 (6,433)	-	-	21,809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22,885	22,885	22,885 (19,071)	-	-	13,731	13,731	13,731	13,731 (-)	-	-	5,00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	-	-	-	-	-	-	-	-	-	-	2,400
○ 비목별 분류(합계)	43,503	43,503	47,053	-	-	34,992	34,992	34,992	34,992 (19,279)	-	-	35,642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43,503	43,503	47,053	-	-	34,992	34,992	34,992	34,992 (19,279)	-	-	35,64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인천・부산진해・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 건설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제1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7조의2제3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1항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자유구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2. 경제자유구역 안의 간선도로
3. 철도·도시철도 및 공항·항만시설
4. 공원·녹지
5. 공동구·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반시설

② 추진경위

- '02.12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 '03. 7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구성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출범
- '03. 8～10 : 3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지정
- '03. 10～'04. 3 : 3개 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개청
- '04. 5 : 제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기반시설 국고지원 기준 마련
- '07.12 : 3개 경제자유구역(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2차 추가 지정
- '13. 2 : 2개 경제자유구역(동해안권, 충북) 3차 추가 지정
- '13. 7 :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7,569억원(국비 3,775억원)
- 사업기간 : 2005～계속
- 사업규모 : '18년 4개 기반시설(도로) 건설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자본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인천・부산진해・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 사업 수혜자 : 경제자유구역(인천・부산진해・대구경북) 입주기업 및 입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3개 경제자유구역청)	5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3) '18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경제자유구역내 4개 도로 건설 지원 35,642백만원
- (인천)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3,440백만원
- (부산·진해) 소사-녹산간 도로 2,993백만원, 석동-소사간 도로 21,809백만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2,400백만원
- (대구·경북)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5,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반시설 지원사업 집행율 (단위: %)	목표	96.0	91.4	94.1	95.0	-	최근 3년간 성과계획서 목표 등	기반시설 예산집행(국고교부)액/기반시설예산(국비)	D-brain 및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 자료
	실적	94.5	78.5	90.6	100.0	-			
	달성도	98.4	85.9	96.3	205.3	-			
기반시설 지원사업 공정률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0	최근 2년간 계획공정률 대비 실제 공정률 평균치	기반시설 실공정률/기반시설 계획공정률	D-brain 및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 자료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4	○ 4개 도로사업 국비지원(2개 도로 준공)
2015	○ 4개 도로사업 국비지원
2016	○ 4개 도로사업 국비지원(1개 도로 준공 예정)
2017	○ 4개 도로사업 국비지원

③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경제자유구역 기반인프라 구축에 따른 경자구역 개발 활성화 및 외국기업 투자유치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타당성조사 : 해당 없음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유무 및 그 결과요지 기재

사업명	조사기관	기간	결과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한국개발연구원(KDI)	'13. 2～'13.11	B/C 1.13, AHP 0.555
소사-녹산간 도로	한국개발연구원(KDI)	'04. 6～'04. 9	B/C 0.99, AHP 0.627
석동-소사간 도로	한국개발연구원(KDI)	'05.12～'06. 8	B/C 1.67, AHP 0.653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한국개발연구원(KDI)	'13.11～'14. 8	B/C 1.21, AHP 0.60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한국개발연구원(KDI)	'17. 1～'17. 11	B/C 1.04, AHP 0.512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14까지 기투자액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투자계획	계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11～'19	115	-	36	40	34	46	261
소사-녹산간 도로	'05～'18	1,319	-	30	90	30	-	1,469
석동-소사간 도로	'07～'18	519	146	176	83	218	327	1,469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15～'18	-	10	229	137	50	156	58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18～'23	-	-	-	-	24	1,305	1,329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2014	587		2014	2017	
1차 변경	2014	587	583	2014	2017	설계비 감액 반영
2차 변경	2015	583	494	2014	2017	낙찰차액 감액
3차 변경	2015	494	513	2014	2017	관급자재 증액 반영
4차 변경	2015	513	509	2014	2017	낙찰차액 감액
5차 변경	2016	509	528	2014	2017	관급자재 증액 반영
6차 변경	2016	528	587	2014	2019	호안축조, 물가변동 등 반영
7차 변경	2016	587	597	2014	2019	가시설계획 변경 등 반영
8차 변경	2017	597	608	2014	2019	교량공법 변경 반영
9차 변경	2017	608	609	2014	2019	물가변동에 따른 감리비 변경
2018예산		34		2004	2018	

○ 소사-녹산간 도로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2005	2,050		2004	2009	
1차 변경	2007	2,050	2,002	2004	2009	낙찰차액 감액
2차 변경	2007	2,002	2,053	2004	2009	물가변동 반영
3차 변경	2007	2,053	2,283	2004	2009	감정평가 결과 반영
4차 변경	2008	2,283	2,379	2004	2009	물가변동 반영
5차 변경	2009	2,379	2,529	2004	2009	물가변동, 문화재 시발굴비 반영
6차 변경	2009	2,529	2,529	2004	2010	사업기간 연장
7차 변경	2009	2,529	2,530	2004	2010	물가변동 반영
8차 변경	2009	2,530	2,541	2004	2010	송전선로 이설비 반영
9차 변경	2010	2,541	2,577	2004	2011	용지매입비 반영 및 사업기간 연장
10차 변경	2010	2,577	2,578	2004	2011	물가변동 반영
11차 변경	2011	2,578	2,578	2004	2012	사업기간 연장
12차 변경	2012	2,578	2,594	2004	2012	공사손해보험료 반영 및 사업기간 연장
13차 변경	2012	2,594	2,654	2004	2012	물가변동 반영
14차 변경	2013	2,654	2,654	2004	2016	사업기간 연장
15차 변경	2014	2,654	2,939	2004	2016	교차로 입체화 등 반영
16차 변경	2015	2,939	2,939	2004	2018	사업기간 연장
2018예산		34		2004	2018	

○ 석동-소사간 도로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2008	2,645		2007	2015	
1차 변경	2010	2,645	2,500	2007	2015	낙찰차액 감액
2차 변경	2010	2,500	2,535	2007	2015	용지매입비 반영
3차 변경	2010	2,535	2,683	2007	2015	물가변동 반영
4차 변경	2011	2,683	2,748	2007	2015	물가변동 반영
5차 변경	2011	2,748	2,821	2007	2015	물가변동 반영
6차 변경	2014	2,821	2,864	2007	2015	문화재 시발굴비 반영
7차 변경	2014	2,864	2,864	2007	2018	사업기간 연장
8차 변경	2015	2,864	2,919	2007	2018	물가변동 반영
9차 변경	2016	2,919	2,938	2007	2018	가시설 변경 반영
10차 변경	2016	2,938	2,939	2007	2018	물가변동 반영
2018예산		218		2004	2018	

○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단위: 억원)

구 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2014	1,164		2015	2018	
2018년도 요구		50		2015	2018	

7) 사업 집행절차

전년 5~9월	예산계상 신청 (예타 대상사업은 예타 신청도 병행)	구역청→산업통상자원부
	↓	
	예산 요구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	
	예산안 편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국회
	↓	
전년 10~12월	예산 심의·확정	국회
	↓	
당해년 1~2월	국고보조금 예산내역 통보	산업통상자원부→구역청
	↓	
	지방비 확보자료 및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제출	구역청→산업통상자원부
	↓	
수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구역청→산업통상자원부
	↓	
	국고보조금 교부	산업통상자원부→구역청
	↓	
사업완료시	사업비 정산	구역청→산업통상자원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6	'17	'18	'19	'20	'21
'16~'20	43,503	29,502	40,103	29,997	0	
'17~'21		34,992	33,242	32,245	31,600	31,28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14년 상임위

-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예산 편성단계시 해당연도 사업추진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액을 산정하여 실집행 부진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자치단체의 실집행 실적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국고 예산을 교부하고 있으며, '16년도 예산안은 집행실적과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최소 필수 예산만 반영하였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1) 추진방향

- 실시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지원을 강화하며, 기존 사업의 조기 완공을 통한 지구개발 활성화 추진 도모

2) 추진계획

- 예산 편성시 지구 개발이 완료된 지구의 기반시설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적극 추진 및 기존 사업의 적기 완공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4	31,907	31,907	18,700	-	-	-	50,607	82,514	158.6	100	-	-
2015	19,310	22,910	-	-	-	3,600	22,910	19,287	84.1	84.1	3,550	73
2016	43,503	43,503	3,550	-	-	-	47,053	21,555	49.5	45.4	-	-
2017	34,992	34,992	-	-	-	-	34,992	34,992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2014	- 해당 없음
2015	- 레미콘 공급방법 변경(육상 →해상)에 따른 관급자재 공급업체 선정기간 소요로 3,550백만원 이월, 국비 지원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73백만원 불용
2016	- 해당 없음
2017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